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0-0194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구지원비
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

책임연구원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공동연구원

성정숙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송영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보조연구원

유수연 (평화인권교육센터)

자문협력

김성희(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남화성(군포시청소년재단)

윤대기(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장애자(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하현숙(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요 약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로써,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보호자, 재직 중인 교사와 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과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 연구의 과정은 (1) 주요 문헌 조사, (2) 구성원별 온라인 설문조사, (3) 초점집단별 면접조사, (4)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 구성원별 설문조사는 학교단위로 확률비례층화표집으로 진행하였는데, (1) 학교급별 배분 후, (2) 학교요소별(학교설립형태/공학여부/학교유형별/지역(구군단위)) 학생수를 반영하여 배분하였다. 단 학교급별 배분 시 학교요소가 적은 초등학교는 표본의 20%, 학교요소가 많은 고등학교는 표본의 50%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표집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해, 학교선정은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선발된 학교 내에서의 참여자 표본을 고정하여 학교 내부의 임의성을 줄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의 계획만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학교구성원별 실태조사 참여자는 학생 2,743명 (초등학생 응답자는 총 629명, 중학생 응답자는 총 864명, 고등학생 응답자는 총 1,250명), 보호자 1,711명, 교사 841명, 직원 252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원을 제외하고 95% 신뢰도 구간은 대략 $\pm 2.8 \sim 3.5\%$ 가 되었다.

○ 학생집단별 실태조사 결과 중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아동·청소년 인권의식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75.2%로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각각 96.6%, 93.7%로 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다. 더불어 학교구성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 대해 8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인권행동과 관련하여 “협오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에 9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주위에서 이러한 행동이 벌어졌을 때 이를 제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이보다 다소 낮은 약 80%였다. 특히 이러한 행동을 사회로 확장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8.8%에 불과하여 인권행동의 경계가 학생의 주변에서 사회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초등학생들의 인권행동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학습과 활동이 필요하다.
- 초등학생의 경우 94.5%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16.8%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일 필요로 하였다.
- 초등학생들의 약 85% 이상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또한 이를 잘 반영한다”고 인식하였으나 13%~14%는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권이 보장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 초등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성별에 대한 차별 경험(11.0%)을 가장 많이 인지하였다. 폭력피해 경험은 언어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보다는 친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43.4%)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체벌도 1.6%가 경험하여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들은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해 65%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6.5%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 중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63.3%가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 문항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이 더 낮았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에 97.8%, “학교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 97.9%,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97%로 높았다.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서도 9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인권문서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18.9%) 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 학생인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53.1%)가 많았다.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도 8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혐오표현의 대처와 혐오표현을 제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92.1%였으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7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를 사회로 확장하였을 때 중학생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의 응답은 좀 더 낮은 6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한다는 인식이 90.7%로 높았으나 학교 내 지지/협동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18%,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답변이 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중학생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청결한 화장실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 위생적인 식단과 휴식공간, 운동공간 및 운동 시설로 휴식권과 건강권과 관련한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 학교에서 중학생들이 의견표명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86.6%, “학교 및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표명이 자유롭다” 는 질문에 85.7%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학교 밖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 좀 더 통제받고 있었다.
- 중학생의 차별 및 폭력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성적과 관련한 차별 경험이 14.7%로 가장 높았다. 폭력 경험은 또래 집단에 의한 언어폭력을 1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의 언어폭력(9.4%) 및 신체폭력(9.3%) 경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2.3%로 낮았으나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8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해 중학생들은 69.3%가 알고 있다고 했으며, 상담 시 불이익이 없다고 81.8%가 인식하고 있었다.
- 중학생의 초점집단면접결과 중학생들은 인권교육시간에만 ‘인권’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며, 일상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중학생들은 용모검사와 학생회 활동에 있어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징계방, 학교폭력 사각지대 등에 존재함으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으로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권교육은 일회성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권보호관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경우, 인권 인식과 행동에 있어서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에 부정적인 응답이 54.9%,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에는 98.8%,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에 97.6%,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98.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더불어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에도 9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중 남학교의 학생들의 인권인식이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보다 낮았으며, 남녀공학 학교의 남학생들도 여학생에 비해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동일하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인권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았다.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91.2%가 필요하다 인식하였다.
- 인권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하지 않으려는 노력한다”에 94.6%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87.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를 사회의 문제로 확장했을 경우에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에는 86.3%로 응답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은 71.2%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인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낮았다.
- 고등학생들은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있다”에 82.8%, “친구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다”에 9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했다”에는 90.4%, “선생님들이 학생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에는 81.6%,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에는 91.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89.5%에 머물렀다.

- 학교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중학생과 동일하게 휴식공간과 청결한 화장실,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으로 응답하였다.
- 학교에서 실현되어야 할 자유권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87.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84.5%가 응답하였다. “학교 내에서 학교와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 자유롭다”는 것에는 각각 78.6%, 82.3%로 나타나 사회문제보다는 학교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덜 자유로웠다. 학교 밖에서의 집단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학교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23.6%가 응답하였다.
-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매우 높은 29.3%였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각각 12.1%, 1.4%로 가장 높았다.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피해 경험도 9.5%로 응답하였다.
- 고등학생들은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해 59.8%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수치는 중학교 학생보다 낮았다.
- 고등학생의 초점집단면접결과 고등학생들은 일상의 삶과 사회의 이슈를 경험하며 인권에 대해 생각하였고, 학생회 의견이 묵살되는 결과를 보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미투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회복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 받을 권리,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안전하게 일할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교육을 받길 원했으며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요구하면서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 보호자는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고 77.6%가 응답하였으나 학생이 사회의 일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각각 85.0%, 98.6%로 응답하여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자들은 약 60%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구성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보호자들은 약 97%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 혐오표현의 사용과 이를 제지하려는 행동 그리고 사회에서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 모두 9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은 68.7%에 머물렀다.
- 보호자들은 “학교가 협력하는 분위기이며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고 88% 이상이 응답하였으나 학교 문제에 자유롭게 건의하는 것은 그보다 낮은 79.3%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은 시급히 필요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양한 식단과 운동공간 및 운동시설, 청결한 화장실이라고 응답하였다.
- 보호자들은 학생들의 언어폭력 경험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으며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모두 학생에 의한 경험이 각각 21.6%, 70.6%, 75.0%로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침해 구제방안에 대해서 보호자 중 71.1%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전체 학생 및 보호자 집단별 비교분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체 학생에서 살펴보면,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나,

학교구성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약 90%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인권 행동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높은 반면, 학교나 사회 문제에 대해 행동하는 것은 주저하였다. 초·중·고 학생 모두 인권교육이 자신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 교육,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교육, 학생들의 박탈된 권리에 대한 교육, 쉬운 말로 구성된 교육, 직접 참여/체험하는 교육 방식을 요청하였다.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해서는 약 60% 이상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은 성적에 의한 차별이 가장 높았다.

- 실태조사의 학생집단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에서는 고등학생이 의식이 가장 높았던 반면, 초등학생과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이 가장 낮았다. 특히 초등학생과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었다. 인권 행동에 있어서도 세 집단 모두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에 비해 학교나 사회적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노력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낮았다.
-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존중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반면 친구들이 보여주는 신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 학교에서 대표가 되어 활동하거나 선생님께 학교 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자유권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복장과 두발에 대해 학교가 여전히 통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생회 참여와 활동이 어렵다는 응답보다는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학교를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견표명이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적에 따라 선생님으로부터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었고, 그 비율에서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2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 역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있었는데, 중학생이 가장 높은 12.6%, 초등학생은 11%, 고등학생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친구로부터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언어폭력 피해는 43.5%로 매우 높았고, 신체폭력 피해도 16.5%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교사로부터의 신체폭력 피해 경험이 9.3%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9.5%가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자녀가 피해 경험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실제 학생들이 경험한 비율보다 더 낮게 나타나 보호자가 미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중학생의 초점집단면접의 분석결과 도출된 주제는 두발과 복장검사, 휴대폰 압수 등 학교생활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제약받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피해를 회복할 권리의 보장이 미약하며, 국·영·수 중심의 수업과 운동장과 축구장, 농구장이 열악하거나 폐쇄되어있어 신체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등 건강할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인권보호관’ 등 인권침해에 대해 조력 받을 수 있는 체계 또한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 중학생과 고등학생 초점집단면접 모두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기를 기대했고, 제정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들은 학교가 교복입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 교사와 직원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60.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생이 학교구성원으로 학교에 참여할 권리, 사회문제에 참여할 권리 각각 98.1%, 90.7%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해서도 9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련 문서 중 구체적인 권리목록이 제시되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8% 였다. 교사의 약 80%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학교구성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 대해 교사들은 84.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혐오표현에 대해서 교사들은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 이를 제지하려는 행동 모두 95%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학교나 사회에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8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학교의 협력적인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84.4%였으나 학교 일에 자유롭게 건의하는 것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약 70%로 낮았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에게서 부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다. 더불어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는 것에 35.6%의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교에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로 휴식공간과 운동공간, 청결한 화장실을 꼽았다.

- 교사들은 “학교나 사회문제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다” 에 약 6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활동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에 부담스러워 활동을 주저한다는 응답이 35.2%였다.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 약 20%로 나타났다.
- 교사의 경우 성별에 의한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2%로 종교나 비정규직, 임신 혹은 출산, 아동 양육으로 인한 차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의 경험은 언어폭력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에 의한 폭력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학생에 의한 폭력 경험이 각각 27.9%, 16.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교사는 53.9%에 불과했다.
- 교사들이 가장 침해되는 직권(가르칠 권한)으로는 (1) 학생 지도(53%), (2) 교육편성(17%)였으며, 침해 주체로는 교육청, 보호자 순이었다. 교사들이 가장 침해당하는 인권으로는 (1) 휴식권, 건강권(44%), (2)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권(34%)순으로 답하였으며, 침해 주체로는 교육청, 보호자 순이었다.
- 교사의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 붕괴된 교실에서 고립, 교육 3 주체의 불균형한 삼각형 관계, 교사 혼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구조로 인해 이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는 은근히 배척당하는 경험, 공론화할 수 없는 학교 분위기로 인해 교

사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펜스룰(공적영역에서의 여성배제)을 적용하여 사회문제화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조직문화로 인한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 직원의 경우, 응답자의 17.5%만이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구성원 중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5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생이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질문에도 약 8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다른 학교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아동·청소년의 주요 인권문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 내용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의 필요성에는 약 9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직원들은 학교의 협력 분위기나 의견 제시와 의사 반영 등에 대해 30% 정도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학교에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운동공간, 청결한 화장실, 위생적인 식당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교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 집단적 의견표명 활동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학교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약 5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직원들은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27%로 가장 높았다. 폭력피해는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으며, 가해자는 동료가 가장 많았으나 학교장/교감, 교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가해자의 경우는 동료 직원이 교장이나 교사의 응답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해 직원들은 약 절반 정도인 49.6%가 알고 있었다.

- 직원은 본 업무 외 과도한 지원업무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45%가 응답하였다.
-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결과, 이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뜨리는 순환 근무, 학교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은근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직원들도 학교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증가하면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 교사와 직원의 비교분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태조사의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의식에 대해서 직원보다 교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참여에서도 교사가 직원보다 긍정적이었다. 인권 행동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혐오표현을 하지 않으려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에 비해 학교나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노력을 한다는 응답은 낮았다. 학교 분위기에서 교사에 비해 직원 집단에서 구성원 사이에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분위에 대해 낮게 응답하였으며 시급히 필요한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모두 휴식권과 기본권에서 요구되는 휴식공간, 깨끗한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학교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자유권과 관련해서 두 집단 모두 노동조합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였으나 그에 비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학교에 알려질까봐 두려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꺼렸다.

- 차별 경험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비정규직에 따른 불이익,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교사보다는 직원 집단에서 그 경험이 높았으며 특히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더욱 높았다.
- 폭력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모두 각 집단의 동료들로부터의 발생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피해 경험 및 인권침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교사와 직원 두 집단 모두 약 50% 정도만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80%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 교직과 관련한 질문에서 교사의 직권(가르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에 50% 이상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의 인권을 살펴봤을 때 이들은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유지할 건강권이 가장 침해받고 있었다. 교사의 직권(가르칠 권한)과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집단에 대해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육행정체계라고 응답하였다.
- 교사들의 소진은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며, 소진은 인권 인식이나 노동권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의 인권 교육 이수와 학교/사회 활동의 참여 의사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직원의 경우, 특성화고, 사립학교 직원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은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지원업무가 많아 소진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30% 이상으로 높았다.

- 교사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초점집단면접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 그리고 구성원이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 즉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원들이 학교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협력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며 교사 집단에서도 교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들과 협력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 본 연구가 가진 중요한 의의는 첫째, 국내 최초로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구성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직원, 보호자를 학교구성원으로서 정의하고, 조사대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인권실태조사와 차별성을 갖는다.
- 이는 연구대상 범위를 확장했다는 측면과 아울러,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집단들을 ‘학교구성원’이라는 평등하고 서로 연결된 구성원으로서 호명하며 ‘공동체로서의 학교’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에 토대로 한 정책과 대안 모색에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구성원들의 인권증진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학교구성원들의 인권보장 및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구성원의 차별 경험과 인권교육 필요성

- 학교에서 차별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성별, 성적, 경제적 수준, 종교, 비정규직, 임신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또한 서로를 구분하고 무시하며 혐오를 표현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제대로 다룰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인권교육은 학교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의 학교 내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 규정 방안 (2)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무 연수과정으로 포함하고 별도의 연수방안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안 (3) 교육청 차원에서의 직원 대상으로 소규모 집단 인권교육의 시행 방안 (4) 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시행과 교과목 안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5)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인 인권학습모임 지원방안 등이다.

2) 학교구성원의 학습 받을 권리의 보장

- 학습 받을 권리의 침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이슈로 나타났고, 차별과도 연결되어 있다. 교사와 직원의 학습에 대한 권리는 모두 평생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교사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보장되어야 한다. 직원의 경우는 평생학습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학교를 기반으로 시민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지속해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학교구성원의 학습권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의

학교구성원의 학습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 방안 (2) 기초학력 부족 학생 학습지원 체계 구축 방안 (3) 온라인/사이버 교육접근권 취약 계층 과외과 지원방안 (4) 온라인/사이버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 활용 방안 지원방안 (5) 이중언어사용 학생의 가정연계와 학습지원 방안 (6) 교과목 선택권 확장을 위한 교과과정개편 추진 팀 (Task Force Team) 발족과 학생위원 위촉방안 (7) 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와 실사팀의 강화방안 등이다.

3) 시민이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학교구성원

- 학교구성원은 시민이자 학교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현실은 ‘배우는 학생’으로서, 혹은 ‘가르치는 교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많은 인권이 소위 ‘교문 앞에서 멈춘다’. 학교구성원의 시민으로서의 자유권과 주체로서의 참여할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의 학교구성원의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교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 방안 (2)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민주적인 학교 규정 제개정 절차 가이드 라인” 작성 및 배포 (3)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민주적인 학칙 제정의 사례 공모(가칭)” 사업의 추진 (4)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5) “우리학교 인권개선 프로젝트 사례 공모(가칭)” 사업의 추진 (6) ‘용모검사 없는 민주적인 등굣길 만들기(가칭)’ 사업의 추진 등이다.

4)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공간의 민주적 재구성

-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 내 휴식공간의 확보를 가장 필요로 했다. 학생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사와 직원의 일터로서의 공간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 공간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 휴식할 권리와 문화를 누릴 권리의 보장과 학교 시설과 공간에 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 (2) “공간 주권을 되찾는 학교 공간 재설계(가칭)” 공모사업 추진 (3) 학교 체육시설 현황파악과 개보수 및 최신화 지원 사업 등이다.

5) 배움터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의 보장

- 폭력이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이러한 피해로부터 구제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 인권침해 구제 절차와 구제방안, 인권보호관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는 방안 (2)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피해 구제 및 절차 안내” 작성 및 배포 (3)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지침” 작성 및 배포 (4)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교실에서 만나는 인권옹호관(가칭)”의 홍보 사업 추진 방안 등이다.

6) 일터로서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

- 교사와 직원도 학교에서 폭력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일터로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립기구로서 “교직원 인권 센터(가칭)” 조례를 마련하고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2) 교사 감정노동 해소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3) 직원을 위한 노동 인권교육 시행 방안 등이다.
-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의 양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사회가 되어야 한다. 즉 민주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사회로서의 학교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기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학교공동체에 소속감과 책임, 그리고 자기 성장을 가질 수 있다.
- 본 연구는 학교구성원들의 인권 현황을 전반을 조사하고 집단마다 제기되는 인권 이슈에 함께 분석하고 그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가 다양한 집단의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민주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목 차례>

| | |
|----------------------------------|-----------|
| 제1장 연구개요 | 1 |
| 1. 연구의 목적 | 1 |
| 2. 연구의 필요성 | 1 |
| 1)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 2 |
| 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요청 | 6 |
| 3) 학교 중심의 인권 기반 구축 | 9 |
| 3. 연구 범위 | 13 |
| 1) 시간의 범위 | 13 |
| 2) 대상의 범위 | 13 |
| 3) 내용의 범위 | 15 |
| 4) 단어의 정의 | 16 |
| | |
| 제2장 연구 설계 | 21 |
| 1. 연구의 과정 | 21 |
| 2. 선행연구 검토 | 25 |
| 1)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선행 실태조사 검토 | 25 |
| 2) 학교 직원의 인권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40 |

| | |
|-----------------------|----|
| 3. 조사의 설계 | 44 |
| 1) 설문조사 표본 설계 | 44 |
| 2) 설문지 문항 개발 | 53 |
| 3) 초점집단면접 조사 설계 | 58 |

제3장 실태조사 기초분석 1 : 학생, 보호자 67

| | |
|------------------------|-----|
| 1. 초등학생 | 67 |
| 1) 설문지 조사 결과 | 67 |
| 2. 중학생 | 86 |
| 1) 설문지 조사 결과 | 86 |
|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 110 |
| 3. 고등학생 | 127 |
| 1) 설문지 조사 결과 | 127 |
|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 150 |
| 4. 보호자 | 183 |
| 5. 소결 | 198 |

제4장 실태조사 기초분석 2 : 교직원 203

| | |
|------------------------|-----|
| 1. 교사 | 203 |
| 1) 설문지 조사 결과 | 203 |
|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 225 |

| | |
|------------------------|-----|
| 2. 직원 | 256 |
| 1) 설문지 조사 결과 | 256 |
|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 274 |
| 3. 소결 | 287 |

제5장 비교 및 심화분석 293

| | |
|--------------------------------------|-----|
| 1. 설문대상자별 비교분석 | 293 |
| 1)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 293 |
| 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 297 |
| 3) 인권 태도와 실천에 대한 집단별 비교 | 298 |
| 4) 학교생활만족도 _ 학생집단 | 300 |
| 5) 학교생활만족도_ 보호자와 교사, 직원 | 302 |
| 6) 필요한 학교 시설/서비스 | 303 |
| 7) 자유권 | 305 |
| 8) 차별 경험 (2019) | 308 |
| 9) 폭력 경험 (2019) _ 학생, 보호자 | 310 |
| 10) 폭력 경험 (2019) _ 교사, 직원 | 312 |
| 2. 학생의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에 미치는 요소 분석 | 313 |
| 1)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의 변화 | 313 |
| 2) 학교생활만족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확인 | 315 |
| 3) 기타 | 316 |

| | |
|-------------------------------------|-----|
| 3. 교사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 분석 | 317 |
| 1) 교사 배경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의 변화 | 317 |
| 2) 교사의 학교에서의 소진에 미치는 요소 | 318 |
| 3) 교사의 노동권에 미치는 요소 | 319 |
| 4) 인권교육의 영향 | 320 |
| 5) 기타 | 321 |
| 4. 직원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 분석 | 322 |
| 1) 직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소 | 322 |
| 2) 직원의 노동권에 미치는 요소 | 323 |
| 3) 인권교육의 영향 | 324 |

제6장 결론 327

| | |
|--------------------------------------|-----|
| 1.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 327 |
| 2. 주요 결론과 제언 | 329 |
| 1) 학교구성원의 차별 경험과 인권교육 필요성 | 329 |
| 2) 학교구성원의 학습 받을 권리의 보장 | 332 |
| 3) 시민이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학교구성원 | 335 |
| 4)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공간의 민주적 재구성 | 338 |
| 5) 배움터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의 보장 | 340 |
| 6) 일터로서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 | 341 |
| 3. 향후 계획 | 345 |

| | |
|---|------------|
| 참고문헌 | 349 |
| 부록 | 355 |
|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초등학생용) | 355 |
|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 363 |
|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보호자용) | 371 |
|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교사용) | 379 |
|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직원용) | 389 |

<표 차례>

| | |
|---|----|
| <표 1-1>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 4 |
| <표 1-2> 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 | 4 |
| <표 1-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관련 자치법규 목록 | 7 |
| <표 1-4>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치법규 목록 | 8 |
| <표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규모(2019년 기준) | 14 |
| <표 2-1> 학교구성원 인권조사 자료 목록 | 25 |
| <표 2-2> 2019 인천 학생 인권 실태조사 설문항 구성 | 27 |
| <표 2-3> 2019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학생용 설문항 구성 | 29 |
| <표 2-4> 2019 인천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학생용 설문항 구성 | 32 |
| <표 2-5>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중등학생용 설문항 구성 | 36 |
| <표 2-6> 교육감 소속 근로자 현황 | 42 |
| <표 2-7> 인천광역시 학교 현황 (2019년 기준) | 44 |
| <표 2-8> 각급 학교별 조사대상학교 표본 선정 | 45 |
| <표 2-9> 초등학교 지역별 표본학교수 | 46 |
| <표 2-10> 중학교 표본학교수 | 47 |
| <표 2-11> 고등학교 설립형태/지역별/학교유형별 표본학교수 | 47 |
| <표 2-12> 고등학교 공학여부/지역별/학교유형별 표본학교수 | 48 |
| <표 2-13> 개별 학교 내 조사대상 선정 기준 | 51 |
| <표 2-14> 구성원별 모집단 규모 및 표본 대상 인원수 (2019년 기준) ... | 52 |

| | |
|---|----|
| <표 2-15> 구성원 모집단대비 참여자수에 따른 신뢰구간 (95% 신뢰도) · 52 | 52 |
| <표 2-16> 설문지 지표 및 문항구성 | 53 |
| <표 2-17> 설문지 지표 및 문항 구성 (초등학생용 예시) | 57 |
| <표 2-18>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현황 | 59 |
| <표 2-19> 초점집단면접 가이드라인 주요 구성 | 61 |
| <표 3-1>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표본 학교 수 | 67 |
| <표 3-2> 초등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 69 |
| <표 3-3> 초등학생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71 |
| <표 3-4> 초등학생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73 |
| <표 3-5> 초등학생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73 |
| <표 3-6> 초등학생 응답자의 인권행동 | 74 |
| <표 3-7> 초등학생 응답자의 학교생활만족도 | 76 |
| <표 3-8> 초등학생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77 |
| <표 3-9> 초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자유권 인식 | 79 |
| <표 3-10> 초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81 |
| <표 3-11 > 초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82 |
| <표 3-12> 초등학생이 응답한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83 |
| <표 3-13> 초등학생이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84 |
| <표 3-14> 초등학생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85 |
| <표 3-15> 인천광역시 중학교 표본 학교 수 | 86 |
| <표 3-16> 중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 88 |
| <표 3-17> 중학생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91 |
| <표 3-18> 중학생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93 |

| | |
|--|-----|
| <표 3-19> 중학생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93 |
| <표 3-20> 중학생 응답자의 인권행동 | 95 |
| <표 3-21> 중학생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98 |
| <표 3-22> 중학생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99 |
| <표 3-23> 중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자유권 인식 | 102 |
| <표 3-24> 중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104 |
| <표 3-25> 중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106 |
| <표 3-26> 중학생이 응답한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107 |
| <표 3-27> 중학생이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108 |
| <표 3-28> 중학생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109 |
| <표 3-29>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표본 학교 수 | 127 |
| <표 3-30> 고등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 129 |
| <표 3-31> 고등학생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132 |
| <표 3-32> 고등학생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133 |
| <표 3-33> 고등학생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 133 |
| <표 3-34> 고등학생 응답자의 인권행동 | 136 |
| <표 3-35> 고등학생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138 |
| <표 3-36> 고등학생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140 |
| <표 3-37> 고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자유권 인식 | 143 |
| <표 3-38> 고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146 |
| <표 3-39> 고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147 |
| <표 3-40> 고등학생이 응답한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148 |
| <표 3-41> 고등학생이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148 |

| | |
|--|-----|
| <표 3-42> 고등학생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150 |
| <표 3-43> 보호자 응답자 일반 특성 | 184 |
| <표 3-44> 보호자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187 |
| <표 3-45> 보호자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188 |
| <표 3-46> 보호자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189 |
| <표 3-47> 보호자 응답자의 인권행동 | 190 |
| <표 3-48> 보호자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192 |
| <표 3-49> 보호자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193 |
| <표 3-50> 보호자가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194 |
| <표 3-51> 보호자가 응답한 언어폭력피해 경험 | 195 |
| <표 3-52> 보호자가 응답한 신체폭력피해 경험 | 195 |
| <표 3-53> 보호자가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196 |
| <표 3-54> 보호자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197 |
| <표 4-1> 교사 응답자 일반 특성* | 204 |
| <표 4-2> 교사 응답자 교직경력 | 205 |
| <표 4-3> 교사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207 |
| <표 4-4> 교사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209 |
| <표 4-5> 교사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209 |
| <표 4-6> 교사 응답자의 인권행동 | 211 |
| <표 4-7> 교사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212 |
| <표 4-8> 교사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213 |
| <표 4-9> 교사가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노동권과 자유권 인식 | 215 |
| <표 4-10> 교사가 응답한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 216 |

| | |
|---|-----|
| <표 4-11> 교사가 응답한 학교에서의 따돌림 경험 | 216 |
| <표 4-12> 교사가 응답한 언어폭력 피해경험 | 217 |
| <표 4-13> 교사가 응답한 신체폭력 피해경험 | 218 |
| <표 4-14> 교사가 응답한 성폭력 피해경험 | 218 |
| <표 4-15> 교사가 응답한 구제제도 인식 | 219 |
| <표 4-16> 교사 응답자의 사회적 인식과 소진 | 220 |
| <표 4-17> 교사 응답자의 가르칠 권한(직권) 중 침해되는 영역 | 222 |
| <표 4-18> 교사 응답자의 가르칠 권한(직권)을 침해하는 사람 | 223 |
| <표 4-19> 교사 응답자의 인권 중 침해되는 영역 | 224 |
| <표 4-20> 교사 응답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 | 224 |
| <표 4-21> 직원 응답자 일반 특성 | 257 |
| <표 4-22> 직원 응답자 경력 및 직급 | 259 |
| <표 4-23> 직원 응답자 대체근무자 계약기간 | 259 |
| <표 4-24> 직원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261 |
| <표 4-25> 직원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262 |
| <표 4-26> 직원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262 |
| <표 4-27> 직원 응답자의 인권행동 | 264 |
| <표 4-28> 직원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266 |
| <표 4-29> 직원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266 |
| <표 4-30> 직원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노동권과 자유권 인식 | 268 |
| <표 4-31> 직원이 응답한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 269 |
| <표 4-32> 직원이 응답한 언어폭력 피해경험 | 270 |
| <표 4-33> 직원이 응답한 신체폭력 피해경험 | 271 |

| | |
|--|-----|
| <표 4-34> 직원이 응답한 성폭력 피해경험 | 271 |
| <표 4-35> 직원이 응답한 따돌림 경험 및 구제제도 인지 | 272 |
| <표 4-36> 직원 응답자의 사회적 인식과 소진 | 273 |
| <표 4-37> 교육감 소속 근로자 FGI 참여자 | 275 |
| <표 5-1>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비교 | 293 |
| <표 5-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비교 | 297 |
| <표 5-3> 학교구성원별 인권 태도/실천 비교 | 299 |
| <표 5-4>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_ 학생 | 301 |
| <표 5-5>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_ 보호자, 교사, 직원 | 302 |
| <표 5-6> 필요한 학교 시설/서비스 | 303 |
| <표 5-7 > 자유권 _ 학생 공통 문항 | 306 |
| <표 5-8> 자유권 _ 중/고등 학생 문항 | 307 |
| <표 5-9> 차별경험 비교 | 308 |
| <표 5-10> 폭력경험 비교 _ 학생 | 310 |
| <표 5-11> 폭력경험 비교 _ 교사, 직원 | 312 |
| <표 5-12> 성별/학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변화 | 313 |
| <표 5-13> 남여공학여부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의식 변화 | 314 |
| <표 5-14> 교사의 연령대에 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의식 변화 | 317 |
| <표 5-15> 교사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 | 318 |
| <표 5-16>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아동·청소년인권 인식 및 노동/자유권과의 상관 관계 (표본수: 823) | 319 |
| <표 5-17> 직원의 연령대에 따른 직무만족도 | 322 |

<그림 차례>

| | |
|--|-----|
| <그림 1-1> 인권 중심의 사회적 변화를 활동 프레임 | 10 |
| <그림 2-1> 전체 연구 진행 과정 | 21 |
| <그림 2-2> 사회조사과정에서의 오차 종류 | 50 |
| <그림 5-1>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비교 | 295 |
| <그림 5-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비교 | 298 |
| <그림 5-3> 학교구성원별 인권 태도/실천 비교 | 300 |
| <그림 5-4> 필요한 학교 시설/서비스 | 304 |
| <그림 5-5> 자유권 _ 중/고등 학생 문항 | 307 |
| <그림 5-6> 차별경험 비교 | 309 |
| <그림 5-7> 성별에 따른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비교 | 309 |
| <그림 5-8> 폭력경험 비교 _ 학생, 보호자 | 311 |
| <그림 5-9>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의식 변화 | 314 |

01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범위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로써,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보호자, 재직 중인 교사와 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과 학교 현장에서 인권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인권의 가치를 학습하고 경험하며 실현해 나가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정책을 요청하는 사회적 요구도 함께 가시화되었다. 특히 OECD 국가로서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경제적 불리함과 더불어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오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승자독식의 규범이 아동·청소년에게도 내면화되고 학벌주의와 결합한 입시체제로 인해 모든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량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을 떠안고 있다. 따라서 높은 자살율

과 우울감 등 여러 가지 사회지표가 보여주는 아동·청소년 삶의 열악함은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할 수 있는 인권정책과 인권실천이 시급하다.

이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과 학교의 인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행할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학교의 현장성과 실천성을 직접 확보하고 학교와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교육청 단위의 정책 수립과 전개가 중대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정책과 인권제도의 근거를 확인하고,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의 인권환경을 구축하고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과 실천을 모색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1)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1) 국제협약에서의 이행 요구

국제적으로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는 합의를 구체적 규범으로 구성하여 실행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문서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한국은 1991년에 이를 비준하였고, 매년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그 실행 내용을 이행보고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9년 이행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동·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과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조사와 상담

을 위한 기구가 시급한 상황이며, 학교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악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2019)¹⁾에서도 현재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인권 규범 및 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약 15%로 낮은 반면 성별과 성적, 나이, 외모 등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약 30%로 높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대우받으며 사회 참여에 높은 장벽을 경험하는 비율은 약 30%나 되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금지된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25%나 되며, 방임의 피해 경험도 57%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학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30%가 자살 충동을 느끼며, 31%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어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에서도 자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표 1-1 참조>, 전체 아동·청소년의 27.1%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높은 자살률과 우울감의 경험은 이들의 부담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 준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아동·청소년의 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매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에 관한

1) 김영지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 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9)

기사가 사회면에 이슈로 보도되고 있다. 성적 비관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현상이지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표 1-1〉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 구분 | 2000년 | | 2010년 | | 2015년 | | 2017년 | |
|----|-------|------|-------|-----|-------|-----|-------|-----|
| | 원인 | 사망자 | 원인 | 사망자 | 원인 | 사망자 | 원인 | 사망자 |
| 1위 | 교통사고 | 14.3 | 자살 | 8.8 | 자살 | 7.2 | 자살 | 7.7 |
| 2위 | 자살 | 6.0 | 교통사고 | 6.0 | 교통사고 | 4.0 | 교통사고 | 3.4 |
| 3위 | 암 | 4.5 | 암 | 3.3 | 암 | 2.9 | 암 | 2.7 |
| 4위 | 익사사고 | 3.4 | 심장질환 | 1.0 | 심장질환 | 0.8 | 심장질환 | 0.8 |
| 5위 | 심장질환 | 1.4 | 익사사고 | 0.9 | 익사사고 | 0.5 | 익사사고 | 0.4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년도, 「청소년 통계(2019년)」

〈표 1-2〉 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 구분 | 2007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전체 | 41.3 | 37.4 | 23.6 | 25.5 | 25.1 | 27.1 |
| 남자 | 36.5 | 32.7 | 19.7 | 20.9 | 20.3 | 21.1 |
| 여자 | 46.6 | 42.6 | 27.8 | 30.5 | 30.3 | 33.6 |
| 중학생 | 38.3 | 34.4 | 21.2 | 22.7 | 23.5 | 25.2 |
| 고등학생 | 44.6 | 40.3 | 25.6 | 27.7 | 26.4 | 28.7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형태조사」(2018)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 비율

(3) 학생 시민을 위한 학교 역할의 변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강조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즉 민주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성장과 더불어, 학교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경험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 인권에 기반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기반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학습과 실천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고, 타인의 인권을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입시를 위한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인권에 기반한 문화로 움직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외 규범들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두발 제한, 일기장 검사, 체벌, 성별 및 성적 등에 의한 차별 등에 대해 개별적인 권고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²⁾과 인권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²⁾ 등 학교 현장의 인권문제가 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³⁾

2) 국가인권위원회 2012.7.30.자 결정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3)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결정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 인권 증

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요청

(1) 교육청 단위의 인권정책 전개의 중요성

학교에서의 인권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정책 입안과 시행이 부족한 가운데⁴⁾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학교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학교의 인권환경을 진전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권조례의 제정과 함께 인권담당 부서 및 기구의 수립,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⁵⁾

또한, 제주,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교육청에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들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노동인권이나 학생인권, 학생선수인권 등을 포괄하여 다각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하여,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이라는 슬로건

진, 교원의 교권 존중, 차별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방안 개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항들을 중심으로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위 결정에서 장명숙 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악화의 원인 진단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가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재정상·권한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5) 오동석 ‘학교에서의 인권개선과 생활문화 개선 방안’, 2012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인권 개선과 자율·존중의 학교생활문화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에 따라 꿈, 소통, 공정의 세 가지 키워드로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5대 주요 정책으로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전체계에서도 ‘학습권 보장’, ‘자기선택’, ‘안전’, ‘당사자의 참여’, ‘평등-비차별’이라는 핵심 인권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별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자치법규는 <표 1-3>과 같다. 이처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미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치법규는 <표 1-4>에 정리하였다.

<표 1-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관련 자치법규 목록
(2020년 10월말 기준)

| # | 자치법규명 | 관련권리 |
|----|--|--------|
| 1 | 인천광역시교권확립현장 운영 조례 | 교(육)권 |
| 2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교(육)권 |
| 3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권 |
| 4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및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노동 |
| 5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노동 |
| 6 |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 | 안전 |
| 7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 안전 |
| 8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 | 안전 |
| 9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안전 |
| 1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 안전, 생명 |
| 11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 안전, 평등 |

| | | |
|----|--|--------|
| 1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참여 |
| 13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평등 |
| 14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 평등 |
| 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평등 |
| 16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평등 |
| 17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 조례 | 학습권 |
| 18 |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학습권 |
| 19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 학습권 |
| 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 학습권 |
| 21 | 인천광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학습권 |
| 22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학습권 |
| 23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학습권,인권 |
| 24 |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학습권,평등 |

〈표 1-4〉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치법규 목록
(2020년 10월말 기준)

| | 자치법규명 | 관련권리 |
|---|-----------------------------------|------|
| 1 |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전 |
| 2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안전 |
| 3 |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건강 |
| 4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안전 |
| 5 |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인권일반 |
| 6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안전 |
| 7 |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노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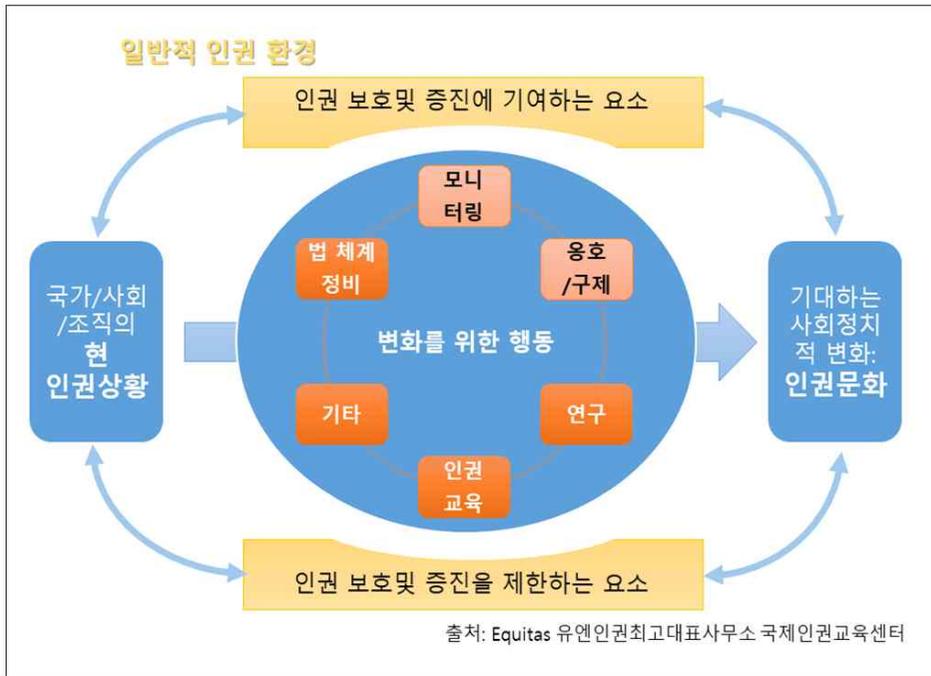
| | 자치법규명 | 관련권리 |
|----|-----------------------------|--------|
| 8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안전 |
| 9 | 인천광역시 청소년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 건강 |
| 10 |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교육, 휴식 |
| 11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교육, 휴식 |
| 12 | 인천광역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성장, 교육 |
| 13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평등 |
| 14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평등 |
| 15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평등 |
| 16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평등 |

3) 학교 중심의 인권 기반 구축

(1) 학교가 중심이 되는 인권 활동 프레임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학교는 ‘인권친화적 학교’라는 현장 중심의 성과와 인권정책을 기반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 인권 가치의 추구, 인권 행동이 체현되는 공동체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학교가 인권실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 1-1>과 같이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미시적인 관계의 차원까지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인권 활동 프레임이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안의 각 요소의 상호적 작용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구축은 ‘학교’라는 현장성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청은 이를 위한 제반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가 강조된다.

<그림 1-1> 인권 중심의 사회적 변화를 활동 프레임



특히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만이 아닌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환경이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⁶⁾의 학교 단위 결과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과 교사들이 느끼는 직무효능감이 학교 별로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닌, 약한 상호보완관계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인권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역시 자신의 직무효능성,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강원도의 경우 서울보다 이 상호보완 관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 교사의 인권이 위협받

6)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2015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2016년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강원도교육청

는다'라고 오해하는 측면은 인권의 전제조건인 '공동체'의 맥락을 간과하거나, 혹은 교사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인 인권과 교사로서 부여받는 권한의 차이와 경계, 관계를 설정하는데 다소 혼돈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권 보장이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하여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되고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그 의의가 크고 중요하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의 인권 보호 장치는 학생을 포함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책 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학교 현장이라는 장소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법률과 제도, 정책을 통합하여 학교의 인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접근은 필수적이다.

(2) 시작점으로서의 학교 인권 현황 확인

<그림 1-1>에서 보듯이 인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은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학생에게는 학습의 공간, 보호자와 교사에게는 교육의 공간, 직원에게는 노동 공간이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성장과 관계의 공간인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며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공간이자 환경이다.

인권친화적 학교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 학교의 인권 현황에 대한 파악이다.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행동 수준,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인권교육 경험 등을 파악하여 학교에서의 주요한 인권 이슈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의 시작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인권정책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장성이며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실천성이다

① 현장성은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과제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경험, 태도, 행동,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및 교육청 내 시스템으로써의 인권 제도 및 기구, 그리고 정책 구현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 구성원들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실천성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시되는 주요 과제가 학교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얼마나 맞추어지는가는 목적성과 더불어, 인권정책을 실천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통해 구성원들이 효과성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범위

1) 시간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연구 조사 수행 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까지
- 설문조사 자료수집 기간 : 2020년 8월~ 2020년 9월까지
- 설문조사 응답 기준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1년)
- 초점집단면접 조사 자료수집 기간 : 2020년 9월~ 2020년 10월까지

그러나 본 연구의 시간 범위가 명확하게 어떤 구간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문지 조사의 경우 응답하는 기준은 2019년 1학기과 2학기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회고하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9년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회고와 회고에 따른 기억은 제기된 기준처럼 명확히 분절되기 어렵다.

특히 초점집단면접(이하 FGI)의 경우는 발화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 일지라도 현재 시점의 판단과 해석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며, 의미 부여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 범위를 규정하거나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대상의 범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해당 학교별 학교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문조사 모집단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250개교, 분교 10개교), 중학교(135개교), 고등학교(125개교) 구성원 전체⁷⁾
 : 보호자를 제외한 구성원별 모집단 규모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규모(2019년 기준)

| 학교급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교사수 | 직원수 |
|------|---------|--------|---------|--------|-------|
| 계 | 510 | 13,149 | 313,712 | 23,507 | 2,069 |
| 초등학생 | 250(10) | 6,995 | 160,853 | 10,026 | 961 |
| 중학생 | 135 | 2,889 | 74,458 | 5,787 | 468 |
| 고등학생 | 125 | 3,265 | 78,401 | 7,694 | 640 |

- 설문조사 표본 선정 : 본 연구의 표본은 학교단위로 구성하였으며, 학교의 선정은 지역 및 설립형태, 남녀공학여부, 학교유형(고등학교)에 따른 학생수 비율로 모집단을 1차 구분하고, 구분단위별 학생수 비율에 따른 비례표집을 무작위함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구성된 학교급별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45개교(분교 5개교 별도 추가)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60개교

- 설문조사 응답 대상자 : 각 학교의 구성원별 참여자 수를 일정하게 배분하였으며 구성원별 계획 인원은 다음과 같다.

: 학생 3,300명, 보호자 3,300명, 교사 1,450명, 행정직원 450명

- 설문조사 실제 응답자 : 본 실태조사는 구성된 표본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통한 온라인 조사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

7) 2019 간추린 인천교육통계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인 학교운영 등으로, 실제 참여가 낮아진 편이다. 각 구성원별 실제 참여자 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점검 후 사례수)⁸⁾

- 참여 학생수: 2,743명(83.2%)
 - 초등학생: 629명
 - 중학생: 864명
 - 고등학생: 1,250명
- 참여 보호자수: 1,711명(51.8%)
- 교사수: 841명(58.0%)
- 직원수: 252명(56.0%)

○ FGI 참여자 : 학생 6명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활동가 2명, 교사 3명, 교육감 소속 근로자 6명

본 연구에서 직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제외한 교육행정 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표본틀에서 모집단으로 포함되지 않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경우, 이 연구의 결과도 공통적인 맥락에서 합의를 제시하지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구성원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현장성과 실천성에 기반하여 학생과 보호자, 교사, 직원의 인권을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내용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과 관련된 자치법규 및 선행연구 검토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의 설문지 구성

8) 중복된 참여 및 40% 이상 답변하지 않은 참여 사례를 제외한 수치이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
-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 제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한 자치법규와 학교 인권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모집단으로 한 양적조사(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로서 학생, 교사, 직원이 각각 참여하는 FGI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얻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현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의 보호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역별 제안을 함께 덧붙였다.

4) 단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인권’과 ‘직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를 말한다. 자유권, 시민권, 사회권, 노동권, 복지권, 제 1세대 인권, 제 2세대 인권, 제 3세대 인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문서에 인권목록으로 제시된 모든 인권을 의미한다.
- ‘직권’은 교사의 직무에 부여된 권한(authority)을 말한다. 본래 ‘직권’은 국가기관 또는 법인 따위에서 기관이나 기관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 또는 그 일이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가지는 ‘직권’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선택권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 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권 등으로 교사로서 갖게 되는 권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용어의 혼돈을 피하고자 정의하고자 하는 단어는 ‘교권’과 ‘직권’이다. ‘교권’이 교사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교사로서 가지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권’을 사용한다. 교사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교사의 인권은 그대로 ‘인권’ 혹은 ‘교사의 인권’으로 표기하고, 교사의 직무에서 비롯되는 교사의 권한은 교권이 아닌 ‘직권(職權, authority)’으로 표기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매뉴얼”은 협의의 교권과 광의의 교권으로 구분하였는데 ‘협의의 교권’이 본 연구의 직권의 의미이며, ‘광의의 교권’이 교사의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을 의미한다. 협의와 광의로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단어로 쓰는 교권은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것을 한꺼번에 지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협의의 교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인권으로 쉽게 오인 된다.

인권의 영역은 아니지만, 교사의 직권 역시 중요한 것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권한이다. 교육할 권한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할 권한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부여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령에 의해 조사, 처리된다.

02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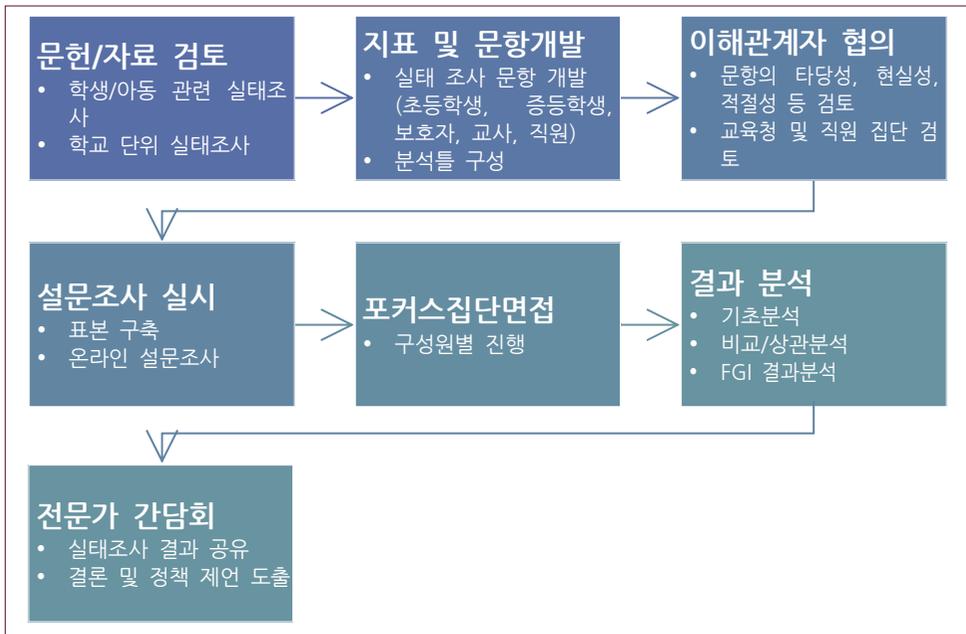
1. 연구의 과정
2. 선행 연구 검토
3. 조사의 설계

제2장 연구 설계

1.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학생, 보호자, 교사, 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주요 연구 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전체 연구 진행 과정



- 문헌/자료 검토

사회분야 실태조사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 수치보다 ‘비교가능성’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도별 비교나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관련 실태조사를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표와 문항의 개발에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의 기준점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지표 및 문항 개발

국내 학생 관련 실태조사들을 통해 지표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교육청의 실태조사 시기에 맞춘 지표와 문항(예를 들면, 참여 등)보다는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사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표와 문항도 이러한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학생 대상 설문 체계와의 공통요소를 유지하면서, 구성원별 요소를 뒤에 비치하였다.

직원의 경우, 국내 실태조사에서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여, 교사와 공통된 설문 내용과 직원 대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일차적으로 구성한 후 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 후 확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설문의 의도에 맞추면서 되도록 쉬운 표현과 단순한 문장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 이해관계자 협의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여, 우선 새롭게 도입되는 직원 설문지에 대해 5월 22일 행정직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학교급별 및 공립/사립을 포함한 집단 면접을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설문지 안에 대한 의견 및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직원 인권 요소를 파악하여 설문 문항에 반영하였다. 이후 전체 설문지에 대해서도 교사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 시스템 구성 후 교육청 등과 테스트를 통해 설문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 설문조사 실시⁹⁾

설문조사 진행은 1학기 중간고사 직후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가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구성원들이 기존 학교 일정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험을 마친 이후이어야 설문에 참여할 여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다른 실태조사도 이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 시 계절적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사 일정도 크게 변동되었다. 학교구성원들 모두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했던 시기에 설문이 어려웠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논의하여 연기한 후 2학기 초로 조사 시기를 다시 조정하여 조사하였다.

- 초점집단면접(FGI)

설문조사에서 수치화되어 제시되는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구성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 인권 현황과 시급한 인권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2개의 학생집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활동가 1개 집단, 직원 2개 집단, 교사 1개 집단으로 총 6개 집단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어 면접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다. 녹음파일을 전사한 후 이를 분석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다.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지침을 작성하였고, 실제 인터뷰는 이를 참고하되, 자유로

9) 서베이몽키 (SurveyMonkey.com)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운 논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결과 분석

실태조사는 학교구성원별 온라인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되, 학생과 보호자, 교사와 직원을 각각 나누어 장을 구성하였다. 결과는 기초자료로써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그 수치를 비교하면서 주요 경향과 의미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6개의 학교구성원 결과를 함께 본 비교분석과 문항 간 상관분석은 의미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조사가 끝난 후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뒤, 이를 전체읽기와 상세읽기를 통해 의미 단위별로 1차 코딩한 후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범주를 세부 주제로 명명하고, 범주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을 인용문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맥락적으로 구성하고 그 의미를 참여자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본 연구의 설문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광역시 지역 내 인권관련 전문가 및 교육청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결과 분석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및 지역 내 청소년 기관대표, 청소년관련 단체 활동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교육청 인권관련 구성원들이 참여하였다.

용어의 사용이나 통계적 구성요소에 확인과 같은 연구의 기술적 완결성에 대한 조언과 함께, 인천광역시교육의 특징과 인권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를 찾아보고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선행 실태조사 검토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선행 실태조사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교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자료와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별 인권의 인지, 인권감수성, 인권침해 경험, 학교 참여 등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검토한 자료의 목록은 <표 2-1>과 같다.

<표 2-1> 학교구성원 인권조사 자료 목록

| # | 자료명 | 연도 | 기타 |
|------------------------|--------------------------|---------------|------------|
| 국내 학교관련 인권실태조사 자료 목록 | | | |
| 1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 2015, 2019 | |
| 2 | 서울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실태조사 | 2018 | |
| 3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 2012~2019 | |
| 4 | 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 실태조사 | 2014, 2016 | |
| 5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 2017, 2018 | |
| 6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 2016 | 국가인권위 |
| 7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 | 2013, 2015,.. | |
| 8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 | 2015 | |
|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목록 | | | |
| 9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2009~201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10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2012~2019 | |
| 11 |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2015 | |
| 12 | 서울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2016 | |

| | | | |
|--------------------------|----------------------------------|------|---------|
| 13 |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 의식 분석 | 2019 | 한국교육개발원 |
| 14 | 2019 청소년 통계 | | 통계청 |
| 15 |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 2016 | 한국방정환재단 |
| 국내외 교사/보호자 등 학교 관련 자료 목록 | | | |
| 16 | 교원 및 교직원환경 국제 비교 연구:TALIS 2018중심 | | 한국교육개발원 |
| 17 | 학교자치 확대에 따른 보호자의 교육 참여 방안 연구 | 2019 | 한국교육개발원 |
| 18 |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발표회 자료집 | 2015 | 학교+너머 |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 단위의 구성원별 인권의 개념 및 권리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태조사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지표는 크게 공통지표와 구성원별 지표로 구성했으며, 실태조사 설문지도 이에 따라 구성했다. 이번 연구에서 구성하는 지표 및 설문조사 항목은 정기적 조사를 통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내부 비교 및 타 시도와의 비교를 위해, 되도록 비교 가능한 형태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중 본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한 실태조사의 설문지와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인천광역시 학생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연구 (2019, 경기대학교 교육복지상담연구소)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생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연구로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 1,4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표 2-2>와 같다. 조사내용은 학교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행복도, 인권 인식, 폭력/차별 경험, 인권교육경험 등이다.

〈표 2-2〉 2019 인천 학생 인권 실태조사 설문항 구성

| 영역 | 조사내용 | 영역 | 조사내용 |
|------|--|--------------|--|
| 학교생활 | 학교생활 만족도 - 친구의 존중 - 교사의 존중 - 즐거운 등교 | 인권실태 및 인식 | 인권 존중 -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안전 인식 - 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급식 |
| | 학교 교육 목표 인식 | | 인권상황 인식 - 사회 참여 - 자치 조직 - 표현의 자유 - 차별 - 경제적 이유 - 차별 - 성별 - 차별 - 민족, 인종 |
| | 학교 참여/ 운영 - 교칙 재·개정 참여 - 생활규정 공지 - 학생회 자율권 - 학생회의 의견제시 - 징계처리 공개 - 시험성적 공개 | | |
| | 여가 활동 시간 | | |
| 일상생활 | 학습 시간 | 인권경험 | 폭력 경험 - 체벌 - 모욕/욕설 - 사이버공간 |
| | 학업 포기 의사 - 생각 여부 - 포기 이유 | | 차별 경험 |
| | 수면 - 수면 부족 여부와 부족 이유 | | 용모검사 인권교육 - 경험 / 교육 기관 - 교육의 도움 정도 |
| | 자살 의사 - 생각 여부와 이유 | | |
| 일상생활 | 행복 - 행복도와 불행 이유 | 배경문항 | 연령 |
| | | | 성별 |
| | | | 학교급 |
| | | | 거주지역 |
| | | | 가족 구성원 |

○ 설문 참여 대상 및 규모

: 인천광역시 초·중·고 학생 1,474명 (표본수)

: 구군별 인구 비례표집 방법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5개교 선정 (초등 5학년, 중/고등 2학년 학생 대상)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만족도는 다소 조금씩 낮아졌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일반고와 특목고에 비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구 지역보다 군 지역 학교가 낮았다.

학교 참여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징계와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것 등의 사생활 보호 관련은 미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 및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학습 부담이 높고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특목고 학생의 경우 하루 5시간 이상 학습하고 있지만, 이와는 상반된 결과로 특성화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군지역, 도서지역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 시간이 적고 열악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업중단을 중단하고 싶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황 등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이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중학교, 초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의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 존중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과중한 학업양과 스트레스, 그리고 경쟁 위주의 입시지옥에서는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함을 느낀다는 답변도 함께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어리다는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을 축소하거나 참여의 폭을 줄여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학교에서 시민으로서 참여 경험을 축적하고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용모 및 복장, 개인 소지품에 대한 자유권 침해의 피해 경험은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젠더에 대한 인식이 자유권의 보장 수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며 젠더감수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은 크게 줄었으나, 언어적 폭력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친구 간의 언어폭력도 상당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과 여학생들이 학습권을 포함하여,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2019, 한국교육개발원)

이 연구는 인천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조사설문지의 구성은 <표 2-3>과 같다. 이 연구의 학생용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방안 연구 I”을 참고하였고, 교사용 설문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2018)의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참고하였다. 조사내용은 노동인권정보 및 교육, 노동권 보장, 노동환경, 부당한 대우 경험, 아르바이트 의미 등이다.

<표 2-3> 2019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학생용 설문항 구성

| 영역 | 조사내용 | 영역 | 조사내용 |
|------|------|-------|--------------------------|
| 배경문항 | 성별 | 노동 환경 | 알바 경험 - 경험 유무 - 지역 |
| | 연령대 | | |

| 영역 | 조사내용 | 영역 | 조사내용 |
|--------------------|--|---------------|--|
| | 학교급(형태) 지역 - 학교 지역 - 집 | | - 시간 - 업종 |
| 노동인권 정보 및 교육 |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 인지 - 위험/유해업종 기피 -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 - 산재보험 - 청소년 법정 노동시간 - 초과근무수당 - 주휴수당 -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지원 - 퇴직금 | | 최근 알바 현장 조건 - 근무기간 - 1주 평균 근무일 - 1일 평균 근무시간 - 시급 - 근무일 유형 - 전체 직원 규모 - 알바 취득 방법 - 작성서류 (근로계약서) - 작성서류 (부모동의서) |
| | 노동인권 교육 - 이수 여부 - 방식 - 내용 | 부당한 대 우 경험 | 부당 유형 - 임금 체불 - 초과 수당 미지급 - 규정외 업무 - 언어적 폭력 - 폭력/ 성폭력 - 상해 - 무단 해고 |
| |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성 - 교육 기관 * 효과성 | | 대처 방안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대상 필요한 도움 관련 기관 인지 |
| | 일에 대한 권리 보장 - 보장 정도 - 지지 정도 (가족, 학교, 지역, 정부) | 아르바이 트의 의미 | 아르바이트 이유 |
| 권리보장 | 권리보장 정책의 필요성 -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위반처벌 - 안전장비 의무화 및 처벌 - 고용주 교육 의무화 및 처벌 - 신고.상담체계 강화 - 학교 내 상담.신고 체계 - 안전/근로 감독 강화 - 관련 캠페인 -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일자리 지원 | | 일의 의미의 정도 - 진로 탐색 - 직업상 경험 - 돈의 가치 - 일의 의미 - 사회생활 이해 - 관계적응 능력 - 문제해결 능력 - 책임감 |

○ 설문 참여 대상 및 규모

- : 인천광역시 중학생~고2 학생 7,052명 (표본수)
 - 중학생 2,607명 (37.0%), 일반고학생 2,678명(38.0%), 특성화고학생 1,767명(25.1%)
 - 비확률 임의표본추출방법 (표본 구성에서의 오류 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응답자 17% 정도가 노동 경험이 있고, 특성화고 학생은 43%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주로 음식점 서빙(38%)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소개(50%)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 필요 물품 구입(70%), 독립적 경제생활(23%)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20% 정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중 임금체불이나 지연지불이 51%로 가장 높았지만,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가 돈의 가치나 일의 의미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된다고 답변하였지만, 자신의 진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61%였으며 평균 40%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교생 집합교육이 아닌 학급별 수업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고, 외부 인권전문강사의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교사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들의 노동인권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성화고 교사들은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했다. 젊은 교사일수록 사회적 대우에서 대학 졸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적당한 교재나 콘텐츠 부족, 정규교과와의 연계의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교사 대상 노동인권 연수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답하며, 이러한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이 사회 등의 교과에 편성되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인천 중·고등학교구성원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2019, 인천교육정책 연구소)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 한 달간 진행하였다. 성평등의식과 성평등에 대한 실천 의지, 조직문화와 성인권교육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FGI조사를 실시하였고, FGI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2,788명의 학생과 296명의 교원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고, 설문지 구성은 <표 2-4>와 같다.

<표 2-4> 2019 인천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학생용 설문항 구성

| 영역 | 조사내용 | 영역 | 조사내용 |
|-------|--|------------|--|
| 성평등의식 | 가정,사회 영역 - 아버지 소득이 더 높아야 한다 - 전업주부로서의 아버지 -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 - 데이트 남성주도 - 강한 남성 | 사회 인식 및 인권 | 현재 한국사회의 성평등 |
| | 학교 영역 - 여학생 치마교복 - 수학/과학 남학생 우수 - 축구/야구는 남학생 - 대표는 남학생이 적합 | | 5년 후 한국사회 성평등 성인식 - 남성 성적 호기심 - 성폭력은 여성이 조심 - 부부싸움은 법처벌 대상 - 데이트폭력 법처벌 대상 - 온라인 사진 등 문제 - 온라인 혐오발언 심각 |
| 실천의지 | 실천할 의향 - 타인의 행동 말림 - 성차별적 행위 하지 않음 - 사회 문제 교정 노력 | 성인권교육 | 학교 성인권교육방법 및 만족도 |
| | 실천 정도 | | 필요한 성인권교육 내용 |
| | | | 필요한 정책/활동 등 |

| 영역 | 조사내용 | 영역 | 조사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서 남녀 차이 없음 - 말투/습관을 성과 연관짓지 않음 - 차별적 발언 하지 않는다 | | |
| 조직문화 | 학교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농담에 대한 지적 - 교사의 성차별적 행위 - 외모 등에 평가 - 교사의 도움 - 친구의 도움 - 자유로운 문제 제기 | 배경 문화 | 성별 |
| | | | 학교유형(공학여부) |
| | | | 학교급 |
| | | | 학년 |
| | | | 설립유형 |
| | | | 가족 구성 |
| | | | 형제관계 |
| | | | 이성 친구 유무 |

○ 설문 참여 대상 및 규모

: 학생 2,788명

여학생 1,498명(53.7%), 남학생 1,290명(46.3%)

남여공학 52.9%, 여학교 24.4%, 남학교 22.7%

: 교원 296명

여성 184명(62.2%), 남성 112명(37.8%)

중학교 61.8%, 일반고등학교 29.4%, 특성화고등학교 6.8%, 기타 2.0%

남여공학 50.7%, 여학교 24.0%, 남학교 25.3%

: 비확률 임의표본추출방법 (표본구성에서의 오류 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지 감수성은 학생 그룹이 교사 그룹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나타났다. 「성평등의식」 및 「실천 의지」 모두 학생이 더 높았다. 스쿨미투 사안과 교육 현장에서의 성불평등 문제는 학생과

교원 간의 성평등의식 및 실천 의지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교사 그룹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의식이 문제가 되며, 학교생활 및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표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과 교사 모두 주변이나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소극적인데, 성적 농담이나 성차별적 말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치부하고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교의 성평등 조직 문화에 대해 학생이 더욱 높은 기대 수준과 요구하는 반면, 학교 조직 문화에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교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전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성의 심각함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n번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이버상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실생활에서의 폭력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며, 여학교와 남녀공학 재학생이 남학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높고, 특성화고보다는 일반고가 높으며, 남성교사보다는 여성교사가, 교사보다는 관리자가 더 높았다. 교사는 여학교나 남녀공학에 근무하거나 재직기간이 길수록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원하는 성인권 교육내용으로는 성고정관념, 편견을 다루는 성평등 교육보다 폭력 예방 및 혐오 관련 대응에 요구가 상당히 높아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요청하였다.

(4)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9,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서 700개의 학교를 표집하고 각 학교마다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총 615개의 학교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응답자는 아래와 같이, 초등학생 5,817명, 중학생 4,208명, 고등학생 4,214명으로 총 14,239명이 응답하였고, 보호자는 8,679명, 교사는 8,536명이 참여하였다.

○ 설문 대상 및 규모

- : 700개 학교 대상 진행 (초등 300, 중등 200, 고등 200개교)
- : 학교당: 학생 1개 반, 보호자 15명, 교사 15명으로 대상 구성
- : 온라인 설문이 아닌 설문지 작성 및 수거 방식 채택 (학교단위 수집)

○ 설문 참여자

- : 학생 14,239명 (초등 5,817명, 중등 4,208명, 고등 4,214명)
- : 보호자 8,679명 (초등 3,718명, 중등 2,504명, 고등 2,457명)
- : 교사 8,536명 (초등 3,533명, 중등 2,465명, 고등 2,538명)

설문지의 구성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 의식을 견지하는 영역으로의 이해, 학교구성원과 인권관계를 수립하는 영역으로서의 관계, 학생이 의사결정하고 참여하는 영역으로서의 참여 등 이해와 관계, 참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아래 <표 2-5>와 같다. 온라인조사가 아닌 집단배포조사 방식으로 비교적 충분한 문항수를 확보하고 있다.

<표 2-5>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중등학생용 설문항 구성

| 지표 | 문항 | 영역 | 조사내용 |
|------------|--|-------------|--|
| 인권 인식 | 결정능력 |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 간 존중 |
| | 사회참여 | | 교사의 존중 |
| | 의사표현 권리 | | 즐거운 등교 |
| | 남녀평등 | | 교사의 학생행복 관심 |
| | 국내 외국인 교육기회 평등 | | 교내 인권존중감 |
| | 의견제시와 참여 현황 | | 장애학생 |
| 학생인권 보장제도 | 의견제시와 참여 보장 | 소수학생에 대한 태도 | 미혼모/이혼부 |
| | 법률 | | 다문화가족 학생 |
| | 학생인권조례인지 | | 성소수자 학생 |
| | 학생인권조례의 보장성 | | 소수학생 이해 교육 프로그램 |
| 학생인권 교육 | 조례 교육.홍보 적절성 | 학생인권 신장 |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인식 |
| | 교육 참여/실시 | 인권침해 구제인지 | 학생인권옹호관 인지 |
| | 실시 주체 | | 지역교육청 상담실 인지 |
| | 교육 방식 | | |
| | 교육방법 | | |
| | 학생교육에 대한 인식 | | |
| 학생인권교육의 효과 | 도움 요청 경험 | | |
| 학생인권 인식 | 학교밖 교육의 참여 | 배경사항 | 성별 |
| | 학교/사회문제 대응 - 온라인 행동 - 학교 내 행동 (게시물) - 학교 내 행동 (피켓팅) - 학교밖 행동 | 학생인권 인식 | 소수학생 그룹 사생활 자유 - CCTV 설치 및 안내 - 소지품검사 - 휴대폰 관리/이에 대한 인식 사생활 비밀 보호 - 개인정보 공개/성적 유출 - 이름표 부착 자신의 학교기록 열람 |

| 지표 | 문항 | 영역 | 조사내용 |
|----|--|----|---|
| | | | 반성문/사유서 강요 |
| | 학생에 대한 공정한 대우 - 성적 - 가정형편 | | 의사표현의 자유 - 의사표현 제약 - 학생 언론활동 자유 |
| | 교사의 폭력 - 체벌 / 체벌 유형 - 언어폭력 | | 학생자치활동 - 자치활동 보장/ 출마자격제한 - 정기 학급회의 개최 - 정기 전체학생회 개최 - 학생자치공간 여부 |
| | 보호자의 폭력 - 체벌 - 언어폭력 | | 참여 - 학교 규칙 재.개정시 참여 - 학교행사 의견 반영 |
| | 목적시 대응 - 학생 간 신체적 언어적 폭력 - 학생 간 성폭력 - 교사의 성폭력 - 교사의 언어적 폭력 | | 교육환경 개선 요구 |
| | 교내외 활동 - 참여 강요 - 예체능 과목 정규 운영 | |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 |
| | 정규과정내 활동 - 야간자율학습 강제 - 그외 활동 학생의견 반영 | | 급식관련 의견조사 실시 |
| | 휴식시간 활동 보장 | | 생리공결제 인식 |
| | 개성 표현 - 복장. 용모 제한/ 외투 규제 | | 징계 - 징계 경험/ - 징계 내용 공고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에 따른 차별을 인지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10.7%, 중학생은 19.5%, 고등학생은 30.7%로 나타났고,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을 인지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8.6%, 중학생은 9%, 고등학생은 9.2%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성적에 따른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은 학교급에 따른 격차는 작았다. 이에 반해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과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한 것으로 인지한 비율은 초등학교 교사는 각각 1.7%, 1.5%, 중학교 교사는 2.7%, 2.3%, 고등학교 교사는 4%, 3.1%로 나타나 학생과의 경험과

는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교사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더 요청되는 지점이다.

교사로부터 직·간접적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3.8%, 중학생 4.9%, 고등학생 6.7%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차별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은 초등학생 7.1%, 중학생 22.1% 고등학생 18.5%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4년간의 추이분석을 했을 때 점점 높아져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언어적 폭력의 피해 수준이 높다. 이는 언어폭력을 덜 심각히 여기고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은 80%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92%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급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우는 초등학교가 83%,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74%로 초등학교에서 더 안정적으로 학급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학생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88.2%, 중학생이 79.1%, 고등학생이 73.4%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 의견의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실질적인 자치활동 보장과 참여의 결과를 확대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62.3%, 중학생이 54.3%, 고등학생이 52.2%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고, 실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초등학생 4.1%, 중학생 2.5%, 고등학생 1.5%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점점 낮아졌다.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체계와 구체적인 절차를 단순 홍보하기보다는 접근권을 확

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높지만, 초등학생은 95.7%, 중학생은 90.2%, 고등학생은 89.4%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가 91.3%, 중학교 교사가 84.9%, 고등학교 교사가 87.1%로 중학교 교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교사가 학생보다 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분석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실천행동을 살펴보면 학교나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행동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에서의 의견표현 45%, 학교 내 유인물 부착 20%, 학교 내 피켓팅 19%, 거리 행진 참여 15%를 기록했다. 다만 온라인상 의견 표명을 제외하고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행동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의 인권 의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의 학생 참여보장, 인권조례 인지 등으로 나타났고, 학생인권교육의 참여율이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많은 문항수를 확보하고 4년간의 추이 분석을 통해 학생 인권현황과 그 변화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교원과 보호자와의 응답을 교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차이를 드러내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학생인권에 집중한 조사이지만 교육 3주체의 인식과 역할이 학교에서의 인권실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됨을 알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교사와 보호자의 인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심화된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언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 전환을 요청하면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각기 다르게 견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인권교육을 통해 학교 안에서 인권논의를 풍부하게 구성함

으로써 두텁게 맥락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인권교육의 실천적 측면에 주목하고 장기적으로 학생인권교육의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학교 직원의 인권 관련 선행 연구 검토

학교는 학생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학교운영과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질 때 제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안진 외, 2012). 학교 안에서 인권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인권행동으로 체현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이 교과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학교생활과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고 축적되어야 교육공동체의 문화이자 구조로서 인권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인권 문화와 인권환경의 확보는 학생과 교사, 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과제이다.

최근 학교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돌봄 및 취미 활동의 교육, 상담, 급식 등을 맡게 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직군들이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다. 다양한 직군과 조직이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논의는 교사와 학생, 보호자만을 학교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는 기존에 교육 3주체만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확장하여 보이지 않은 존재, 제외되었던 직군 역시 학교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행정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군을 학교구성원으로 포함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1)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크게 일선 학교에서 교육업무 지원체계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교육청 직속의 교육기관(도서관, 수련원 등)에서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청에서 조정, 지원 및 정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배을규 외, 2009). 이들은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설 및 재산관리, 학교회계 및 경비관리, 학교 급식지원업무,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교재교구 등의 물품관리, 급여 및 비용처리, 문서수발 및 관리, 보안업무 등의 업무를 통해 학교 교육기능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업무를 맡는다(차은성, 2011:145).

본 조사에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일선 학교에서 교육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교육행정직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실천하지는 않지만, 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학교의 구성원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학교구성원 관련 연구 및 조사에서는 어디에서도 이들을 학교구성원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구별된 학교의 이원화된 조직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지원 조직 및 학교의 부수적인 조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행정직은 학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교원(교사)이 우선시 되며 이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진숙, 2018; 임윤희, 2004; 권영주, 2009; 박순복, 2003). 더불어 학교에서는 교원과 함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조적인 조직이지만 교육행정직을 교직원보다 하위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교원들의 우월적인 태도에 따른 권위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 보수나 복지제도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교육행정직이 IMF 이후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 때문

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학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적절하게 제도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교사와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다양한 인력을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칭한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교육지원청, 학교 등)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타 시도에서는 교육공무직, 학교회계직원 등으로 지칭하나, 인천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 모두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칭하고 있다(김찬희, 2018). 이들은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육·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무자, 과학실무사 등과 더불어 교육복지·급식·돌봄·방과후 활동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초등돌봄전담사, 영양사, 조리사 등 20개 이상의 직종으로 구성된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 혹은 기간제 계약 노동자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표 2-6> 참조).

<표 2-6> 교육감 소속 근로자 현황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 연도별 | 2016 | 2017 | 2018 | 2019 |
|------------|------------|------------|------------|------------|
| 교육감 소속 근로자 | 8,319(460) | 8,130(469) | 8,134(473) | 8,423(474) |
| 전년대비 증감 | △338 | △189 | △4 | 1,527 |

이렇게 학교 안에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교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부족하다. 이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적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휴식할 수 있는 노동권과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이러한 이들의 인권 취약성을 목격한 학생들은 이를 당연하게 인식하게 되며 학교 내 구성원이지만 인권이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중 직접 학생과 만나는 직종의 경우, 이들의 부적절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피로감이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학생의 인권보장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종의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의 설계

1) 설문조사 표본 설계

(1) 각급 학교와 구성원별 현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인천광역시 학교의 학교구성원으로, 학생, 보호자, 교사, 직원이며,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 학교급별 구성원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통계 현황자료에서 보호자 및 직원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호자의 경우 학생 수를 기초로 하고, 직원의 경우,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7〉 인천광역시 학교 현황 (2019년 기준)

| 구 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 |
|-----|--------|----------|--------|--------|--------|-------|--------|-------|
| | | | | 계 | 일반고 | 특목고 | 특성화고 | 자율고 |
| 학교수 | 403 | 250(10)* | 135 | 125 | 80 | 10 | 27 | 8 |
| 학생수 | 39,373 | 160,853 | 74,458 | 78,401 | 53,294 | 3,865 | 15,904 | 5,338 |
| 교사수 | 2,853 | 10,026 | 5,787 | 7,694 | 4,996 | 552 | 1,674 | 472 |

* 괄호안은 분교 수

(2) 조사대상 학교의 선정

이 조사를 위한 학교선정의 방식은 확률비례층화표집으로 진행하였다.

(1) 일차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별로 나눈 후 <표 2-8>, (2) 이차로 학교인권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설립형태(국공립/ 사립), 남여공학여부(남여공학, 여학교, 남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여기에 학교유형(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을 구분하여 나누었으며, (3) 삼차로 지역별(구군 단위)의 전체 학생수 대비 학생 수를 반영하여 학교 수를 배분하였다.

일차로 학교급별로 구성된 비율은 학생수의 비율에 비교하여 초등학교는 반으로 줄이고 고등학교를 2배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학교구성원 인권에 미치는 요소가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많기때문에, 이에 따른 분석을 위한 표본수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는 20%인 45개교를, 중학교는 30%인 40개교를, 고등학교는 50%인 60개교 학교를 조사대상 학교로 선정한다 <표 2-8>.

<표 2-8> 각급 학교별 조사대상학교 표본 선정

| 조사대상 | 모집단 학교 수 | 모집단 학생 수 | 모집단 구성비율 (학생수 기준) | 표본 학교 수 | 표본 구성비율 | 비고 |
|------|----------|----------|-------------------|---------|---------|-----------|
| 초등학생 | 250 | 160,853 | 51% | 45 | 20% | 분교 4개교 포함 |
| 중학생 | 135 | 74,458 | 24% | 40 | 30% | |
| 고등학생 | 125 | 78,401 | 25% | 60 | 50% | |
| 합 계 | 510 | 313,712 | | 148 | | |

초등학교는 이렇게 구성된 표본수를 기준으로, 이차 층화단계는 생략하고 삼차단계인 지역별 학생수 비율에 따른 학교수를 할당하면 <표 2-9>와 같다. (분교 4개교 추가 배정)

<표 2-9> 초등학교 지역별 표본학교수

| 군구별 | 표본학교수 | 분교수 | 사립 |
|------|-------|-----|----|
| 미추홀구 | 4 | - | - |
| 동구 | 1 | - | 1 |
| 옹진군 | 1 | 3 | - |
| 중구 | 3 | 1 | - |
| 부평구 | 8 | - | 1 |
| 남동구 | 7 | - | - |
| 연수구 | 5 | - | - |
| 계양구 | 5 | 1 | - |
| 서구 | 8 | - | - |
| 강화군 | 4 | - | - |
| 합계 | 45 | 5 | 2 |

중학교의 경우, 이차 층화단계에서 학교설립형태(국공립/ 사립), 남여공학여부(남여공학, 여학교, 남학교)에 따른 지역 내 배분을 함께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며, 이를 지역별 학생수에 따른 학교를 배정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중학교 표본학교수

| 지역/성별 | 계 | 국공립 | | | 사립 | | |
|-------|----|-----|---|---|----|---|---|
| | | 공학 | 남 | 여 | 공학 | 남 | 여 |
| 미추홀구 | 4 | 1 | 1 | 2 | - | - | - |
| 동구 | 1 | - | - | - | - | 1 | - |
| 옹진군 | 1 | 1 | - | - | - | - | - |
| 중구 | 3 | 2 | - | - | - | 1 | - |
| 부평구 | 6 | 3 | 2 | 1 | - | - | - |
| 남동구 | 6 | 3 | 1 | 1 | - | - | 1 |
| 연수구 | 6 | 4 | 1 | 1 | - | - | - |
| 계양구 | 4 | 2 | 1 | 1 | - | - | - |
| 서구 | 6 | 4 | 1 | 1 | - | - | - |
| 강화군 | 3 | 1 | - | 1 | - | - | - |
| 합 계 | 40 | 21 | 7 | 8 | 1 | 2 | 1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동일하지만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수 비율에 따른 배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설립형태 및 지역을 배분한 <표 2-11>과 남녀공학여부와 지역을 배분한 <표 2-12>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표 2-11〉 고등학교 설립형태/지역별/학교유형별 표본학교수

| 지역/설립 형태별 | 계 | 일반계고 | | 특성화고 | | 특수목적고 | | 자율형고 | |
|--------------|---|------|----|------|----|-------|----|------|----|
| | | 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 미추홀구 | 7 | 3 | 2 | 2 | - | - | - | - | - |
| 동구 | 1 | - | - | - | 1 | - | - | - | - |
| 옹진군 | 1 | 1 | - | - | - | - | - | - | - |

| 지역/설립 형태별 | 계 | 일반계고 | | 특성화고 | | 특수목적고 | | 자율형고 | |
|--------------|----|------|----|------|----|-------|----|------|----|
| | | 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 중구 | 7 | 2 | 1 | 1 | - | 1 | - | 1 | 1 |
| 부평구 | 10 | 5 | 1 | 1 | 1 | - | 1 | 1 | - |
| 남동구 | 8 | 5 | 3 | - | - | - | - | - | - |
| 연수구 | 8 | 4 | 2 | 2 | - | - | - | - | - |
| 계양구 | 7 | 5 | - | 1 | - | - | - | 1 | - |
| 서구 | 10 | 6 | 2 | 1 | 1 | - | - | - | - |
| 강화군 | 1 | 1 | - | - | - | - | - | - | - |
| 합 계 | 60 | 32 | 11 | 8 | 3 | 1 | 1 | 3 | 1 |

〈표 2-12〉 고등학교 공학여부/지역별/학교유형별 표본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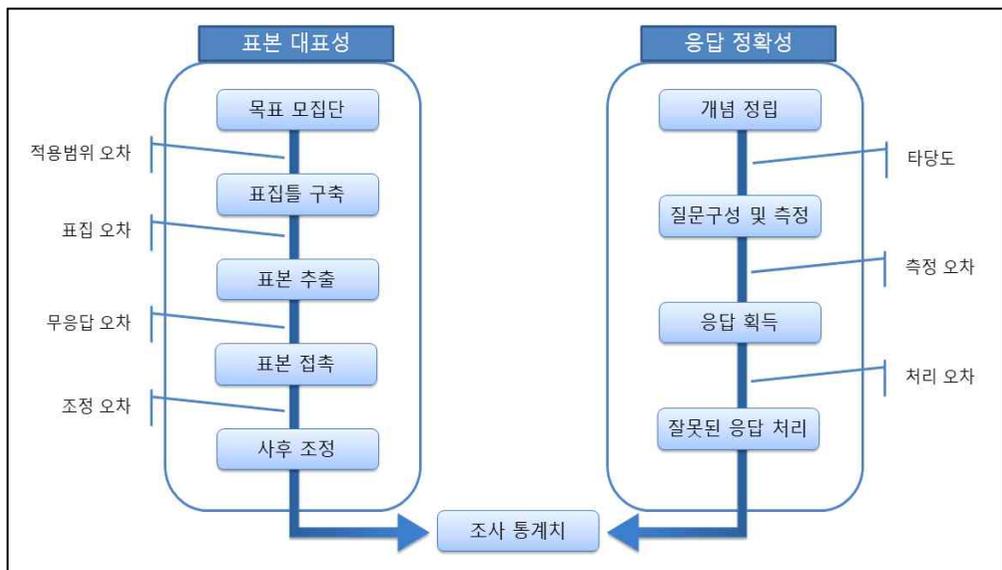
| 지역별 | | 계 | 일반 | 특성화 | 특목고 | 자율고 |
|------|----|---|----|-----|-----|-----|
| 미추홀구 | 공학 | - | - | - | - | - |
| | 남 | 4 | 3 | 1 | - | - |
| | 여 | 3 | 2 | 1 | - | - |
| 동구 | 공학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여 | 1 | - | 1 | - | - |
| 용진군 | 공학 | 1 | 1 | - | - | - |
| | 남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중구 | 공학 | 4 | 1 | - | 1 | 2 |
| | 남 | 2 | 1 | 1 | - | - |
| | 여 | 1 | 1 | - | - | - |

| 지역별 | | 계 | 일반 | 특성화 | 특목고 | 자율고 |
|-----|----|----|----|-----|-----|-----|
| 부평구 | 공학 | 4 | 3 | - | 1 | - |
| | 남 | 4 | 2 | 1 | - | 1 |
| | 여 | 2 | 1 | 1 | - | - |
| 남동구 | 공학 | - | - | - | - | - |
| | 남 | 4 | 4 | - | - | - |
| | 여 | 4 | 4 | - | - | - |
| 연수구 | 공학 | 1 | - | 1 | - | - |
| | 남 | 4 | 3 | 1 | - | - |
| | 여 | 3 | 3 | - | - | - |
| 계양구 | 공학 | 3 | 2 | - | - | 1 |
| | 남 | 2 | 1 | 1 | - | - |
| | 여 | 2 | 2 | - | - | - |
| 서구 | 공학 | 5 | 4 | 1 | - | - |
| | 남 | 2 | 2 | - | - | - |
| | 여 | 3 | 2 | 1 | - | - |
| 강화군 | 공학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여 | 1 | 1 | - | - | - |
| 합 계 | 공학 | 18 | 11 | 3 | 2 | 3 |
| | 남 | 22 | 16 | 5 | - | 1 |
| | 여 | 20 | 16 | 4 | - | - |

(3) 학교별 조사 대상자 선정

실태조사를 포함한 사회조사의 경우, <그림 2-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표본 구성 및 설문 진행에서 7가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 방안을 설계 구성하였다.¹⁰⁾ 이러한 오차 중 ‘적용범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급별로 일차 층화한 후, 타 시도의 관련 조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요소인 학교형태, 지역 및 설립형태, 공학 여부 등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구성비율에 따른 이차/삼차 층화를 통해 학교 수를 할당하여 선정하는 방식의 표집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2-2> 사회조사과정에서의 오차 종류



조사대상 학교 수를 정한 후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은 ‘표집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 모집단을 대표할 표본 추출에서 편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10) 한신갑외, 사회조사 자료의 질 (201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록 랜덤함수¹¹⁾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학교를 선발하였다.

무작위로 선발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학교에서 표본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학급 전체를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 1개반, 중·고등학교는 2학년 1개반 전체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보호자의 경우, 학교에서는 접촉이 쉽고 학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 중·고등학교는 2학년 특정 반의 전체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도록 요청하여 편중 현상을 방지하였다.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조사 대상 선정 학교의 5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목 담당 교사 10인이, 중·고등학교는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목 담당 교사 10인으로 선정하였다. 직원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직원으로 교사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학교별 5인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직원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중심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2-13〉 개별 학교 내 조사대상 선정 기준

| 조사집단 | 개별 학교 내 조사 대상 선정 기준 |
|------|---|
| 학생 | 초등학교 5학년 1개반 전체 / 중·고등학교 2학년 1개반 전체 |
| 보호자 | 초등학교 5학년 1개반 보호자 전체 / 중·고등학교 2학년 1개반 보호자 전체 |
| 교사 | 초등학교 5학년 교사 10인 / 중·고등학교 2학년 담당 교사 10인 (10인 미만인 경우, 추가하지 않고 해당 교사만 참가) |
| 직원 | 학교별 5인 |

11)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로서, 엑셀에서 제공되는 RANDBETWEEN 함수를 사용하였다. 위의 경우, 학교급별/학교요소별/지역별 해당 학교를 배열하고, 학교에 1부터 #까지의 번호를 부여한 후, RANDBETWEEN(1,#)를 사용하여 난수 발생하여 해당 학교를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대상 규모는 <표 2-14>와 같다. 초·중·고 학생을 합하여 3,300명, 보호자 3,300명, 교사 1,450명, 행정직원 450명으로 총 8,50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온라인 조사의 링크와 QR코드를 받고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표 2-14> 구성원별 모집단 규모 및 표본 대상 인원수 (2019년 기준)

| 조사대상 | 모집단 학교 수 | 모집단 학생 수 | 표본 학교 수 | 예상 조사 인원 |
|------|----------|----------|---------|----------|
| 초등학생 | 250 | 160,853 | 45 | 1,000 |
| 중학생 | 135 | 74,458 | 40 | 1,000 |
| 고등학생 | 125 | 78,401 | 60 | 1,300 |
| 보호자 | - | 313,712 | | 3,300 |
| 교사 | - | 23,507 | | 1,450 |
| 직원 | - | 2,069 | | 450 |
| 합계 | 510 | 313,712 | 148 | 8,500 |

그리고 전체 구성원대비 참여 표본수에 따른 신뢰구간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구성원 모집단대비 참여자수에 따른 신뢰구간 (95% 신뢰도)

| 조사대상 | 모집단 학생 수 | 실제 조사 인원 | 신뢰구간 (±,%) |
|------|----------|----------|------------|
| 초등학생 | 160,853 | 629 | 3.90 |
| 중학생 | 74,458 | 864 | 3.31 |
| 고등학생 | 78,401 | 1,250 | 2.75 |
| 보호자 | 313,712 | 1,711 | 3.67 |
| 교사 | 23,507 | 841 | 3.32 |
| 직원 | 2,069 | 252 | 5.48 |
| 합계 | 313,712 | 5,547 | |

2) 설문지 문항 개발

(1) 설문지 문항의 구성

앞서 제시한 주요 실태조사의 영역과 지표,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고 비교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별로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및 태도, 학교 환경을 공통적인 항목으로 구성하고 구성원별로 처한 인권환경 및 인권침해 경험과 구제제도, 업무 환경 등을 개별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설문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쉽고 단순한 문장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연차별 추이 분석 및 타 시도와의 비교가능성을 두고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교육청 및 교사, 직원 그룹과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표 2-16>과 같이 본 연구의 설문지의 지표와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2-16> 설문지 지표 및 문항구성

| 구분 | 지표 | 문항 구성 |
|----|----------------|-----------------------------------|
| 공통 |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 총 6개 세부 문항 |
| | 아동인권보장제도 인지 | 총 3개 세부 문항 |
| | 인권행동 | 총 5개 세부 문항 |
| | 시급한 학교 시설과 서비스 | 총 8개 세부 문항 |
| 학생 | 학교생활만족도 | 총 6개 세부 문항 |
| | 자유권 | 초등_총 6개 세부 문항, 중고등_총 10개 세부 문항 |
| | 차별 경험 | 초등_총 3개 세부 문항 중고등_총 4개 문항 |
| | 폭력피해 경험 | 언어폭력 총 2개 문항 |

| 구분 | 지표 | 문항 구성 |
|-----|------------------|---|
| | | 신체폭력 총 3개 문항 성폭력 총 2개 문항 |
| |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총 3개 세부 문항 |
| | 참여자 정보 | 총 3개 세부 문항 _ 성별, 학교특성/소재지, 동거가족 |
| 보호자 | 학교분위기 | 총 4개 세부 문항_ 보호자 학교 참여 |
| | 학생 폭력피해 경험 | 언어폭력 총 2개 문항 신체폭력 총 3개 문항 성폭력 총 2개 문항 집단따돌림 총 1개 문항 |
| |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총 3개 세부 문항 |
| | 참여자 정보 | 총 4개 세부 문항 _ 학생과의 관계, 연령대, 성별, 학교특성/소재지 |
| | 학교분위기 | 총 4개 세부 문항_ 교사 학교 참여 |
| 교사 | 노동권과 자유권 | 총 4개 세부 문항 |
| | 차별 경험 | 총 5개 세부 문항 |
| | 폭력피해 경험 | 언어폭력 총 2개 세부 문항 신체폭력 총 2개 세부 문항 성폭력 총 2개 세부 문항 집단따돌림 총 1개 세부 문항, 조력체계 인지 총 1개 세부 문항 |
| | 교사 소진 | 총 7개 세부 문항 |
| | 교사 직권 침해 & 인권 침해 | 총 4개 세부 문항 |
| | 참여자 정보 | 총 6개 세부 문항 _ 성별, 연령대, 근무지특성/소재지, 경력연한, 고용지위, 이수교육현황 |
| | 학교분위기 | 총 4개 세부 문항 _ 직원 학교 참여 |
| 직원 | 노동권과 자유권 | 총 4개 세부문항 |

| 구분 | 지표 | 문항 구성 |
|----|---------------|--|
| | 차별 경험 | 총 5개 세부 문항 |
| | 폭력피해 경험 | 언어폭력 총 2개 세부 문항 신체폭력 총 2개 세부 문항 성폭력 총 2개 세부 문항 집단따돌림 총 1개 세부 문항 조력체계 인지 총 1개 세부 문항 |
| | 직원 사회적 인식과 소진 | 총 7개 세부 문항 |
| | 참여자 정보 | 총 6개 세부 문항 _ 성별, 연령대, 근무지특성/소재지, 경력연한, 직급, 직렬, 이수교육현황 |

우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보호자, 그리고 교사와 직원 총 6개의 조사집단에 대해 완전히 공통되는 지표는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제도 인지’, ‘인권행동’, ‘시급한 학교시설과 서비스’이다. 모든 문항이 같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쉬운 단어로 질문을 재구성하였고, 각각의 집단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생의 설문지에서 문항 내용이 ‘친구와 선배’로 기술했다면 교사와 직원 설문지에서는 ‘동료 교사’, ‘동료직원’으로 표현하였다.

내용은 거의 유사하거나 겹치지만, 세부 문항에서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세부 문항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구성된 지표도 있다.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보호자, 교사, 직원의 학교분위기는 유사한 내용이되, 학생의 문항이 2개 더 많게 구성되어 있다. 폭력피해 경험의 문항도 거의 유사하고 직장 괴롭힘 등의 문항 1~2개 정도가 추가되었다.

자유권의 지표는 학생집단에 해당하는데 두발, 복장검사를 하지 않는지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초등학교 설문지에서는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6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고, 중·고등학교 설문지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대한 추가 질문까지 합하여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와 직원의 경우는 노동권과 자유권의 지표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과 보호자의 설문지에는 인권침해 구제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3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한 반면, 교사와 직원의 경우는 조력체계를 알고 있는지를 1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학교가 일터가 되는 교사와 직원에게는 일터에서 어느 정도 소진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교사 설문지의 경우, 교사의 가르칠 권한인 ‘직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인권’이 침해되는 주요 영역과 침해행위자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2) 설문지 개발 과정

설문지의 지표와 문항 구성은 연구진의 초안 작업을 통해 1차 구성한 후 교육청과 주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수정 및 확인 후 확정하였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초안을 작성한 후 직원이 참여하는 집단을 구성하여 설문 문항을 함께 검토하고 자문받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설문지 구성 과정에서 참여자 정보 또한 관련한 당사자의 확인과 의견을 수용하여 조율하였다. 특히 개별 학교 단위로 구성원 간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상관분석을 하기 위하여 학교마다 코드를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 학교 코드로 인해 결과가 학교별로 분석되어 개인의 정보가 학교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참여자 부담으로 이어져 조사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제외하였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과 학생들의 돌봄 받을 권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통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별도로 조사하여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

시되어 이를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더불어 참여자 정보 영역에서는 최대한 적은 내용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성별 혹은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는 더 이상 성별을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직접 자기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카테고리를 함께 제시한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의 구분을 둘러싸고 편견과 오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택의 하위범주가 아닌 ‘응답하고 싶지 않다’는 범주를 추가하여 성별에 대한 기계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지만, 질문을 읽고 생각하며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개인에게 과급되는 교육적 효과도 크다. 이에 설문을 구성하는 단어를 유의하여 선택하고자 노력하였고, 아동인권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할 때도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표기하였다.

(3) 설문시스템

설문조사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인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학교구성원별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보호자, 교사, 직원 등 5개의 설문지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5가지 설문 주소를 생성하여, 구성원별로 별도로 안내하였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이처럼 구성원별 참여 인터넷 주소 링크를 간편한 URL과 QR코드로 제공하여, PC나 휴대폰으로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7〉 설문지 지표 및 문항 구성 (초등학생용 예시)

| 2020 인천교육청 실태조사 코드 (초등학생용) | | |
|---|---|--|
| 설문 URL | 간편 URL | QR 코드 |
| https://ko.surveymonkey.com/r/CRDWJ3X | bit.ly/인천초등 |  |

3) 초점집단면접 조사 설계

(1) FGI 참여자 집단의 선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법 즉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시행되는 인권실태조사이다. 양적 연구의 경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경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크지만, 수치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생각과 감정, 의미 등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인권의 이슈는 자신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차별과 부당한 침해를 인식하거나 겪어내면서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고 체현하며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로 이를 들여다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하는 방안도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의의가 있으나, 이 연구의 기본적인 설계는 양적 연구가 중심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FGI 비용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총 4회로 FGI를 계획했으나, 조사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6회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집단의

연령층과 특성, 역할과 업무의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확대된 6회의 면접에서도 다양한 학교구성원 집단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웠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FGI를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예민한 쟁점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교구성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집단의 성격을 반영하여 각각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제한된 횟수로 어떤 집단을 조사해야 하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최종적으로 학생집단 2회, 활동가집단 1회, 교사집단 1회, 직원집단 2회로 결정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학생집단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 2회의 FGI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신하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로 1회 FGI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직원집단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 조리사와 전문상담사로 각각 구성하여 총 2회, 교사집단은 평교사를 중심으로 1회 진행하였다. 따라서 <표 2-18>과 같이 총 6회의 FGI에 17명의 참여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표 2-18>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현황

| FGI 집단 | 참여자 현황 | 성별 | 연령대 | 비고사항 |
|-----------------|------------|----|-----|-------------------------------------|
| 학생1 (중학생) | 중학생 참여자 1 | 남 | 10대 | 2020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회의실 |
| | 중학생 참여자 2 | 남 | 10대 | |
| 학생2 (일반고 학생) | 고등학생 참여자 1 | 여 | 10대 | 2020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회의실 |
| | 고등학생 참여자 2 | 여 | 10대 | |
| | 고등학생 참여자 3 | 남 | 10대 | |
| | 고등학생 참여자 4 | 남 | 10대 | |

| FGI 집단 | 참여자 현황 | 성별 | 연령대 | 비고사항 |
|-------------------------------|-----------|----|-----|-------------------------------------|
| 활동가 1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활동가) | 활동가 참여자 1 | 남 | 60대 | 2020년 10월 16일 백운역 공존 카페 |
| | 활동가 참여자 2 | 여 | 30대 | |
| 교사 1 (정교사) | 교사 참여자 1 | 여 | 30대 | 2020년 10월 26일 블리스버거앤카페 세미나실 E |
| | 교사 참여자 2 | 여 | 30대 | |
| | 교사 참여자 3 | 여 | 50대 | |
| 직원1 (전문상담사) | 상담사 참여자 1 | 여 | 50대 | 2020년 10월 7일 아르테 심리상담센터 |
| | 상담사 참여자 2 | 여 | 40대 | |
| | 상담사 참여자 3 | 여 | 40대 | |
| | 상담사 참여자 4 | 여 | 40대 | |
| 직원2 (조리사) | 조리사 참여자 1 | 여 | 50대 | 2020년 9월 23일 어반412 카페 |
| | 조리사 참여자 2 | 여 | 50대 | |
| 합계 | 17명 | | | |

조사 진행 과정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등 변동 사항이 많아 면접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고, 면접참여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섭외했던 참여자가 때때로 불참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성화고 학생집단의 FGI의 경우, 현장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현장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에서의 실습 계획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인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가를 만나 FGI를 진행하였다. FGI에 참여한 활동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였고, 퇴임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권, 노동권, 학습권의 문제가 심각함을 절실히 느껴 청소년 노동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FGI는 질적 연구를 계속 수행해온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보호관의 협조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고 사전연락을 통해 연구동의를 구두로 받고 현장에서 서면으로 다시 받았다. 연구과정과 자료수집, 녹음과 인용,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미성년자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확인하였다.

소요시간은 총 2시간 내외로 열 확인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장소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회의실 혹은 조용한 카페나 세미나실, 모임방 등 참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섭외하였다.

(2) 초점집단면접 가이드 라인

FGI는 반구조적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인터뷰 주요 질문을 개략적으로 준비하여 참고하되, 실제 인터뷰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질문을 재구성하며 당시의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였다. FGI 면접 가이드라인은 <표 2-19>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2-19> 초점집단면접 가이드라인 주요 구성

| 질문영역 | 질문 내용 |
|----------------|---------------------------|
| 1. 인권 인식과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평소 생각 |
| | 학교에서 인권을 배워본 경험, 인권교육의 경험 |
| 2. 학교에서의 인권 현황 | 학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권 현실 |

| 질문영역 | 질문 내용 |
|----------------------|---------------------------------------|
| |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인권 이슈 |
| | 자유로이 의견을 표현하고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의 현황과 경험 |
| |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 일에 참여할 권리의 현황과 경험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현황과 경험 |
| |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권리의 현황과 경험 |
| |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의 현황과 경험 |
| | 학습할 권리의 현황과 경험 |
| | 협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현황과 경험 |
| |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노동자의 권리 현황과 경험 |
| 3. 어려움과 소진 | 학교에서 힘들고 소진되는 내용과 이유(관계의 문제, 인정과 소속감) |
| 4. 인권침해 대처방안 | 학교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선택하는 대처방법 |
| | 인권침해대응과 회복을 위한 조력 요청하는 곳 |
| 5.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증진 방안 | 학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 & 사회적 변화 |
| | 학교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 & 사회적 변화 |
| 6. 인권교육 방향 | 학교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

FGI는 대략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① 인권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인식에 대한 질문, ②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권 이슈와 실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직원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인권 현황에 대한 질문, ③ 인권을 침해당한 구체적인 경험과 주위에서 목격한 인권 관련 이야기에 대한 질문, ④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해결과 회복을 위한 절차와 조력체계에 대한 질문, ⑤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실천에 대한 질문, ⑥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질문이다.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되, 인권의 목록은 방대하므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인권 이슈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을 달리하여 질문의 무게에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면 학생집단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자유권과 시민권, 참여권에 좀 더 집중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집단의 경우는 사회이슈로 제기된 현장실습과 연관된 노동권과 안전권, 학습권에 대하여 더 집중하였다. 학교가 일터인 교사와 직원의 경우는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노동권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도 교사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소진과 교육 3주체 간의 관계 어려움, 직원은 고용 지위에 따른 차별의 이슈와 학교에서의 교육 3주체 간의 관계와 소속감, 인정 등에 집중하여 질문하였다.

03

실태조사 기초분석 1 : 학생, 보호자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4. 보호자
5. 소결

제3장 실태조사 기초분석 1 : 학생, 보호자

1. 초등학생

1) 설문지 조사 결과

(1) 초등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응답자는 총 629명이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총 52개 학교의 5학년 1개 반(반당 인원은 25명)으로 약 1,300명의 예상인원을 구성하여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조사 협조 공문과 함께 설문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2~3차례 조사 참여 격려를 요청하였다.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 비율을 검토하면, 지역별로 예상인원의 구성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응답률이 나온 경우는 남동구로서 예상했던 13.5%보다 훨씬 높은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강화군과 서구의 경우는 예상인원의 구성비율의 약 절반 정도로 최종 응답률을 보였고, 옹진군은 이보다 더 낮은 1/5 정도의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 3-1〉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표본 학교 수

| 지 역 | 학생수(N) | 표본 학교수(N) | 표본 | | 최종 응답 | |
|-----|--------|--------------|------|--------|-------|--------|
| | | | 예상인원 | 구성비(%) | 응답인원 | 구성비(%) |
| 강화군 | 2,308 | 4 | 100 | 7.7 | 20 | 3.2 |
| 계양구 | 14,228 | 6 | 150 | 11.5 | 77 | 12.2 |

| 지역 | 학생수(N) | 표본 학교수(N) | 표본 | | 최종 응답 | |
|-------|---------|--------------|-------|--------|-------|--------|
| | | | 예상인원 | 구성비(%) | 응답인원 | 구성비(%) |
| 남동구 | 29,175 | 7 | 175 | 13.5 | 132 | 20.9 |
| 동구 | 3,488 | 2 | 50 | 3.9 | 19 | 3.0 |
| 미추홀구 | 17,524 | 4 | 100 | 7.7 | 60 | 9.5 |
| 부평구 | 23,614 | 9 | 225 | 17.3 | 112 | 17.7 |
| 서구 | 33,162 | 8 | 200 | 15.4 | 49 | 7.8 |
| 연수구 | 24,108 | 5 | 125 | 9.6 | 71 | 11.3 |
| 옹진군 | 553 | 3 | 75 | 5.8 | 7 | 1.1 |
| 중구 | 8,443 | 4 | 100 | 7.7 | 64 | 10.1 |
| 지역표시무 | - | - | - | - | 18 | 3.2 |
| 합계 | 156,603 | 52 | 1,300 | 100.1 | 629 | 96.8 |

초등학생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으로 응답한 학생이 308명(50.4%), ‘남성’으로 응답한 학생이 264명(43.2%), ‘선택하고 싶지 않다’ 39명(6.4%)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응답자 다수가 어머니,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76.9%이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도 20.9%로 초등학생 응답자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친척과 함께 살거나,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남동구 거주자가 132명으로 21.6%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 중 동구와 옹진군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3.1%, 1.1%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2〉 초등학교 응답자 일반 특성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성 별 | 여성 | 308 | 50.4 |
| | 남성 | 264 | 43.2 |
| | 선택하고 싶지 않다 | 39 | 6.4 |
| 동거인 (중복답변) | 어머니 | 582 | 92.8 |
| | 아버지 | 562 | 89.6 |
| | 형제/자매 | 482 | 76.9 |
| | 조부모 | 86 | 13.7 |
| | 친척 | 9 | 1.4 |
| | 공동생활 | 2 | 0.3 |
| | 반려동물 | 131 | 20.9 |
| 지 역 | 강화군 | 20 | 3.3 |
| | 계양구 | 77 | 12.6 |
| | 남동구 | 132 | 21.6 |
| | 동구 | 19 | 3.1 |
| | 미추홀구 | 60 | 9.8 |
| | 부평구 | 112 | 18.3 |
| | 서구 | 49 | 8.0 |
| | 연수구 | 71 | 11.6 |
| | 옹진군 | 7 | 1.1 |
| | 중구 | 64 | 10.5 |

*무응답 제외

(2) 인권 인식과 인권 행동

초등학생에게 총 6개의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으로서 스스로 견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 권리 의식을 질문하였다.

초등학생 응답자는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주체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의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4.9%, 156명이고,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5.2%, 472명으로 나타났다. 약 75.2%의 초등학생 응답자들이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우선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5%만이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것에 반대했다.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아동·청소년 역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학생은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5.1%, 535명이고, ‘그렇지 않다’가 14.8%, 91명으로 나타나, 의견에 대한 결정권보다는 더 적극적인 권리인식을 보여주었다.

아동·청소년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답변이 606명, 96.6%에 이르고,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역시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답변도 역시 96.7%, 607명으로, 아동·청소년 모두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한다”는 생각을 하는 초등학생이 75% 정도로 높았지만,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아동·청소년 역시도 언제나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초등학생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의 문항과 “학

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문항에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586명으로 93.7%로,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은 중요한 주체라는 점,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주체로서 대우해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초등학교생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109 (17.4) | 363 (57.8) | 116 (18.5) | 40 (6.4) |
| 학생은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173 (27.5) | 362 (57.6) | 79 (12.6) | 173 (2.2) |
|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434 (69.2) | 172 (27.4) | 19 (3.0) | 2 (0.3) |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452 (72.0) | 155 (24.7) | 16 (2.5) | 5 (0.8) |
|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34 (53.4) | 252 (40.3) | 33 (5.6) | 6 (1.0) |
|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334 (53.4) | 252 (40.3) | 33 (5.3) | 6 (1.0) |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주요 인권문서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인천광역시 초등학교생은 ‘처음 듣는다’가 229명(36.6%), ‘이름만 들었다’가 193명(30.9%)으로 67% 이상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고, ‘일부 안다’가 170명(27.2%), ‘자세히 안다’가 불과 33명(5.3%)이 응답하여, 자신들이 가진 인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

는 인권문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안다’에 392명(62.5%), ‘자세히 안다’에 63명(10.0%)로 응답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546명(87.6%)이 긍정적 답변을, 77명(12.4%)이 부정적 답변을 하여 이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응답자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과 관련한 문서를 막연하게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인천광역시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많은 응답자가 답하고 있어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인권목록으로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체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광역시에 학교에서의 인권보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데 연결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행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4〉 초등학교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질 문 | 응 답 | | | |
|------------------------|----------------|-----------------|---------------|----------------|
| | 처음 듣는다 N(%) | 이름만 들었다 N(%) | 일부 안다 N(%) | 자세히 안다 N(%) |
| 유엔아동권리협약 | 229 (36.6) | 193 (30.9) | 170 (27.2) | 33 (5.3) |
|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내용 | 34 (5.4) | 138 (22.0) | 392 (62.5) | 63 (10.0) |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가치를 체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향한다. 인권에 대한 지식이 아닌 인권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 3-5〉 초등학교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 편이다 N(%) | 필요없는 편이다 N(%) | 전혀 필요없다 N(%) |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조례가 필요하다. | 161 (25.8) | 385 (61.8) | 71 (11.4) | 6 (1.0) |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행위인 혐오표현에 대해서 대처하여 행동하는지를 “나는 누군가를 얹잡아보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의 항목으로 질문하였을 때,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는 답변이 577명으로 91.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친구나 주위 사람이 얹잡아보는 말을 사용하면 말리려고 한다”는 항목에서는 502명, 80.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혐오표현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체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행동에 따른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용기를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에서 발화되고 있는 혐오, 비하 표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초등학생 응답자들이 혐오표현 사용을 스스로 자제한다는 응답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주위의 혐오표현을 저지하는 인권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이를 반대하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피해당한 타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는지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의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 답변 606명으로 89.8%로 높았다. 가까운 친구를 도우려는 선한 의지를 포함하는 항목이어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행동의 반경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나 사회의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의 문항에 67.2%인 422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의 항목에 68.8%인 430명이 ‘그렇다’고 답했는데, 대체로 높은 응답률이지만, 개인적인 자제나 가까운 친구에 대한 도움의 항목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인권행동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이슈를 사회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과 구체적인 활동을 일상에서 축적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표 3-6〉 초등학생 응답자의 인권행동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앞잡아보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228 (36.3) | 349 (55.6) | 40 (6.4) | 11 (1.8) |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알잡아보는 말을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136 (21.7) | 366 (58.4) | 111 (17.7) | 14 (2.2) |
|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434 (34.2) | 172 (55.6) | 19 (9.4) | 2 (0.8)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102 (16.2) | 320 (51.0) | 158 (25.2) | 48 (7.6)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91 (14.6) | 339 (54.2) | 174 (27.8) | 21 (3.4) |

(3) 학교생활과 자유권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인권보장수준을 말해주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보살핌이 서로 있으며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의 학교에 가는 일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총 6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총 6개의 항목 중 초등학생 응답자의 긍정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선생님은 우리를 존중한다”의 항목으로, 95.1%인 596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된 “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의 항목 역시도 93.7%인 584명이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조금 낮아지는 했지만 88.1%인 551명이 “학교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며”, 88.1%인 548명이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라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초등학생 응답자의 94.5%인 588명이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았다”고 답했고,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응답도 522명, 83.2%에 이른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왔지만, 부정적 답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5.4%인 34명이었고, 선생님의 존중에 대해서도 5.0%인 31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6.3%인 39명이 선생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많은 11.9%인 74명이 학교 친구들의 존중과 배려, 학교에서의 구성원들간의 협동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05명으로 16.8%로, 6개의 항목 중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¹²⁾

〈표 3-7〉 초등학생 응답자의 학교생활만족도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 편이다 N(%) |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 171 (27.5) | 377 (60.6) | 65 (10.5) | 9 (1.4) |
| 학교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 184 (29.4) | 367 (58.7) | 58 (9.3) | 16 (2.6) |
| 선생님은 우리를 존중했다. | 366 (58.4) | 230 (36.7) | 23 (3.7) | 8 (1.3) |
|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 246 (39.2) | 276 (44.0) | 82 (13.1) | 23 (3.7) |
| 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 286 (45.9) | 298 (47.8) | 28 (4.5) | 11 (1.8) |
|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었다. | 293 (47.1) | 295 (47.4) | 27 (4.3) | 7 (1.1) |

12) 2018년 PISA에서 조사한 생활만족도 전반에 대한 국가별 비교 데이터를 참고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대비 개선되고 있음에도 6.5에 머무른 반면, OECD 평균 7.0이며, 우리나라보다

학교생활만족도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데 학교시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1~3순위로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가중치 분석으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 하거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1순위, 깨끗한 화장실이 2순위,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을 3순위로 답하였으며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등 편의시설, 탈의실 등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휴식공간은 휴식할 권리와 직접 연결되고, 깨끗한 화장실과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권리이며, 건강을 유지할 권리와 연결된다.

이는 학교가 공공의 교육체계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이 권리의 보장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다. 학교가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돌봄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학교에서의 사회적 돌봄기능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이 확인되고 있다.

〈표 3-8〉 초등학생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탈의실 | 62 (10.8) | 61 (10.8) | 52 (9.4) | 360 (10.6) |
| 샤워실 | 18 (3.1) | 19 (3.4) | 23 (4.2) | 115 (3.4) |

낮은 국가로는 영국(6.2), 일본 (6.2) 정도이며, 이들 국가는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PISA 2018 결과발표, 20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휴식공간 | 154 (26.8) | 128 (22.7) | 99 (17.9) | 817 (24.0)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78 (13.6) | 51 (9.0) | 54 (9.8) | 390 (11.5) |
| 장애인 편의시설 | 70 (12.2) | 55 (9.8) | 52 (9.4) | 372 (10.9) |
| 깨끗한 화장실 | 82 (14.3) | 114 (20.2) | 98 (17.7) | 572 (16.8) |
|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 | 29 (5.1) | 41 (7.3) | 49 (8.9) | 218 (6.4)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64 (11.1) | 82 (14.5) | 114 (20.6) | 470 (13.8) |
| 기타 | 17 (3.0) | 13 (2.3) | 12 (2.2) | 89 (2.6) |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자유권에 대해서 6개의 항목으로 질문했을 때, “누구나 대표로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다”고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이 539명으로 86.2%로 나타났고, “적극적으로 학급회의에 참여한다”는 긍정 응답도 이와 비슷한 537명으로 86.7%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를 학교가 실질적으로 반영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540명, 86.7%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에 대해 학교 일에 대해서 선생님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537명 86.3%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수의 초등학생 응답자들이 선생님께 학교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학급 회의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가 이를 잘 반영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한 다수의 긍정 답변에도 불구하고, 약 13~14%인 80여 명의 초등학생 응답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학교가 개인 정보를 공개할 때, 학생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 중에서 71.2%가 되는 277명이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28.8%인 112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항목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긍정 답변의 비율이 다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자체이기도 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572명인 92%의 초등학생 응답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8.1%인 50명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부정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초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자유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 않다 N(%) |
| 누구나 반 대표가 되어 활동할 수 있었다. | 300 (48.0) | 239 (38.2) | 70 (11.2) | 16 (2.6) |
| 학교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우리의 의견을 반영했다. | 205 (32.9) | 335 (53.8) | 68 (10.9) | 15 (2.4) |
| 우리는 학급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203 (69.2) | 334 (27.4) | 79 (3.0) | 7 (0.3) |
| 나와 친구들은 학교 일에 대해서 선생님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 236 (37.9) | 301 (48.4) | 72 (11.6) | 13 (2.1) |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음이다 N(%) | 전혀 그렇지 않다 N(%) |
| 학교는 나에게 대한 정보(가족관계, 가정형편, 성적 등)를 공개할 때 내게 먼저 물어본다.* | 78 (20.1) | 199 (51.2) | 86 (22.1) | 26 (6.7) |
| 내가 받은 인권교육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35 (37.8) | 337 (54.2) | 39 (6.3) | 11 (1.8) |

주) * 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응답으로 “공개한 적 없음”에 응답한 234명이 분석에서 제외됨.

온라인 조사가 아닌 면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 대표가 되는 과정, 학교가 규칙을 바꿀 때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학급회의 과정, 선생님께 의견을 말하는 방법과 상황,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상황과 사례 등에 추가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인지를 조사하여 권리에 대한 자기인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4) 차별과 폭력피해 경험

학교생활에서 받는 차별은 직접 확인하게 드러나는 방식보다는 은근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별을 하는 사람이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 모두 차별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며, 어떤 분명한 문제의 상황으로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기 쉽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가시적, 비가시적 차별 모두 장기화되면서 다른 연쇄적인 결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대한 심각성은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성별과 경제적 배경, 성적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긍정 답변을 초등학생 응답자가 550명, 89.0%이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 답변의 비율은 69명으로 11.0%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의 경제적인 형

편에 따라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긍정 답변을 한 초등학생 응답자가 609명으로 96.8%였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 답변이 20명으로 3.2%로 나타나, 경제적 배경보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 4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성적에 대해 질문했을 때, 초등학교 응답자 중 “성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긍정 답변 577명으로 91.7%이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 답변은 52명, 8.3%이었다. 이로써,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는 차별의 사유는 성별에 따른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에 따른 차별도 경제적 배경보다는 더 가시적인 이유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0〉 초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학교나 선생님은 성별(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550 (89.0) | 69 (11.0) |
|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577 (91.7) | 52 (8.3) |
| 학교나 선생님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609 (96.8) | 20 (3.2)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은 바로 폭력의 피해이다.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친구들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그리고 성폭력 등 5가지 항목으로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 응답자 중 43.4%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16.5%는 친구로부터 신체폭력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6.7%, 단체 기합을 포함하여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2.9%였다. 언어적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표 3-11 > 초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학교 친구들로부터 언어폭력피해 경험 (욕, 비꼬는 말, 싫어하는 별명, 비난 등) | 352 (56.5) | 151 (24.2) | 65 (10.4) | 55 (8.8) |
| 학교 친구들로부터 신체폭력피해 경험 (손, 발이나 도구로 몸을 아프게 하는 것 등) | 520 (83.5) | 78 (12.5) | 14 (2.2) | 11 (1.8) |
| 교사로부터 언어폭력피해 경험 (욕, 비꼬는 말, 싫어하는 별명, 비난 등) | 582 (93.3) | 26 (4.2) | 9 (1.4) | 7 (1.1) |
|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의 벌) | 582 (97.1) | 26 (1.6) | 9 (0.8) | 7 (0.5) |
| 성폭력피해 경험 | 607 (98.5) | 5 (0.8) | 1 (0.2) | 3 (0.5) |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욕이나 비꼬는 말,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비난하기 등 언어폭력이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생활에서의 폭력 경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친구로부터의 언어폭력”의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24.2%가 1년에 1~2회 정도, 10.4%가 한 달에 1~2회 정도로 경험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중 8.8%가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자주 빈번하게 언어폭력의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도구로 몸을 아프게 하는 행동인 “친구로부터의 신

체폭력”의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12.5%가 1년에 1~2회 정도로 경험했고, 2.2%가 한 달에 1~2회 정도로, 소수이지만 1.8%가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자주 빈번하게 친구들의 신체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응답자 중 약 4.2%가 교사로부터 1년에 1~2회 정도로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4%가 한 달에 1~2회 정도로, 극소수인 1.1%가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자주 빈번하게 교사의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기합과 체벌을 포함하여 교사로부터의 신체폭력에 노출되는 수준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1.6%가 1년에 1~2회 정도로 경험했고, 0.8%가 한 달에 1~2회 정도로, 극소수인 0.5%가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자주 빈번하게 교사의 신체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의 체벌 방식은 주로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벌을 주거나,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것이고,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손과 발을 이용해 때리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사로부터의 피해 경험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교사의 체벌을 포함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초등학생이 응답한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의 벌) | 582 (97.1) | 26 (1.6) | 9 (0.8) | 7 (0.5) |
| 교사 체벌 방식 | | 응답 N(%) | | |
|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맞음 | | 7 (31.8) | | |
| 손, 발 등을 이용해서 맞음 | | 3 (13.6) | | |
|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을 받음 | | 11 (50.0) | | |

| | |
|----|----------|
| 기타 | 1 (4.5) |
| 합계 | 22 (100) |

언어적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폭력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응답자의 약 1.5%가 피해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빈번하다는 보고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이로 언급되었다. 안전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 인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3-13> 초등학생이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학교에서 성폭력피해 경험 | 607 (98.5) | 5 (0.8) | 1 (0.2) | 3 (0.5) |
| 학교에서의 성폭력 가해자 | | 응답 N(%) | | |
| 같은 학교 학생 | | 10 (71.4) | | |
| 학교선생님 | | 3 (21.4) | | |
| 선생님이 아닌 학교 내 어른(학교직원) | | 0 (0.0) | | |
| 학교 외부 사람 | | 1 (7.1) | | |
| 합계 | | 14 (100) | | |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에 직면했을 때, 사건 해결과

피해회복에 대한 조력체계로서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도화되어 있는 ‘인권보호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생 응답자 중 65%인 402명이 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73.9%인 457명이 학생인권보호관과 상담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35%인 216명에 이르고, “상담할 때 비밀이 지켜지거나 불이익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하다”는 응답자도 26.1%로 나타났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응답자는 6.5%인 40명으로 보고되었다.

인권보호관 제도와 그 역할에 대해 더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단순한 제도의 홍보이기보다는 인권침해 시 구제신청의 중요성과 회복 노력의 의미를 잘 짚어 인권침해의 사안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비행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위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과 한 묶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4〉 초등학생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학생인권보호관제도(상담 및 구제)에 대해 알고 있다. | 402 (65.0) | 216 (35.0) |
| 학생인권보호관과의 상담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457 (73.9) | 161 (26.1) |
| 2019년에 학생인권보호관에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 40 (6.5) | 576 (93.5) |

2. 중학생

1) 설문지 조사 결과

(1) 중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중학생의 응답자는 총 864명이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40개 학교의 2학년 1개 반(반당 인원은 25명)으로 약 1,060명의 예상인원을 구성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조사 협조 공문과 함께 설문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2~3차례 조사 참여 격려를 요청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마감한 후 응답자 비율을 검토한 결과, 약간씩의 변동을 보였던 구도 있었지만, 지역별로 예상인원의 구성비율보다 약 1.5배 정도 가까이 높게 응답률이 나온 경우는 계양구로서 예상했던 10%보다 높은 18.6%로 집계되었다. 부평구도 조금 높았는데, 예상인원 구성비율이 15%이었으나, 응답 비중은 20.7%였다. 예상인원의 구성 비중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구는 강화군으로 약 1/3 정도의 2.8%의 응답 비중으로 나타났고, 서구가 약 1/2 수준의 8.0%의 비중을, 옹진군이 약 1/5 수준인 0.6%로 저조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인천광역시 중학교 표본 학교 수

| 지 역 | 학생수 (N) | 표본 학교수(N) | 표본 | | 최종 응답 | |
|-----|------------|--------------|------|--------|-------|--------|
| | | | 예상인원 | 구성비(%) | 응답인원 | 구성비(%) |
| 강화군 | 1,321 | 3 | 79.5 | 7.5 | 24 | 2.8 |
| 계양구 | 7,299 | 4 | 106 | 10 | 159 | 18.4 |
| 남동구 | 14,173 | 6 | 159 | 15 | 113 | 13.1 |

| 지 역 | 학생수 (N) | 표본 학교수(N) | 표본 | | 최종 응답 | |
|-------|------------|--------------|-------|--------|-------|--------|
| | | | 예상인원 | 구성비(%) | 응답인원 | 구성비(%) |
| 동구 | 1,174 | 1 | 26.5 | 2.5 | 20 | 2.3 |
| 미추홀구 | 7,584 | 4 | 106 | 10 | 72 | 8.3 |
| 부평구 | 12,181 | 6 | 159 | 15 | 177 | 20.5 |
| 서구 | 16,025 | 6 | 159 | 15 | 68 | 87.9 |
| 연수구 | 11,621 | 6 | 159 | 15 | 163 | 18.9 |
| 용진군 | 252 | 1 | 26.5 | 2.5 | 5 | 0.6 |
| 중구 | 4,501 | 3 | 79.5 | 7.5 | 53 | 6.1 |
| 지역표시무 | - | - | - | - | 10 | 1.2 |
| 합계 | 76,131 | 40 | 1,060 | 100 | 864 | 100 |

중학생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으로 응답한 학생이 383명으로 44.8%, ‘남성’으로 응답한 학생이 413명으로 48.4%, ‘선택하고 싶지 않다’로 응답한 학생이 58명으로 6.8%로 나타났다.

학교의 설립형태별로 보면, 국공립 재학생은 726명으로 85.0%이며, 사립 학교 재학생은 128명으로 15%에 해당한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남녀공학 학교 재학생은 총 477명으로 55.9%이고, 여학교 재학생은 167명, 19.6%이며, 남학교 재학생은 210명, 24.6%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중학생 응답자는 국공립 학교에 주로 재학하고 있고, 남녀공학 학교 재학생은 여학교와 남학교의 재학생을 합한 수보다 조금 많지만 거의 절반 정도의 비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응답자 다수가 어머니,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80.4%이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초등학생 응답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비중(76.9%)보다는 조금 높은 반면에 초등학생 중에서 조부모와 사는 비중(13.7%)과 비교하면 조금 낮다.

중학생 응답자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도 21%로 나타나 초등학생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는 1.1%,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0.8%로 아주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부평구 거주자가 177명, 2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의 거주자가 각각 19.1%, 18.6%, 13.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학생 응답자 중 옹진군과 동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0.6%, 2.3%, 2.8%로 적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중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성 별 | 여성 | 383 | 44.8 |
| | 남성 | 413 | 48.4 |
| | 선택하고 싶지 않다 | 58 | 6.8 |
| 설립형태 | 국·공립 | 726 | 85.0 |
| | 사립 | 128 | 15.0 |
| 공학여부 | 남여공학 | 477 | 55.9 |
| | 여학교 | 167 | 19.6 |
| | 남학교 | 210 | 24.6 |
| 동거인 (중복답변) | 어머니 | 822 | 95.9 |
| | 아버지 | 780 | 91.0 |
| | 형제/자매 | 689 | 80.4 |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 조부모 | 82 | 9.6 |
| | 친척 | 9 | 1.1 |
| | 공동생활 | 7 | 0.8 |
| | 반려동물 | 180 | 21.0 |
| 지 역 | 강화군 | 24 | 2.8 |
| | 계양구 | 159 | 18.6 |
| | 남동구 | 113 | 13.2 |
| | 동구 | 20 | 2.3 |
| | 미추홀구 | 72 | 8.4 |
| | 부평구 | 177 | 20.7 |
| | 서구 | 68 | 8.0 |
| | 연수구 | 163 | 19.1 |
| | 옹진군 | 5 | 0.6 |
| | 중구 | 53 | 6.2 |

*무응답 제외

(2) 인권 인식과 인권 행동

중학생에게도 총 6개의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으로서 스스로 견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 권리 의식을 질문하였다.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6.6%로 316명이고, ‘그렇다’고 답

한 비율은 63.3%인 547명으로 나타났다. 약 63.3%의 중학생 응답자들이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우선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응답 비율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다른 항목의 인식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사결정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의 본분이 교사에게 순종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며, ‘어린’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가 나쁜 시행착오를 겪으므로 성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학교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문항을 살펴보면, 중학생 응답자가 견지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항에 각각 97.8%, 97.9%, 97.2%의 중학생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63.3%인 것과는 달리,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학교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은 중요한 주체라는 점,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주체로서 대우해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92.1%가 ‘그렇다’는 긍정 답변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97%가 넘는 문항에 비해서는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응답 수준이 높아 아동·청소년도 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아동·청소년에게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경우가 95.5%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인권 의식을 보여준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2~4%로 제시되고 있고, 특히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7.9%가 부정적인 의견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더 고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인권의식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시절부터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인권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표 3-17〉 중학생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85 (9.8) | 462 (53.5) | 214 (24.8) | 102 (11.8) |
|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285 (33.0) | 510 (59.1) | 62 (7.2) | 6 (0.7) |
|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646 (74.9) | 198 (22.9) | 17 (2.0) | 2 (0.2) |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536 (62.0) | 293 (33.9) | 28 (3.2) | 7 (0.8) |
|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53 (64.1) | 292 (33.8) | 18 (2.1) | 0 (0.0) |
|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482 (55.9) | 356 (41.3) | 21 (2.4) | 3 (0.3) |

인권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중학생 응답자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처음 들은 경우가 364명으로 42.2%, 이름만 들어본 경우가 336명, 38.9%를 차지했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150명, 17.4%이며,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13명, 1.5%로 응답하였다. 자신들이 가진 아동·청소년 인권의 자세한 목록과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인권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81명, 9.4%, ‘이름만 들었다’가 324명, 37.5%이며, ‘일부 안다’는 응답이 427명으로 49.4%, ‘자세히 안다’가 32명, 3.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안에서 학생 인권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에 대해 원론적으로 확인하고 천명하는 법의 부분적 내용보다 인권의 자세한 목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무가 명시된 인권문서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쟁점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인권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인권에 대한 이해를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펼쳐 놓을 수 있다. 인권문서를 단지 문서명 정도로 파악하는 가벼운 지식 정도로 전달하고 있는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가?”를 질문했을 때, 753명(87.6%)이 긍정적 답변을, 108명(12.5%)이 부정적 답변을 하여, 이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응답자들이 대체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 인권문서를 막연하게 이름 정도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는 수준에 있지만, 인천광역시에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많은 다수의 응

답자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어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중학생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질 문 | 응 답 | | | |
|------------------------|----------------|-----------------|---------------|----------------|
| | 처음 듣는다 N(%) | 이름만 들었다 N(%) | 일부 안다 N(%) | 자세히 안다 N(%) |
| 유엔아동권리협약 | 364 (42.2) | 336 (38.9) | 150 (17.4) | 13 (1.5) |
|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내용 | 81 (9.4) | 324 (37.5) | 427 (49.4) | 32 (3.7) |

〈표 3-19〉 중학생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편이다 N(%) | 필요없는편이다 N(%) | 전혀필요없다 N(%) |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조례가 필요하다. | 202 (23.5) | 551 (64.0) | 100 (11.6) | 8 (0.9) |

막연히 “인권이 있다”는 표명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과 인권 행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 의식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가치를 체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향하는데, 인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혐오표현 사용자제, 혐오표현 사용금지, 인권침해 반대, 학교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다.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행위인 혐오표현에 대해서 대처하여 행동하

는지를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과 주위의 혐오표현 사용에 대해 제지하는 행동으로 질문하였다.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긍정적 답변을 한 중학생 응답자는 794명, 92.1%로 높았다.

그러나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9명, 74.0%로 스스로 혐오표현을 자제하고자 하는 노력한다는 비율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따른 위험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에서 차별적인 언행과 혐오표현, 비하 표현이 초등학교를 비롯, 교실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혐오를 확산시키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던 소위 ‘일베’로 지칭되는 집단이 사용한 매우 나쁜 단어들이 온라인상의 경계를 넘어 교실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 중학생 응답자 스스로 혐오표현 사용을 스스로 자제한다고 답한 비율이 92.1%까지 높게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

자제 노력과 함께 주위의 혐오표현을 저지하는 인권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이 초래하는 반인권적 상황과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이를 반대하는 사회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교실에서의 차별과 혐오는 사회상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는 작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침해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상에 대한 질문을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로 물어본 결과, 중학생 응답자의 84.4%인 639명이 ‘그렇다’고 긍정 답변을 했다. 주위의 혐오표현을 말리는 행동의 응답률

보다 피해 입은 친구를 돕고자 하는 행동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인권행동의 반경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에 민감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나 사회의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의 문항에 77.5%인 667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의 항목은 이보다 더 낮아져 66.1%인 56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표 3-20〉 중학생 응답자의 인권행동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321 (37.2) | 473 (54.9) | 55 (6.4) | 13 (1.5) |
|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189 (21.9) | 450 (52.1) | 187 (21.7) | 37 (4.3) |
|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214 (24.8) | 515 (59.6) | 124 (14.4) | 11 (1.3)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214 (24.9) | 453 (52.6) | 167 (19.4) | 27 (3.1)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127 (14.8) | 441 (51.3) | 254 (29.6) | 37 (4.3) |

개인적인 혐오표현의 자제나 가까운 친구에 대한 도움 행동의 항목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치이다.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이 인권이 학교와 사회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인데, 이러한 인권 행동이 활발하게 촉진되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인권 행동에 대한 긍정적 대답의 비율과 함께 ‘그렇지 않음’의 부정적 응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을 자제하고자 하는 노력에 ‘그렇지 않다’는 7.9%, 타인의 혐오표현을 제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그렇지 않다’는 26.9%,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돕고자 하는 노력에 ‘그렇지 않다’는 15.7%, 학교나 사회에서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노력에 ‘그렇지 않다’는 22.5%, 이러한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그렇지 않다’는 33.9%에 집중해야 한다.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가담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주요 경로는 무엇인지, 또한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연루하게 되는 이유와 그렇게 되는 주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인권 행동의 촉발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재의 인권교육만이 해결해야 하는 대안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행동이 지체되지 않도록, 인권 행동의 경계가 나와 직접 맞닿은 미시적인 테두리를 넘어 확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이슈를 사회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인권의 가치에 대한 학습과 연계된 구체적인 활동을 일상에서 축적할 수 있는 인권교육과정은 인권행동을 촉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3) 학교생활과 자유권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학교에 가는 일’은 학생의 행복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초등학생 응답자와는 달리 중

학생 응답자의 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응답자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각각 91.7%의 790명, 90.7%의 783명으로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한다.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이다”는 항목과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다소 낮아져 각각 82.4%의 711명, 86.4%의 746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학교생활만족도를 가장 축약해서 담고 있는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전체 6개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78%인 674명이었고, 이와 상반되게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았다”는 긍정적 답변이 815명으로 94.6%로 6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즉 중학생 응답자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의 맥락은 몇 가지를 고려하게 한다. 중학생의 시기가 급변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어내는 시기와 겹치면서 초등학교와는 달리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로 이전의 초등학생 생활과는 상당히 다르고 무거운 과업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서는 학교에 가는 즐거움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 현장은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완력을 쓰며 개입하는 학생지도방식을 택하지 않으며, 높아진 교사의 인권 의식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없는 무난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한다는 인

식은 90.7%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인식은 86.4%로 조금 낮다. 각자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인식은 91.7%, 90.7%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라는 인식은 82.4%로 조금 낮다. 나의 인권이 존중받았다는 인식은 94.4%로 높지만,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은 78.4%로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인권의 존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맥락이 될 수 있다. 인권 개념이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더불어 발전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않지만 인권은 보장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22.0%)을 포함하여 현재 모두에게 ‘인권의 존중’은 어떤 개념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표 3-21〉 중학생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153 (17.7) | 558 (64.7) | 129 (15.0) | 22 (2.6) |
| 학교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 287 (33.3) | 503 (58.4) | 58 (6.7) | 14 (1.6) |
|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했다. | 335 (38.8) | 448 (51.9) | 67 (7.8) | 13 (1.5) |
|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 230 (26.6) | 444 (51.4) | 145 (16.8) | 45 (5.2) |
|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 229 (26.5) | 517 (59.9) | 101 (11.7) | 16 (1.9) |
|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었다. | 324 (37.6) | 491 (57.0) | 41 (4.8) | 5 (0.6) |

학교생활만족도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데 학교시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2019년을 기준으로 1~3순위로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가중치 분석으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학생 응답자들은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1순위, 청결한 화장실이 2순위,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을 3순위로 답하였으며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탈의실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휴식공간은 휴식할 권리와 직접 연결되고, 청결한 화장실과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권리이며, 건강을 유지할 권리와 연결된다. 충분한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탈의실 역시도 건강을 유지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모두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시설에 대한 항목이다.

학교가 공공 교육 체계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학습권의 온전한 보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학교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업만을 중시하는 모델은 입시위주의 현실에서 사교육의 대두로 인해 그 적절성이 약해진 지 오래되었다. 학교가 학생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돌봄의 기능, 민주 시민으로서 서로 협동하며 살아가는 기술과 관계 맺는 경험을 축적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새삼 확인되고 있다.

〈표 3-22〉 중학생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탈의실 | 109 (13.3) | 90 (11.1) | 74 (9.3) | 581 (11.9) |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샤워실 | 13 (1.6) | 20 (2.5) | 26 (3.3) | 105 (2.2) |
| 휴식공간 | 210 (25.6) | 174 (21.5) | 151 (19.0) | 1,129 (23.2)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112 (13.7) | 97 (12.0) | 94 (11.9) | 624 (12.8) |
| 장애인 편의시설 | 44 (5.4) | 56 (6.9) | 81 (10.2) | 325 (6.7) |
| 청결한 화장실 | 162 (19.8) | 174 (21.5) | 134 (6.9) | 968 (19.9)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37 (4.5) | 59 (7.3) | 61 (7.7) | 290 (6.0)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129 (15.8) | 140 (17.3) | 171 (21.6) | 838 (17.2) |
| 기타 | 3 (0.4) | 1 (0.1) | 1 (0.1) | 12 (0.2) |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자유권에 대해서 10개의 항목으로 질문했을 때, 가장 제한받은 문항으로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로 나타났다. 여전히 등교 시 학생의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대해 학교가 지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응답자의 82.6%인 713명이 학교에서 학생 용모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학생답게”는 강력한 규범이며, 이 규범의 효과는 학생다움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통제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가치를 계속 재생산하는 데 있다.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자유권을 질문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누구나 대표로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다”고 답을 한 비

율은 730명 84.9%이며, “정기적인 학급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답은 693명 80.7%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긍정적 대답은 조금 낮아졌지만 670명으로 78.2%로 나타났고, 학교가 규칙과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84.1%인 724명이 답했다. 학교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학급회의와 학생자치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은 안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로이 반의 대표가 되지 못하고(15.1%), 학생회 활동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한다는(21.7%) 응답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학급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9.4%이고, 학교가 규칙이나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9%인데, 이러한 비율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표명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 의견표명이 자유롭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86.6%, 85.7%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집단적 표명이 자유롭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13.3%, 14.3%를 차지했다. 학교에서의 미투운동 때 집단적 의견표명이 쉽지 않았던 경우를 고려했을 때, 학교 안의 사안이든 학교 밖의 사안이든 집단적인 의사표현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의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훨씬 더 통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23.6%인 203명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두발과 복장)”에 대한 통제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의 참여는 처벌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제한은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경험하고 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개인정보(가족관계, 가정형편, 성적 등) 공개 시 내게 먼저 물어본다”는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공개한 적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 452명을 제외하고서 ‘그렇다’는 긍정 답변이 362명으로 해당 응답자 중 88.5%이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47명으로 11.5%로 나타났다.

인권 그 자체이기도 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중학생 응답자의 83.5%인 718명이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을 한 반면에, 16.5%인 142명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이 인권을 ‘있다’고 단순하게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의 실현 과정에서 벽으로 만나게 되는 현실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내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23> 중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자유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는 아침 등교시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지도했다. | 321 (37.2) | 392 (45.4) | 96 (11.1) | 54 (6.3) |
| 학생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168 (19.6) | 502 (58.6) | 149 (17.4) | 37 (4.3) |
| 누구나 반 대표가 되어 활동할 수 있었다. | 319 (37.1) | 411 (47.8) | 106 (12.3) | 24 (2.8) |
| 학교는 학교 규칙과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했다. | 222 (25.8) | 502 (53.8) | 107 (12.4) | 30 (3.5) |
| 학생들은 정기적인 학급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177 (20.6) | 516 (60.1) | 144 (16.8) | 22 (2.6) |
|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187 (21.7) | 558 (64.9) | 95 (11.0) | 20 (2.3) |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168 (19.5) | 569 (66.2) | 100 (11.6) | 23 (2.7) |
|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51 (5.9) | 152 (17.7) | 350 (40.7) | 306 (35.6) |
| 학교는 학생 동의없이 개인정보(가족관계, 가정형편, 성적 등)를 공개하지않았다.* | 219 (53.5) | 143 (35.0) | 28 (6.8) | 19 (4.6) |
| 내가 받은 인권교육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179 (20.8) | 539 (62.7) | 105 (12.2) | 37 (4.3) |

주) * 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응답으로 “공개한 적 없음”에 응답한 452명이 분석에서 제외됨.

(4) 차별과 폭력피해 경험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은 가시적이지 않고 ‘은근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별 차이나 종교의 상이함, 성적의 격차, 경제적 배경의 격차 등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특정한 수준에 대하여 우위와 서열을 전제로 하여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치절하한다. 우위와 서열은 성별과 종교, 경제적 부와 같이 사회에서 이미 구조화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정당화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은근한 차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차별을 하는 사람이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 모두 차별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권력이 약한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바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렇게 차별의 구조적 조건은 완고하게 유지되며,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내면화된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성별과 경제적 배경, 성적을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 중학생 응답자가 경험한 차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성적에 따른 차별이었고, 그 다음이 성별에 따른 차별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성적에 대해 중학생 응답자 중 “성적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은 735명, 85.3%이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27명, 14.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은 753명, 87.4%이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09명으로 12.6%였다. 종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는 동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각각 97.9%, 98.3%로 매우 높았다. 이로써, 학교에서 중학생 응답자가 더 많이 인지하는 차별의 사유는 성적에 따른 차별대우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의 경우, 성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더 비중이 높았던 결과를 고려하면, 학업이 주가 되는 상위학교일수록 학생들은 성적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더 인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교문화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우열반’의 운영처럼 차별로 인식되기보다는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합리화되거나,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공정한 대가로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교육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조건과 학습의 기회를 다르게 배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의 효과는 경제적 부와 같이 출발선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한 격차를 더 크게 벌이는 결과를 낳는다.

〈표 3-24〉 중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학교나 선생님은 성별(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753 (87.4) | 109 (12.6) |
| 학교나 선생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846 (97.9) | 18 (2.1) |
|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735 (85.3) | 127 (14.7) |
| 학교나 선생님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848 (98.3) | 15 (1.7)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은 신체의 자유와 안녕을 침해하는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이다.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친구와 선후배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그리고 성폭력 등 5가지 항목으로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 응답자 중 22.4%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3.4%는 이들로부터 신체폭력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 경험은 또래와 선배로부터의 언어폭력인데, 14.9%는 1년에 1~회 가끔이지만 3.4%는 한 달에 1~2회, 4.1%는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9.4%이며, 단체 기합과 체벌을 포함하여 신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9.3%로 나타났다. 언어적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3%였다.

〈표 3-25〉 중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경험 (욕설, 비하적 표현 등) | 667 (77.6) | 128 (14.9) | 29 (3.4) | 35 (4.1) |
|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경험 (단체기합 포함) | 840 (97.6) | 18 (2.1) | 2 (0.2) | 1 (0.10) |
| 교사로부터 언어폭력피해 경험 (욕설, 비하적 표현 등) | 779 (90.6) | 63 (7.3) | 12 (1.4) | 6 (0.7) |
|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펴기, 오 리걸음 등의 벌) | 779 (90.7) | 57 (6.6) | 16 (1.9) | 7 (0.8) |
| 성폭력피해 경험 | 842 (97.7) | 8 (0.9) | 6 (0.7) | 6 (0.7) |

초등학생의 경우는 또래 친구들과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경험이 각각 43.4%, 16.5%로 상당히 크게 나타난 반면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경험은 각각 6.7%, 2.9%에 불과하였다. 중학생 응답자의 경우는 초등학생과는 달리 친구와 선후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경험은 각각 22.4%, 2.4%로 매우 낮은 반면에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경험이 각각 9.4%, 9.3%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또래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보고되는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는 또래나 선후배보다는 교사로부터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언어폭력의 경우 친구와 선후배에게 받는 경우가 훨씬 높아, 언어폭력이 일상화되고 확산되면서 언어폭력의 수준 자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 응답자의 7.3%가 교사로부터 1년에 1~2회 체벌을 포함하여 신체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 1.9%는 한 달에 1~2회, 0.8%는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빈번하게 피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체벌 방식으로는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을 주는 경우가 73.6%로 가장 많았고,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가 17.2%, 손, 발등 신체를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가 8.0%로 응답이 나왔다. 그 외로 ‘겨울에 밖에 서 있기, 쓰레기 던짐’ 등의 기타의 폭력도 보고되었다. 교사로부터의 피해 경험이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보다는 높으며, 체벌이 학교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6〉 중학생이 응답한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의 벌) | 779 (90.7) | 57 (6.6) | 16 (1.9) | 7 (0.8) |
| 교사 체벌 방식 | | 응답 N(%) | | |
|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맞음 | | 15 (17.2) | | |
| 손, 발 등을 이용해서 맞음 | | 7 (8.0) | | |
|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을 받음 | | 64 (73.6) | | |
| 기타 | | 1 (1.1) | | |
| 합계 | | 87 (100) | | |

언어적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폭력에 대해서는 중학생 응답자의 약 2.3%가 피해 경험을 보고 하고 있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빈번하다는 보고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학생(선후배 및 동급생)이라는 응답이 88.9%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교장, 교감, 교사)이라는 응답은 5.6%였다. 안전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폭력의 이슈를 인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3-27〉 중학생이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학교에서 성폭력피해 경험 | 842 (97.7) | 8 (0.9) | 6 (0.7) | 6 (0.7) |
| 학교에서의 성폭력 가해자 | | 응답 N(%) | | |
| 학생(선후배 및 동급생) | | 16 (88.9) | | |
| 선생님(교장, 교감, 교사) | | 1 (5.6) | | |
| 학교 직원 | | 0 (0.0) | | |
| 외부 사람 | | 0 (0.0) | | |
| 기타 | | 1 (5.6) | | |
| 합계 | | 18 (100) | | |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에 직면했을 때, 사건 해결과 피해 회복에 대한 조력 체계로서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도화되어 있는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인지 여부’와 ‘비밀보장’, ‘상담경험’을 질문하였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학생 응답자 중 69.3%인 595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81.8%인 699명이 학생인권보호관과 상담하게 되면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30.7%인 263명에 이르고, 상담할 때 비밀이 지켜지거나 불이익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18.2%로 나타났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 응답자는 7.9%인 68명이었다.

초등학생과 비교해보면 중학생 응답자가 인권보호관 제도와 그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한 경험도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많은 학생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인권 침해 시 구제신청의 중요성과 회복 노력의 의미를 짚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28〉 중학생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학생인권보호관제도(상담 및 구제)에 대해 알고 있다. | 595 (69.3) | 263 (30.7) |
| 학생인권보호관과의 상담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699 (81.8) | 156 (18.2) |
| 2019년에 학생인권보호관에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 68 (7.9) | 789 (92.1) |

이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의 사안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비행 문제로 오해하지 않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위한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투입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중학교 학생의 실제적인 인권실태를 들어보고자 본 조사에서는 초점집단 면접을 진행하였다. FGI에 참여한 중학생은 남학생 2명이며 2학년생이다.

(1) 우리에게 ‘인권’이란? : 인권교육시간에 생각나는 단어

중학생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평소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참여자 1은 평소와 다르게 인권교육을 하게 되는 날 듣게 되는 단어이고, 특별하게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중학생 참여자 2 역시 인권교육을 하는 날이 아니라면, ‘인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사 지시를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불이익’이기 때문인데, 고등학교 참여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함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안 써요. 뭐 인권 교육할 때나 쓰는 거죠.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거나 놀고만 있고. 반장이랑 부반장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그 정도선 인 거 같아요. 지금 학교는... 인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중학생 참여자1)

✓ 인권 생각 이전에 받게 불이익을 먼저 생각함

인권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내 인권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려워요. 선생님들께서 필수적으로 하라는 거를 어겼을 때는 일단 불이익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딱히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어요. (중학생 참여자2)

(2)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의 침해 : 용모검사와 학생회 활동의 한계

설문지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제약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로,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받는 복장 검사와 교칙으로 금지된 사항을 통해 용모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었다. 중학생 참여자는 염색과 화장이 금지되어 있으며,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권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도 연결된다. 특히 화장에 대한 금지는 고정화된 성역할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었다.

✓ 머리길이와 염색에 대한 규제

일단은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가 남여공학이어서 남자애들도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거지, 옆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못 꺾요. 꿈을 못 꺾요. 일단은 우리 학교 남여공학이기 때문에 머리 길이 같은 건 없는데. 염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살짝 규정이 풀렸는데. 어두운 색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참여자 1)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남여공학이기 때문에 머리 길이 같은 규정은 없지만, 염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지를 좀 시키는 분위기인게,, 거의 애들이 염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염색 자체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방학 때 염색을 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탈색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요. (중학생 참여자 2)

✓ 옷차림에 대한 규제

솔직히 남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싫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교복을 입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학교들이 교복을 입으라고 권고하는 규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옷차림에 대해서 그 인권을 보장해야할 자는 잘 모르겠어요. (중학생 참여자 2)

✓ 고정 성역할에 근거한 화장 금지와 화장품 압수

우리 학교는 화장은 해도 되는데. 남자애들은 화장을 할 수 없게 해요. 그러가지고 남자애들 중에서도 화장을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걔네들은 금지 당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화장을 지우고 다녔어요~ 뭐가 좀 특이하면은... 좀 많이 불편해요. (중학생 참여자1)

저희 학교에서 소지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는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화장을 안 해도 예쁜데 뭐하러 하나?’ 하시면서 화장품을 가져가세요. (중학생 참여자 2)

✓ 동의하지 않은 ‘휴대폰 압수’

애들이 어쨌든 핸드폰은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아니라, 학교에서는 무조건 내야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내거든요. 가방이 있고, 거기 안에 핸드폰을 꽂아 넣어라~ 애들은 오자마자 꽂아서 넣고 들어가요. (중학생 참여자 2)

가장 중요한 게 휴대폰을 이제 압수를 한다는 거죠. 압수한 다음에 학교 할 때 쯤에 돌려주니까. 그 학교 있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생의 표현할 권리를 좌우하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것과 그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은 학생들의 자치권이며, 그 자치권을 실현하는 학생회 활동이다. 학생회 활동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학교가 학교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을 인정하여 활동을 존중하고 상호 소통하며 의견을 잘 수렴하는지가 핵심적이다.

중학생 참여자 2는 혁신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학생 의견을 잘 반영하며,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라고 했지만, 중학생 참여자 1은 학교가 학생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따르기는 하지만, 이 의견이

학교에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고 막힌다고 토로했다. 특히 학생회 내부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거나, 소수 학생회 임원들 의견이 관철되는 경향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 불편한 교복을 바꾸자는 학생 의견을 잘 반영함 _ 혁신학교

우리 학교는 교복이 많이 불편해서 올 해부터 이제 교복을 좀 바꿨어요. 자켓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후드점퍼로 바꾸고, 우리 학교 특이한가요? 하하하. 학생들 의견을 잘 반영하는 편이라고 해야겠죠? 애초에 ‘혁신학교’ 라고 해가지고 (중학생 참여자 2)

✓ 반장들이 반을 대표하여 학생소리를 대변함 _ 혁신학교

대의원회라고 반장들이 반을 대표하고 그리고 학생 임원이 있고,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토의해요. 회의같이 한 달에 한 번 씩 계속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반에서 항상 반장이 학생들의 소리를 대변해주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윗선이 썩다기 보다는 좀 공정하죠. (중학생 참여자2)

✓ 학생 의견 결정 방법에 대한 문제 _ 다수결로 밀어부침

문제는 이제 이 혁신을 학생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주관해야 하는 일들을 다 학생들에게 넘기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다 과반수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중학생 참여자 1)

과반수라고 하는 건 A와 B그룹 중에 하나가 과반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 자체가 서로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더 많은 숫자를 점해서 누르는 그런 게

있어요. 강요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를 시도해보려고 할 때, 학생회 내부에서 좀 많이 막는 편이에요. (중학생 참여자 1)

✓ 특정한 소수 의견만을 반영하는 학생회 활동

중요한 거를 학생들이 많이 해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누구나하면은 학생회장하고 그 위쪽 그 사람들 뿐이거든요 하하. 그 사람들 의견만 받으니까. 애들하고 그냥 소통할 때는 의견을 받는데. ‘좀 중요한 일이다’ 하면은 그쪽만! 의견을 반영해요. 반영이 되었다고 한들 그런 소식 자체를 많이 못 들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지만 다수가 윗선의 다수 인거죠. 학생회에 있는 저도 목소리를 많이 못 내요 특히 3학년들이 다 주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3학년이 2학년, 1학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게 깔려있어요. 내가 말해봤자 안 될 거야 하는...(중학생 참여자1)

✓ 형식적인 학급회의

학급회의는 있어요.하지만 애들이 의견을 안 내요. (중학생 참여자1)

✓ 학생의 의견이 막히고 무산됨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게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련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웬지 모르게 계속 말이 막히고 있어요. (중학생 참여자 1)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어서 편한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애들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의견이 무산되는거죠.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커트하고,,이런 게 좀 있죠. (중학생 참여자2)

✓ 학교는 보호자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반영함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학부모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염색해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뭐, 귀걸이도 하고 싶다든가, 화장을 하고싶다든가, 머리를 길러보고 싶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보호자들이 분명 좋아하지 않을 거다 해서 보호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죠.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 학부모를 대신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데...(중학생 참여자1)

✓ 학생이 아닌 보호자에게만 의견조사하여 결정함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모들한테 학생이 염색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부모들한테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또 다른 투표를 해서 학생들은 화장이나 염색 이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에게는 아예 온라인 조사 이런 걸 안 했어요. 결정은 부모들 의견에 의해 결정된 거죠. (중학생 참여자 2)

(3) 신체의 자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 : 징계방과 학교폭력 사각지대

학교에서 신체의 자유는 폭력으로부터의 신체적 안녕과 구속에 대한 것으로 중학생 참여자에 따르면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대신에 징계방과 단체기합과 같은 간접적인 벌로 대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학폭위와 같이 학생 징계를 경고처럼 사용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한다. 문제는 중학생 참여자 1처럼 징계방으로 가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교사 위주의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이거나, 이에 대한 절차가 민주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 체벌을 대신한 단체기합과 벌

체벌은 없고 뒤에 나가서 서 있는 다거나 해요.(중학생 참여자 1)

체육 시간에 선생님께서 실내화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오거나. 아니면 체육복을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않은 이런 애들한테는 직접 벌칙을 시켜가지고, 뒤에 벌 서고 있거나 아니면 단체로 벌을 주세요. 단체로 예를 들어 자유폰에 수업을 더 하거나...(중학생 참여자 2)

✓ 징계를 경고 삼는 학생 관리

저희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관리하세요. 그 선생님이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너네 이렇게 행동하면 학폭에 걸리니까 이런 행동 안 하고 암전히 지내라~' 약간 권고인데 약간 강요같이 하시거든요.(중학생 참여자 2)

✓ 징계방에 가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음

일단은 권위주의적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학교는 징계방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경고를 받는 다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을 하면은 '징검다리'로 보낸다'에 동의서를 무조건적으로 내야해요. 그 문제는 이 징계방에 선생님들이 좀 막무가내로 집어넣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를 안 들어가면은 학폭위로 가는데, 학폭위는 학폭을 저질러야 들어가는 거고.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야 들어가는 그 규정들이 딱딱 되어있지만, 징계방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지각을 했다. 선생님한테 찍히는 행동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징계방 같은 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학생 참여자 1)

학교에서의 안전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침해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적절하게 학생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책무를 학교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신뢰하지 않았다. 중학생 참여자1에 따르면, 교사가 가장 기본적인 대처조

차도 하지 못하고, 가해행위자와 피해자를 직접 대면시켜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형식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사안을 호지부지 만든다고 지적한다.

중학생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의 상황에서 학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보호를 요청하더라도 묵살되거나 자신의 도움 요청을 의심받기 때문인데, 그래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핸드폰 효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폭력의 정황을 직접 녹화/녹음자료로 포착할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거두어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전환적으로 검토해주길 원했다.

✓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_ 2차 피해 양산

우리 학교,, 우리 반 담임선생님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좋으신 분인데. ‘학교가 (인권피해 사건처리를)잘 해줄 거다’ 라는 신뢰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작년? 반에서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이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하는 거에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적었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보니까 가해자랑 저랑 둘이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거면 왜 익명으로 보냈지? (중학생 참여자 1)

작년에 저희 반에 어떤 애가 계속 뺨서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피해자와 함께 불러요. ‘너, 이렇게 왜 했어? 너 왜 시켰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가해자들은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카메라로 들고 와서 찍든가 해야 하는데 핸드폰은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 효능이 없었거든요. 온라인 상으로 사이버 폭력이 있었을 때도 선생님께서 상담만 하시고 그냥 내보내면 그냥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예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호지부지 되어서 끝나는 일도 있었고. (중학생 참여자 1)

✓ 폭력의 사각지대와 휴대폰의 효용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니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호신용 호루라기... 막 소리내기도 하고,, 시계에 112 부르는 거... 학교에서의 사각지대를 많이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휴대폰 금지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휴대폰으로 다른 무언가를 잘못 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증거가 없잖아!’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중학생 참여자 1)

저도 그냥 너무 당연히 ‘휴대폰은 수업시간에 집중을 방해하니까. 안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각지대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피해받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으면 어떻게든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휴대폰에 대해서 너무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압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토의를 거쳐서... 휴대폰 금지를 사안을 검토해보는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참여자 2)

(4) 건강할 권리의 박탈 _ 체육과 신체활동의 심각한 제약

학교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할 시간과 공간, 활동 도구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건강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중학교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 영향을 받아 주로 국·영·수 중심의 교과를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참여자에 따르면, 1주일에 1시간 있는 창의스포츠 수업이 그나마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는 놀 공간도, 놀 기구도 없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축구장과 농구장의 시설은 열악하고 종종 폐쇄되어 있으며, 한정적인 시설은 서열에 따라 3학년의 차지가 되어 다른 학년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체육 교과 시간과 교과 외 시간에서의 신체활동은 모든 학생의 건강을 지

키는 핵심 활동이다. 학교에서 반드시 장려하고 촉진해야 하지만, 학생들은 일과 중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 붙들려 있는 현실이다.

✓ 국영수에만 매몰된 수업

수업시간은 모두 국, 수, 영로 올인해요. 요새는. 요즘 국영수에서 살짝 탈피를 해서 과학까지 늘었어요. 예체능 과목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적으로 기술가정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차 함수라던가, 2차 방정식이라던가. 회사나 그 쪽 계열을 다니는게 아니면은,, 그 쪽 계열을 다녀도 다시 배워야 할 판에... 실용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중학생 참여자 1)

✓ 1주일에 1시간의 유일한 탈출구

저희는 학교 앞에 공원 같은 게 있는데. 창의 스포츠 수업을 창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때 공원에 나와 가지고 선생님 감시하에 넓은 광장에서 애들이 즐겁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어요. 행사 때문에. 인권교육 같은 것은 창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창스가 다음 주로 연결되서 한 주에 두 번 나갈 수 있게 되어요~ 이제 그러면 애들은 탈출구가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만족스러워 해요. (중학생 참여자 2)

✓ 놀 공간과 놀 기구가 없음

일단은 놀 데가 없어요. 일단은 뭐, 놀고 싶은 애들은 많은데. 문제는 놀 곳이 없어요. 이제 복도에 평상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서 쉬라고 놓아뒀는데. 그나마 놀 공간은 있지 놀 게 없어요. 그럼 결국에 놀 수가 없어요. 뭔가 가져오면 압수예요. 하하..(중학생 참여자1)

✓ 열악한 시설의 축구장과 폐쇄된 농구장

일단은 축구장이 있고요. 거기 양 끝에 흙밭이 있고요. 모래밭이 있고요. 그 양 쪽 끝에 골대 두 개 박아두고 끝이에요. 하하. 아! 공 못 날라오게 펜스 같은 게 쳐져 있기는 해요. 끝이에요. 운동장 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막,, 쉽게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축구하는데 선도 안 그어져 있으니까 대충 막
어림잡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축구장에 축구공도 없어요. 농구장도 하나 있었는
데 그 지금은 그 중금속 발견되가지고 폐쇄 처리되고...(중학생 참여자1)

✓ 열쇠를 받아야 사용가능한 축구공

저희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배구공 축구공 야구공 이런 게 구비가 되어있는
데 그걸 쓰려면 선생님한테 열쇠를 받아서 열어야 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그냥
가지고 와요. 점심시간에,, (중학생 참여자2)

✓ 철봉 하나, 열악한 운동기구

일단 우리 학교는 철봉이 제가 1학년 때까지는 하나였어요. 일단은 2개를 가지
고,, 아 애초에 철봉 자체가 막 끌고 땡기는 그런 철봉이에요. 막 고정 시켜두
고 하는데 살짝 살짝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철봉을 안 쓰고요. 다
른 운동기구라 하면은 3층에 아령 몇 개 놔두었어요.(중학생 참여자1)

✓ 달마다 나누어 사용하는 실내 체육 공간

체육은 강당에서 하는데요. 학년 별로 날짜를 나누어서 몇 월부터 몇월까지는
1학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2학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3학년. 이렇게
해서 어,, 한 학년만 실내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학년은 이
제 날짜를 쪼개서 야외에서 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일단은 야외의 장점은 많이
뛰어놀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더워요. 실내는 에어컨 틀어주고 땀뻘
하게 틀어주고 하니까~ (중학생 참여자1)

✓ 한정적인 운동기구나 공간은 서열에 따라 3학년의 차지

운동장 변두리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 서열?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높은 학년이면 비켜달라고 함부로 말 못하고...
그래서 결국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운동기구는 3학년 선배들이 써버리기도 하
고. 그대로 기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도서관에는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걸 둔 공

간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거기 가서 책을 읽고... 그리고 거기가 따뜻하기도 하고요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래서 좋은데.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게 단점이에요. (중학생 참여자2)

학교에서 학생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방안은 학교 보건실이다. 아픈 학생에게 적절한 처치와 돌봄, 휴식을 제공한다. 휴게실이 따로 없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실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혁신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참여자 2는 보건실을 아픈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실에서 잠시 쉬었다가 교실에 복귀하거나 보건교사에게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학생 참여자 1의 지적처럼, 때때로 확인증과 같은 절차의 문제로 보건실의 사용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실 사용 때 불편한 절차

아프면 저는 보건실로 달려가요. 빨리 가는데. 문제는 제가 복통이 좀 자주와요. 그래 가지고 배가 아픈데,, 교실은 4층에 있고, 이제 보건실은 1층에 있는데, 보건 카드라고 해가지고 보건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고, 담임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셔야 제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그걸 받기 위해서 다시 4층까지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되게 못하겠더라고요. 절차가 좀 많이 불편해요. (중학생 참여자1)

(5)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_ 일회성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며, 인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모든 교과목에서 인권의 관점을 서술하고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도덕이나 사회 등 관련 교과목에서는 집중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교과과정은 도덕과 사회의 관련 과목에서조차 인권의 학습이 미약한 채로 끝나고 있다. 외부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은 일회성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효과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중학생 참여자에 따르면, 공부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 두시간의 프리젠테이션에 그치며, 심지어는 한 학년은 강당에, 다른 두 학년은 TV로 전교생이 단체로 시청한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은 매우 소수인데, 학생들이 진지하게 임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권교육 자체가 중학생들의 삶,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지적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인권교육을 하면 횡수를 많이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은 인권교육

저희 학교는 반마다 하는데, 강사가 오시고, 학생들은 이제 들으면서... 한 두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무슨 퀴즈 같은 거 내고, 그대로 끝나고~ 하하.. 공부하는 거 보다 낫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하하하(중학생 참여자 1)

✓ 모든 전교생이 한꺼번에 듣는 인권교육

저희는 강당에 한 학년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나머지 두 학년은 TV로 강의를 들어요. 공부하는 거 보다 낫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딱 그런 거 같아요. '지루해서 못 듣겠다' 이런 건 아는데 한 번쯤 다시 되새기면서 생각해보고... 그래도 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중학생 참여자 2)

✓ 열심히 듣는 학생은 소수

애들이 부류가 나뉘는데. 뒤에서 항상 강당 뒤 끝에서 앉아서 수업도 잘 안 하고 노는 애들, 강의를 잘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또 열심히 듣는 애들이 있는데 열심히 듣는 애들은 강의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뿐이지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강의를 끝나면 그냥 “강의가 끝났다 집에 가자~” 하하하. (중학생 참여자 2)

✓ 진지하게 임하고 싶지 않은 태도

애초에 애들이랑 토의를 하면은 진지해진다고 해요~ 하하하. 그래서 애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허무맹랑하다? 그러니까 좀 많이 넓은 이야기여서... 정확하게 이게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중학생 참여자 1)

✓ 그래도 좀 기억나는 인권교육

UN 인권선언 이런 거는 기억에 잘 안나는데,, 그래도 약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동양인에 대한 인식? 큰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수업했던 것은 기억에 남아요. (중학생 참여자 2)

✓ 효과가 별로 없는 인권교육

지금 그대로라면 일 년에 10번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중학생 참여자 1)

현재의 커리대로 하면 저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애들한테 충분히 스며들 것 같지는 않아요. (중학생 참여자 2)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학생 참여자 1은 청소년에게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면밀한 문제의식을 따라감으로써 인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될 수 있으며, 너무 거창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학교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중학생 참여자 2는 직접 체험하는 인권이슈로부터의 교육이 더 공감할 수 있으며, 공감하는 인권교육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 학생에게 박탈되는 권리를 알 수 있는 인권교육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푸념을 하면서 ‘아, 왜 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를 학교와 세상이 다 들어줄 수 없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안 되도 좋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런 권리가 없는 건가?’ 그런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인권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것에 대한 권리는 좀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하다보면은 권리를 알고,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알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중학생 참여자 1)

✓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권교육

일단은 인권교육을 제대로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하면 너무 엄청 거창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어려워 하는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좀 인권이라는 말을 좀 순화해서 뭐,, 인권을 학생 인권을, 학생자율? 자유? 그렇게 어쨌든 해가지고 좀 애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줬으면 해요. (중학생 참여자1)

✓ 체험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인권교육

솔직히 직접 해보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 저희도 체육을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 이유가 직접 해보잖아요. 경험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걸 좋

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 지 구분이 되는데, 인권교육 할 때는 피피티로 발표만 하시고 끝나니까. 애들이 ‘그래 인권이 이런 거지. 인종차별 이런 것도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네’ 파악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인권교육 강사님은 너무 거리를 두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힘들겠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라면 직접 그 사람의 하루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되면 좋겠어요. (중학생 참여자 2)

(6)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_ ‘인권보호관’을 알지 못함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구제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이자 인권정책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권보호관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그 제도를 알거나 조력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중학생 참여자 모두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다고 말했으며, 학생인권조례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역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력체계를 명확하게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력의 절차,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생 참여자들은 보호를 빌미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방안은 행동상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인권보호관 제도를 알지 못함

처음 들어요. (참여자 일동)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 참여자 1)

✓ 보호를 위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권리를 침해 받아 가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리니까,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받고, 보호를 받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호를 빙자 삼아 자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학생 참여자 1)

✓ 교사와 학생 모두 평등하게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이 필요

저는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한데. 최근 저희 학교에서 논란이 되었던 게,, 교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교사들의 권리도 보장을 받아야 하고 교사가 학생한테 가격당해서 피해를 입거나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너네도 인권이 있지만 우리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서로가 다 평등하다'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권이랑 학생인권 둘 다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자세한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참여자 2)

3. 고등학생

1) 설문지 조사 결과

(1) 고등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고등학생의 응답자는 총 1,250명이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60개 학교의 2학년 1개 반(반당 인원 25명)으로 약 1,325명의 예상인원을 구성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마감한 후 응답자 비율을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는 표본선정에서 예상한 인원의 구성비율과 실제 응답 인원의 구성비율이 크게 달라진 변동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상인원의 구성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경우는 중구가 유일한데, 예상보다 2배 가까이 구성비율이 증가하였다. 구성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진 경우가 서구로서 약 4%가 적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용진군의 경우 표본으로 선정한 인원 자체가 적기도 했지만 실제로 응답한 경우도 매우 적어서 구성비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29〉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표본 학교 수

| 지 역 | 학생수(N) | 표본 학교수(N) | 표본 | | 최종 응답 | |
|-----|--------|--------------|------|--------|-------|--------|
| | | | 예상인원 | 구성비(%) | 응답인원 | 구성비(%) |
| 강화군 | 1,665 | 1 | 25 | 1.7 | 22 | 1.8 |
| 계양구 | 6,901 | 7 | 175 | 11.7 | 147 | 11.8 |
| 남동구 | 11,218 | 8 | 200 | 13.3 | 174 | 13.9 |
| 동구 | 1,874 | 1 | 25 | 1.7 | 25 | 2 |

| | | | | | | |
|-------|--------|----|-------|------|-------|------|
| 미추홀구 | 9,245 | 7 | 175 | 11.7 | 127 | 10.2 |
| 부평구 | 10,910 | 10 | 250 | 16.7 | 214 | 17.1 |
| 서구 | 13,725 | 10 | 250 | 16.7 | 155 | 12.4 |
| 연수구 | 11,213 | 8 | 200 | 13.3 | 125 | 10 |
| 옹진군 | 241 | 1 | 25 | 1.7 | 4 | 0.3 |
| 중구 | 7,856 | 7 | 175 | 11.7 | 255 | 20.4 |
| 지역표시무 | - | - | - | - | 2 | 0.2 |
| 합계 | 74,848 | 53 | 1,325 | 100 | 1,250 | 100 |

고등학생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으로 응답한 학생이 674명으로 54.0%, ‘남성’으로 응답한 학생이 504명으로 40.3%, ‘선택하고 싶지 않다’로 응답한 학생이 70명으로 5.6%, 무응답이 2명, 0.15%로 나타났다.

학교의 설립형태별로 보면, 국공립 재학생은 711명으로 57.0%이며, 사립 학교 재학생은 537명으로 43%에 해당한다. 학교 유형(1) 별로 보면, 남여공학 재학생은 총 400명으로 32.1%이고, 여학교 재학생은 461명, 36.9%이며, 남학교 재학생은 387명, 31.0%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2)별로 보면, 일반고 재학생이 890명으로 64.8%를 차지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이 178명으로 14.3%, 특목고 재학생이 260명, 20.8%로 나타났다. 즉, 인천광역시 고등학생 응답자는 중학생 응답자와는 달리 국공립 재학생과 사립학교 재학생의 비율에 큰 격차가 나지 않고, 남여공학, 여학교, 남학교의 학생 비중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일반고 재학생이 약 65%의 비중을 차지한다.

고등학교 응답자 다수가 어머니,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동거율(88.4%)이 어머니 동거율(93.3%)보다 조금 낮으며, 형제자매가 있

는 경우는 79.5%이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9.8%로 나타났다. 친척과 사는 경우는 1.6%이며,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0.6%로 매우 적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는 18.8%였다.

지역적으로는 중구 거주자가 255명 20.4%로 가장 많고, 부평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로서 각각 17.1%, 13.9%, 12.4%, 11.8%의 비율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용진군과 강화군, 동구로 각각 0.3%, 1.8%, 2%로 나타났다.

〈표 3-30〉 고등학생 응답자 일반 특성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성 별 | 여성 | 674 | 54.0 |
| | 남성 | 504 | 40.4 |
| | 선택하고 싶지 않다 | 70 | 5.6 |
| 학교유형 | 일반고등학교 | 809 | 64.8 |
| | 특성화고등학교 | 178 | 14.3 |
| | 특목고등학교 | 260 | 20.8 |
| | 마이스터고등학교 | 1 | 0.1 |
| 설립형태 | 국·공립 | 711 | 57.0 |
| | 사립 | 537 | 43.0 |
| 공학여부 | 남여공학 | 400 | 32.1 |
| | 여학교 | 461 | 36.9 |
| | 남학교 | 387 | 31.0 |
| 동거인 (중복답변) | 어머니 | 1,164 | 93.3 |
| | 아버지 | 1,103 | 88.4 |
| | 형제/자매 | 992 | 79.5 |
| | 조부모 | 122 | 9.8 |
| | 친척 | 20 | 1.6 |

| | | | |
|-----|------|-----|------|
| | 공동생활 | 8 | 0.6 |
| | 반려동물 | 232 | 18.6 |
| 지 역 | 강화군 | 22 | 1.8 |
| | 계양구 | 147 | 11.8 |
| | 남동구 | 174 | 13.9 |
| | 동구 | 25 | 2.0 |
| | 미추홀구 | 127 | 10.2 |
| | 부평구 | 214 | 17.1 |
| | 서구 | 155 | 12.4 |
| | 연수구 | 125 | 10.0 |
| | 옹진군 | 4 | 0.3 |
| | 중구 | 255 | 20.4 |

*무응답 제외

(2) 인권 인식과 인권 행동

고등학생에게 총 6개의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으로서 스스로 견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 권리 의식을 질문하였다. 내용은 학생의 결정능력에 대한 인식, 학생의 사회·정치 문제 관심과 참여 인식, 의사표현 권리에 대한 인식, 국내 외국인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의견 반영과 학교일의 참여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 고등학생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민이자, 학교구성원의 주체로서 사회와 학교의 일에 참여해야 하며,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높았다.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가장 의견의 격차가 크게 났던 것은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24.9%, 중학생은 36.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었다. 고등학생 응답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인 54.9%가 교사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 비율에 비교했을 때, 주체로서 인정하는 입장이 훨씬 강하기는 하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 중 45.1%인 564명은 여전히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의사를 결정하기에는 미성숙한 존재이고, 따라서 교사와 성인이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 동의하고 있다. 학생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규범이 아직 교실에서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문항을 살펴보면, 고등학생 응답자가 견지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항에 각각 98.8%, 97.6%, 98.4%의 고등학생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학생이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45.1%로 나타났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학교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은 중요한 주체로서 학교 일에 참여하고 학교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95.9%로, 대다수의 고등학생 응답자들이 아동·청소년도 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아동·청소년에게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7.1%였다. 부정적인 의견도 1~4%로 제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높은 인권 의식을 보여준다.

〈표 3-31〉 고등학생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44 (3.5) | 520 (41.6) | 429 (34.3) | 257 (20.6) |
|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596 (47.7) | 603 (48.2) | 41 (3.3) | 10 (0.8) |
|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955 (76.6) | 277 (22.2) | 9 (0.7) | 6 (0.5) |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829 (66.6) | 380 (30.5) | 25 (2.0) | 11 (0.9) |
|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906 (72.5) | 324 (25.9) | 12 (1.0) | 7 (0.6) |
|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833 (66.7) | 386 (30.9) | 23 (1.8) | 7 (0.6) |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국제적 인권문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고등학생 응답자들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처음 듣거나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이 각각 450명, 36.0%, 477명, 38.2%로 나타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내용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1명, 22.5%, ‘자세히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명, 3.4%에 불과하였다.

또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 처음 듣거나 이름만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84명, 6.7%, 430명, 34.5%였고, 일부 내용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680명, 54.5%, 자세히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명, 4.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응답자 역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자처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권의 목록과 국가의 책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문서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제목만 들어본 응답자 비율이 74.2%에 이른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이 추상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3-32〉 고등학생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질 문 | 응답 | | | |
|-----------------------|----------------|-----------------|---------------|----------------|
| | 처음 듣는다 N(%) | 이름만 들었다 N(%) | 일부 안다 N(%) | 자세히 안다 N(%) |
| 유엔아동권리협약 | 450 (36.0) | 477 (38.2) | 281 (22.5) | 42 (3.4) |
|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인권내용 | 84 (6.7) | 430 (34.5) | 680 (54.5) | 54 (4.3)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고등학생 응답자 중 91.2%인 1,140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상당히 높은 인권 의식을 구체적인 인권행동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표적화된 심도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3-33〉 고등학생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 편이다 N(%) | 필요없는 편이다 N(%) | 전혀 필요없다 N(%) |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조례가 필요하다. | 373 (29.8) | 767 (61.4) | 93 (7.4) | 17 (1.4) |

인권 의식이 단순히 ‘인권이 있다’의 언명으로만 구성되면 인권 행동으로의 동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인권 의식은 일상의 생활과 구체적인 제도, 국가의 책무와 연결되어 다각적으로 주요 쟁점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야 입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이고 사회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목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인권 의식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가치를 체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향하는데, 인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 즉 혐오표현 사용자제, 혐오표현 사용금지, 인권침해 반대, 학교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질문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행위인 혐오표현에 대처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과 주위의 혐오표현 사용을 제지하는 행동으로 질문하였다.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변을 한 고등학생 응답자는 1,182명으로 94.6%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82명으로 78.7%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21.3%인 266명이 말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제지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신에게 따르는 위

힘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제하는 것과 타인을 제지하는 것과의 간극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 행동의 차원으로서 목표가 되는 지점이다.

최근 학교에서 차별적인 언행과 혐오표현, 비하 표현이 교실에서 확산되고 있고, 특히 단체 카카오톡과 같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혐오와 차별, 폭력인 언어가 난무하고 이를 공유하는 상황은 인권 의식이 견인해야 하는 인권 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인권침해에 저항하고 타인의 회복을 위해 조력할 것인지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로 물어본 결과, 고등학생 응답자의 88.2%인 1,102명이 ‘그렇다’고 긍정 답변을 했다. 혐오표현을 저지한다는 행동의 응답률보다 피해 입은 친구를 돕고자 하는 행동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 행동을 과감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관계’에 따른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거나 행동이 더 촉진되기 때문에 이 관계의 영역, 경계를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내면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 돌봄의 관계와 의미를 토대로 구축해야 한다. “학교나 사회의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의 문항에 8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보다 조금 낮아진 71.2% 889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의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 조력하고자 하는 노력, 인권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실천의 내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인권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권 행동에 거리를 두는 답변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을 자제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5.4%, 혐오표현을 제지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21.3%,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11.7%, 학교나 사회에서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13.6%, 이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28.9%에게 어떤 높은 문턱과 방해물이 놓여있는지를 이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가담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주요 경로는 무엇인지, 또한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연루하게 되는 이유와 그렇게 되는 주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표 3-34〉 고등학생 응답자의 인권행동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557 (44.6) | 625 (50.0) | 55 (4.4) | 13 (1.1) |
|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296 (23.7) | 686 (55.0) | 241 (19.3) | 25 (2.0) |
|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314 (25.1) | 788 (63.1) | 133 (10.6) | 14 (1.1)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411 (32.9) | 667 (53.4) | 146 (11.7) | 24 (1.9)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290 (23.2) | 599 (48.0) | 323 (25.9) | 37 (3.0) |

(3) 학교생활과 자유권

학교생활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간의 협동분위기, 학생 간의

존중, 교사의 학생 존중, 즐거운 학교, 교사의 학생 행복 관심도와 학교에서 느끼는 인권존중감 등 6가지로 질문하였다. 6가지 항목 전체가 긍정적 답변 비율이 고등학생 응답자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서로 비교해보면, 긍정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항목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로 응답자의 79.5%인 992명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되는 것은 “선생님이 우리 행복에 관심이 있다”로 82.6%인 1,03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학교구성원들간에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다”에 대해서 82.8%인 1,034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학교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응답이 94%인 1,174명이었고, 선생님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응답 역시 90.4%인 1,127명으로 높았다. 또한 고등학생 응답자들 중 91.8%인 1,145명이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입시 위주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만, 고등학교 응답자에게 학교는 자신을 존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장소로 확인된다.

물론 학교생활에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친구들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6.0%)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9.6%), 학생에 행복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선생님(17.3%)이 있는 학교,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아닌 학교(17.2%)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8.2%),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20.5%)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학교에 가는 일”은 학

생의 행복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초등학생 응답자와는 달리 중학생 응답자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응답자에게서도 상대적으로 이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중학교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응답자의 조사 결과,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서는 학업이 중시되는 학교에 가는 즐거움은 어느 정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현장은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거나 완력을 써서 개입하는 학생지도방식을 택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교사의 인권 의식 또한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 역시 학업 중심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인권침해의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자 “인권 존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존중받는 느낌과 존중의 내용’은 다른 내용과 다른 수준으로 구성될 것이다. 인권 개념이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인권 존중’은 어떤 개념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논의함으로써 생각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표 3-35〉 고등학생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262 (21.0) | 772 (61.8) | 174 (13.9) | 41 (3.3) |
| 학교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 497 (39.8) | 677 (54.2) | 66 (5.3) | 9 (0.7) |
|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했다. | 383 (30.7) | 744 (59.7) | 92 (7.4) | 28 (2.2) |
|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 343 (27.5) | 649 (52.0) | 194 (15.5) | 62 (5.0) |
|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 297 (23.8) | 734 (58.8) | 174 (13.9) | 43 (3.4) |
|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었다. | 403 (32.3) | 742 (59.5) | 72 (5.8) | 30 (2.4) |

따라서 학교 시설과 공간에 대한 요구 역시 학습권을 비롯하여 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시설은 물리적인 환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질과 관계의 수준을 담아내고 촉진한다. 고등학생 응답자에게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2019년을 기준으로 1~3순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고등학생 응답자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응답한 내용은 초등학생 응답자와 중학생 응답자의 결과와 동일하다.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1순위, 청결한 화장실이 2순위,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이 3순위를 차지했다.

모든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학교가 학생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휴식공간과 청결한 화장실,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권리와 연결된다. 충분한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탈의실 역시도 건강을 유지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다.

〈표 3-36〉 고등학생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탈의실 | 106 (9.0) | 81 (7.0) | 103 (9.1) | 583 (8.4) |
| 샤워실 | 62 (5.3) | 69 (6.0) | 70 (6.2) | 394 (5.7) |
| 휴식공간 | 288 (24.5) | 247 (21.4) | 236 (21.0) | 1,594 (22.9)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124 (10.6) | 112 (9.7) | 140 (12.4) | 736 (10.6) |
| 장애인 편의시설 | 102 (8.7) | 99 (8.6) | 108 (9.6) | 612 (8.8) |
| 청결한 화장실 | 258 (22.0) | 219 (18.9) | 131 (11.6) | 1,343 (19.3)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37 (3.1) | 83 (7.2) | 115 (10.2) | 392 (5.6)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195 (16.6) | 244 (21.1) | 222 (19.7) | 1,295 (18.6) |
| 기타 | 3 (0.3) | 2 (0.2) | 1 (0.1) | 14 (0.2) |

학교가 학업만을 위주로 하여 딱딱한 책상과 의자가 있는 교실을 학교시설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학교가 질 높은 사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선도해야 하는 과업을 받았다. 학생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학교에서 실현되어야 할 자유권을 총 10개의 항목으로 질문했을 때, 긍정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개인정보를 학생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은 87.4%, 636명이고,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답변은 12.6% 92명이었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면서 학교에서도 개인정보 공개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개의 자유권 관련 항목 중에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고등학생 응답자의 84.5%인 1,057명이 여전히 학교에서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대해 통제받다고 응답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장과 두발, 용모에 대한 지도는 “학생다움”에 대한 훈육으로 정당한 학교의 지도 사안으로 간주되지만, “학생답게”라는 규범을 통해 정당화되는 용모의 지도는 학생다움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면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에 대한 통제와 간섭까지도 당연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와 규범을 재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자유권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누구나 대표로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다”고 답을 한 비율은 1,077명 86.2%이며, “정기적인 학급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답은 1,022명으로 82%였다. “학생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긍정적 대답도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929명 74.5%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교가 규칙과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응답자도 957명 76.6%이었다.

전반적으로 긍정답변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대표로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으나 활동이 자유로울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할지는 추후의 문제가 되면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른 항목에 비해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높지만, 부정적 답변의 비율도 상당한 편이다. 여전히 자유롭게 반의 대표가 되지 못하거나(13.8%), 학생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며(25.5%), 실질적으로 학급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18%), 학교가 규칙이나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23.3%) 응답했기 때문이다.

자유권에서 가장 핵심이기도 한 의견표명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 의견표명이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8.6%, 82.3%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집단적 표명이 자유롭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21.4%, 17.8%를 차지했다. 학교의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 자유롭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70%대를 기록하고 있어 특히 학교에서의 미투운동 때처럼 학교안의 사안을 공론화하고 집단적으로 함께 행동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넘어야 할 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통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23.6%인 203명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두발과 복장)”에 대한 통제(84.5%)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의 참여는 처벌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을 감행하기 어렵다. 의사표현권에서의 명백한 제한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이 가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계속 유예시키는 보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경험하고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

인권 그 자체이기도 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고등학생 응답자의 79.0%인 984명이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을 한 반면에, 21.0%인 262명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대부분 1년에 1회 1~2시간씩 강당에서 대규모의 학생이 참석하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일종의 행사처럼 시행하는 현실을 적어도 학급별로 개선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인권 이슈를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3-37〉 고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자유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는 아침 등교시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지도했다. | 453 (36.2) | 604 (48.3) | 152 (12.2) | 41 (3.3) |
| 학생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227 (18.2) | 702 (56.3) | 257 (20.6) | 61 (4.9) |
| 누구나 반 대표가 되어 활동할 수 있었다. | 446 (35.7) | 631 (50.5) | 136 (10.9) | 36 (2.9) |
| 학교는 학교 규칙과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했다. | 279 (22.3) | 678 (54.3) | 219 (17.5) | 73 (5.8) |
| 학생들은 정기적인 학급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271 (21.7) | 751 (60.3) | 192 (15.4) | 32 (2.6) |

| | | | | |
|--|---------------|---------------|---------------|---------------|
|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251 (20.1) | 729 (58.5) | 224 (18.0) | 43 (3.4) |
|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243 (19.5) | 784 (62.8) | 188 (15.1) | 34 (2.7) |
|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76 (6.1) | 227 (18.2) | 497 (39.9) | 447 (35.8) |
| 학교는 학생 동의없이 개인정보(가족관계, 가정형편, 성적 등)를 공개하지 않았다.* | 316 (43.4) | 320 (44.0) | 73 (10.0) | 19 (2.6) |
| 내가 받은 인권교육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09 (16.8) | 775 (62.2) | 189 (15.2) | 72 (5.8) |

주) * 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응답으로 “공개한 적 없음”에 응답한 521명이 분석에서 제외됨.

(4) 차별과 폭력피해 경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성별과 경제적 배경, 성적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성별 차이나 종교의 상이함, 성적의 격차, 경제적 배경의 격차 등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서 이미 구조화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순위와 서열을 전제로 집단과 집단의 성원을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권력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기때문에 집단 간의 차이는 공정함을 담보하는 ‘능력과 노력’의 차이의 일종으로 해석되면서 차이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화적으로 정당화되는 맥락이 작동한다. 차별의 구조적 조건이 견고하게 유지될수록 차별의 이슈를 드러내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학교에서의 차별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야기하기보다는 은근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지속된다.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별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도, 문제제기하는 것도 하지 못할 수 있다. 고등학생 응답자가 경험한 차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성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로 나타났다. “성적에 상관없

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은 883명, 70.7%이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66명, 29.3%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에 대해 초등학생 응답자의 부정적 답변은 8.3%에 낮았으나, 중학생 응답자의 경우는 14.7%로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보다 2배 더 높은 29.3%로 나타났다. 학업과 성적이 학교에서 핵심이 되는 상급학교일수록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적 대우는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성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교문화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우열반’의 운영처럼 차별로 인식되기보다는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합리화되거나,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공정한 대가로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교육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 조건과 학습의 기회가 성적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는 차별은 ‘성적’에 숨은 구조적인 출발선의 차이, 즉 사회의 불평등한 격차를 더 크게 벌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뒤쳐진 사람으로 취급되어 스스로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하며 또 다른 불리함에 내몰리게 된다.

이 외에 고등학생 응답자의 부정 답변이 높았던 항목은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문항으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119명, 9.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초등학생의 경우 1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는 12.6%로 성적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받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오면서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차별이 지속되면서 차별이 내면화되는 효과나 차별에 대한 내성 때문에 차별을 인식하는 수준이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종교에 대한 부정적 답변 역시 2.6%에 불과하

였는데, 이 수치 안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알아차리지 못한 차별은 없는지 질문도 필요하다.

〈표 3-38〉 고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학교나 선생님은 성별(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1,130 (90.5) | 119 (9.5) |
| 학교나 선생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1,217 (97.4) | 32 (2.6) |
|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883 (70.7) | 366 (29.3) |
| 학교나 선생님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1,217 (97.4) | 32 (2.6)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은 신체의 자유와 안녕을 침해하는 폭력피해이다.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친구와 선후배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그리고 성폭력 등 5가지 항목으로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응답자의 12.1%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를, 1.4%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보고했다.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은 9.5%, 체벌을 포함한 신체폭력 경험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은 0.8%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 경험은 또래와 선배로부터의 언어폭력인데, 응답자의 7.6%는 1년에 1~회, 2.6%는 한 달에 1~2회, 1.9%는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의 경우 응답자의

0.8%는 1년에 1~회, 0.4%는 한 달에 1~2회, 0.2%는 한 주에 1회 이상으로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학생들간의 신체폭력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39〉 고등학생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경험 (욕설, 비하적 표현 등) | 1,098 (87.8) | 95 (7.6) | 33 (2.6) | 24 (1.9) |
|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경험 (단체기합 포함) | 1,231 (98.6) | 10 (0.8) | 5 (0.4) | 3 (0.2) |
| 교사로부터 언어폭력피해 경험 (욕설, 비하적 표현 등) | 1,130 (90.5) | 90 (7.2) | 13 (1.0) | 16 (1.3) |
|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의 벌) | 1,184 (94.7) | 38 (3.0) | 16 (1.3) | 12 (1.0) |
| 성폭력피해 경험 | 1,239 (99.3) | 6 (0.5) | 1 (0.1) | 2 (0.2) |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의 피해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2%가 1년에 1~2회, 1.0%가 한 달에 1~2회, 1.3%가 한 주에 1회 이상 빈번하게 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교사로부터의 신체폭력 피해는 5.3%로, 응답자의 3.0%가 1년에 1~2회, 1.3%가 한 달에 1~2회, 1.0%가 한 주에 1회 이상 빈번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체벌 방식으로는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가 50%이고, 손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가 37.5%,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의 벌이 12.5%로 나타나, 아직도 교사의 체벌이 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0〉 고등학생이 응답한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의 벌) | 1,184 (94.7) | 38 (3.0) | 16 (1.3) | 12 (1.0) |
| 교사 체벌 방식 | | 응답 N(%) | | |
|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맞음 | | 16 (50.0) | | |
| 손, 발 등을 이용해서 맞음 | | 12 (37.5) | | |
|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을 받음 | | 4 (12.5) | | |
| 기타 | | 0 (0.0) | | |
| 합계 | | 32 (100) | | |

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0.7%가 보고되고 있는데, 0.5%가 1년에 1~2회, 0.1%가 한 달에 1~2회, 0.2%가 한 주에 1회 이상 빈번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응답자가 지목한 가해자는 50%가 선후배 및 동급생의 학생이고, 33.3%가 교사이며, 외부 사람도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폭력의 이슈를 인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폭력과 신체폭력, 그리고 언어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정책 등 제도적 방안뿐만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3-41〉 고등학생이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 한번도 없음 | 1년에 1~2회 | 한달에 1~2회 | 한 주에 1회 이상 |
| 학교에서 성폭력피해 경험 | 1,239 (99.3) | 6 (0.5) | 1 (0.1) | 2 (0.2) |

| 학교에서의 성폭력 가해자 | 응답 N(%) |
|-----------------|----------|
| 학생(선후배 및 동급생) | 6 (50.0) |
| 선생님(교장, 교감, 교사) | 4 (33.3) |
| 학교 직원 | 0 (0.0) |
| 외부 사람 | 2 (16.7) |
| 기타 | 0 (0.0) |
| 합계 | 12 (100) |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해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 체계로서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도화되어있는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인지 여부’와 ‘비밀보장’, ‘상담경험’을 질문하였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등학생 응답자 중 59.8%인 745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75.0%인 937명이 학생인권보호관과 상담하게 되면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40.2%인 501명에 이르고, 상담할 때 비밀이 지켜지거나 불이익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25%로 나타났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고등학생 응답자는 7.1%인 89명이었다.

중학생 응답자에 비해 고등학생 응답자가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학생 응답자 비율은 69.3%이지만, 고등학생은 이보다 약 10%가 낮은 59.8%였다. 이 제도를 많은 학생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회복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회복과정에서

의 많은 관련된 사람들의 공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침해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비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구성원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

〈표 3-42〉 고등학생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학생인권보호관제도(상담 및 구제)에 대해 알고 있다. | 745 (59.8) | 501 (40.2) |
| 학생인권보호관과의 상담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937 (75.0) | 312 (25.0) |
| 2019년에 학생인권보호관에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 89 (7.1) | 1,157 (92.9) |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고등학생의 실제적인 인권실태를 들어보고자 본 조사에서는 FGI를 진행하였다. FGI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으로 총 4명이며, 이들은 모두 인문계 재학생이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인권침해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장실습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FGI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대안으로 이 이슈를 잘 이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해줄 활동가 집단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인 2명에게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권 이슈를 질문하고 함께 논의하였다.

(1) 우리에게 ‘인권’이란? : 일상의 삶과 사회의 이슈

중학생 인터뷰에서 평소 인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인권교육하는 날에 비로소 듣게 된다는 면접 결과와는 달리 고등학생 참여자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때 인권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국내외 인권 이슈를 접하게 될 때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중에서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의 삶,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권의 사안들을 접하고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선생님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할 때

저는 인권이 무시되거나 훼손될 때. 그때 좀 인권이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순간인 거 같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좀 없을지라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무시할 때가 많으신데 그럴 때 마다 좀 아,, 이게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저는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가볍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다거나, 좀 무시하는 말을 했다’ 하면서 좀 친구들끼리 가볍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권이 침해받고 있구나! 이런 거가 좀 들게 되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4)

✓ 국제적 인권침해문제에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던가, 카펫 공장... 노동권에 대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제일 관심있는 건 난민 문제인데. 보다 보면 아~ 이게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건지가,, 아니면 내가 인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 가부장적인 집안과 어머니 삶에서

저희 집은 정말로 여성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일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집안? 그래서 인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많고. 또 어머니께서 비정규직 노동자이셔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런 거 이야기하는 노동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가 가끔씩 있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가족의 일터와 관련된 인권 이슈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 아이들이 사실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아이들이 물론,, 지역아동센터라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전문적인 공간이어야 하지만 그 공간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저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2)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의 침해 _ 목살되는 학생회 의견

고등학교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생활에서 용모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단정한 차림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

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교칙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침해받지 않을 자신의 삶,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도 긴장감을 주고 충돌하는 상황이 야기된다. 상대적으로 편한 차림으로 등교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복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등 고등학생 역시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용모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 중학생과는 달리 고등학생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의 특성은 이러한 제약을 학생들의 의견표명, 즉 자치활동인 학생회 활동을 통해 어떻게 바꾸고자 했는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은 학생들이 염색을 자유화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고,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간고사 일정 문제를 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나 묵살된 경험을 토로하면서 아직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학생자치권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달리 많이 인정되고 확대되고 있어 학생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를 뽑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할 수 없는 점,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이 형식적인 면, 학생회 활동상의 여러 제한점이 크게 해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참여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소수의 학생회 임원들만 참여하게 되는 한계, 특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어렵고,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나 공감미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학생회 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내용과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

✓ 옷차림에 대한 규제

그냥 체육복 입은 애들만 혼나는? 치마 짧아도 안 잡으시고,, 체육복만 잡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체육복이나 화장하거나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슬리퍼 신고오면요.(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 학생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반영은 안됨

교칙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학생 의견을 듣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염색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눈에 잘 안 띄는 염색은 허용한다. 하지만 원색계열의 염색은 안 된다!’ 고.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원색 계열까지 완전 자유화하자!’ 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원색계열은 안 된다’ 는 결과가 나온 거죠. 선생님의 결정이 어쨌든 최종이 되었어요.(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학생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가 일주일 뒤로 밀렸다가 선생님들이 다시 일주일 앞으로 당긴 그런 일이 있었어요. 2학년 학생들이 불만이 많아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98% 가까이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 했고, 이제 학교에 전달을 하러 갔죠. 학년 부장님께서 이제 교감선생님이랑 그,, 부장님들을 모여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략) 의견을 학생대표로서 표명을 했는데 그거를 아직 학교가 아직 받아줄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저희는 나름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보겠다! 의견 반영해보겠다! 하고 열심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설문지 작성하고 통계내고, 건의문 쓰고 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런 걸 다 해내고 했는데.(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 학생회 학생들이만 하게 되는 학생자치

학생회를 하면서 일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힘든 게 정말 사실이고... 만약 일반 학생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모인 거고, 그런 집단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끼리 무언가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학급회를 활성화 해보자! 학년장을 만들어보자! 우리(학생회)끼리만 이려고,, 제도 변화를 위해서 쓰는 보고서도 저희끼리(학생회) 작성을 하고,, 좀 많이 그런 게 많이 힘든 거 같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요즘에는 학급 회의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근데 그래도 학생회에서 대의원 회의도 잘 하고,, 교복 관련해서 위원회 학생들도 들어가고, 그런 거는 진짜 학생회에 딱 속한 애들은 정말 부담이 잘 되는데 그 외에 학생들은 딱히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 한 자리는 없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 예산도 없고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도 어려운 학생회 활동

학생회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시민으로서 자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학생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예산상으로 뒷받쳐 주지 못 한다라는 거에서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야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이야기를 한 게, 저희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시민이 되면 국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그걸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 학생자치에 공감하지 않는 선생님

선생님들이 학생자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맞고 이게 합당한 길이면.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다. 너네가 나설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할 게’ 이러시고, 우리 학생 자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자원이 아닌 업무니까, 거기서 비록 왔지만, 첫인상을 이렇게(피곤하다는 표정) 시작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권 이슈의 쟁점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차별과 학교 내의 차별,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한 노동권과 학습권 침해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침해 내용이 심각하여 학생회 자치권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경우 생사가 걸린 취업의 문제에서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 내 문제에 학생의 목소리를 내는데 매우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입되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활용되지 않는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당면한 현실적인 취업문제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자치권과 학생회 활동이 학교 생활의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다.

✓ 생사가 걸린 취업 추천 앞에서 더 망설여지는 활동

특성화고는 생사가 걸린 취업의 권한을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추천 안 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취업도 어렵고, 뭐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어’가 되는 거죠. 학생회가 있어도 거기조차도 취업에 대해 작동을 하죠. (활동가 2)

(3) 멀기만 한 ‘피해회복의 권리’ _ 미투 사건이 남긴 것

학교에서 안전할 권리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받았을 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직접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다수의 학생은 소수인 폭력의 피해자가 보호되고 회복되는 과정,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사과하며 합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통해 바뀌어 가는 과정을 목도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안전함을 인지하게 되고 감각으로서도 체현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자체의 비율을 근거로 안전함의 수준을 논하는 것보다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 과정과 학교라는 공동체 안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로부터 안전한 감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학교에서 성폭력에 대한 미투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현실상 여전히 ‘어려운 말하기’에 속하는 것을 발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폭력이 없는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미투운동에 대한 경험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갖는데, 특히 안전하지 않았던 폭력의 경험을 문제제기 했을 때, 학교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터뷰한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중 중학교에서 미투운동을 경험한 학생이 있었다. 그 참여자의 이야기 안에는 대자보가 뜯기는 경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무시되고 금지된 침해 경험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자의 반성이나 사과, 합당한 조치 없이 학교로 돌아왔음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학교에서의 안전함은 크게 훼손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처럼,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험한 현실에서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폭력의 피해가 말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기 힘들다.

✓ 미투 사건의 경험 _ 찢기고 떼인 대자보

(중학교 미투 운동때) 대자보를 다 떼셨어요. 붙여 놓으면 떼고, 붙여 놓으면 떼고. 포스트잇을 계단에다가 붙였거든요. 여학생들이 다 붙였는데 그걸 남자 애들이 떼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붙여 있는 대자보를 보면 떼서 찢어서 가져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데없이 엄청 큰 대자보가 붙었던 기억이 나요. 2학년 친구들이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 대자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라고 붙여둔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투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는 했는데 학교 쪽에서 긍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대자보를 떼자.'였어요. 잘못된 선생님이 부끄러운게 아니라 학생들이 부끄럽다는 거구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미투 사건의 경험 _ 피해 자체를 희화한 여자 선생님

실제로 그 미투운동 당시에 저희 역사 선생님께서 여자분이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런 소리 좀 들은 게 뭐라고~ 그렇게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를 시끄럽게 하나! 너네 이거 기분 나쁘다고 교원평가에 쓰는 거 아니지? 쓰면 안된다.' 이러시는데 이게 피해 자체를 희화화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그래서 제가 듣고 황당해서 제가 21세기에 있는 게 맞나?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근데 반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만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깔깔 웃는 거예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미투 사건의 경험 _ 사과도 없고 합당한 처벌도 없음

사과는 일체 없었고, 그냥 선생님께서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신 게,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6개월 정직이라더라, 어떻게 되었다더라.' 그런데 결국 졸업하고 나서 들은 바로는 주로 몇 분께서 다시 학교에 복귀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문제 제기된 선생님 자체가 처벌을 안 받고 계속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미투 사건의 경험_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현실

이제 머리로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걸 말했어요, 그 선생님이 또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생기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실까봐 말을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 상담에 성실하지 않은 선생님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 좋겠어요. 담임선생님과의 1:1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께서 상담에 그렇게... 뭐라고 해야하지? 신경을 써주시지는 않는 거 같아요. 상담하는 친구들을 좀 안 좋게 보기도 하고요, 또래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4) 건강할 권리의 박탈 _ 신체활동 못하고 ‘쪽잠’자는 생활

대학진학이라는 목표가 명확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은 ‘심각한 수준의 시달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중 상대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며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부가적으로 보장되면 좋으나 필수적인 권리는 아닌’ 일종의 ‘사치스러운’ 권리로 오인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시간에 일정 제약을 두고 휴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이듯이 학생들에게도 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이다.

중학생 참여자의 인터뷰에서도 국·영·수 중심의 교과 운영으로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예체능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 놀 시간도 놀 공간도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토로되었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더 크기 때문에 휴식하며 신체활동을 통해 책상에 오랜 시간 묶인 몸을 풀어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함에 불구하고, 현실은 역시 교과과정에서 예체능 시간은 제

한되어 있으며, 운동장이 폐쇄되어 있거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에 대한 접근권과 사용권은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학교 공간에 대한 접근권과 사용권이 학생들에게 수평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쪽잠’을 잔다고 말한다. 쉴 곳을 찾아 유목민처럼 학교 이곳저곳을 떠돈다고도 한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중 매우 중요한 건강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 신체활동은 일주일에 한 두시간

체육은 일주일에 두 시간? 강당에서 하고 운동장은 거의 안써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저희도 운동장을 아예 안 쓰게 막아두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4)

✓ 쪽잠 사며 쉴 수 없는 학교 생활

쉬는 시간에 쪽잠자고 수업 다시 듣고... 수업 끝나면 또 자고, 점심시간에 맛 없으면 그 시간에 자고...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학교 생활

쉬는 시간에 체육관에서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아예 체육 쌤들이 썩 다 막아버렸어요. ‘시험기간인데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여기서 뭐하는 거냐?’ 하시더니 갑자기 ‘너네 이제 앞으로 쓰지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놀 때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뛰놀았다면 이제 교실에서 뛰놀게 되더라고요. 하하하. 그래서 교실에서 쪽잠자는 친구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4)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 부족

저희는 실내 휴게공간이 없거든요. 사물함을 교실 안에 안 두고 교실 밖에 두어서 사물함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쇼파랑 테이블을 놓고 애들을 쉴 수 있게 해 주는데 문제는 그 공간이 너무 너무 협소해서 휴식공간이 명목상으로는 있기는 있지만 거의 점심시간에 애들이 다 몰려요. 쉴 데가 없나?... 유목민처럼여기 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휴식 공간의 사용 금지

도서관 앞에도 휴게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거기서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교장실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어? 너 거기 쓰지마!' 이러면서 혼을 내셔서, 휴게 공간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걸 왜 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녹지대가) 조그마한 있기는 한데, 막아두었어요. 조그마한 연못? 연못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만들어두었는데. 조그마한 다리 있고,, 근데 그걸 다 막 아두었어요. 못쓰게. 왜 그런 거지?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또한,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규명함으로써 학교 정책과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안전할 권리 _ 안전한 등하교길

등하교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할 권리,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조금 교통이 안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 100명이 넘어가 는데도 노선이 한 개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5)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_ 다양한 차별의 내면화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처우받을 권리가 고등학교에서 더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의 사유는 성별, 문화적 배경, 경제적 수준, 종교, 용모 등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정체성이나 구분되는 배경으로 다양한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고등학생 역시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는데, 고등학교의 특이성은 특히 ‘성적’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사실 학교에 한정된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수치화된 성적과 성과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고, 그 평가에 따라 서열과 위계 속에 배치되는 위치는 각자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이거나 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중대한 목표가 되고, 그러한 목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삶의 기본 방식이자 과정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성적을 바탕으로 한 명문고, 명문대로의 진학하는 것을 학교의 목표 나아가 교육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는 상황이 차별로 인식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의 결과이거나 합리적인 선택 등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러한 학교와 교육의 목표는 그대로 학교구성원 모두의 목표로 사회화되고 동기화되므로 학생도 역시 성적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차별의 기준과 차별의 이유들을 수용하고 내면화한다.

고등학교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성적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른 처우가 당연시되어 있고, 고등학교 참여자 3의 지적처럼, 성적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과제도 다르며, 과제를 넘어 성적 등급에 따라 진학과 취업에 유리한 기회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달라진다.

학교와 사회에서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성별에 따라, 기타 학생들이 가진 차이에 따라 다르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사회적 낙인을 가하는 현실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쉽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언행과 태도를 심화시킨다. 성적이 공부에 대한 학생의 노력을 입증하는 유일한 ‘경쟁’이 되면서 학생 간의 관계 또한 성적에 따른 서열과 그 외의 다양한 차이를 둘러싼 위계로 인해, 진정성 있는 우정으로 돈독해지기보다는 차별로 이어지는 차이를 가시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의 말처럼 교실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글 안’과 같고, 각자도생하며 서로 견제하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 힘겨루기의 권력관계를 느끼게 되는 삭막한 곳이다.

교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태도와 언행을 일상의 경험으로 접하게 하고 축적하게 만드는 현실을 하루 속히 변화시켜야 한다.

✓ 성별에 따른 차별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이신 한데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소리지르고 욕하면서 싸우는 거를 남자애들한테는 그냥 ‘그러지마라!’ 정도로 지나가면서 여자애들한테는 ‘너네는 도대체 뭐가 문제니?’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봤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다문화 배경에 따른 차별

고등학교에는 없는데 중학교 때 다문화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좀 알게 모르게 놀리는 분위기가 되게 심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등급에 따른 차별이 자연스러운 곳

차이를 존중하기보다는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년 부장 선생님이 ‘자, 1등급은 독서록 20권 내야 해. 2등급은 10권 넣어. 3등급은 5권 넣고. 그 아래는 알아서 지방대 가면 돼’ 이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그래서 학생끼리는 오히려 뒷담? 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돈독해지는 게 있어요 서로. 공공의 적을 둔 것 같이...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 성적순으로, 진로분야에 따라 받는 차별

성적 순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해요. (참여자 모두)

진로가 어떤 분야 인가에 따라서 차별 받는 것도 없어야 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하이에나와 같이 정글에 있는 느낌

‘아, 재 진짜 별로야.’ 그게 저희 학교는 여고니까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 일 수도 있고. 성적순으로도 무시하고요. 진로 방향에서 이과애들이 ‘아, 재, 예 체능이잖아, 진짜 재는 성실하게 하지도 않는데 뭐가 저렇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저러느냐?’ 이렇게 깔보는 분위기도 많고. 그런데 막상 또 앞에 가면은 그걸 대놓고 표현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그냥 ‘그래. 안녕?’ 이려고. 정말 웃기지만... 하이에나 같은? 약간 정글에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묘한 거 같아요. 이게 그냥 다 편하게 지내면 되는 사이인데, 약간 서열이라는 게 벌써부터 생기는 거니까. 그게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다 생기거든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의 힘겨루기와 손가락질

학교에서는 친구들은 편한 사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고. 집단이라는 게 있고. 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를 해야 하고... 일정 선을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반에서 주류가 되는 친

구들이 있고, 비주류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비주류의 친구가 이 틀을 깨고
뭔가 자기가 튀려고 하면 주류 애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
여자 1)

✓ 차이를 가시화하며 주류가 독점하는 분위기

학교가 주류는 점점 더 주류가 되고, 비주류는 점점 더 비주류가 되는 걸 심
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차이를 가시화하는 기관이 학교인 거 같아요. 벌써
부터 애들이 '이런 행동은 주류 애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야.' 라고 하고, 비
주류 친구들은 주류에 들어가려고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되고... '주류가 향유
하는 문화가 따로 있고 비주류가 향유하는 문화가 따로 있고, 점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주류 문화가 이 주류
문화 기준을 다 나누어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 대중문화의 흐름을 애네가
주로 주류 친구들이 결정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
나도 윤리, 인권 이런 걸 어겨도 '항상 이걸 향유했던 거야! 이게 멋진 거야!
주류가 되려면 이걸 해야 해!' 라고 하고 생각없이 다 받아들이니깐,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더 깊고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연관되
어 있다. 활동가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미 뿌리깊게 '사회적으로 뒤쳐
진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부 못한 학생이 특
성화고에 진학한다는 생각은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견고한 사회적 편견이
자 차별이며, 이 차별은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한, '고졸'이라는 학력차별
과 이어져 노동시장에서의 가시적인 차별과 결합하여 삶 전반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한 수준도 높고
외현화된 차별의 장벽도 두껍다. 그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안에서도 인문
계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좋은 기회는 성적에 따라 분

배된다. 활동가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견고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숨기며, 사회적 낙인과 불리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특성화고는 여전히 취업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어 학원에서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활동가들은 일침한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취업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 특성화고 안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받기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 성적, 학력 차별로 '패배자' 인식이 내재화됨

제일 심한 건 자존감이죠. 언제부턴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어쨌든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했다는 이유로 비교 대상이 되고 이미 나는 루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심어주는 거죠. 심어주다 보니까,.. 스스로 심한 경우에는 어느 학교 다닌다는 걸 숨겨요.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도 중학교 성적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서도 과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무시하고,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런 우월 의식이 있고, 열등감을 느껴요. 전엔 그런 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과별로 차별성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조차도 이제 성적에 따라 인기있는 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적성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 과' 하면은 선생님들조차도 그 과에 들어가서는 막 잘 해주고, 다른 과에 가서는 막 무시하고... (활동가1)

삶이 없는 거죠. 산다는 거,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돈만 있으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내재화 되어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상세하게 등급을 매겨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요. 뭔가 차별이 많은데, 익숙하게 차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활동가1)

✓ 취업을 포함, 좋은 기회에 대한 추천은 성적순

마치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취업, 취업 명부라는 게 있는데 추천서 작성할 때, 전에는 성적 제일 앞에 키, 몸무게...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키하고 몸무게는 고발해서 없어졌어요. 남녀 고용 평등 고발해서 없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게 성적순이에요. 그래서 추천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체험 같은 거,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을 좀 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도 다 성적이에요. (활동가2)

✓ 취업률 60% 이상, 취업률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초래한 결과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취업률 목표가 60%였어요. 교육부에서 60%, 이렇게 다 해두고 취업률을 관리한 거죠. 교육청은 70%, 학교는 80%, 거기에 교장까지. 없애라고 했는데 인천도 아직 남아있어요. 교장이 취업률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아요. 현 정부 들어서 취업률을 60% 잡고, 똑같이 진거야.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교육부는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계에서 입시가 그걸 다 잡아먹듯이, 특성화고는 취업에 그걸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함께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또 소외되고, 특히 특성화고에서 전문대나 대학 가겠다는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진짜 학교가 왜 존재하는지...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활동가1)

✓ 대학진학을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학교 아닌 학원으로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어디 가서 ‘내가 기술을 배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양성이 된 직업인이예요’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다 보니까... 특성화고에서 상위권을 차지해서 좋은 취업 자리를 꿰차거나 아니면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학교는 또 취업률에 목매달고 있는. 그러다 보니 학교를 진학하고 싶어도 소외돼요. 그 와중에 취업률만 높이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 결국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지!’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학교의 방침이나 교육부의 방침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

당히 있는데 이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고, 학교는 여별로 다니고 자격증 따러 학원다니고 수능준비하러 학원 다녀요. 전문대계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수능학원이 따로 있어요. (활동가2)

✓ 고졸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자기가 훨씬 실력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대학 나와서 자기 보다 실무적으로 뒤 떨어졌는데도 고졸이라고 무시받고 차별을 받은 거죠. 이제 제도화되고 그러면서 학력 차별이 없어지고 제도화되고 그랬으면 이제 그게 순기능으로 작용이 되었을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보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승진에서 막히고, 각종 여러 가지로서 막히다 보니까 그만두고 대학을 가는 거죠. 대학 가느라 막상 은행을 그만 두었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흔히 괜찮은 곳에 갔다' 라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꼭 추적해보는 게 필요해요. 전에는 그게 좀 보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가1)

(6) 학습 받을 권리의 침해 _ 정해진 교과목과 열악한 현장실습

한국 사회에서 학습권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학습할 권리의 보장 수준을 흔히 의무교육 실시여부와 중·고등학교의 졸업률, 대학진학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FGI 인터뷰 결과에서 학습권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고에서는 정해진 교과목에 의해 배울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특성화고에서는 열악한 현장실습에 의해 배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교육이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아래 입시체제로 경쟁을 가속화할수록 학생들의 배울 기회는 제약된다.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에 따르면, '정시'를 선택하게 되면 정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한 집중도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또한 교과과정 구성은 이러한 입시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예체능을 선택한 소수의 학생들이 배울 권리는 더 많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극이나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을 진로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교의 선생님께서도 지도받거나 관련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학내에는 없다. 이미 학교에서 정한 전형적인 진학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의 지적처럼, 이미 입학하면서 계열별로 교과목은 확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배제된 과목은 전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예체능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공간을 학교 안에서 충분히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영수 중심으로 다른 과목을 배제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배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이는 특성화고에서도 견지되어야 한다.

✓ 입시에 따라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없음

정시로 준비하는 애들은 정말 학교생활이나 교과과정,, 뭐 창체시간 동아리 시간에 대한 집중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어차피 학교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예체능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목 무시

심각하다라고 침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게 약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진로가 예체능 쪽이라서 학교에서는 연극 쪽,, 을 하고 싶어하는데. 학교에서는 연극 관련해서 과목을 전혀 개설 해주고 있지 않고 있고, 실용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베이스를 하거나 보컬을 하는 친

구들은 학교에서 도무지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자퇴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원하는 과목을 들을 권리와 굉장히 침해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수학과목을 한 학년에 다 모아 넣어둬서 2학년은 수학공부를 하느라 대부분 보내는데~ 3학년에는 수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선택과목으로 실용수학이나 이런 걸 듣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보장해주는 수학 과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선택과목을 예를 들어서 드로잉이나 음악이 있어서 그걸 선택하고 싶어도 수학이 없으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걸 포기하고 혹시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실용수학이나 이런 걸 골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침해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계열별로 이미 정해놓은 교과목

학교에서는 아예 계열을 분류를 해서 문과 계열, 이과 계열 분류를 해서 이미 내가 내가 만약에 이공계 쪽으로 했다고 했는데 다~ 짜져 놓아요. 다 커리큘럼이 짜서만 나오니까 그것 선택을 해보야 '3학년 때 배우는 음악 배울래? 미술배울래?'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애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던 게 기억이 남아요.(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특성화고에서의 학습권 침해는 현장실습을 취업으로 간주함으로써 노동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대체하여 학습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이다. 활동가 2는 잡일, 허드렛일을 하고 오는 현장실습에 대해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허드렛일을 하는 노동자를 대신하는 현장실습이라면, 그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활동가 1은 현장실습이 오히려 학생의 수업일수를 단축하거나 단순하게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한다. 교육과정의

이수라는 의미인 졸업장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면서 2월의 졸업식이 11월과 12월까지 앞당겨지는 상황은 결국 현장실습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단순 잡일, 허드렛일을 하고 오는 현장실습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뭔가를 새로 배우고 ‘아! 나는 얻었어’ 라는 느낌을 어떻게 가져볼 수 있을까? 그냥 반복적인 작업,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반복하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학교에 돌아와서 도제 학습 배웠는데 ‘크게 배우는 건 없고, 계속 그냥 잡일, 허드렛일, 혹은 단순한 일해요.’라고 한다면... 이게 교육적으로 꼭 필요했던 거야? 라는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활동가2)

✓ 현장실습을 일자리로 보는 교육청

7월 말이나 8월, 8월 초 정도에 실습 3개월하고, 취업하고 연결되면은 짝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이걸 1개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까지도 일하는 걸로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기간을 맞췄어요. 이 기간 동안에 전공 교과는 실습으로 대체를 해요. 일반 교과는 대체하면 안 돼요. 이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취업교사들이 미루자. 그게 안 받아들여진 것은 이 업체가 바쁜거예요. 반도체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일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육청이 같이 ‘절대 안된다’ 해서 9월 8일날 (현장실습) 내 보냈어요. 위반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적이지 못하고 현장실습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교육감도 그렇고, 취업지원센터도 다 이걸 일자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학생들이 대거 지원 한 거예요. 군대 가기전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활동가 1)

✓ 앞당겨진 졸업식 _ 교육과정 이수 의미가 퇴색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게 교육이 해야하는 역할인데, 졸업장은 상기의 교육을...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수료했다고 해서 주는 게 졸업장이잖아요? 그 전에는 3분의 2를 못하면 유급이에요. 원래는 유급인데 우리나라는 유급제도 시행 못하니까 자퇴를 시켰어요. 그 일수 만큼의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3분의 2만 이수하면 되니까 그 시점부터는 취업을 해도 된다, 노동자가 되어도 된다, 근로계약을 쓰러 가도 된다, 이 말이 된거예요. 전에는 2월달에 졸업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11월 달에 되게 졸업식을 많이 해요. (활동가 1)

(7) 안전하게 일할 노동권의 침해 _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와 자살

이러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현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학생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활동가 1은 현장실습이 최근까지 취업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교육행정체계에서 ‘현장실습은 교육이고 실습생은 학생 신분’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한다. 이 와중에 도제제도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정체성은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더 모호하게 섞이게 되었는데, 이 도제는 문제시 되었던 현장실습을 학생들에게 오히려 1년 더 앞당겨 경험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 아닌 제도이며, 따라서 여전히 ‘학생인데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처하는 사회적 불리함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도제와 현장실습은 모두 열악한 노동

그러니까 현장실습이든 뭐든 다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안전보험법에 대상은 되는데, 도제 같은 경우에도 학습근로자라고 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되면 학습근로자고 고3인 현장실습생은 학생이예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너무 이상한 게 고등학교 2학년이 근로

자고 3학년이 학생이에요. 그 틈바구니를 타서 또 다시 들어오는 게 도제 학습인데, 도제는 오히려 현장실습보다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확 늘어나기도 해요. 도제학습과 현장실습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오히려 현장실습을 1학년 때 더 땡겨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거죠. (활동가1)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함 _ 임금이 아닌 훈련수당

1-2학년 때부터 계속 도제를 하고 3학년 때 까지 도제를 한 거예요. 도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회사를 일주일에 몇 번 나가요? 그랬더니 3-4번 정도 나간대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 도제를 해요. 그래서 '학교와 회사 둘 다 유지하기 되게 어렵겠어요' 라고 하니깐, '회사 끝나고 나서 또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반에서 4-5명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만 주는데요. 그런데 임금이 아니에요. 학생이라서 임금을 안 주고 훈련 수당으로 주는 거죠. (활동가2)

✓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오히려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함

전에는 임금이었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임금을 받았는데, 저번에 제주도에서 사건이 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학습중심의 현장 실습으로 바뀌면서, 껌데기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인데 실제로는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모순이 생기는 거죠. 훈련이다 보니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거고... 모순적이죠. (활동가1)

실제로 도제나 현장실습을 학생들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훈련수당으로 받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임금체불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강도와 감정노동 수준이 매우 강한 업종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손상이 심하게 남도록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는 산업재해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을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워 학

생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만, 산업현장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와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관할이 아니라고 다시 교육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고용노동부의 대응 과정은 학생들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일터에서 건강을 지킬 권리 모두를 위협한다.

활동가 2의 이야기처럼, 청소년인 학생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로 위험 직종과 야간근무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배치시키는 결과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인권침해이다.

✓ 실습하다가 죽거나 자살하게 제도

보다 열악하고, 보다 위험한 장소로 실습생을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명색이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물론 산재 공화국이니 실습생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습하다가 죽거나 자살하게 하는 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실습 이라는데 죽거나 다치는 건, 어쨌든 잘못된 제도이니깐 멈춰서 다시 생각해볼든가, 그만 해야하는 건데... 오히려 뭔가 문제를 보태서 그걸 계속 시행을 하는 거죠. (활동가1)

✓ 실효성 없는 법적 규제

위반 업종이 몇 개 나오면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사안을 옮기고,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혐의 없음' 나와요. 온갖 이유로 해서 '교육을 안했다거나,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거 안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통딱지 땠을 때, 싼 걸로 해주세요'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작동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실효성도 없고, 사고 날 때마다 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제 실효성이 없죠. 교육부가 교육을 붙들어야 하는데 기업을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기업은 노동부가 걱정을 해야하는데 교육부가 기업을... 이런 양상으로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엔 학생들의 권리는 더 취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활동가1)

✓ 교육청과 노동청의 책임 떠넘기기

도제는 취업을 약정을 하거든요. 졸업하면 그걸 마치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작년 1월 졸업생인데, 졸업을 했는데 자기가 했던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으니까 취업을 해야 하는 자리가 없어졌고, 그동안 수당을 못 받았어요.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노동청에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 지금 현장실습 관련해서도 ‘수당을 못 받았다’는 경우로 문제가 되어도 교육청은 모른다, 노동청은 개들은 학생이라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활동가1)

✓ 학생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장실습 일자리

(현장실습업체가) 야간도 하는데 3교대에요. 전에는 1월 달에 시켰는데 이게 앞당겨진 거죠. 그러면 이때는 학생들 시험도 있고 하는데 3교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문제제기하니까, 교육청 담당자 취업지원에서는 ‘3교대도 어찌 되었던 1시간만 연장해서 8시간이고, 교대하고 쉬고 하는 거는 건강에 염려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인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육감들 조차도 일자리로 인식하니까! 그나마라도 가는 거라도 어디냐는 입장이지요. 반도체 회사 노동강도가 굉장히 세요. 공황장애가 걸릴 정도의 노동이 있어요. (활동가1)

✓ 산업재해에 취약한 업종으로의 현장실습

도색작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현장실습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몇몇 업체가 있었어요. 도색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업종이잖아요! 보호장구 굉장히 잘 갖춰야 하고 그래도 위험하고 호흡기 관련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소재가 크고, 더군다나 신나나 이런 거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정성에 대해서 현장이 안전한가? 환기 시설이 잘 되어있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춰져있나? 근무시간은 적당한가?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가? 기아 자동차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사고도 도제 도장이고, 도장이 제일 열악하고 힘든데, 위험해서 원래는 순환 실습을 하게 되어있는 그러지 않고 거기서 계속 일 하다가 쓰러져 지금도 깨어나지를 못 하고 있어요. (활동가 2)

(8) 인권교육받을 권리의 요구 _ “어릴 때부터 더 많이, 교과목으로”

고등학생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인권교육 중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가 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집중적으로 받은 세계시민교육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학습한 것이었는데, 이는 고등학생 참여자 1과 4의 경험처럼, 사회와 법 관련 교과목에서 조항으로 잠깐 언급하고 개념만 암기하여 시험 보는 방식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연 1회의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다. 여학생 참여자 1도 학교에서 있었던 미투사건으로 1회의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회성의 교육보다는 사회 관련 교과목에서 인권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대안 중의 하나가 되겠지만, 이 또한 인권교육 할 교사와 인권교육과정, 그리고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 조항 몇 가지를 외우고 시험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집중적인 세계시민교육을 받음

중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하지만 그 때는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영어교과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저희한테 자유롭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세계시민교육을 해주겠다! 라고 하

서서 그 때 UN., 인권선언이나 그런 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한 2주간 계속 배웠던 거 같아요. 1주일에 2-3번씩.(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 **통합사회과목 중 헌법에서 기본법으로 잠깐 언급함**

그러니까 작년에 통합사회를 배울 때. 그때 이제 헌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본권 같은 거에 대해서 배우고 하면서, 이제 잠깐 언급하고. '시험에 중요하게 나온다' 해서 외우고 그냥 넘어갔던 거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고등학교 남학생 4)

✓ **정치와 법 과목 중 중요한 헌법 조항으로 강조하는데 그침**

저희는 이제 정치와 법을 탐구과목으로 배우는데. 정치와 법 시간에 헌법 제 1조1항,, 그런걸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서 시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조항이다! 라고 강조하고 넘어가셨던 거 같아요.(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교과시간에 단순하게 학습하고 시험 보는 방식의 인권교육 경험**

교과시간에, 사회시간에 그냥 '인권은 뭐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시험 끝나고 교문 나오면서 다시 싹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고등학교 남학생 4)

✓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만 진행되었던 인권교육**

중학교 때는 외부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준 적이 한 두 번 있었던 거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따로 배운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저의 출신학교 중학교에서 미투가 있어서 기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에 형식적으로만 한 번 교육하

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용하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고등학생 참여자들은 인권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권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화된 내용으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기존의 교과목 안에서 다루어지는 방안뿐만 아니라, 인권 교과목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인권의 철학적 가치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노동권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 참여자들도 제언한 것처럼, 인권교육은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해결해나갈지를 모색할 수 있는 내용이기를 고등학생 참여자들도 바라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태도로서 체현하고 실천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뜻한다.

✓ 인권교육시간을 더 많이,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이 시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 심화된 내용으로 교과시간으로

외부 강사가 와서 인권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제 전 학년이 다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자거든요. 하하. 정말 듣는 애들은 한 반에 2-3명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교과시간에 좀 더 심화를 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2)

✓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인권교육

우리한테 ‘이런 인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인권이에요! 인권침해는 이런 것도... 인권침해예요!’ 내가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삶에 밀접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삶에 밀접해있는 인권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침해를 해결하는 인권교육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학생들이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수업시간에 배우는 거라고 해봐야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이런 이야기 배우는데 그게 이렇게 막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침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를 좀 많이 중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9)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의 요구 _ “인권조례”

인권교육 안에는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대응 및 해결절차와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자원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학생 참여자들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도화한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고, 다른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않았다.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니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 아니라면 그냥 참고 넘김

어떤 것이 인권침해라고는 안 배운 거 같아요. 대부분은 인권침해가 그냥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그냥, 참자!’ 친구들 사이에서 ‘그거 이상해.’ 라고 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인권침해 대응법에 배운 적이 없고 잘 모름

(인권침해 대응법에 대해) 잘 모르죠. 솔직히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배운 거라기 보다 ‘어떤 기관이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그런 거를 넘어가는 식으로 약간 배운 적은 있었던 거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4)

✓ 인권보호관 제도를 알지 못함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요. (학생일동)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인권조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중학생 참여자와는 달리 고등학생 참여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인천광역시에든 조속하게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기를 원했다.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고대했다.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은 ‘교복입은 시민이 성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학교’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능력과 함께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제정과정에 학생의견을 더 수용하기를**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다른 지역에 생긴 걸 보고, ‘인천광역시도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작년부터 찾아봤어요. 작년에 아마 교육 주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 올해 초안을 짜고 올해 좀 더 추가적인 걸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거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제가 나름 그래도 대표역할을 좀 많이 하고 이랬는데도 ‘학생의견을 언제 수용하는 기간을 가졌던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 **학생인권조례가 인천광역시에 빨리 도입되기를**

도대체 이걸 왜 반대하는 거죠? 이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에서 일어나는 사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나 뭐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인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학교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혐오를... ‘혐오가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걸까?’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빨리 진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고등학교 여학생 참여자 1)

✓ **인권침해와 싸울 때 창이나 방패가 되는 조례**

학생이 학교 내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불합리하고 침해에 대해 싸울 때 좀 칼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는 그런 거 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걸 근거로 들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

하다못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자보 떼는 게 누가 보면은 별일이 아닌데 붙인 사람 입장에서보면 되게 큰일이고, ‘내 의견은 이거인데 이걸 왜 떼냐?’ 같은

건데 이런 거라도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것도 권리가 잘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활발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학교가 되기를**

저는 학교가 학생이 사회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만큼 저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분명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 참여자 3)

4. 보호자

(1) 보호자 응답자 일반 특성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보호자의 응답자는 총 1,711명이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초등 47개 학교의 5학년 보호자, 중등 40개 학교의 2학년 보호자, 고등 60개 학교의 2학년 보호자로 약 3,300명의 예상인원을 구성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조사 협조 공문과 함께 설문지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2~3차례 조사 참여 격려를 요청하였다. 최종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는 1,711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와 학생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의 어머니가 1,531명으로 89.5%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아버지가 109명(6.4%), 조부모 8명(0.5%), 친척 5명(0.3%), 기타 1명(0.1%), 무응답 57명(3.3%)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연령은 40대가 1,238명으로 74.8%를 차지하였으며 50대가 275명(16.6%), 30대가 131명(7.9%), 20대는 1명(0.1%), 60대 이상 9(0.5%)이었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보호자가 992명(60.0%)이었으며 남학생의 보호자는 662명(40.0%)으로 여학생의 보호자가 더 많이 차지하였다.

응답자는 중학교의 보호자가 647명(39.1%)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초등학교 465명(28.1%), 일반고 402명(24.3%), 특목고 50명(3.0%), 특성화고 90명(5.4%)으로 나타나 본 설문의 응답에 중학교의 보호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가 1,296명으로 78.4%를 차지하였으며 응답하였으며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는 358명(21.6%)이 응답하여 국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

교의 보호자가 훨씬 많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학생은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938명(5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교 416명(25.5%), 남학교 300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의 표본 수중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구 거주자가 289명, 17.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의 거주자가 각각 16.5%, 15.5%, 15.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호자 응답자 중 동구, 강화군, 용진군에 거주하는 보호자는 각각 3.4%, 2.2%, 0.4%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43〉 보호자 응답자 일반 특성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학생과의 관계 | 어머니 | 1,531 | 92.6 |
| | 아버지 | 109 | 6.6 |
| | 할머니/할아버지 | 8 | 0.5 |
| | 친척 | 5 | 0.3 |
| | 기타 | 1 | 0.1 |
| 연령대 | 20대 | 1 | 0.1 |
| | 30대 | 131 | 7.9 |
| | 40대 | 1,238 | 74.8 |
| | 50대 | 275 | 16.6 |
| | 60대이상 | 9 | 0.5 |
| 학생의 성별 | 여성 | 992 | 60.0 |
| | 남성 | 662 | 40.0 |
| 학교유형 | 초등학교 | 465 | 28.1 |
| | 중학교 | 647 | 39.1 |

| | | | |
|------|----------|-------|------|
| | 일반고등학교 | 402 | 24.3 |
| | 특성화고등학교 | 50 | 3.0 |
| | 특목고등학교 | 90 | 5.4 |
| | 마이스터고등학교 | 0 | 0.0 |
| 설립형태 | 국·공립 | 1,296 | 78.4 |
| | 사립 | 358 | 21.6 |
| 공학여부 | 남여공학 | 938 | 56.7 |
| | 여학교 | 416 | 25.2 |
| | 남학교 | 300 | 18.1 |
| 지 역 | 강화군 | 57 | 3.4 |
| | 계양구 | 257 | 15.5 |
| | 남동구 | 253 | 15.3 |
| | 동구 | 39 | 2.4 |
| | 미추홀구 | 102 | 6.2 |
| | 부평구 | 252 | 15.2 |
| | 서구 | 289 | 17.5 |
| | 연수구 | 273 | 16.5 |
| | 옹진군 | 4 | 0.2 |
| | 중구 | 128 | 7.7 |

(2) 인권 인식과 인권 행동

보호자에게 총 6개의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으로서 스스로 견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 권리 의식을 질문하였다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주체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보호자는 1,324명(77.6%), 부

정적으로 응답한 보호자는 382명(22.4%)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응답 중 학생의 의견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학생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다른 학교구성원과 비교하면 동의하는 비율이 보호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여전히 학생을 ‘어리다’라고 여기며 어른인 선생님에게 학생은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결과와 다르게 “학생은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보호자는 85.0%(1,453명), 더불어 “모든 사람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보호자는 98.6%(1,681명)으로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할 권리 및 의견 표현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보호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95%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보호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일에 있어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 아직 인식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

이기도 하다. 이에 보호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식에 관한 시각을 고양하고 확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식에서 아동·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44〉 보호자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197 (11.5) | 1,127 (66.1) | 299 (17.5) | 83 (4.9) |
|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332 (19.4) | 1,121 (65.6) | 227 (13.3) | 28 (1.6) |
|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1,055 (61.9) | 626 (36.7) | 21 (1.2) | 3 (0.2) |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822 (48.2) | 812 (47.6) | 58 (3.4) | 14 (0.8) |
|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872 (51.0) | 804 (47.0) | 28 (1.6) | 5 (0.3) |
|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781 (45.8) | 822 (48.2) | 91 (5.3) | 11 (0.6) |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관한 주요 인권문서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처음 듣는다’가 388명(22.7%), ‘이름만 들었다’ 655명(38.4%)이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지만 ‘일부내용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608명(35.6%)이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55명(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인권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173명(10.1%), ‘이름만 들었다’ 611명(35.7%)에 응답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알거나 자세히 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각각 874명(51.1%), 52명(3.0%)으로 나타났다.

〈표 3-45〉 보호자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질 문 | 응 답 | | | |
|--------------------|----------------|-----------------|---------------|----------------|
| | 처음 듣는다 N(%) | 이름만 들었다 N(%) | 일부 안다 N(%) | 자세히 안다 N(%) |
| 유엔아동권리협약 | 388 (22.7) | 655 (38.4) | 608 (35.6) | 55 (3.2) |
|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인권내용 | 173 (10.1) | 611 (35.7) | 874 (51.1) | 52 (3.0) |

보호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제시하고 있는 2가지의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약 3% 뿐이었다. 특히, 이들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인권관련 내용’보다 인권의 자세한 목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60% 이상에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내의 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와 아동·청소년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인권관련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일상 혹은 학교 생활에서 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국내 법을 통해 쌓기에는 부족하다.

보호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인권을 어떻게 구현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 대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96.9%, 1,654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기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보호자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편이다 N(%) | 필요없는편이다 N(%) | 전혀필요없다 N(%) |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조례가 필요하다. | 664 (38.9) | 990 (58.0) | 37 (2.2) | 15 (0.9) |

막연히 ‘인권이 있다’는 표명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과 인권 행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아동·청소년들의 가까이에서 인권 행동의 직접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보호자의 태도와 행동 또한 중요하다. 이에 보호자의 인권 의식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가치를 체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인권 행동의 실천을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혐오표현 사용자제, 혐오표현 사용금지, 인권침해 반대, 학교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다.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행위인 혐오표현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과 주위의 혐오표현 사용에 대해 제지하는 행동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에 긍정적으로 응답으로 응답한 보호자는 98.5%(1,683명)였다. 혐오표현에 대해 자신을 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인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에는 93%(1,602명)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보호자들은 혐오표현에 대해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보다 다른 사람의

혐오표현을 제지하는 것에 좀 더 낮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의 질문에도 비슷한 수준인 93.9%(1,605명)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그 가치를 표현하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행동의 반경을 확장하기 위해 정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에 민감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로 보호자에게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90.2%(1,542명)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권 행동의 경우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의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8.7%(1,1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한 보호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반경이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7〉 보호자 응답자의 인권행동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 않다 N(%) |
|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863 (50.5) | 820 (48.0) | 19 (1.1) | 6 (0.4) |
|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521 (30.5) | 1,081 (63.3) | 101 (5.9) | 5 (0.3) |
| 나는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432 (25.3) | 1,173 (68.6) | 103 (6.0) | 1 (0.10)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327 (19.1) | 1,215 (71.1) | 160 (9.4) | 7 (0.4)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 | 177 | 996 | 505 | 29 |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10.4) | (58.3) | (29.6) | (1.7) |

학교나 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옳지 않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바꾸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자 하나 그것을 바꾸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를 확장하여 사회의 범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 문제로 확장시키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 이슈나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과 연계된 구체적인 학습이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협력하며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분위기

학교에서의 구성원 간의 협력하는 분위기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학교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의 학교의 중요한 일에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하는 일’은 ‘보호자도 학교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보호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학교구성원 사이에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질문에 응답자 중 1,417명(83.2%)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

했다” 또한 1,337명(78.6%)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보호자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의 질문에도 1,352명(79.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보호자들은 학교구성원로서 학교의 분위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의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보호자가 1,350명(79.2%)이었다.

〈표 3-48〉 보호자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206 (12.1) | 1,211 (71.1) | 261 (15.3) | 26 (1.5) |
| 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 | 178 (10.5) | 1,159 (68.1) | 338 (19.9) | 27 (1.6) |
| 학교에서 보호자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 | 253 (14.8) | 1,099 (64.5) | 319 (18.7) | 34 (2.0) |
|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199 (11.7) | 1,151 (67.5) | 333 (19.5) | 21 (1.2) |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를 가중치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보호자는 1순위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29.2% 483명), 2순위 운동공간과 운동시설(18.6% 308명), 3순위 청결한 화장실(16.4%, 271명)로 나타났고 휴식공간과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낡은 학교 복구, 충분한 환기시설, 악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호자들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에서 보호자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학교는 학생의 주된 공간이며 그 안에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길 원하는 마음과 연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49〉 보호자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탈의실 | 152 (9.3) | 92 (5.6) | 102 (6.3) | 742 (7.6) |
| 샤워실 | 22 (1.3) | 37 (2.3) | 25 (1.6) | 165 (1.7) |
| 휴식공간 | 231 (14.0) | 283 (17.4) | 291 (18.1) | 1,550 (15.8)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308 (18.6) | 300 (18.4) | 242 (15.1) | 1,766 (18.0) |
| 장애인 편의시설 | 66 (4.0) | 64 (3.9) | 142 (8.8) | 468 (4.8) |
| 청결한 화장실 | 271 (16.4) | 323 (19.8) | 225 (14.0) | 1,684 (17.1)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119 (7.2) | 242 (14.8) | 228 (14.2) | 1,069 (10.9)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483 (29.2) | 289 (17.7) | 347 (21.6) | 2,374 (24.2) |
| 기타 | 0 (0.0) | 0 (0.0) | 4 (0.2) | 4 (0.0) |

(4) 폭력 피해 경험

보호자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침해 경험을 파악하고자 학생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의 피해 경험,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응답한 보호자들 중 367명(21.6%)이 학생의 언어폭력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신체폭력 피해 경험을 알고 있는 보호자는 104명(6.1%), 성폭력피해 경험을 알고 있는 보호자는 28명(1.7%)이었다.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경험에 대해서 80명(5.0%)의 보호자가 학생에게 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3-50> 보호자가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학생의 언어폭력피해 경험 (욕설, 비하적 표현 등) | 367 (21.6) | 1,153 (67.9) | 178 (10.5) |
| 학생의 신체폭력피해 경험 (단체기합 포함) | 104 (6.1) | 1,474 (86.9) | 118 (7.0) |
| 성폭력피해 경험 | 28 (1.7) | 1,599 (94.4) | 66 (3.9) |
|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피해 경험 | 84 (5.0) | 1,525 (90.0) | 86 (5.1) |

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을 때 가해 행위자로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모두에서 동일집단인 학생의 응답이 각각 300명(20.4%), 77명(5.2%), 15명(1.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신체폭력의 경우 학생이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의 경우 학교의 외부인에 의해 그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폭력피해 가해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3-51〉 보호자가 응답한 언어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학생이 학교에서 언어폭력(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367 (21.6) | 1,153 (67.9) | 178 (10.5) |
| 학교에서의 언어폭력 가해자 | | 응답 N(%) | |
| 학생 | 300 (76.1) | | |
| 교사 | 85 (21.6) | | |
| 직원 | 1 (0.3) | | |
| 외부인 | 7 (1.8) | | |
| 기타 | 1 (0.3) | | |
| 합계 | 394 (100) | | |

〈표 3-52〉 보호자가 응답한 신체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학생이 학교에서 신체폭력(단체기합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 104 (6.1) | 1,474 (86.9) | 118 (7.0) |
| 학교에서의 신체폭력 가해자 | | 응답 N(%) | |
| 학생 | 77 (70.6) | | |
| 교사 | 29 (26.6) | | |
| 직원 | 1 (0.9) | | |
| 외부인 | 1 (0.9) | | |
| 기타 | 1 (0.9) | | |
| 합계 | 109 (100) | | |

〈표 3-53〉 보호자가 응답한 성폭력피해 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학생이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29 (1.7) | 1,599 (94.4) | 66 (3.9) |
| 학교에서의 성폭력 가해자 | 응답 N(%) | | |
| 학생 | 15 (75.0) | | |
| 교사 | 5 (25.0) | | |
| 직원 | 0 (0.0) | | |
| 외부인 | 0 (0.0) | | |
| 기타 | 0 (0.0) | | |
| 합계 | 20 (100) | | |

보호자가 응답한 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폭력의 유형과 상관없이 가해행위자에서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나 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근거해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권력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학생과 학생과의 집단 내 폭력 경험에 대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권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 간 피해 경험에 대해 보호자가 알고 있다고 이에 대해 보호자의 높은 응답율을 차보면, 보호자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그러한 권력관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경험한다고 인식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학생들은 불평등한 관계를 내면화하여 다시 친구 관계에서 그 권력을 사용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열화하게 된다. 이 관계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다시 또 피해를 입고 입히는 구조를 만들어진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 경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 한명 한명이 존중되고 스스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폭력피해 경험 등 인권침해에 직면했을 때, 사건 해결과 피해 회복에 대한 조력 체계로서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도화되어있는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인지 여부’와 ‘비밀보장’, ‘상담경험’을 질문하였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71.1%(1,198명)였으며, 71.0%(1,195명)는 학생인권보호관과 상담하게 되면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에 비해 보호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약 30%였으며, 상담할 때 비밀이 지켜지거나 불이익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29.0%로 나타나 학생에 비해 보호자들은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2.3%인 38명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보호자 응답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지도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학생인권보호관제도(상담 및 구제)에 대해 알고 있다. | 1,198 (71.1) | 486 (28.9) |
| 학생인권보호관과의 상담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1,195 (71.0) | 487 (29.0) |
| 2019년에 학생인권보호관에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 38 (2.3) | 1,648 (97.7) |

5. 소결

제 3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의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이다. 초등학생 응답자는 총 629명, 중학생 응답자는 총 864명, 고등학생 응답자는 총 1,250명이며, 보호자 응답자는 1,711명이다.

실태조사의 결과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제정에는 약 90%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인권행동에 대해서 4 집단 모두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에 비해 학교나 사회적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노력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낮았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존중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반면 친구들이 보여주는 신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학교에서 대표가 되어 활동하거나 선생님께 학교 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자유권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복장과 두발에 대해 학교가 여전히 통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생회 참여와 활동이 어렵다는 응답보다는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학교를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견표명이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적에 따라 선생님으로부터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었고, 그 비율에서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2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 역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있었는데, 중학생이 가장 높은 12.6%, 초등학생은 11%, 고등학생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로부터의 언어폭력, 신체폭력피해 경험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언어폭력 피해는 43.5%로 매우 높았고, 신체폭력 피해도 16.5%로 상당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교사로부터의 신체폭력 피해 경험이 9.3%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9.5%가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자녀가 피해 경험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실제 학생들이 경험한 비율보다 더 낮게 나타나 보호자가 미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의 조력체계인 학생인권보호관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보호자가 71.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59.8%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FGI의 분석결과 도출된 주제는 두발과 복장검사, 휴대폰 압수 등 학교생활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제약받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안전하고 피해를 회복할 권리 보장이 미진하며, 국·영·수 중심의 수업과 운동장과 축구장, 농구장이 열악하거나 폐쇄되어 있어 신체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등 건강할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인권보호관’등 인권침해에 대해 조력받을 수 있는 체계 또한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의 FGI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학교가 학생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자치권의 실현이 미흡하고, 미투사건 등으로 학교에서 피해로부터 회복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요원하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신체활동도 휴식도 없이 ‘쪽잠’을 자는 생활로 건강할 권리 또한 위태로우며, 성적에 따른 차별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내면화되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는 정해

진 교과목으로 인해 예체능의 다른 교과목의 학습기회가 차단되며, 특성화고에서는 산업체의 현장실습이 교육적 기능을 잃어버린 채 단순 잡일의 일자리가 되어 학습 받을 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자살 등 안전하게 일할 노동의 권리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인권교육 역시 청소년의 삶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1회성의 대규모 집합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인권침해를 받았을때에도 참고 넘기거나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FGI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고등학생 FGI에서는 학교구성원 인권조례가 시급히 제정되기를 기대했고, 제정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학교가 교복입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04

실태조사 기초분석 2 : 교직원

1. 교사
2. 직원
3. 소결

제4장 실태조사 기초분석 2 : 교직원

1. 교사

1) 설문지 조사 결과

(1) 교사 응답자 일반 특성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교사의 응답자는 총 841명이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초, 중, 고등학교의 조사대상 학년의 담임과 교과교사이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61.6%, 남성 32.4%, 선택하고 싶지 않다 6.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1.6%, 30대 32.8%, 40대 34.6%, 50대 18.7%, 60대 이상 12.3%인 것으로 집계되어 여성과 30~40대가 과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9.3%, 중학교 33.6%, 일반고 33.4%, 특목고 2.5%, 특성화고 11.0%, 마이스터고 0.2%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78.6%, 사립 21.4%이었으며, 남여공학 54.8%, 여학교 5.5%, 남학교 19.7%로 나타나 국공립 소속 교사와 남여공학 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강화군 2.1%, 계양구 8.7%, 남동구 14.9%, 동구 2.9%, 미추홀구 10.6%, 부평구 13.3%, 서구 22.8%, 연수구 12.7%, 옹진군 0.4%, 중구 11.6%로, 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지위에서는 정규직이 69%, 기간제 계약직이 30.0%, 무기계약직이 0.4%로 구성되어 있고, 교직경력은 평균 약 13년 6개월,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평균 1년 1개월로 집계되었다. 관련교육 이수 상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예방관련 교육이수가 34.7%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폭력 예방연수를 받은 경우가 32.3%, 4시간 이내의 인권교육 이수가 18.0%, 5시간 이상의 인권/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경우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교사 응답자 일반 특성*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성 별 | 여성 | 294 | 61.6 |
| | 남성 | 156 | 32.4 |
| | 선택하고 싶지않다 | 32 | 6.6 |
| 연령대 | 20대 | 56 | 11.6 |
| | 30대 | 158 | 32.8 |
| | 40대 | 167 | 34.6 |
| | 50대 | 90 | 18.7 |
| | 60대이상 | 11 | 2.3 |
| 학교유형 | 초등학교 | 93 | 19.3 |
| | 중학교 | 162 | 33.6 |
| | 일반고등학교 | 161 | 33.4 |
| | 특성화고등학교 | 12 | 2.5 |
| | 특목고등학교 | 53 | 11.0 |
| | 마이스터고등학교 | 1 | 0.2 |
| 설립형태 | 국·공립 | 379 | 78.6 |
| | 사립 | 103 | 21.4 |
| 공학여부 | 남여공학 | 264 | 54.8 |
| | 여학교 | 123 | 25.5 |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지 역 | 남학교 | 95 | 19.7 |
| | 강화군 | 10 | 2.1 |
| | 계양구 | 42 | 8.7 |
| | 남동구 | 72 | 14.9 |
| | 동구 | 14 | 2.9 |
| | 미추홀구 | 51 | 10.6 |
| | 부평구 | 64 | 13.3 |
| | 서구 | 110 | 22.8 |
| | 연수구 | 61 | 12.7 |
| | 옹진군 | 2 | 0.4 |
| | 중구 | 56 | 11.6 |
| | 고용지위 | 정규직 | 333 |
| 기간제(계약직) | | 147 | 30.6 |
| 교육이수 | 성폭력 관련교육 | 427 | 34.7 |
| | 인권교육(4시간 이내) | 222 | 18.0 |
| | 인권/인권교육 연수(5시간 이상) | 184 | 15.0 |
| | 학교폭력 예방연수 | 397 | 32.3 |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4-2〉 교사 응답자 교직경력

| 질문 | 응답 | | |
|---------------|--------|--------|--------|
| | 응답수(N) | 평균 | 표준편차 |
| 교직경력 | 478 | 13.56년 | 9.419 |
| 계약기간(계약직의 경우) | 146 | 1.1년 | 31.365 |

(2) 인권 인식과 인권 행동

교사 응답자에게 총 6개의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으로서 스스로 견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 권리 의식을 질문하였다. 내용은 학생의 결정능력에 대한 인식, 학생의 사회·정치 문제 관심과 참여 인식, 의사표현 권리에 대한 인식, 국내 외국인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의견 반영과 학교 일의 참여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 응답자는 39.2%인 329명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60.8%, 511명이었다. 60% 가까운 교사들이 아동·청소년의 독립적인 주체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항은 학생과 아동·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전통적인 시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유예하는 통상적인 규범이다. 독립적인 주체성을 인정한 입장을 비율이 초등학생 24.9%, 중학생은 36.6%, 고등학생은 54.9%로 나타났는데, 교사의 경우는 60.8%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교사집단에서 오히려 “학생이 교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높았다.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교사 응답자는 90.7%, 763명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9.2%인 78명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98.1%, 823명이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불과 1.9%인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높은 90%가 넘는 긍정 답변이지만, 비교해보면 8.6%의 차를 보여 교사들은 학생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학교의 참여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97.7%인

820명의 교사가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교사는 2.4%인 20명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표현권과 학교에서의 참여권에 대한 지지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긍정 답변한 교사 응답자는 827명으로 98.5%이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 답변은 1.6%에 불과한 13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긍정 답변도 96.7%인 813명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8명, 3.3% 소수로 나타났다.

교사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 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태도와 행동으로 외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4-3〉 교사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 않다 N(%) |
|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19 (2.3) | 310 (36.9) | 338 (40.2) | 173 (20.6) |
|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285 (33.9) | 478 (56.8) | 55 (6.5) | 23 (2.7) |
|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493 (58.7) | 334 (39.8) | 10 (1.2) | 3 (0.4) |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501 (59.6) | 312 (37.1) | 23 (2.7) | 5 (0.6) |
|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86 (46.0) | 434 (51.7) | 19 (2.3) | 1 (0.1) |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429 (51.1) | 394 (47.0) | 14 (1.7) | 2 (0.2) |

교사 응답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국제적 인권문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처음 들었다’가 12.5%, 105명이었고, ‘이름만 들었다’가 33.3%인 279명, ‘일부 내용을 안다’가 44.9%, 377명, ‘자세히 안다’가 9.3% 78명으로 나타나, 상당한 45.8%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처음 듣는다’가 1.2%인 10명, ‘이름만 들었다’가 18.9%인 159명, ‘일부 내용을 안다’가 67.7%인 569명, ‘자세히 안다’가 12.1%인 102명이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가진 구체적인 인권의 목록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문서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제목만 들어본 비율이 45.8%인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쟁점이 되는 지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가 이를 어떻게 정책과 제도로써 보장할 것인지, 이러한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위한 교사 집단의 노력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의 응답 중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긍정적 답변이 84.6%인 710명이고, 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130명, 15.5%로 실질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높은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권 의식을 어떤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로 구성한다면, 일상의 구체적인 태도와 언행, 더 나아가 사회적이고 정치적 인권 행동으로의 동력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일상의 생활과 구체적인 제도, 국가의 책무와 연결되어 인권의 주요 쟁점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야 인권 행동과 연동된 인권에 대한 가치와 지향이 체현되며, 개인 차원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적, 사회구조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표 4-4〉 교사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질 문 | 응답 | | | |
|------------------------|----------------|-----------------|---------------|----------------|
| | 처음 듣는다 N(%) | 이름만 들었다 N(%) | 일부 안다 N(%) | 자세히 안다 N(%) |
| 유엔아동권리협약 | 105 (12.5) | 279 (33.3) | 377 (44.9) | 78 (9.3) |
|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내용 | 10 (1.2) | 159 (18.9) | 569 (67.7) | 102 (12.1) |

〈표 4-5〉 교사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 편이다 N(%) | 필요없는 편이다 N(%) | 전혀 필요없다 N(%) |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 권보장조례가 필요하다. | 171 (20.4) | 539 (64.2) | 110 (13.1) | 20 (2.4) |

인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 즉 혐오표현 사용자제, 혐오표현 사용제지, 인권침해 반대, 학교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질문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행위인 혐오표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과 주위의 혐오표현 사용을 제지하는 행동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변을 교사 응답자는 834명으로 99.1%로 매우 높았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 답변 7명 0.8%에 불과하였다.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명, 94.0%이고, 제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은 6.0%인 51명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치이지만, 제지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자제하려는 노력 행동보다 조금 낮아졌다.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23명, 97.9%이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8명, 2.1%로 나타났다. “학교나 사회의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99명, 95.0%이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명, 5.0%였다. “학교나 사회의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답한 교사 응답자는 689명(81.9%)이 긍정 답변을, 152명(18.1%)이 그렇지 않은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바꾸려는 행동에는 주저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옳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전히 개인의 인권 의식과 용기에 기대어 요청할 수는 없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나 잘못, 혹은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침묵을 깨고 주위에 알리며 이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한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많은 피해를 입고 일상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쉽게 목도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침묵하고 상관하지 않는 행동이 더 좋은 처세술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인권 행동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함에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촘촘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표 4-6〉 교사 응답자의 인권행동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 편이다 N(%) | 필요없는 편이다 N(%) | 전혀 필요없다 N(%) |
|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541 (64.3) | 293 (34.8) | 6 (0.7) | 1 (0.1) |
|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357 (42.6) | 431 (51.4) | 49 (5.8) | 2 (0.2) |
|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312 (37.1) | 511 (60.8) | 17 (2.0) | 1 (0.1)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276 (32.8) | 523 (62.2) | 39 (4.6) | 3 (0.4)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169 (20.1) | 520 (61.8) | 144 (17.1) | 8 (1.0) |

(3) 학교생활과 자유권/노동권

교사 응답자에게 구성원들간의 협동분위기, 학교구성원의 의사 반영, 교사의 자유로운 의견표명, 적합한 시설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질문하였다.

“학교구성원 사이에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교사 응답자는 709명, 84.4%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한 응답자는 131명, 15.6%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교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고 답을 한 응답자는 609명, 72.8%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명, 27.2%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답한 교사 응답자는 591명, 70.3%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250명, 29.8%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간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낀 교사가 15.6%이고, 학교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건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27.2%나 되었다. 물론 건의를 자유롭게 하더라도 학교가 이를 반영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학교가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교사의 비율은 29.8%나 되었다.

이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던 문항은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로 ‘그렇다’는 긍정적 답을 한 교사가 541명, 64.4%이며,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한 응답자는 299명, 35.6%로 나타났다.

〈표 4-7〉 교사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 편이다 N(%) | 필요없는 편이다 N(%) | 전혀 필요없다 N(%) |
|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190 (22.6) | 519 (61.8) | 108 (12.9) | 23 (2.7) |
| 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 | 144 (17.1) | 447 (53.2) | 205 (24.4) | 45 (5.4) |
| 학교에서 교사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 | 159 (19.0) | 450 (53.8) | 188 (22.5) | 39 (4.7) |
|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118 (14.0) | 423 (50.4) | 241 (28.7) | 58 (6.9) |

학교시설은 일터로서의 삶터이다. 집 못지 않게 하루 중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질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 학교시설이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35.6%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는데,

교사 응답자에게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2019년을 기준으로 1~3순위로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가중치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1순위는 휴식공간, 2순위는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3순위는 청결한 화장실을 3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당,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탈의실과 샤워실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오랜 시간 생활하는 학교지만 쉴 곳이 부족하고 운동할 곳이나 운동할 기구도 없어 교실이나 사무실의 좁은 의자에 계속 앉아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 그리고 화장실의 위생이 충분치 않음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

기타의견으로는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실의 부족함과 교사 화장실의 의견이 있었는데, 입시 위주의 특정한 교과목이 위주가 되고 예체능 활동이나, 어학실, 정보실, 과학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고 시간 배정 자체가 부족한 점, 장애인 학생이나 장애인 교사가 이용할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등을 제약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시설의 문제를 좀 더 인권의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8〉 교사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탈의실 | 49 (6.0) | 38 (4.8) | 65 (8.4) | 288 (6.0) |
| 샤워실 | 23 (3.4) | 72 (9.0) | 64 (8.3) | 277 (5.8) |
| 휴식 공간 | 343 (42.1) | 182 (22.8) | 115 (14.9) | 1,508 (31.4)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121 (14.8) | 170 (21.3) | 134 (17.4) | 837 (17.4) |

| | | | | |
|------------------|---------------|---------------|---------------|-----------------------|
| 장애인 편의시설 | 47 (5.8) | 44 (5.5) | 71 (9.2) | 300 (6.3) |
| 청결한 화장실 | 118 (14.5) | 110 (13.8) | 92 (11.9) | 666 (13.9)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29 (3.6) | 67 (8.4) | 86 (11.1) | 307 (6.4)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78 (9.6) | 113 (14.2) | 143 (18.5) | 603 (12.6) |
| 기타 | 2 (0.2) | 2 (0.3) | 2 (0.3) | 12 (0.3) |

학교에서 교사의 자유권과 노동권의 현황에 대해서 4가지 문항으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웠다”고 답한 교사가 517명, 61.7%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 답변을 한 교사는 322명, 38.4%였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웠다”고 답한 교사 응답자는 504명, 60.3%였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교사는 332명, 39.7%로 나타났다. 앞서 교사가 학교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는 응답이 72.8%이었던 것에 비하면 건의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집회나 시위 참여를 망설였다”고 답한 교사 응답자가 294명, 35.2%, ‘그렇지 않고 자유로웠다’고 답한 응답은 542명, 64.8%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징계나 불이익이 염려되어 시민으로서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집회에 참석할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는 문항에 대해 667명인 80.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19.9%인 166명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5명에 1명은 학교에서 노조활동 참여가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의견

을 제시하는 것,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자유권을 학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권이 자유롭게 보장될 때, 노동조합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도 가능하며, 노동조합이 교사의 노동권을 조직적으로 더 촉진시킬 때, 교사의 집단적 의사표명도 더 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권과 자유권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더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표 4-9〉 교사가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노동권과 자유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86 (10.3) | 431 (51.4) | 264 (31.5) | 58 (6.9) |
|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71 (8.5) | 433 (51.8) | 282 (33.7) | 50 (6.0) |
|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36 (4.3) | 258 (30.9) | 353 (42.2) | 189 (22.6) |
|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176 (21.1) | 491 (58.9) | 139 (16.7) | 27 (3.2) |

(4) 차별과 폭력의 피해 경험과 소진

학교에서 교사들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 성별과 종교, 고용지위(비정규직), 출산과 돌봄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차별은 사회에서 이미 구조화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순위와 서열을 전제로 집단과 집단의 성원을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권력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맥락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차별 상황은 가시적인 갈등상황이 아니라 은근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지속되므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별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도, 문제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02명으로 12.2%였고, “비정규직(임시직/기간제)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9명으로 8.7%로 나타났다. “임신 혹은 출산, 양육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44명으로 5.5%이다.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명,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교사가 응답한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102 (12.2) | 736 (87.8) |
|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15 (1.8) | 821 (98.2) |
| 비정규직(임시직/기간제)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69 (8.7) | 728 (91.3) |
| 임신 혹은 출산, 아동양육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44 (5.5) | 760 (94.5) |

차별과 함께 나타나는 일터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의 하나가 직장 괴롭힘이다. 교사에게 “나는 학교/부서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 응답한 경우는 29명으로 3.5%로 나타났다.

〈표 4-11〉 교사가 응답한 학교에서의 따돌림 경험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나는 학교/부서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29 (3.5) | 805 (96.5) |

직접적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은 신체의 자유와 안녕을 침해하는 폭력피해이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폭력으로 나누어 피해 경험을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구성원들에게 언어폭력(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55명으로 18.5%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가해행위자는 ‘교사(동료포함)’라고 답한 경우가 70명으로 3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교장/교감’이라고 답한 경우로 68명, 29.6%, ‘학생’이 55명으로 23.9%, ‘보호자’가 25명으로 10.9%, ‘직원’은 12명으로 5.2%로 나타났다.

〈표 4-12〉 교사가 응답한 언어폭력 피해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있다 | 없다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언어폭력(욕설이나 모욕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155 (18.5) | 685 (81.5) |
| 학교에서의 언어폭력 가해자 | 응답 N(%) | |
| 학교장/교감 | 68 (29.6) | |
| 교사(동료포함) | 70 (30.4) | |
| 직원 | 12 (5.2) | |
| 보호자 | 25 (10.9) | |
| 학생 | 55 (23.9) | |
| 합계 | 230 (100)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명으로 1.0%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의 가해행위자는 ‘교사’가 13명으로 30.2%, ‘학교장/교감’이 각각 12명으로 27.9%, ‘보호자’가 4명으로 9.3%, ‘직원’이 2명으로 4.7%로 나타났다.

〈표 4-13〉 교사가 응답한 신체폭력 피해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있다 | 없다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8 (1.0) | 830 (99.0) |
| 학교에서의 신체폭력 가해자 | 응답 N(%) | |
| 학교장/교감 | 12 (27.9) | |
| 교사(동료포함) | 13 (30.2) | |
| 직원 | 2 (4.7) | |
| 보호자 | 4 (9.3) | |
| 학생 | 12 (27.9) | |
| 합계 | 43 (100)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0명으로 6.0%였다. 성폭력의 가해행위자는 ‘교사’가 35명으로 47.9%, ‘학교장/교감’이 17명으로 23.3%, ‘학생’이 12명으로 16.4%, ‘직원’이 6명으로 8.2%, ‘보호자’가 3명으로 4.1%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14〉 교사가 응답한 성폭력 피해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있다 | 없다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 50 (6.0) | 783 (94.0) |
| 학교에서의 성폭력 가해자 | 응답 N(%) | |
| 학교장/교감 | 17 (23.3) | |
| 교사(동료포함) | 35 (47.9) | |
| 직원 | 6 (8.2) | |

| | |
|-----|-----------|
| 보호자 | 3 (4.1) |
| 학생 | 12 (16.4) |
| 합계 | 73 (100) |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해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 체계를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나는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괴롭힘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491명으로 59.3%였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을 한 교사는 337명, 40.7%로 나타났다.

〈표 4-15〉 교사가 응답한 구제제도 인식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나는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괴롭힘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 | 491 (59.3) | 337 (40.7) |

차별과 폭력의 피해 경험은 교사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다. 직접적인 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를 경험하는 동료 교사를 목격하는 것도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의 비율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해 행위자에 학생과 보호자까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교사가 느끼는 고충과 이에 따른 소진은 클 수밖에 없다.

교사 응답자에게 소진에 대해 7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의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교사는 54명, 6.5%로 나타났으며, “교실 규율을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교사는 485명, 58.0%에 이른다. 또한 “성적처리에 있어 부담을 느꼈다” 54.5%인 456명이 응답했고, “내 직업이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교사가 385명으로 45.9%인 것으로 나타나,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교사는 93.6%로 대부분이지만, 거의 절반 정도의 교사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답한 교사가 422명인 50.3%였으며, “학생생활지도를 하면서 교육적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 책임인 것 같아 무력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62.4%, 523명으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모멸감과 무력감을 호소하였다.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에 힘들었다”는 교사도 513명, 61.6%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교사의 소진 수준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교사의 소진이 의미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고충이 크다는 것이다. 소진의 원인이 교사의 인권침해의 하나로 설명될 수는 없다. ‘교실붕괴’라는 단어가 한 때 교실의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로 등장했던 때처럼, 현재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보호자의 관계를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교실과 학교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우리 사회의 교육의 현실에서 형태 지어진다는 점이다.

〈표 4-16〉 교사 응답자의 사회적 인식과 소진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나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 332 (39.6) | 453 (54.0) | 46 (5.5) | 8 (1.0) |
| 나는 교실 규율을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 97 (11.6) | 388 (46.4) | 282 (33.7) | 69 (8.3) |
| 나는 성적처리에 있어 부담을 느꼈다. | 87 (10.4) | 369 (44.1) | 305 (36.5) | 75 (9.0) |
| 내 직업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93 (11.1) | 292 (34.8) | 339 (40.5) | 114 (13.6) |

| | | | | |
|---|---------------|---------------|---------------|-------------|
| 나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다. | 132 (15.7) | 290 (34.6) | 346 (41.2) | 71 (8.5) |
| 나는 학생생활지도를 하면서 교육적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 책임인 것 같아 무력감을 느꼈다. | 82 (9.8) | 441 (52.6) | 267 (31.9) | 48 (5.7) |
| 나는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에 힘들었다. | 146 (17.4) | 367 (43.7) | 288 (34.3) | 38 (4.5) |

(5) 교사의 직권과 인권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을 주장하면,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 “학생은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는 말을 쉽게 듣게 된다. 그리고 “그럼 교사의 인권?”이라는 질문과 함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하는데, 교사의 인권과 교사로서 갖는 권한인 직권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자유권, 시민권, 정치권, 노동권, 사회권, 건강권 등 주요한 인권문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말하며,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국가이다. 교사의 인권, 기본권들을 침해받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과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흔히 ‘교권’, 혹은 ‘가르칠 권리/권한’은 기본권이 아니라,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가지게 되는 권한이다. 교사의 구체적인 직권 역시 교육법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하고, 교사의 권한에 대해 제약받거나 도전받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침해인지, 교권에 대한 침해인지 때때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교사에게 학생을 가르칠 권한 중에서 가장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05명으로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차지한 것은 16.9%인 130명이 답한 ‘교과과정을 편성할 권한’이었다. ‘학생을 평가할 권한’이 108명 14.1%,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100명 13.0%, ‘교재를 채택하고 선정할 권한’이 15명, 2.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17〉 교사 응답자의 가르칠 권한(직권) 중 침해되는 영역

| 질 문 | 응답수(N) | 비율(%) |
|--------------------|--------|-------|
|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한 | 130 | 16.9 |
| 교재를 채택하고 선정할 권한 | 15 | 2.0 |
|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한 | 100 | 13.0 |
| 학생을 평가할 권한 | 108 | 14.1 |
| 학생을 지도할 권한 | 405 | 52.7 |
| 기타 | 10 | 1.3 |
| 합 계 | 768 | 100 |

이러한 교사의 가르칠 권한인 직권을 가장 침해하는 행위자를 질문한 결과, ‘교육행정체계(교육청, 교육부, 지침, 규정 등)’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93명,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로 205명, 26.8%가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학생’이 131명 17.1%, ‘학교상급자(교감, 교과부장 등)’가 64명, 8.4%, ‘학교경영진(재단, 학교장)’이 62명, 8.1%, 기타 9명,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정치인, 민원전화, 대학, 인권 관련법’ 등의 응답이 나왔다.

교육행정체계가 교사의 직권을 침해하지 않고 잘 지원해주는 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정책의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직권을 침해하는 대상이 ‘보호자’와 ‘학생’이라는 응답을 합하면 43.9%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관계가 현재 대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는 직권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권의 측면에서 부딪히는데, 이 지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권과 학습권의 관계를 검토하여 잘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논의에서 인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 4-18〉 교사 응답자의 가르칠 권한(직권)을 침해하는 사람

| 질 문 | 응답수(N) | 비율(%) |
|----------------------------|--------|-------|
| 교육행정체계(교육청, 교육부, 지침, 규정 등) | 293 | 38.4 |
| 학교 경영진(재단, 학교장) | 62 | 8.1 |
| 학교 상급자(교감, 교과부장 등) | 64 | 8.4 |
| 보호자 | 205 | 26.8 |
| 학생 | 131 | 17.1 |
| 기타 | 9 | 1.2 |
| 합 계 | 764 | 100 |

교사의 가르칠 권한과 구분하여 교사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영역은 ‘충분히 휴식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권리(건강권)’로 44.1%인 335명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33.7%인 257명이 ‘폭언, 폭행, 괴롭힘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권)’라고 답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자유권)’라고 답한 교사는 104명으로 13.6%이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협상할 권리(노동권)’는 56명, 7.3%가 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성과급의 부적절한 등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것 등’이 있었다.

〈표 4-19〉 교사 응답자의 인권 중 침해되는 영역

| 질 문 | 응답수(N) | 비율(%) |
|-----------------------------------|--------|-------|
| 사상양심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자유권) | 104 | 13.6 |
|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협상할 권리(노동권) | 56 | 7.3 |
| 충분히 휴식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권리(건강권) | 336 | 44.1 |
| 폭언, 폭행, 괴롭힘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권) | 257 | 33.7 |
| 기타 | 9 | 1.2 |
| 합 계 | 762 | 100 |

이러한 교사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행위자를 질문한 결과, 교사의 직권을 침해하는 행위자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교사 응답자의 35.8%인 269명이 ‘교육행정체계(교육청, 교육부, 지침, 규정 등)’답했고, 뒤를 이어 187명, 24.9%가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학생’이라고 한 교사는 152명으로 2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경영진(재단, 학교장)’이 73명으로 9.3%, ‘학교상급자(교감, 교과부장 등)’이 58명으로 7.7%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동료교사, 사회적 시선, 환경’ 등이 있었다.

〈표 4-20〉 교사 응답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

| 질 문 | 응답수(N) | 비율(%) |
|----------------------------|--------|-------|
| 교육행정체계(교육청, 교육부, 지침, 규정 등) | 269 | 35.8 |
| 학교 경영진(재단, 학교장) | 73 | 9.7 |
| 학교 상급자(교감, 교과부장 등) | 58 | 7.7 |

| | | |
|-----|-----|------|
| 보호자 | 187 | 24.9 |
| 학생 | 152 | 20.2 |
| 기타 | 13 | 1.7 |
| 합 계 | 752 | 100 |

교사의 직권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인권이 교육행정체계에 의해서 침해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보장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 모색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인권이 학교의 주요 주체인 학생과 보호자에 의해 침해된다는 인식이 45.1%이며 이는 직권 침해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다. 교사가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직권침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맥락 안에서 파악하여 교사가 인권침해와 교권 침해를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들간의 관계를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재구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설정은 개인적인 작업을 넘어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인권의 관점, 인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될 것이다.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설문조사를 보완하여 학교에서의 교사의 어려움과 인권실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고자 FGI를 진행하였다. FGI 참여자는 총 3명으로 초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각각 재직 중인 교사로서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FGI는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녹취록을 통해 주요한 주제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역할이 다중적이므로,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을 지도하며 보호자와 협력하는 일, 성적을 높이고 대학입시에서 성과를 올리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 집행과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거나 중첩되어 있다.

(1)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

FGI에서 가장 많이 토로되었던 것은 학교에서 교사로서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과중함과 어려움이었다. 과도한 업무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사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교사의 노동조건과 시간 등을 질문하는 노동권의 이슈이기도 하다. 교사 참여자에 따르면, 교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한다. 타 시도에서는 2000년도에 없어진 ‘방학 중 근무조’ 제도가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년 전쯤에서야 없어졌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숙학교 등에서는 여전히 근무조가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 등의 운영에 따라 교사 노동시간과 그 범위에 따른 논의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 의한 변동이 교사에게 더 부가적인 일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교사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속도가 느림 ‘근무조’의 존속

행정적인 측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슈를 인천시가 늦게 따라가죠. 공문도 빨리 내려오고 반영도 좀 빨리 되는 거 같은데 교사 근무 관련해서는 좀 느려요. 초등은 더 그런 거 같아요. 잘 안 바뀌는 거 같아요. 초등은 아직도 근무조가 있어서 한 명씩 나와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근무조가 4명, 5명이었다가 그래서 방학 내내 일주일에 한번 정도였다가, 이제는 두 세번 나와요. 조금씩 줄어드는데... 타 시도는 과감하게 딱 없애 버리는 거예요. 부산은 근무조가 2000년 초반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 재작년부터 없어졌어요. 보충수업 프로그램도 이미 딴 지역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전히 5~6년 방식 그대로를 고집한다든지. 학급일지, 그런 거는 다른 도시는 벌써 없어졌는데 아직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더 오래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교사 참여자 1)

✓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에 따른 초등교사의 책무 제기

초등도 그런 논리인 거예요. 애들이 돌봄교실 나오고 하는데, 방과후 수업도 있고...“왜 교사가 없냐? 애들이 7시 30분까지 있는데 선생님들은 퇴근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자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부터도 “그래도 우리 나가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교사로서 우리가 책무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을 해?” (교사 참여자 2)

✓ 기숙학교에서의 근무 근무와 방역업무 추가

기숙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다른 형식으로 어쨌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조라는 이렇게 없어졌다고는 해도, 또 다른 변칙? 왜냐면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를 완전히 비울 수는 없으니까요. (교사 참여자 1)

코로나 이때, 갇혀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이제 방역까지 해야 하는 거죠. 학생 성적, 심리적 안정, 그리고 교과지도, 입시지도... 그런데 다 해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게 할 만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숙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앞에 9개는 하나도 없는. 그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고, 일이 터졌을 때 선생님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교사 참여자 1)

FGI 참여자들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도 관련 있다고 말한다.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빈곤층에 속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에 따른 행정 작업도 부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등이 낮아서 이를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더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 참여자 2는 학생들의 학력을 경제 수준이 받쳐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았다.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즉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진로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그래서 계층사회에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의 역할은 더 중요시 대두된다.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러나 그 역할이 지대한 만큼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과 스트레스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인천광역시 경우도 영종도에 난민센터가 있는 등의 지역환경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 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 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업무의 어려움과 과중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학생과 보호자와 소통하는 일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행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다문화배경의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지도와 진로지도까지 그 특성의 결에 따라 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여자들은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학사업무에 더 변동사항이 많아져 이를 안내하고 소통하는 업무가 더 가중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입시와 직결된 상급학교에서는 입시에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는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토로하였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마다 맞추어 필요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종합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작업을 교사의 '피와 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제로 질병을 얻고 아프게 되는 교사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업무의 양 자체가 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매우 높고, 이는 결국 건강할 권리를 주요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서 더 가중되는 업무 스트레스

학교가 확실히 (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있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건 어느 도시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인천은 OO구가 제일 가난하잖아요.. 특성화고가 OO구에 다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한... 이번에 라면 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경기도는 좀 잘사는 지역,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전반적으로 송도, 청라 빼고는 어쨌든 굉장히 힘든 지역이 많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학교가 아파트촌을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무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 참여자 3)

✓ 경제적 상황의 열악함과 기초학력의 수준이 연동되어 있음

(가)학교와 (나)학교가 가깝거든요. 그런데 (가)학교 근처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번듯한 그런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오고, (나)학교는 주공 아파트, 10평대 20평대 아파트 이거든요. 기초수급 받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우유 무상 급식도 많고... 학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나)학교는 기초학력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학교로 가면 너무 편하다고... 생활 환경이 애들 많이 받쳐주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받쳐주고, (나)학교는 그렇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죠. (교사 참여자 2)

✓ 정부지원과 관련된 행정 업무가 상당함

정부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많으면 선생님들 업무도 늘어나요. 지원 관련한 업무를 또 하셔야 하니까. 애들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받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일일이 다 체크 하면서, '애는 얼마 남았다, 애는 얼마 남았다.' 하면서 하셔야 하거든요. 급식실 업무도 많고. 초등학교는 돌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교사 참여자 2)

✓ 다문화 배경 학생 증가와 업무의 가중

인천은 탈북(가정)도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여기 영종도가 난민센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직장도 여기에...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이런 곳에서 아랍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한 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누리 학교 선생님을 알거든요! 거기는 이제 언어가 안 통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보통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와서 하는 그런 학교예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부모님과 의사소통. 학생들과의 의사소통도 다 어렵죠. 통학버스도 넓은 지역에서 오면서 시간도 맞춰야 하고... 부수적으로 신경써야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교사 참여자 2)

✓ 다문화배경 학생과 보호자와 소통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이용 카드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신청하라고 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신청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서 막 해주고, 다시 신청하고. 알림장 같은 걸 올려도 “오늘 등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등교가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뭐가 공지가 올라간 건데... “선생님. 오늘 등교예요?” 몇 월 며칠만 보고, 연락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죠. 매일 등교하면 좀 더 나는데... (교사 참여자 2)

✓ 다문화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 지도의 어려움

담임교사 입장에서도 (학생이) 다문화이면. 약간 접근을 할 때, ‘약간 결을 좀 다르게 해야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생을 다 명단 안에 넣어두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뭘 내야 하고... 계속 개 걸 해줘야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조심스럽죠. 우리랑은 좀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야 하나? 특수반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가 특수반 학생에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학생의 언어 상황에 따라서 일반 학생하고 좀 다르게 챙겨줘야 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고까

지 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교사 참여자 3)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애네들이 학교에서 의미를 못 찾고, 적응을 못하는 걸 지켜보면서 방법을 제안해주는 게, 해결 수 없어요. 일단 수업시간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우리말은 해요. 애들이 뭐 매점가서 밥 먹고...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일상 용어와 수업 시간에 쓰는 학업 용어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영어권에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교는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에 맞는 어떤 학습을 지원하기가 힘들죠. 막상 그 아이들이 적응, 수업 따라가는 거 이런 면에서는 좀 많이 어렵죠. (교사 참여자 1)

✓ 입시성과를 올리기 위한 업무의 엄청난 강도_‘피’로 쓰는 생기부

입시성적이 되는 것은 생기부, 종합 생기부이니까 그것을 선생님들의 피로 쓰는 거예요. 행사를 계속... 애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제일 수재인 줄 알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모든 피 땀을... 그래서 강도가 부서, 담임 이게 막 돌아가니까. 제가 이제 4년째 인데, ‘아, 이거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냥 저도 작년 올해 좀 정신적으로 부딪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려고 어떻게 살지? 아픈 분들이 자꾸 늘어요. 아이들도 많이 아파요. 정말(교사 참여자 1)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기부를 작성하고, 우리가 기록한 걸 자기들이 보고 뽑아 가는 건데. 그게 허상이라는 것도 우스운, 제 생각 자체도 우스울 정도로 입시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선생님들은 우리는 뭐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성실하세요. 성실하시고, 웬만하면 감내하시는 성향 많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해야 해? 우리는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점차 아픈 선생님들이 늘어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트레스 강도가 제가 생각해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질병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업무 강도가 다른 학교의 성과를 내고 해야 하니까. 실제로 안되는 애들을 짜내야 하니까. 입시 때는... (교사 참여자 1)

(2) 붕괴된 교실에서 고립된 교사의 고충

과중한 업무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사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킨다. 특히 교사의 업무 중에 교사를 더 직접적으로 위태로운 수준까지 몰고 가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는 윤리적인 규범적 관계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의 핵심이자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성하는 기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어려움은 교사에게 큰 타격을 준다.

‘교실붕괴’라는 단어로 한 때, 우리 사회에서 학교 현장의 문제가 이슈화 되었는데, 이 단어는 교사가 학생의 통제권을 잃은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이라는 학교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교사와 학생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경쟁 위주의 자본주의적 교육과 입시지옥이라는 구조적인 차원에서부터 사회변동 그 자체이기도 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사회 가치와 규범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서 파악되었다.

FGI에서 교사에게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는 부담감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임직을 맡지 않으려 하거나, 학급편성 결과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위태로운 벼랑 끝에 몰린 듯 정신적 어려움을 ‘통곡’으로 드러내는 교사를 목도한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실 안의 일은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실 안에서 붕괴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교실붕괴의 현상은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동시에 교사

의 가르칠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함께 묻고 있으며, 원론적인 이슈이지만, 붕괴된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운다’의 사회적 의미와 의의를 다시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제기하고 있다.

✓ 학기초 중요한 미션은 ‘담임’피하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해요. 일단, 3월에 어떻게든 담임을 안 맡는 게 최고의 미션이에요. 어떻게든 담임을 안 맡고, 담임을 안 맡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을 2월에 골라 버려요. (교사 참여자 3)

✓ 학급편성의 긴장감과 부담감

선생님들이 이제 반 편성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2월 말에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뽑을 때 굉장히 또 긴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일 년을 이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데, ‘이게 복불복이다. 어떤 애들이 걸릴지 모른다. 내가 잘못 고르면 일 년을 고생한다. 이거 한 번 뽑는 거에 대해서 내 일 년이 결정된다!’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교사 참여자 2)

✓ 학급편성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

굉장히 힘든 애들을 3-4명을 몰아서 반편성이 됐어요. 그 분들은 반편성을 골라주 한다고 했었겠지만, 또 개네들이 올라가면 그 안에서 시너지가 생기면서 또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경력이 많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인데도, 동학년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동학년은 우리반은 그렇지 않으니깐 그냥 들어만 주고, 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애를 맡게 될까. 내가 이런 경우에 내가 능력이 없는 걸까? 막 트라우마도 생기셔 가지고 (교사 참여자 2)

✓ 숨길 수 없는 지경에서 통곡하는 선생님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평평 우는 선생님들 3명을 보았어요. 정말 주체를 못 하게 울어요. 선생님이. 학생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날은 컨트롤 안 되게 우는 선생님을 3명을 봐 가지고, 저도 그날 되게 힘들었어요. 저 정도로 우는 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교사 참여자 3)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썬 애들이 약한 선생님을 잡아 먹어버리고 있는 상황 이에요. 드센 애들이 약한 선생님들을 다 이제 잡아 먹어버린 상황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그 스펙트럼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울고, 붙들고 울고. 한 분은 통곡을 하고. 한 분은 상담 선생님 붙들고 우는데 막 컨트롤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교원들도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숨기는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사 참여자 3)

✓ 병이 날 것 같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지도

선생님의 트라우마를 보면서 명퇴를 좀 더 빨리 해야 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고. 이렇게 너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2시간만 있으면 등에 등줄기에 땀이 짝 나오고, 막 오한이 들고. 병이 날 것 같고. 집에 가면 자야 하고. 너무 힘들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애네들이. 이게 교사 혼자만의 일로 감당이 되는 거.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선생님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교사 참여자 2)

(3) 교육 3주체의 불균형한 삼각형 관계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보호자인데, FGI에서 교사는 교실에서의 학생 지도 업무뿐만 아니라,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하였다. 학부모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학부모가 민원인이 아니고 주체라면 어떻게 개입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전

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시도 때도 없이 학교 밖에서 선을 넘어오는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으로부터 ‘교사의 인권’이 박살나고 있다는 심정까지 토로되었다. FGI 참여자들은 교사들은 교육자라는 입장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의 갈등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없는 구조에서 보호자는 적극적인 집단적 민원행동을 통해 담임까지 교체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의 주체가 교사, 학생, 보호자로 삼각형을 이룬다면, 관계의 지형도 역시 온전한 삼각형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학교 현장은 학생 지도가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교사의 각이 심각하게 찌그러져 있는 현실로 파악하고 있었다.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가식이라도 보호자에게 아주 친절해야 하고, 무조건 참아야 하고, 주위에 드러내지 않고 혼자 물어야 하는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사 참여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 학부모의 위치가 높아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함

교사로서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압박 중의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위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푸시(압박)를 넣는 게, 정말 ‘아이에게 진짜 몇 시에 몇 시에 한약 좀 챙겨먹여라’ 라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교사 참여자 1)

✓ 보호자의 선 넘은 요구와 압박_민원인인가? 주체인가?

학부모가 뭔가를 요구해왔을 때, 이걸 좀 잘라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요구도 끝이 없어요. 저도 선생님 처음 할 때 힘들게 학생한테 적응했더니, 이제 학부모들하고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부모들하고의 학부모를 교육의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런 가이드 라인도 필요해요. 우리는 학부모를 민원인으로 바라봤었는데, 주체로 들어오고, 이러면 학부모들도 끊임없이 개입해 들어오는 그들의 개입을 끝

없이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역으로 학교의 담은 너무 높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봤을 때는 그 담 넘어 들어오는 학부모들이 너무 썬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인권이 그쪽에서 많이 박살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1단계가 전화, 2단계가 쫓아오는 거 이렇게. (교사 참여자 3)

✓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보호자 전화

선생님들이 요구를 했던 게 학기초에 듀얼 넘버 서비스 있었어요.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니깐 새벽이든, 밤이든.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말기 지급을 해달라, 듀얼 넘버 서비스를 해달라. 교육청에서 지급해달라,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것도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교조뿐만 아니라 전교조 뿐 아니라 이제 교총에서도 요구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교사 참여자 2)

✓ 학생과 보호자와의 갈등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는 구조

학생과 학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교육자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라는 이름에서는 뭔가 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수용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고,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 갈등이 생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나면 진짜 이렇게 따져 보기도 하지만 이게 학생하고는 따지기도 어렵고. 미성년자이니까..., 저는 교육자라는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교사 참여자 1)

✓ 교사를 쫓아내는 학생과 학부모

‘OO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 말만 믿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바로 쫓아가서 민원 넣고,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갈 수 밖에 없게끔.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담임 교체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는 또 굉장한 상처가 되고,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한테 ‘담임이 그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럼 쫓아낼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학생들은 ‘우리가 선생님을 쫓아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영웅심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교사 인권에 크게 미치는 영향인 것 같고...(교사 참여자2)

✓ 교육 3주체 시스템 밑에서 병들어가는 교사

교육의 3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인데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중심을 옮기고 나서 발생하는 모든 게 다 교사 쪽에다가...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로 들어오면서 여기에다 어떤 그 업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교사한테 넘어오면서, 교사에 대한, 교사에 대한 어떤 것도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죠. 이 둘을 살려주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시스템의 수레바퀴 밑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선생님이 많아지는... (교사 참여자 3)

✓ 3주체 간의 찌그러진 삼각형 관계

3주체이니까 삼각형을 그려봤어요. 온전한 삼각형은 전혀 상상이 안 되고요. 뭔가 찌그러진? 왼 가쪽으로 좀 찌그러진.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거를 온전한 삼각형의 모양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각자의 인권이 살아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지점이라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다 찌그러져 있는. 어느 한 쪽은 비대하고 어느 한 쪽은 약하고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교사가 엄청 강화되어있고, 어느 부분은 학부모가 그냥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어느 지경이라고 하면 저는 모양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교사 참여자 3)

✓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잘 참아야 하는 교사

챙겨줘야 하는 일이 요구가 되는 순간,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이걸 챙기려면 교사는 피와 땀을 다 녹아 내는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삼각형이 만들어 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점점 점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로섬처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가르치는 일) 그대로 있고 이게(서비스하는 일) 점점 커지는 느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일이 터져도 선생님이 참아야지, 선생님이 뭐 인권 이야기가 안 나오죠. 이 삼각형이 나머지가 아닌 거. (교사 참여자1)

✓ 참고 묻어야 하는 감정노동에 시달림

교사는 두 가지 큰 의무가 주어지는 거 같아요. 첫 번째 잘 가르쳐야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잘 가르쳐야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잘 해야 해요. 이 두 가지. 서비스라 함은 선행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포용해야 하고, 그리고 잘 참는 거. 이런 거...(교사 참여자 3)

친절해야 해요. 말을 예쁘게 잘 해야 해서... 학부모한테요. 진짜. 가식이라도요. 그 다음에 문제 거리를 만들면 안돼요. 친절하게 잘... (교사 참여자 2)

참아야지. 물을 수 있으면 다 물어 버리는 거예요. 참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에요. 그냥 다 물어버린다니까요. 내 가슴에 다 물어버리기만 하고. (교사 참여자1)

교사는 서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의 주체로서의 입장보다는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약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교육 행정 측면에서도 교육의 주체로서 대우받기보다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중요한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주체가기보다는 신문기사로 알게 되는 정책을 일선에서 그대로 받아 감당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자조섞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말해지지만, 교실에서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압박감은 그리고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교육행정체계로부터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의 주체가 아닌 일방 통보에 따라야 하는 현실

이번에도 또 재난 관련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사로 받아서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협의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내려오면 교육감이나 장관이 발표하면 그때 이제 다음주부 ~ 공문으로 오기 전에 먼저 언론으로 들고, 뭐 뭐 하더라. 그래서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그리고 또 굉장히 교사의 수업권에 굉장히 상처가 된다. 스크레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는 거기에 빠져있고, 바로 다음주부터 긴급돌봄에 도시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선생님 들이나 급식실에서는 그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1학기 때는. 그런 것들이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교사 인권침해가 그런 쪽으로 많다, 많았다고 생각해요. (교사 참여자 2)

(4) 교사 혼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구조

FGI에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과 보호자와 관련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갑질’로 교사에게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특정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그 구조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교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거나 압박하기도 하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며 혼자 감당하게 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체계와 구조를 유지시키므로써 교사의 노동권을 열악하게 만들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중한 업무, 특히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 보호자의 선을 넘는 무리한 요구와 압박 등 교육현장에서 겪는 교사

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롯이 교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은 교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 교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학교 관리자의 갑질

선생님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학교를 막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갑질. 학교가 교육청이 애쓰고 학교를 바꿔 나가려고 해도. 또 관리자가 안 움직이고 협조 안되고, 이렇게 되면 그 학교가 굉장히 그 학교 전체가 선생님들이 무기력해 지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 참여자 2)

✓ 문제가 생기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자

예전만큼 관리자랑 아주 수직적인 구조가 많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해결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다수의 선생님은 ‘담임 네가 1차 조치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텐데’ 라는 걸 깔고 가죠. ‘비슷한 일들은 잠잠한데 왜 너네 반에서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초반에 잘해야지’ 제 생각에는 90%는 담임 선생님이 첫 번째 수습을 못했더라도 원망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사안에 대한 고민이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문제 생기기 전에 빨리 수습해놓지, 왜 이렇게 키웠느냐. (교사 참여자 1)

✓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교사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른이니까, 교사니까, 상대가 학생이니까, 뭐 민원인이니까, 뭐 심지어 갑질하는 교장이니까.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막 밀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어요. 이거를 들여다보고, 혼자 감당을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직장인들도 그러냐? 싶지만 우리의 일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인 거잖아요. 니가 왜 수업을 이렇게 가르쳤어? 가 아니라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교사 참여자 3)

교사들은 도움 요청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전전공공하고, 교감 선생님

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옆에서도 위로만 해주지, 여기서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파 버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요. 심지어 뭐 학부모의 폭력, 전화폭력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교사 참여자 3)

✓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정말 직장인 분들도 이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 저한테 감당하라고 하고, 관계의 문제인데. (교사 참여자 3)

각자 포지션마다 다른 색깔의 짐 덩어리가 있으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담임은 담임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다 조용히 하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 나만 뒤처지나? 그리고 남 일에 관심도 두기 어렵죠. 그리고 관심이라고 해봤자, 그냥 가십으로 그냥 뒤에서 뒷담화하는 수준이니까 입에 오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감당하는 편인 거 같아요. (교사 참여자1)

✓ 인간관계가 사라진 파편화된 학교

선생님들은 아픈 걸 표는 안 내죠. 전혀... 그냥 이렇게 지내죠. 이렇게 지내는데. 그리고 우리가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서, 그런데 보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각자 해결이지... 그냥 다들 그리고 예전 학교 보다는 더 파편화 되어있어요. 각자. (교사 참여자 1)

예전에 해결,, 그나마 같이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는 선생님들의 마음조차도 이제 그런 공유가 하기 힘든 게 된 거 같아요. 예전에는 함께 공유하고, 사실은 그거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딱! 밴드 붙이는 것처럼... 치료는 안 되겠지만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버틸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호관계? 그런 인간관계도 예전보다도 훨씬 사라졌어요. 저도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교사 참여자1)

체계적인 지원 없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일터인 학교에서 관계는 더욱 파편화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각자 고립되어 ‘병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교사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교사의 노동권 문제의 해결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실제로 FGI 참여자들은 일터인 학교에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체계, 담당자나 책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다. 이에 관한 내용은 매뉴얼을 통해서든지,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서든지 일터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홍보해야 할 사항이고, 이를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교사에게 노동인권교육이나 매뉴얼 안내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건해결을 위한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로부터 회복하거나 소진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교사의 직업적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 작은 사건처리도 조력해주지 않는 학교

분명히 학생들 케어하는 상담 선생님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사를 케어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진짜 저쪽 학교에서 아파서 우리 학교에 왔어요. 작은 사건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커져요. 그럼 또 상처받고, 그럼 이 분은 계속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이분은 더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 참여자3)

✓ 사건해결절차나 조력체계를 전혀 안내받지 못함

그냥 위원회가 있다라고 그 정도? 교권 보호 위원회 인가? 교권 침해 위원회 인가? 그걸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 참여자2)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닥치면 담당자나 책임자가 누군지 물어보면서 할 것 같은데요? (교사 참여자2)

✓ **교사 인권보호와 관련된 매뉴얼에 대해 안내받지 못함**

연초에 저희는 기숙사에서 애가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매뉴얼, 이런 저런 매뉴얼은 엄청 많은데. 선생님 사이에서 “이런 인권, 교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받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초에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나 매뉴얼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소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게 큰데, 우리는 연초에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매일 투표로 뽑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한 안내조차 한 번도 받지 못했구나, 싶어요. 교사에게 전화 응대 매뉴얼만 보내지 말고요. 교사에게도 필요한 것을 연초에 안내해주면 저만해도 조심할 것 같아요. 제가 무심코하는 말들로 누군가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교사 참여자 1)

✓ **교사의 노동인권에 대해 교육받아본 적이 없음**

노동인권교육은 거의 안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교사는 노동자라는 별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는 상황이고...(교사 참여자 2)

✓ **소진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거나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교사가 힘들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요. 학교 공식적으로 선생님들 이런 심리치료나 관련된 오프라인, 온라인... 거의 없어요. 행정적으로 인천교육연수원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교사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정말 없어요. 교육연수원은 솔직히 동영상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요. 간혹 힐링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거의 미비하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지원도 못 받고요.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이나 강사 이런 것도 없어요. (교사 참여자1)

그래서 FGI 교사 참여자들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건해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 요청을 학교가 아닌 외부에 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지지해주며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강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자신을 설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학교가 대부분의 일을 교사 책임으로 전가하고 혼자서 해결하게 하는 분위기가 이미 확산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고 공정하게 사건해결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학교 안의 지원체계를 이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인다.

✓ 인권침해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 요청은 외부로

만약 저는 그런 위험(인권침해)이 생긴다면 내부로 해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사 참여자 3)

교내에 교권 보호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걸 밝히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 한테도 분명히 알려질 거고... 교원 도움터나 다른 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아니면 노조나 이런 노동조합이나 그런데로 할 것 같아요. (교사 참여자 2)

아는 기사를 이용해서? 교장한테 “OO일보인데 그 학교 이런 일이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교장이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사례처럼요. 기사는 안 나고 훈훈하게 마무리 되고. (교사 참여자 1)

✓ 내부에서는 용인하도록 설득당할 가능성 높음

(외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저를 독립적으로. 이 사건 하나로 저를 보지 않고, 그 맥락 속에서 저를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데로 전달되지 않고, 관계에 의해서 제가 설득을 당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안이 중요하네. 전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관계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은 과감하게 확 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 참여자 3)

(5) 은근히 배척당하는 노동조합원 정체성

FGI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교라는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험수준은 상당했다. 업무 양도 과할 뿐만 아니라, 교육 3주체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과 소진, 감정노동의 수준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사의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조력해주는 체계는 부재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교사 개인이 감당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일터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현재 교사가 가입할 수 있는 노조는 1989년 창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최근 2017년 창립된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있다.

그러나 교사의 노동자 정체성과 노동조합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고, 특히 전교조에 대한 거부감과 배척이 오랫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FGI에서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노조활동을 가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방식으로 전교조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교사들 중에서도 노동조합원 정체성에 대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전교조 소속임을 들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떠맡기거나, 공과(功過)에서 실수와 허물인 ‘과’를 더 부각시키는 등의 일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학교를 이동할 때, 관리자 쪽에서 노조 소속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껴 탈퇴하는 교사도 종종 있다고 한다. 여전히 교사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조활동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로 교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시도했던 사안에서 주위 동료 교사들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노조원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움

그렇다고 해서 막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전교조 선생님들 자체도 “내가 전교조야.” 이렇게 4년 내내 이야기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학사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나, 전교조였어”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교사 참여자 2)

✓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전교조 노조 정체성

저는 (전교조 소속인 점) 눈치는 안 보이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이제 낙 인찍고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선입견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는 전교조가 싫어!” 하는 사람들은 눈빛도 좀 달라지고요. 관리자는 또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사 참여자 2)

친해지면 이야기해요. “전교조” 정말 싫다고. 안 친해지면 말을 아끼죠. 왜냐면 어디 가서 터트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해요. (교사 참여자 3)

✓ 오히려 노조원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김

저한테 실은 “너, 전교조에서 무슨 도움이 있었냐?” 그러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게 전교조가 힘이 되었죠. 학교 안에서는 “전교조해서 도움받은 건 있냐?” 라고 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와서 맡기는 거? “이런 거 전교조라면서 해야지.”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를 주체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지, 근무환경에서 어떤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 참여자 3)

✓ 같은 일이어도 전교조 노조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함

이제는 관리자가 말을 삼가는 거 같아요. 싫을 거예요. 전체 많은 선생님 중에 전교조도 있고 태극기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감당하는 건 그건 자기들 몫인데. 오히려

동료 선생님들이 똑같은 자 A, B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전교조 선생님도 그랬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똑같이 교사니까 그 공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나, 전교조 선생님인데도 그래?” 뭐 이런... (교사 참여자 1)

✓ 노조원 정체성에 부담을 느껴 탈퇴함

‘웁길 때 탈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지점이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로운 학교 발령 받아서 가면 ‘노조, 어디에 가입되었나?’ 체크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동할 때, 이동할 때 빠지는 선생님들은 관리자 눈치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교사 참여자 3)

✓ 탈퇴로 노조활동력이 약해지고 소수가 됨

학교를 옮길 때마다 (전교조)탈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탈퇴를 하고 하니가 동력이 자꾸 약해지고 하니가. 점점 이제는 그냥 소수가 되고 (교사 참여자 1)

✓ 노조원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을 교내에서 얻기 어려움

학교 내에서 동력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송도에 어떤 모 학교가 있는데. 이제 교과전담 대상으로 해서 보결 수업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날 연가를 써서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 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결 수당이 생겼어요. 만 오천원씩. 그런데 그거 말고 아침 자습, 점심, 하교 지도 에는 보결 수당이 안 들어가요. ‘보결 수당이 안 들어가는 그때는 교과전담이 들어가라.’ 이거를 부장 교사들끼리 교감하고 정한 거예요. 이제 교과전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없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논의하자.’고 기간제 7명 중에 3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쟁이 되어서 그랬던 상황인데, 그런데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간 거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가 떨어지고... 혼자 싸우게 된 거예요. 전교조 선생님이. 전교조 혼자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학년에게도 호응을 못 얻고. ‘사고 나면 그럼 우리의 책임 아니냐? 그래서 교감을 1순위를 두고 교과전담을 넣어라. 그럼 교감이 출장이 있거나

바쁘면 교과전담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감 절대 안 받아들이고. 담임 선생님들도 다 그것을 중재해주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우리 교실에 교장, 교감 선생님 오는 거 싫어’ 이렇게.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좀 힘들구나. 같이 하다가도 나가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또 끌어내리고 이런 것도 있고. (교사 참여자 2)

(6)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론화할 수 없는 학교

여전히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 일이나 사회의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시체제를 중심으로 학사가 운영되는 고등학교 교사인 교사 참여자1은 학교에서 교사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교사들이 동료의 일을 공유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공론화하지 못한다고 토로하였다.

학교 역시 현재 각자도생의 험난한 밀림이 되어버린 사회처럼 각자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각자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벽차고 무거워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서로 고립된 파편화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목소리가 막혀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학교 일과 사회의 일에 대해서 공론화하여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이든, 집단적인 목소리이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불온시하고 금지하며 자유권과 시민권을 유예할 수 있는 장소로 학교를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 공식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님

(다른 교사의 사안에 대하여) 지금은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물론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지만 교장, 교감, 동료, 주무부장들이 다 발을 빼고. 외면하고, 저조차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 행정적으로 전교조 활동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거를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남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복잡해지고 싶지 않고. 지금 현재 내 것도 벅차고 그래서 다들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분위기. 이게 더 이것도 있는 거 같아요. (교사 참여자 1)

✓ 집단적으로 의견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음

미투 같이 관련자가 우리 동료다 그러면 관련자가 동료이면,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삼가하는 경향이 많죠. 미투 일이 있으면, “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충 얼버무린다, 교장 선생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의사표현은 거의 없고.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점점 더 감정표현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사 참여자 1)

✓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공유도 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없는 거 같아요. 그걸 했다고 해서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남 일에 끼어들지 않고, 공유 자체도 안해요. 왜냐면 안 끼어들면 내가 고민할 게 아니니까. (교사 참여자 1)

✓ 자신의 학교일을 공유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함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자기 학교 일을 다른 학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 학교 선생님하고 공론을 안 시키고 자기의 아픔, 이런 걸 왜 다른 학교랑 만나서 푸냐? 내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거죠. (교사 참여자 1)

(7) 조직 문화 _ 펜스를¹³⁾과 비정규직 채용

학교에서 일종의 조직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고 확산되면서 학교구성원들이 크게 인권의 이슈로 인식하지 않는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대처와 학교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중이다.

사회에서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등의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성평등의식이 진전된 동시에 성평등에 대한 오해나 거부감도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슈의 제기가 바로 의식의 진전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이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아직 학교에서는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희롱예방교육을 비롯하여 의무교육이 1년에 1회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식의 전환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희롱 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고양되고 인식이 전환되었다기보다는 아예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피하기위해 여성을 배제하는 일종의 펜스를처럼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도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 되어 문제제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는 가해행위자

오히려 관리자분들이... 이걸 관리자나 동료나, 인품하고 관련이 있는데, 본인이 남을 괴롭히고, 이게 성희롱적인 발언인지, 폭력인지를 전혀 인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많건 어리건 무개념으로. (교사 참여자 1)

13) 펜스란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제기되자, 이 문제를 직접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성과의 대면 상황 자체를 없애는 등 공적 생활의 현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 문제는 인식 전환보다는 펜스룰로 대응

성희롱 문제는 아예 펜스룰, 아예...그냥 거의 저희 학교는 특히나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예 그냥 목레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게 끝이에요. 남자 선생님들도 강화가 되어서,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니까 옳다! 뭐 이런 느낌으로. 피하지 뭐 이런 느낌 들고.(교사 참여자 1)

✓ 더 드러내기 어려운 성희롱

관계는 많이 드라이해지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둘만 알지. 대놓고 막 이렇게는 안되고, 둘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내기도 어려워졌어요. (교사 참여자 3)

비정규직의 문제 역시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거나 노동인권교육 등을 통해 노동의 의미가 질문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차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은 선택권 없이 정규직이 맡고 남은 업무나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안아야 하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되며, 정규직 조차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차별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교사 참여자 3은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만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서로의 목소리가 함께 울리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직은 차별에도 더 말하지 못함

저는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건 학교 안에 비정규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로는 이쪽 비중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비정규직으로서의 자기들이 받는 차별이 굉장히... 학교 안에! 학교구성원 중에 워낙 많아요. 상담, 사서, 영양 선생님 이쪽이 아직도 비정규직이 엄청 많아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못하고 계신 그런 거라는. 정말 우리 구성원이 정규직이 적어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정규직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좀 더 칸이 있어 버리니까, 칸 안에서 정규직 교사들끼리도 말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야카도 이야기했던 건데 그 비정규직은 얼마나 더 못하겠어요. (교사 참여자3)

✓ 정규직이 맡고 남은 업무를 해야하는 비정규직

정규직이 다 맡고 나서 뒤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은 거. 그렇잖아요. 이야기 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께 될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정규직은 어때요? 남은 것 중에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사 참여자 3)

✓ 비정규직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음

저희는 기간제 선생님한테 업무를 크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은 아무도 안 하고요. (교사 참여자 1)

✓ 정규직이 비율을 높여 수평적인 학교

그래서 학교 안에 비정규직이 줄어들어야 학교 안에서 해야 할 어떤 상담이나 또는 애들 밥 먹이는 것도 같은 구성원으로서 훨씬 더 논의를 했을 때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정규직으로만 일을 해가지고 잘 못 느꼈는데. 교육청에 들어가서 파견부서에 들어가니까. 남들이 봐서는 파견이 더 저희도 파견이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도 했지만, 그 칸이 보여요. 학교 안에 좀 더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져야 서비스, 학생들이 학교 안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수평적이게 되고,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참여자 3)

(8) 좀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변화

FGI 참여자들이 좀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의견을 밝혔다. 가장 간결하면서도 많은 함의를 품고 있는 의견이 바로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학교의 3주체인 교사, 학생, 보호자를 포함하여 학교 안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많은 과중한 일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진되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교사에게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교실에서의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고 있는 교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관계를 맺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시간을 통해 교실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며, 교실 안에서 학생들, 교문 밖에서 보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도 시간의 여유, 마음의 안정된 여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업무와 시수를 줄여 관계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역할을 질문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돌보고 성장하는 교육으로의 구조적 변화가 되어야 가능한 지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시작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시스템 필요

혼자 사건이 생겼을 때 교실에서 외롭게 처리해야 하는.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좀 받춰 줬으면 좋겠고요. (교사 참여자 3)

✓ 학교 안 교사 지원체계 확립과 홍보

교육청, 제도 이러면 피부로 안 와닿아요. 이게 과연 나에게? 그러니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아까 말씀 드렸던, 분명히 성폭력이나 교권 지원 체계가 교내에 우리 학교 내에 내가 늘 만나는 이 사람이 총 책임자이고, 이 사람이 해준다는 것을 홍보해주는 것도 안정감과 그다음에 사전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부터...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하면 한 다리 건너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교사 참여자 1)

✓ 수업방해에 대한 대처 매뉴얼의 작성과 배포

해외는 수업 중 방해하거나 이렇게 일탈 행동을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해요. 해외 사례를 조금 받아서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혼자 감당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셨더라고요. ‘이것은 선생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경우에는 1단계 어떻게 한다. 2단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성원들 간에 민주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사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해주시는 것 같고, 만들어진다면 그게 학부모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학교 설명회나 평소에도. 그러면 외롭지 않고... 내가 뭘 뽐든 간에 우리 아이가 힘들지만 함께 키운다 애를.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도 함께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여유 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참여자 2)

✓ 업무와 수성 시수 줄여 관계를 맺는 시간 확보

지금 학교에서 수업, 수업, 수업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8시 50분에 수업 시작하면 4시 30분이면 끝나요. 학생을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학생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 선생을 만날 시간은 있겠어요? 없잖아요. 교사들 안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여백, 여유가 좀 있었어야하는데... 선생님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학생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있어야 하는데. 막 몰아쳐요. 학생들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 옆에 동료들 만날 시간은 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좀 더 정책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교사 참여자 3)

지금 수업시수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만나지를 못해서 여백이 없고. 지금 수업시수 줄이는 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랑 업무 줄이는, 경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사 참여자 2)

✓ 더 많은 정규직과 함께 협업하는 학교 지향

학교에 더 정규직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만 함께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교사 참여자 3)

✓ 노동의 강도를 낮추어야 인권감수성도 기대할 수 있음

각자 빠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급여 주면서 엄청 많은 걸 한 사람한테 엄청 많은 역할을 때려 부어서 하도록 하니까요. 학교도 때려 부어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유나 여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또 막 쳐내야 하니까. 서로 위로해서 말하고 이렇게 없죠. 그래서 협박도 많이 하고, 엇그저께 저희 교장 선생님도 막 협박을 하시던데요. 말은 친절하게 말하지만 '니들 이거 안 되면~'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죠.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아마 그 원인은 그분이 뭐 인권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런 것도 있지만. 해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담임도 교실에 와서 시간이 있으면 기승전결 하겠지만 바쁘면 어때요? 전결하고 딱 끝내버리면 앞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결을 살리는 거. 인권 감수성을 각자 심어주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노동의 강도를 낮춰줘야지만. 안 그러면 아무리 감수성이 있어도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참여자 3)

2. 직원

1) 설문지 조사 결과

(1) 직원 응답자 일반 특성

참여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의 응답자는 총 252명이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초등 47개 학교, 중등 40개 학교, 고등 60개 학교의 직원 약 300명의 예상인원을 구성하였고,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행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설문외의 협조 공문과 함께 설문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2~3차례 조사 참여 격려를 요청하였다. 최종 설문에 응답한 직원은 252명이었다.

직원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196명(77.5%), ‘남성’ 47명(18.6%), ‘선택하고 싶지 않다’ 10명(4.0%) 이었으며, 여성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120명(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2명(20.6%), 30대가 59명(23.3%), 20대 16명(6.3%), 60대가 6명(2.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의 설립형태는 ‘국공립’이 222명(87.7%), ‘사립’이 31명(12.3%)이었으며 학교유형은 ‘일반고’ 88명(34.8%)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가 67명(26.5%)과 ‘중학교’는 63명(24.9%), ‘특성화고등학교’는 25명(9.9%), ‘특목고등학교’가 10명(4.0%) 순이었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소속의 직원은 본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 대부분은 ‘남여공학’이 146명(57.7%)이었으며, ‘여학교’에 소속된 응답자는 60명(23.7%), ‘남학교’ 소속의 응답자는 47명(18.6%)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표본에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기에 남여공학 소속의 직원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여학교

와 남학교 소속 직원의 응답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부평구 지역의 학교 직원이 45명(17.8%)으로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남동구 44명(17.4%), 서구 39명(15.4%)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동구와 용진군은 각각 6명(2.4%), 0명(0.0%)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관련 교육 이수 경험을 살펴보면 ‘성폭력관련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가 240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가 128명, 25.8%로 많았다. 그러나 ‘5시간 이상의 인권/인권교육 연수’를 이수한 응답자는 25명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이 현재 이슈화 되고 있고 특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머물러 있고 인권의 넓은 영역,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중심의 교육이외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표 4-21〉 직원 응답자 일반 특성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성 별 | 여성 | 196 | 77.5 |
| | 남성 | 47 | 18.6 |
| | 선택하고 싶지않다 | 10 | 4.0 |
| 연령대 | 20대 | 16 | 6.3 |
| | 30대 | 59 | 23.3 |
| | 40대 | 120 | 47.4 |
| | 50대 | 52 | 20.6 |
| | 60대이상 | 6 | 2.4 |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학교유형 | 초등학교 | 67 | 26.5 |
| | 중학교 | 63 | 24.9 |
| | 일반고등학교 | 88 | 34.8 |
| | 특성화고등학교 | 10 | 4.0 |
| | 특목고등학교 | 25 | 9.9 |
| | 마이스터고등학교 | 0 | 0.0 |
| 설립형태 | 국·공립 | 222 | 87.7 |
| | 사립 | 31 | 12.3 |
| 공학여부 | 남여공학 | 146 | 57.7 |
| | 여학교 | 60 | 23.7 |
| | 남학교 | 47 | 18.6 |
| 지 역 | 강화군 | 13 | 5.1 |
| | 계양구 | 20 | 7.9 |
| | 남동구 | 44 | 17.4 |
| | 동구 | 6 | 2.4 |
| | 미추홀구 | 20 | 7.9 |
| | 부평구 | 45 | 17.8 |
| | 서구 | 39 | 15.4 |
| | 연수구 | 39 | 15.4 |
| | 옹진군 | 0 | 0.0 |
| | 중구 | 27 | 10.7 |
| 교육이수 | 성폭력 관련교육 | 240 | 53.9 |
| | 인권교육(4시간 이내) | 53 | 11.9 |
| | 인권/인권교육 연수(5시간 이상) | 25 | 5.6 |
| | 학교폭력 예방연수 | 127 | 28.5 |

응답자의 근무 경력은 20년 이상이 83명(32.8%)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응답자는 42명 16.6%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66%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으며 7급이 66명 26.1%로 가장 많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직급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65명(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직 14명, 대체근로자 12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104.33개월로 약 8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직원 응답자 경력 및 직급

| 특 성 | 구 분 | 빈도(N) | 백분율(%) |
|----------|---------------|-------|--------|
| 경력 | 5년 미만 | 42 | 16.6 |
| | 5년 이상~10년 미만 | 49 | 19.4 |
| | 10년 이상~20년 미만 | 79 | 31.2 |
| | 20년 이상 | 83 | 32.8 |
| 직급 | 9급 | 8 | 3.2 |
| | 8급 | 30 | 11.9 |
| | 7급 | 66 | 26.1 |
| | 6급 | 48 | 19.0 |
| | 5급 | 17 | 6.7 |
| | 기타 | 84 | 33.2 |
| 기타직급의 직렬 | 교육감 소속 근로자 | 65 | 71.4 |
| | 시설(관리)직 | 14 | 15.4 |
| | 대체근무자 | 12 | 13.2 |

〈표 4-23〉 직원 응답자 대체근무자 계약기간

| 질문 | 응답 | | |
|------------------|--------|-------|---------|
| | 응답수(N) | 평균(년) | 표준편차 |
| 대체근무자의 학교와의 계약기간 | 12 | 8.6 | 317.026 |

(2) 인권 인식과 인권 행동

아동·청소년으로서 스스로 견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권리 의식에 대해 총 6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주체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질문하였고 이에 ‘그렇지 않다’에 46.6%, 124명이, ‘그렇다’ 53.3%, 142명이 응답하였다. 직원 응답자들은 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우선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에 조금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아동·청소년 역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학생은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7.5%, 231명이었고, ‘그렇지 않다’가 12.5%, 33명으로 나타나, 의견에 대한 결정권보다는 더 적극적인 권리인식을 보여주었다.

“아동·청소년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259명, 97.8%에 이르고,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역시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긍정적’ 응답 역시 94.7%, 251명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 직원들은 아동·청소년 모두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해야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생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보다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의 문항과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문항에 모두 ‘긍정적’ 응답이 250명 94% 이상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은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학교구성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직원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11 (4.1) | 131 (49.2) | 88 (33.1) | 36 (13.5) |
|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58 (22.0) | 173 (65.5) | 27 (10.2) | 6 (2.3) |
|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138 (52.1) | 121 (45.7) | 5 (1.9) | 1 (0.4) |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05 (39.6) | 146 (55.1) | 10 (3.8) | 4 (1.5) |
|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91 (34.3) | 170 (64.2) | 1 (0.4) | 3 (1.1) |
|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91 (34.2) | 161 (60.5) | 11 (4.1) | 3 (1.1) |

인권보장제도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관한 주요 인권문서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일부 내용을 알거나 자세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약 35%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은 이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의 학생인권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알거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유엔권리협약’보다 많은 143명(53.8%)으로 나타났다. 직원 응답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주요 인권문서에 대해 들어봤으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보다 확장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에서 아동·청소년의 인

권목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유엔권리협약’의 내용에 바탕을 두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4-25〉 직원 응답자의 인권보장제도 인식

| 질 문 | 응답 | | | |
|------------------------|----------------|-----------------|---------------|----------------|
| | 처음 듣는다 N(%) | 이름만 들었다 N(%) | 일부 안다 N(%) | 자세히 안다 N(%) |
| 유엔아동권리협약 | 44 (16.5) | 128 (48.1) | 85 (32.0) | 9 (3.4) |
| 헌법과 교육기본법 내 학생 인권내용 | 6 (2.3) | 103 (38.7) | 143 (53.8) | 14 (5.3)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34명(88.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학교구성원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직원 응답자의 “학교구성원인권보장조례” 필요성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필요하다 N(%) | 필요한 편이다 N(%) | 필요없는 편이다 N(%) | 전혀 필요없다 N(%) |
|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보 장조례가 필요하다. | 49 (18.5) | 185 (69.8) | 23 (8.7) | 8 (3.0) |

막연히 ‘인권이 있다’는 표명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행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학생과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의 인권 의식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가치를 체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인권 행동의 실천을 알아보기 혐오표현 사용자제, 혐오표현 사용자제, 인권침해 반대, 학교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이 아닌 인권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행위인 혐오표현에 대해서 대처하여 행동하는지를 “나는 누군가를 얽잡아보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의 질문에 262명(9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친구나 주위 사람이 얽잡아보는 말을 사용하면 말리려고 한다”는 항목에서도 241명, 91.3%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혐오표현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고 이에 대해 대처하는 행동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타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는지를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의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 답변 239명으로 90.2%로 이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 응답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혐오표현의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보다 이를 제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행동,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타인을 조력하려는 행동의 의지는 다소 낮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을 이해하고 이 가치에 동의하여 그것을 체현하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것과 타인을 제지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에 조력하는 행동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나와 주변에서 나아가 사회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평소 학교나 사회의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로 질문했을 때, 239명(90.2%)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가를 질문했을 때는 207명(78.1%)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직원 응답자들은 내 주변에서의 인권 문제에서 나아가 사회 문제로 확장했을 때도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동하는 노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간극은 인권문제를 확장했을 때 더 벌어지고 있었다. 평소 옳지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에서 옳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들이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무언가를 바꾸고자 할 때 학교 내에서 이들의 위치나 권한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또한, 학교에서 주류의 구성원이 아니라 주변인으로서 발생 되는 권력의 차이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들의 행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없는 태도에서 인권문제에 대처하고자 행동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27〉 직원 응답자의 인권행동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122 (46.0) | 140 (52.8) | 3 (1.1) | 0 (0.0) |
|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63 (23.9) | 178 (67.4) | 23 (8.7) | 0 (0.0) |
|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70 (26.4) | 186 (70.2) | 9 (3.4) | 0 (0.0)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47 (17.7) | 192 (72.5) | 26 (9.8) | 0 (0.0) |
|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35 (13.2) | 172 (64.9) | 56 (21.1) | 2 (0.8) |

(3) 학교분위기

학교에서의 구성원 간의 협력하는 분위기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학교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 학교의 중요한 일에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하는 일’은 ‘직원도 학교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구성원 사이에 협동하는 학교 문화”에 긍정적인 답변이 197명(74.0%)이었으며 “학교 일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 할 수 있었다”에도 190명(71.5%)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 것에는 184명(69.2%)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분위기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협력적이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직원이 학교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건의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분위기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직원의 결정권 보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결정권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 결정권에 있어서 직원의 목소리보다는 관리자의 결정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동하는 분위기”는 74%,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음”이 71%, “의사 결정 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69.2%로 그 차이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의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사료 된다.

직원의 근무환경에 따른 학교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직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의 질문에 182명(68.4%)이 긍정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협력하는 분위기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분위기에 비해 직원의 직접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환경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구성원 간의 높아진 인권 인식으로 인해 학교구성원간의 협동하는 분위기나 문화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직원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나 분위기에서 나아가 직원들이 직접 이를 느끼고, 이들이 직접 근무환경에서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8〉 직원 응답자의 학교분위기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40 (15.0) | 157 (59.0) | 58 (21.8) | 11 (4.1) |
| 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 | 30 (11.3) | 154 (57.9) | 60 (22.6) | 22 (8.3) |
| 학교에서 직원은 학교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 | 31 (11.7) | 159 (59.8) | 57 (21.4) | 19 (7.1) |
|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26 (9.8) | 156 (58.6) | 70 (26.3) | 14 (5.3) |

앞의 질문과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이 근무환경을 통해 인권의 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2019년에 근무한 학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가중치 분석한 결과 휴식공간이 1순위, 운동공간과 청결한 화장실이 공동 2순위,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을 3순위로 응답하였다. 이외 기타의견으로 교내 복도 및 사무실 청소 인원의 추가 확보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 응답자들은 학교에서의 자신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휴식하고 운동과 다양한 식단을 요구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휴게권과 건강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표 4-29〉 직원 응답자의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탈의실 | 5 (2.0) | 9 (3.8) | 16 (6.9) | 49 (3.4) |

| 질 문 | 1순위 N(%) | 2순위 N(%) | 3순위 N(%) | 가중치 종합 N(%) |
|------------------|---------------|--------------|--------------|----------------|
| 사위실 | 9 (3.6) | 17 (7.1) | 20 (8.7) | 81 (5.6) |
| 휴식 공간 | 103 (41.4) | 53 (22.2) | 42 (18.2) | 457 (31.4)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28 (11.2) | 60 (25.1) | 34 (14.7) | 238 (16.3) |
| 장애인 편의시설 | 9 (3.6) | 8 (3.3) | 18 (7.8) | 61 (4.2) |
| 청결한 화장실 | 43 (17.3) | 37 (15.5) | 34 (14.7) | 237 (16.3)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16 (6.4) | 27 (11.3) | 29 (12.6) | 131 (9.0)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35 (14.1) | 26 (10.9) | 36 (15.6) | 193 (13.3) |
| 기타 | 1 (0.4) | 2 (0.8) | 2 (0.9) | 9 (0.6) |

(4) 노동권과 자유권

직원의 관점에서 학교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에 직원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들의 노동권과 자유권의 보장에 대해 노동조합 참여 및 집단적 의견표명권에 대해 4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에 205명(77.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활동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망설였

다”에 긍정적 응답은 107명(40.3%),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웠다”에 부정적으로 응답이 112명(42.1%)으로 나타나 직원 응답자들은 학교 내에서의 집단적 활동에 대해 다소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와 별개의 “사회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비교적 자유롭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0〉 직원이 응답한 학교생활에서의 노동권과 자유권 인식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 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 않다 N(%) |
|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19 (7.1) | 135 (50.8) | 86 (32.3) | 26 (9.8) |
|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22 (8.3) | 154 (58.1) | 71 (26.8) | 18 (6.8) |
|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18 (6.8) | 89 (33.5) | 106 (39.8) | 53 (19.9) |
|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47 (17.7) | 158 (59.6) | 44 (16.6) | 16 (6.0) |

앞서 학교의 협력하고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는 70%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에 비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50%에 그치고 있어 집단적인 활동에 제약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직종과 직군이 협력하여 학교를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학교가 그러한 집단의 의견을 듣기에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원 중심의 학교에서 이제는 다른 직군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가는 개방적인 조직으로서 학교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5) 차별 경험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의 인권침해 경험을 파악하고자 성별, 종교, 비정규직, 임신 및 출산, 아동양육에 따른 차별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80% 이상이 성별, 종교,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아동양육으로 인해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가지 종류의 차별 중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양육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각각 13.3%(35명), 8.5%(22명)로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에 비해 다소 많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표 4-31〉 직원이 응답한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 질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35 (13.3) | 228 (86.7) |
|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6 (2.3) | 260 (97.7) |
|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71 (27.0) | 192 (73.0) |
| 임신 혹은 출산, 아동양육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22 (8.5) | 238 (91.5) |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는 71명(27.0%)으로 다른 차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학교의 구성원 중 교사와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교직원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 고용형태의 무기계약직이다. 2019년에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약 2,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구성원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과 같은 비정규직들은 노동권과 휴식권, 안전할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차별 경험과 권리의 침해 경험은 본 조사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6) 폭력피해경험 및 구제방안

폭력으로 인한 피해 경험과 그 구제방안에 대해 조사하고자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성폭력의 경험과 직장 내 따돌림 경험, 그리고 가해행위자와 구제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의 폭력피해는 언어폭력(45명, 16.9%), 성폭력(18명, 6.8%), 신체폭력(6명, 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에 대한 위험한 인식으로 인해 폭력피해의 경험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폭력의 피해는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력피해의 가해자는 동료직원이 가장 높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직원이 응답한 언어폭력 피해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있다 | 없다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언어폭력(욕설이나 모욕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45 (16.9) | 221 (83.1) |
| 학교에서의 언어폭력 가해자 | 응답 N(%) | |
| 학교장/교감 | 17 (27.9) | |
| 교사 | 15 (24.6) | |
| 직원(동료포함) | 18 (29.5) | |

| | |
|-----|----------|
| 보호자 | 7 (11.5) |
| 학생 | 4 (6.6) |
| 합계 | 61 (100) |

〈표 4-33〉 직원이 응답한 신체폭력 피해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있다 | 없다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6 (2.3) | 260 (97.7) |
| 학교에서의 신체폭력 가해자 | | 응답 N(%) |
| 학교장/교감 | 1 (16.7) | |
| 교사 | 2 (33.3) | |
| 직원(동료포함) | 3 (50.0) | |
| 보호자 | 0 (0.0) | |
| 학생 | 0 (0.0) | |
| 합계 | 6 (100) | |

〈표 4-34〉 직원이 응답한 성폭력 피해경험

| 질 문 | 응답_N(%) | |
|---|-------------|----------------|
| | 있다 | 없다 |
|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 18 (6.8) | 246 (93.2) |
| 학교에서의 성폭력 가해자 | | 응답 N(%) |
| 학교장/교감 | 4 (18.2) | |
| 교사 | 7 (31.8) | |
| 직원(동료포함) | 11 (50.0) | |

| | |
|-----|----------|
| 보호자 | 0 (0.0) |
| 학생 | 0 (0.0) |
| 합계 | 22 (100) |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에 8명 (3.0%)이 응답하여 소수이지만 집단 내 괴롭힘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132명, 49.6%,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34명, 50.4%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의 경우 직장 내에서 폭력의 피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비교적 낮게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인권침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35〉 직원이 응답한 따돌림 경험 및 구제제도 인지

| 질 문 | 응답 | |
|--|---------------|---------------|
| | 예 N(%) | 아니오 N(%) |
| 나는 학교/부서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8 (3.0) | 256 (97.0) |
| 나는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괴롭힘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 | 132 (49.6) | 134 (50.4) |

(7) 사회적 인식과 소진

학교행정직원의 사회적 인식과 소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들의 행정실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의 발휘, 근무평점, 직업 만족감, 업

무의 소진, 동등한 대우, 업무 수행의 협력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은 교사와 학생,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이 행정실 업무를 이해하고 직원을 존중하고 있다고 218명 81.9%가 응답하였다. 또한 행정직 직원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며 근무 평점이 공정한 편이라고 80%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는 직원 또한 약 8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다소 낮게(187명, 70.6%)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에서 직원의 업무와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직종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직종 특히 교사와 비교했을 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업무 이외의 다른 지원업무로 인해 지친다는 것에 과반 이상이(142명, 53.8%) 응답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표 4-36〉 직원 응답자의 사회적 인식과 소진

| 질 문 | 긍정 응답 | | 부정 응답 | |
|--|---------------|---------------|-------------------|------------------|
| | 매우그렇다 N(%) | 그런편이다 N(%) | 그렇지 않은편이다 N(%) | 전혀 그렇지않다 N(%) |
| 우리 학교의 교사, 학생, 보호자들은 행정실 업무를 이해하고 직원들을 존중했다. | 36 (13.5) | 182 (68.4) | 41 (15.4) | 7 (2.6) |
| 우리 학교는 직원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35 (13.2) | 174 (65.7) | 47 (17.7) | 9 (3.4) |
| 직원의 근무평정은 공정한 편이었다. | 42 (15.8) | 173 (65.0) | 36 (13.5) | 15 (5.6) |
| 나는 나의 직업에 만족감을 느꼈다. | 43 (16.2) | 167 (62.8) | 41 (15.4) | 15 (5.6) |
| 본 업무외에 지원업무가 많아 지치고 힘들었다. | 35 (13.3) | 107 (40.5) | 109 (41.3) | 13 (4.9) |
| 나는 학교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다. | 27 (10.2) | 160 (60.4) | 54 (20.4) | 24 (9.1) |
|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편이었다. | 30 (11.3) | 180 (67.9) | 38 (14.3) | 17 (6.4) |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구별된 이원화된 조직에서 비롯된다. 이원화된 조직으로 인해 교원 이외의 조직은 학교의 부수적인 조직,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하위조직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과 연결된다. 이에 직접적인 교육 실천 외의 업무를 교원 이외의 조직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2)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실제적인 인권실태를 들어보고자 본 조사에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사와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교육이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무사, 과학실무사 등과 더불어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의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5년부터 각급 학교에 무기계약직 혹은 기간제 계약근로자이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경우 매우 다양한 직군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본 조사의 목적에 동의하고 면접이 가능한 집단으로 임의로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FGI는 온라인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 전문상담사와 조리사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모두 국공립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는 총 4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9.25년이었고 조리사의 경우 2명이 참석하였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13년이었다.

〈표 4-37〉 교육감 소속 근로자 FGI 참여자

| 직 종 | 참여자 | 학교 유형 | 근속기간 |
|-------|---------|--------------|------|
| 전문상담사 | 전문상담사 1 | 공립형 장기위탁교육기관 | 11년 |
| | 전문상담사 2 | 고등학교 | 9년 |
| | 전문상담사 3 | 중학교 | 9년 |
| | 전문상담사 4 | 중학교 | 9년 |
| 조리사 | 조리사 1 | 초등학교 | 12년 |
| | 조리사 2 | 초등학교 | 14년 |

(1)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순환근무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교사나 교육행정직과 달리 순환근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2014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대부분 그 때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순환근무에 대해 교육청에서 논의가 되면서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보발령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상담사의 경우 ‘wee class’로 지정된 학교에서만 근무하는데, ‘wee class’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상담사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환근무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인원도 적절히 배치되고 있지 않아 전문상담사가 꼭 필요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은 학교로 인

식하게 되어 그 학교의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전문상담사들이 순환근무를 요청하긴 하지만 다시 또 쉽지 않은 학교로 배정되는 등 ‘돌려막기식’의 순환근무가 발생한다.

✓ 내 의지와 상관 없는 순환근무

2년에 한 번씩 한번 wee class를 지정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에 있는 열악한 학교라서 계속 지정이 되어서 6, 7년째 있는데 주변 학교는 지정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니까 2년마다 계속 도는 선생님들이 세요. (전문상담사 4)

지금 고등학교에 있어요. 첫 학교는 아니고 그 전에 중학교에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3년 있었는데 그 학교가 ‘wee class’학교로 지정을 못 받은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로 발령을 받은거죠. (전문상담사 참여자 2)

✓ ‘돌려막기식’의 순환근무

전보시스템이 없어서 힘든 학교 선생님이 힘드니까 전보를 원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 학교가 힘든 학교’라고 생각하게 되죠. 힘든 학교들끼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거죠. 돌려막기식으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전문상담사 4)

맨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정이 되면 우리 학교가 지정되면 운 좋으면 있는 거고 운 나쁘면 가는거고... (중략) 작년부터는 전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1년이 되었든지 2년이 되었든지 다양한 이유로 안 되면 전보제도가 있어요.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전보가 3년, 5년에 한 번 시스템이 없으니까 힘든 선생님 전보는 4~5명끼리 돌려막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보 상황에서 애로점이 될 수 있죠. 똑같이 3년, 5년 다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가 힘든 학교구나.’ 낙인이 생겨버리는 거죠. 똑같이 힘든 학교를 도는거죠. (전문상담사 참여자 1)

학교에 비해 상담 인력이 적다 보니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왜 특정 학교만 혜택을 받냐’ 민원이 들어오니까 돌 빠져 막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는 상담사가 가게 되면 업무가 교사들에게 가게 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우리 학교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학교

들에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죠. (전문상담사 참여자 3)

전문상담사와 조리사 모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순환근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에 모두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전문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 어디든 배치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등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주기에 따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상담사로써 능력을 발휘하는데에도 한계로 작용한다.

조리사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10년 근무 후 순환근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조리환경 변화에 따른 두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다. 새로운 근무환경에서 조리도구와 조리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리’의 업무 특성상 조리도구의 적응은 이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조리사의 경우 순환근무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안전권을 최우선하여 다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학교 배치

고등학교에서 일하셨던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전문상담사로 배치하겠다 한 거예요. 물론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같은 학교이지만 고등학생을 상대하셨던 분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문상담사 4)

✓ 성과가 순환배치 이유가 되다

저희가 전보할 때 흔히 학업중단 학생이 10명이어서 그 수를 줄여놓으면 다른 학교로 가야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학교에 비해 상담

인력이 적다 보니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왜 특정 학교만 혜택을 받냐' 민원이 들어오니까 돌 빼서 막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는 상담사가 가게 되면 업무가 교사들에게 가게 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우리 학교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학교들에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죠. (전문상담사 참여자 3)

✓ 새로운 조리환경과 조리도구 적응에 대한 두려움

한 학교에 10년. 그런데 다 빠지면 3명이 다 빠지면 일이 안 되니까 뭐 1-2명은 옮긴다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인데. 옮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새로운 일한다는 게 좀 두려움도 있어요~ 해왔던 일이지만 환경도 틀리고, 기구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조리사 참여자 1)

(2) 학교구성원으로 초대되지 못함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행정직과 교원들 사이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학교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 존중은 다른 구성원들에 의한 존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은 고용형태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 학교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경우 교사와 비슷한 수준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또는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지위를 감내하는 등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 돌봄,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의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직종이 학교에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들의 의견이 종종 무시되거나 학교 내에서 그들은 학교에 존재하지만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또한, ‘상담사’라는 전문가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직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등 담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학교에 근무하였다.

✓ ‘유령’같은 존재

1년 있었던 학교에서는 제가 그 학교에서 유령이었어요. 교사들이 저를 유령 취급 하더라고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 왕따였던 거죠. (전문상담사 3)

✓ 담당하지 못함

우리도 전문가인데 학교라는 곳에 있다 보니 전문가 대우도 못 받고 상담사 각자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죠.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담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교직원 회의에도 아예 참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스로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정규직이었다면 담당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둬야 하나?’ 생각도 하고 그래요. (전문상담사 2)

특히 전문상담사의 경우, ‘상담교사’ 직군과 차별화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나 처우 면에서 뒤떨어지는 대우를 받는 것, 그리고 학교구성원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경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 교사는 전문상담사의 상사로 존재했다.

이 관계 속에서 교사와 교사가 아닌 사람에 따른 권력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구조에 대해 씩씩해했다. 학교의 역할이 ‘학습’에서 나아가 ‘돌봄’과 학생의 ‘여가’까지 확장되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는 ‘교사’가 우선시 되는 ‘보수적’인 조직에 머물고 있었다.

✓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와는 다른 처우

나름 전문가인데 학교에서 전문가의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기본적인 급여, 처우를 떠나서 대우하는 것도 상담교사와 상담사는 달라요. (전문상담사 2)

✓ 교원 위주의 조직 문화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이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인데 학교라는 공간은 교사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전문상담교사가 저의 중간 상사가 되는거예요. 작년에 아주 어린 25살 신규 임용된 선생님이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해도 교사는 되고 나는 안되는 그런게 있죠. 수업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내가 받는 처우에 대한 차별이라고 다가오죠. (전문상담사 1)

조리사의 경우, 이들을 ‘밥 해주는 아줌마’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조리사를 학교구성원으로서 존중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다르게 특별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분리된 급식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학교구성원으로서 더 배제되고 있었다. 이들은 그들의 노동 공간인 조리실을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섬나라’로 표현하며 학교와 다른 조직의 일원처럼 여겨진다고 하였다.

✓ 밥하는 아줌마로 생각함

우리는 그냥, 밥,, 그냥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우리는 그냥 밥만 해주는 사람. 밥하는 아줌마죠. (조리사 1)

✓ 학교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 조리실

먼저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희끼리 그냥 하는 말이 여기는 그냥 다른 섬나라야~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학교 이제 뭐 행사가 있거나 뭘 한다거나 아예 저희들은 배제가 되어있었어요~ (조리사 2)

(3) 은근히 이루어지는 차별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상담사에게만 탄력근무를 요구하거나 방과 후 시간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교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상담사와 조리사 모두 학교의 휴일이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과 관련된 권리에서 특히 차별을 받은 경험을 토로하였다. 특히 조리사의 경우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받고 제때 식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원하지 않는 탄력근무를 요구받음

모든 학교가 그러지 않겠지만 정교사와 교육감 소속 근로자와 차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8시 40분 출근해서 4시 40분 퇴근인데 유독 상담사만 6시 30분 퇴근으로 하더라고요. 왜 상담사만 탄력근무제를 하게 하는지 불만이었어요. (전문상담사 2)

✓ 방과 후 혼자 남아 상담을 하게 됨

상담이라는 게 수업시간에 하지 말고 방과 후에 하라고 하는데 사실 방과 후에 상담하는 학생은 많이 없거든요. 상담사도 사람인데 왜 굳이 방과 후에 하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왜 혼자 남아서 상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문상담사 2)

✓ 집단적인 처우에서 제외됨

첫 학교 갔을 때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 사람 감정이 상하는데 급식이 안 나오는 날이었어요. 교사들은 도시락을 시켜서 주는데 교육감 소속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알아서 먹으라는거예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하는 거잖아요. (전문상담사 2)

우리도 급식비를 내는데 제 때 따뜻한 것도 못 먹고, 밥도 안 따뜻하지,, 다 식었죠. 국도 식은 걸 먹고 그래요. 제대로된 식사를 못하죠. (조리사 1)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들이 학교구성원으로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점은 조리사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 다소 떨어져 있어서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학교 내에서 교원이 아닌 다른 직종에 대한 ‘은근한’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속적으로 학교 행사에서 배제됨

비정규직이 특수반 보조, 서무 보조, 돌봄 선생들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하고 모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 행사 그런 거에 저희가 다 배제되었었어요. 교장 선생님 정년 퇴임할 때도 우리가 좀 서운한게,, 우리가 그렇게 밥을 해줬는데. 우리를 안 불렀더라고요. (조리사 1)

(4)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안함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일을 하면서 닥치게 되는 안전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을 하며 다칠 경우 교사와 학생들은 ‘안전공제회’에서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안전공제회는 교사와 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에 안전상 문제가 생길 경우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전문상담사들은 안전공제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가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담실에는 상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조리사들은 화상을 입거나 노동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치료를 방학 중으로 미루는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조리사의 경우 항상 화기에 노출되어 있고 무거운 조리도구를 만지는 등 이미 안전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에서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는 이들의 안전권이 지켜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안전공제 대상에서 배제됨

학교 내에 학생들 데리고 소풍을 가면 저희도 따라갈 때가 있는데 산재처리나 보험이 교육감소속은 비정규직이라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고를 당해도 교원은 산재처리가 되는데 저희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학교 내에 안전공제에 우리는 대상이 아닌거죠. (전문상담사 4)

남고, 중학생 덩치 큰 아이들은 분노조절이 안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들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공제 이런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상담할 때 불안감이 느껴지죠. 조현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욱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남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상담할 때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교사들은 산재처리가 되는 거죠. (전문상담사 2)

✓ 아파도 쉴 수가 없음

괜히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같아서 우리가 함부로 못 쉬어요. 우리가 연가가 있어도 못 쉬고,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애로 사항이에요. 휴가도 병가도 마찬가지이고,, 10년동안 우리는 병가는 한 번도 안 쓴 거 같아요. (조리사 1)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교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토로하였다. ‘교원’은 학교 내 다양한 직군과 직종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노동자를 ‘교사’로 한정 짓는다. 이에 ‘교원’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학교구성원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FGI에 참여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학교 내 모든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이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이라는 단어보다 ‘교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서를 만들고 이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못하는 안전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관리자분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모든 법이 교원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돕고 싶지만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남학교에서 여 전문상담사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대해서 주의를 줘도 그게 지속될 경우 보호받을 수 없었어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죠 (중략) 저희는 무방비 상태이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상담사 1)

✓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음

관리자가 최근에 바뀌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나 이제 어떡하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문상담사 3)

✓ '교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교원 말고 '교직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포함되거든요. 교원이나 교직원이나에 따라 문구 해석을 하기때문에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조례를 만들던 교직원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전문상담사 4)

(5) 협력하는 학교분위기로 만들어지는 소속감

학교 내에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는 반대로 구성원들의 협력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학교의 재량휴일에 일을 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교사가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일을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문화, 교사의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의 친목회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의 상황에 대해 알고 어울리는 문화로 인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자신들이 학교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 서로 챙겨주는 학교 분위기

학교 문화, 선생님들의 문화이고 재량 휴업일이라고 해도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쉬어야하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교육감 소속이 한 명 있는 것과 4, 5명 있는 거와는 또 문화가 다르거든요. (중략) 챙겨준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태풍이 오더라도 '내일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전문상담사 4)

✓ 친목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됨

그 우리가 너무 소속감이 없는 거 같아서 그냥 우리도 참여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선생님들만 했었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조금 그랬었는데 다른 비정규직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친목

회에 들어오는 게 어떨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죠. 친목회에 참석하고는 선생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조금 더 관계가 좋아졌죠. (조리사 1)

이전과 비교해서 요즘에는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기면서 조금씩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으며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구성원들 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는 학생의 인권을 증진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함께 의논하면서 소속감과 만족감이 달라짐

제가 있음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의논하고 저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든지 심지어 교감선생님까지 저에게 와서 의논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소속감과 만족감이 달라지죠. (전문상담사 3)

전문가분들이 학부모 상담이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잘 안되었을 경우 저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상담사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면서 담임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아이들은 회의가 따로 있거든요.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문상담사 2)

위기상황의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요. 상담사가 동석한 상태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여는데 반드시 학부모가 참석해야 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의 특징,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죠. 긍정적 조언을 드리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수긍하세요. (전문상담사 3)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것 보다는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학교 소속감이 좀 높아지죠. (조리사 2)

3. 소결

제4장은 조사대상 학교의 교사와 직원의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이다. 교사 응답자는 총 841명, 직원 응답자는 총 252명이다.

실태조사의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에 대해서 직원보다 교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과 사회참여에서도 교사가 직원보다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인권행동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혐오표현을 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노력에 비해 학교나 사회적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응답이 더 낮았다. 학교 분위기에서 교사에 비해 직원 집단에서 구성원 사이에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분위에 대해 낮게 응답하였다. 시급히 필요한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모두 휴식권과 기본권에서 요구되는 휴식공간, 깨끗한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자유권과 관련해서 두 집단 모두 노동조합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였으나 그에 비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학교에 알려질까봐 두려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꺼려하였다.

차별경험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비정규직에 따른 불이익,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교사보다는 직원 집단에서 그 경험이 높았으며 특히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더욱 높았다.

폭력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모두 각 집단의 동료들로부터의 발생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피해 경험 및 인권침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교사와 직원 두 집단 모두 약 50% 정도만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80%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교직과 관련한 질문에서 교사의 직권(가르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에 50% 이상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의 인권을 살펴봤을 때 이들은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유지할 건강권이 가장 침해받고 있었다. 교사의 직권과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집단에 대해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육행정체제라고 응답하였다. 직원은 이들의 업무 이외의 지원업무가 많아 소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30% 이상이 응답하였다.

교사의 FGI에서 도출된 결과는 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 붕괴된 교실에서 고립, 교육 3주체의 불균형한 삼각형 관계, 교사 혼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구조로 인해 이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은근히 배척당하는 경험, 공론화 할 수 없는 학교 분위기로 인해 교사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펜스를 적용하여 사회문제화 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조직문화로 인한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FGI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트리는 순환근무와 학교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은근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으로 인해 그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들도 학교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증가 되면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교사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FGI 결과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 그리고 구성원이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 즉 구성원간의 평등한 관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학교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협력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교사 집단에서도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과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05

비교 및 심화분석

1. 설문대상자별 비교분석
2. 학생의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에 미치는 요소 분석
3. 교사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 분석
4. 직원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 분석

제5장 비교 및 심화분석

1. 설문대상자별 비교분석

본 설문조사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로서 학생, 보호자, 교사, 직원을 집단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 문항은 인권 인식, 인권 태도 및 행동, 학교 일반 등에 대한 공통 문항과 집단별 인권 경험과 학교 내 상황을 다루는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절은 공통문항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답변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1)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총 6개 문항으로 집단별 비교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사회참여, 의견표현, 교육권, 학교참여에 관한 항목으로, 리커드 4점 척도로 답변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학교구성원 집단별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6개 문항의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 5-1>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비교

| 평균 (4점 척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보호자 | 교사 | 직원 |
|---|------|------|------|------|------|------|
| 1)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2.14 | 2.39 | 2.72 | 2.16 | 2.79 | 2.56 |
| 2) 학생은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3.11 | 3.24 | 3.43 | 3.03 | 3.22 | 3.07 |

| | | | | | | |
|---|------|------|------|------|------|------|
| 3)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3.66 | 3.72 | 3.75 | 3.6 | 3.57 | 3.49 |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3.68 | 3.57 | 3.63 | 3.43 | 3.56 | 3.33 |
| 5)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46 | 3.62 | 3.70 | 3.49 | 3.43 | 3.32 |
| 6)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3.34 | 3.53 | 3.64 | 3.39 | 3.49 | 3.28 |

여기서 의사결정권 문항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권리 존중에 대한 문항으로 다른 설문항과 달리 역순으로 배점하여 정리하였다.¹⁴⁾

<표 5-1>과 같이, 구성원 모두에서 평균점이 가장 낮은 문항은 의사결정권에 관한 것이고, 평균점이 가장 높은 문항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이다. 둘 다 의견 표현에 대한 것이지만, (3)번 문항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1)번 문항은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은 학생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집단에서 다른 문항에 비해 현저하게 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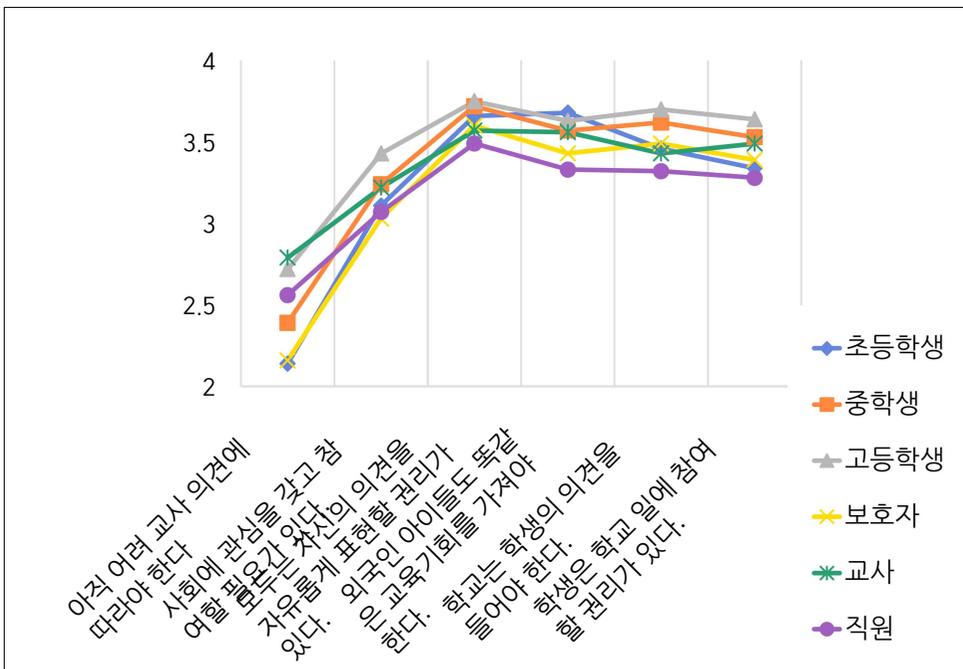
특히 집단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권에 가장 낮은 수용도를 보인 집단은 보호자 집단과 초등학생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보호자 집단은 자녀를 교사에게 위탁하는 개념으로 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교사의 올바른 지도

14) 설문항의 답변 방향이 다른 문항과 반대라는 점에서, 이러한 답변의 결과를 역으로 환산 처리하였다. 일부 문항의 경우 이러한 역코딩을 통해 수치해석에 일관성을 있게 정리하였다.

와 자녀의 순응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집단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초등<중등<고등 학생순으로 해당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의사결정권을 좌우하는 요소는 그것을 행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있다. 사회적으로도 일관되게 연령에 따라 의사표명능력이 있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독립적 주체로서의 사회적 인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하나의 규범이 되어 내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1>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비교



<그림 5-1>에서 보듯이, 보호자와 교사, 직원 집단에서 교사들이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전체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3)번~(6)번 문항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집단에서 비교

적 높은 평균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참여에 대한 문항인 (2)번 문항은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각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집단은 고등학생 집단으로, 이어 중학생으로 이어진다. 성인 집단에서는 보호자와 직원보다 교사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원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주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일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거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변한 직원은 17.5%로 교사에 비해 절반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인권이 미루어지거나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¹⁵⁾ 그럼에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유예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학생들의 권리 전부일 수 없으며, 돌봄과 안전, 휴식과 성장이라는 다양한 권리가 함께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도,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에, 그리고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아동·청소년들이 실천을 통해 충분히 배우는 경험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15) 인권의 중요 특성으로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결성이란 세 가지 특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인권의 유예나 침해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체 인권의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제도’를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 3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의 기본적 문서인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알고 있는지¹⁶⁾,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생 인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¹⁷⁾와 ‘학교구성원 인권보장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5-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비교

| 인지 비율(%)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보호자 | 교사 | 직원 |
|-----------------------------|------|------|------|------|------|------|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 32.5 | 18.9 | 25.9 | 38.8 | 54.2 | 35.4 |
| 2) 헌법과 교육기본법내 학생인권 내용 인지 | 72.5 | 53.1 | 58.8 | 54.1 | 79.8 | 59.1 |
| 3)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 인권 보장조례가 필요 | 87.6 | 87.5 | 91.2 | 96.9 | 84.6 | 88.3 |

문항별 답변에서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한 비율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조사집단 모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가 현저히 낮다. 가장 높은 집단인 교사도 54%로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집단 중에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생 인권 규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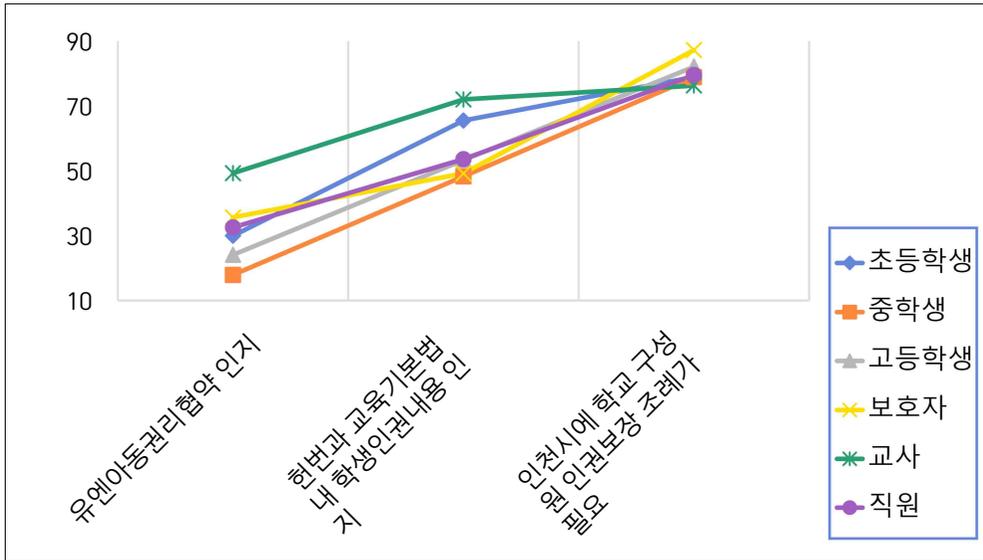
16) 아동은 특별한 이해와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가입하였다.

17) 헌법 제10조에서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제34조 제4항에서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단에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초등학생과 교사 집단은 70%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그룹은 50%를 넘는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비교



무엇보다도 인천광역시에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설문에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90%에 이르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어떠한 설문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의 필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3) 인권 태도와 실천에 대한 집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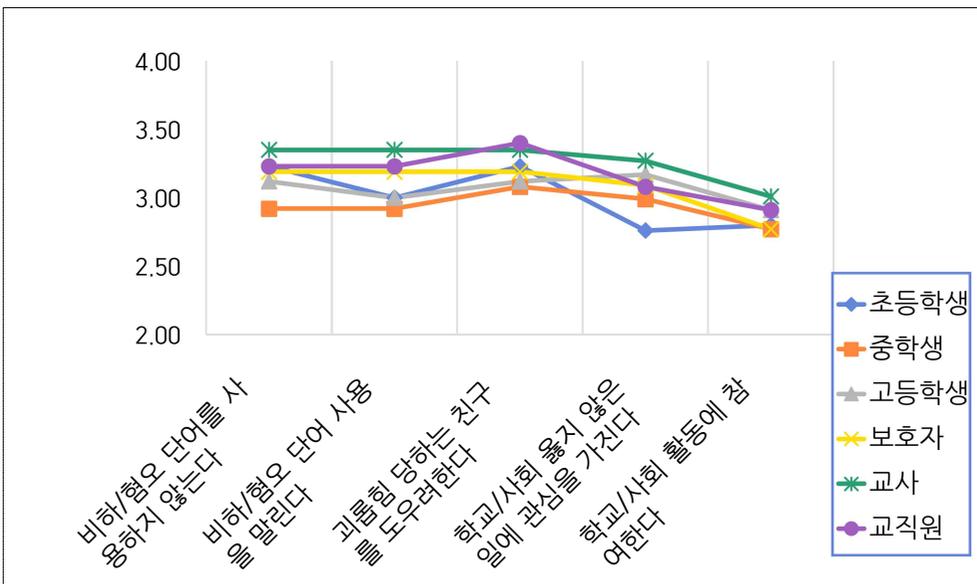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기반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실천을 통해 인권의 가치가 발현된다. 그런 점에서 인권 태도와 실천에 대한 문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5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문항은 자신의 실천에서부터 주변, 학교/사회로 실천범위의 확대를 다루고 있어 뒷

문항으로 갈수록 실천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6개 구성원 집단의 평균은 <표 5-3>과 같다.

<표 5-3> 학교구성원별 인권 태도/실천 비교

| 평균 (4점 척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보호자 | 교사 | 직원 |
|--|------|------|------|------|------|------|
| 1)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3.23 | 2.92 | 3.12 | 3.19 | 3.35 | 3.23 |
| 2)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3.00 | 2.92 | 3.00 | 3.19 | 3.35 | 3.23 |
| 3)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3.23 | 3.08 | 3.12 | 3.19 | 3.35 | 3.40 |
| 4)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2.76 | 2.99 | 3.17 | 3.09 | 3.27 | 3.08 |
| 5)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2.80 | 2.77 | 2.91 | 2.77 | 3.01 | 2.91 |

<그림 5-3> 학교구성원별 인권 태도/실천 비교



표에서 보듯이 교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체로 중학생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림 5-3>에서 보듯이 실천범위가 확대되고 실천활동으로 나아갈수록 그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의 양성에 맞추어, 연대라는 인권 가치를 학교와 사회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행히도 교사가 (4)번과 (5)번 문항에서 3정도의 수치가 되며, 이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권실천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1)~(4)문항에 비해 어느 정도 낮아지는 점에서 인권행동의 반경이 자기 자신과 친한 친구와 동료의 범위를 넘어 공공의 이슈, 학교와 사회의 일에 대한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이슈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조건에 의해 나타나며, 이를 해소해야만 해결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학교생활만족도 _ 학생집단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¹⁸⁾는 학교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과 연관성이 높다. 물론 해당 설문문항과 관련된 요소로 개별 학교 환경을 넘어 가정이나 지역, 그리고 사회의 조건들이 학생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교 환경에 대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권 인식이나 실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6개 문항에 대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평균 결과는 <표 5-4>와 같다.

18)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중 학교생활에 대한 문항 일부를 차용하여 구성하였으며,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를 측정하고 있다.

〈표 5-4〉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_ 학생

| 평균 (4점 척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1)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 3.14 | 2.99 | 3.19 |
| 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 3.15 | 3.23 | 3.33 |
| 3) 선생님들은 우리를 존중했다. | 3.52 | 3.28 | 3.19 |
|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 3.19 | 2.99 | 3.22 |
| 5) 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 3.52 | 3.11 | 3.03 |
| 6)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었다. | 3.41 | 3.32 | 3.22 |

우선 학교 친구들의 배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3.15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초등학생들의 학생에 의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고등학생은 3.33점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교사의 존중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나아지고 교사와의 관계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교육에서, 중학생은 학교 등교 자체에서, 고등학생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현재 학교의 구성원 중에서는 학교 친구보다는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은 이와는 반대로 교사보다는 학교 친구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의 수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의 중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특히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라는 (4)번 항목에서 수치가 낮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학교생활만족도_ 보호자와 교사, 직원

학교생활만족도를 4가지 문항으로 보호자와 교사, 직원에게도 질문하였으나, 학교구성원들 간의 협동하는 학교 문화에 대한 문항만이 공통된 문항이다. 학교의 의사결정에서의 학교구성원들의 의사 반영, 자유로운 건의, 학교 내 시설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교사 및 직원, 그리고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_ 보호자, 교사, 직원

| 평균 (4점 척도) | 보호자 | 교사 | 직원 |
|----------------------------------|------|------|------|
| 1)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 2.94 | 2.72 | 2.72 |
| 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 2.90 | 2.82 | 2.72 |
| 3) 선생님들은 우리를 존중했다. | 2.92 | 2.87 | 2.76 |
|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 2.90 | 2.72 | 2.73 |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은 보호자와 교사, 직원의 집단 모두 3점을 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직원은 2.7점대로 전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는 (2)번과 (3)번 문항인 학교 의사결정 참여에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 높지 않은 수치는 교사들의 학교 참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6) 필요한 학교 시설/서비스

학교에 시급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표 5-6>에 정리하였다. 보호자의 경우 학교 식당과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구성원 대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시설로 휴식공간을 꼽았다. 특히 학교가 직장인 교사와 직원은 선택비율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어 청결한 화장실,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장애인 편의시설과 탈의실 등의 순이었다.

<표 5-6> 필요한 학교 시설/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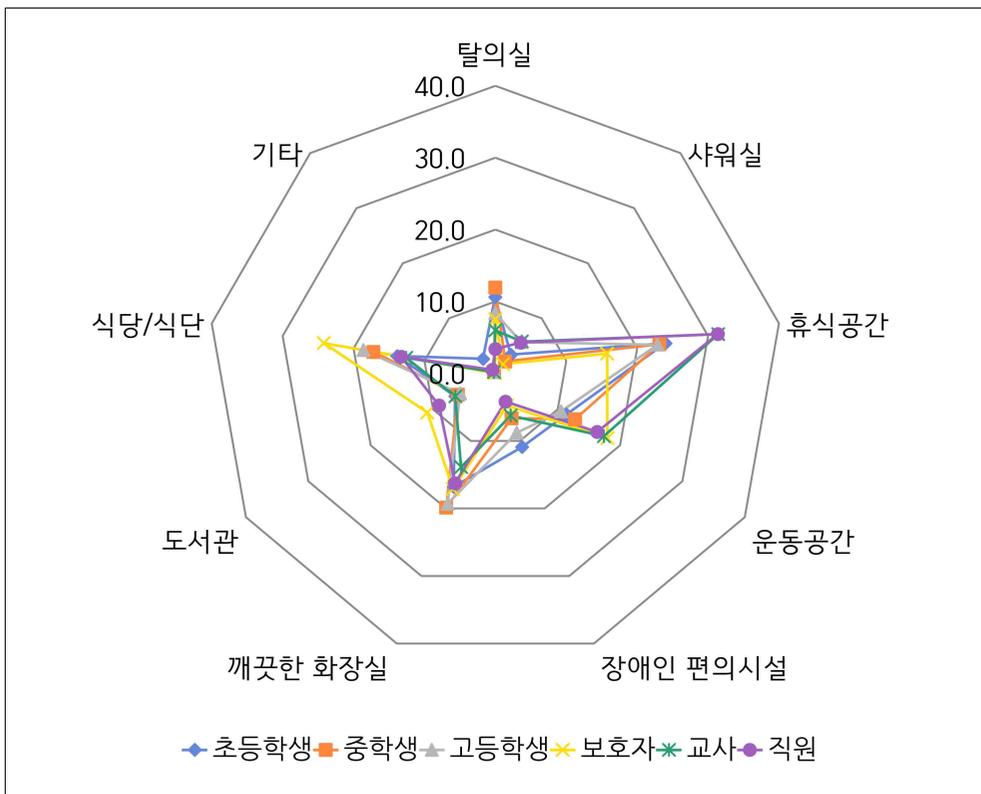
| 선택 비율(%)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보호자 | 교사 | 직원 |
|-------------|------|------|------|------|------|------|
| 1) 탈의실 | 10.6 | 11.9 | 8.4 | 7.6 | 6.0 | 3.4 |
| 2) 샤워실 | 3.4 | 2.2 | 5.7 | 1.7 | 5.8 | 5.6 |
| 3) 휴식공간 | 24.0 | 23.2 | 22.9 | 15.8 | 31.4 | 31.4 |
| 4) 운동공간 | 11.5 | 12.8 | 10.6 | 18.0 | 17.4 | 16.3 |
| 5) 장애인 편의시설 | 10.9 | 6.7 | 8.8 | 4.8 | 6.3 | 4.2 |
| 6) 청결한 화장실 | 16.8 | 19.9 | 19.3 | 17.1 | 13.9 | 16.3 |
| 7) 도서관 | 6.4 | 6.0 | 5.6 | 10.9 | 6.4 | 9.0 |
| 8) 식당/식단 | 13.8 | 17.2 | 18.6 | 24.2 | 12.6 | 13.3 |
| 9) 기타 | 2.6 | 0.2 | 0.2 | 0.0 | 0.3 | 0.6 |

학생집단의 경우 모두 동일한 순위로 나타난다. 1순위는 휴식공간, 2순위는 청결한 화장실, 3순위는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직원은 거의 비슷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으며, 휴식공간에 이어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청결한 화장실 순이다. 보호자는 위생적인 식당과 다

양한 식단, 운동공간, 청결한 화장실 순이다. 이처럼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유사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그래프로 확인하면, <그림 5-4>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구성원들의 20% 이상의 선택 항목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일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휴식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림 5-4> 필요한 학교 시설/서비스



학교라는 공간은 하나의 생활공간이며 직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구성원 누구나가 이 공간에서 안전과 건강, 그리고 휴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습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우

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휴식공간도 여러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두 집단의 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및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은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되는데, 세 가지 모두 건강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나타난 공공시설의 방역/위생에 대한 요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학교 시설/서비스에서의 건강권 증진을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화장실/식당 등의 공간이 충분히 위생적이거나 여유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문항에서 확인한 학교 공간에서의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개선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7) 자유권

자유권 및 참여에 대해 학생 집단에게 10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이 중 4개 문항은 초등학생과 관련성이 적어 제외하였다. <표 5-7>에는 공통된 6개 문항의 답변에 대해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표-5-8>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표 5-7>의 초·중·고 학생의 공통문항은 학교 내 자치활동에 대한 3개 문항, 의견 제시, 개인정보 보호, 인권교육이다. 자치활동 보장은 학생인권의 기본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3점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며, 초등 > 중등 > 고등 학생 순으로 그 수치를 보여주는데, 단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5)번 문항에 대해서만 초등학생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항목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치는 거의 비슷하며, 초등학생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 격차는 인권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6)번 문항에서 가장 커진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의 인권교육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표 5-7〉 자유권 _ 학생 공통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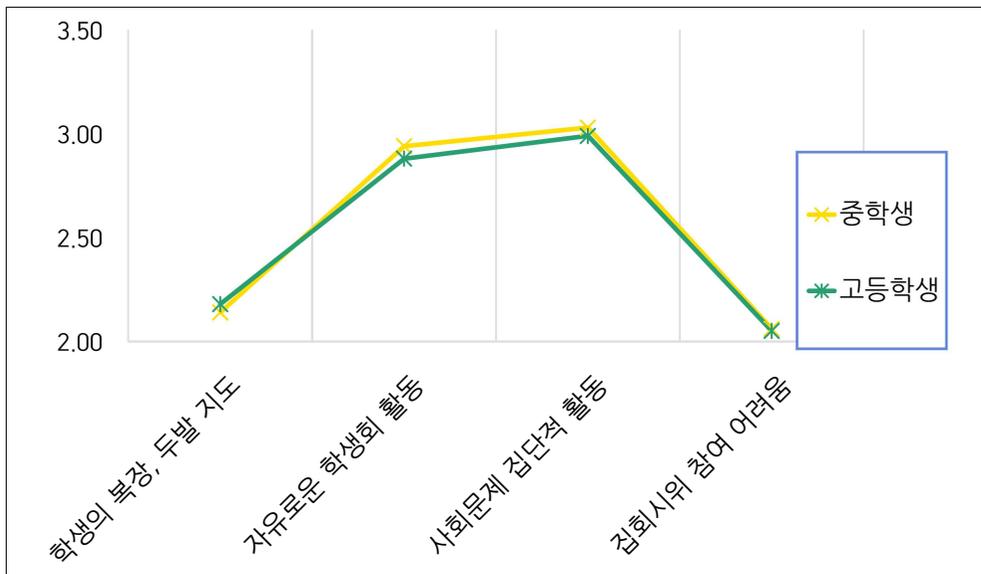
| 평균 (4점 척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1) 누구나 반 대표가 되어 활동할 수 있었다. | 3.32 | 3.19 | 3.19 |
| 2) 학교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우리의 의견을 반영했다. | 3.17 | 3.06 | 2.93 |
| 3) 우리는 학급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3.18 | 2.99 | 3.01 |
| 4) 나와 친구들은 학교 일에 대해서 선생님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 3.22 | 3.06 | 2.95 |
| 5) 학교는 나에게 대한 정보(가족관계, 가정형편, 성적 등)를 공개할 때 내게 먼저 물어본다. | 2.83 | 3.37 | 3.28 |
| 6) 내가 받은 인권교육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3.28 | 3.00 | 2.90 |

〈표 5-8〉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질문한 사항이다. 아침 등교 시 학교가 학생들의 용모를 지도하는지, 학생회 활동 참여가 자유로운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운지, 혹은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는지에 관한 4개의 질문이다. 이 중 문장 서술이 부정형인 (1)번 문항과 (4)번 문항은 수치 비교를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표 5-8〉 자유권 _ 중/고등 학생 문항

| 평균 (4점 척도) | 중학생 | 고등학생 |
|---|------|------|
| 1) 학교는 아침 등교시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지도했다.(역코딩) | 3.19 | 3.19 |
| 2) 학생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3.06 | 2.93 |
| 3)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2.99 | 3.01 |
| 4)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역코딩) | 3.06 | 2.95 |

〈그림 5-5〉 자유권 _ 중/고등 학생 문항



〈그림 5-5〉에 그래프로 비교하였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두 개 문항에서는 답변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4)번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문항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학교가 아동·청소년이 시민

으로서의 갖는 자유권의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약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1)번 문항으로, 복장과 두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표현권이 자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아침 등교 용모 지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일상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 학습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높여, 학교의 민주성 및 학습 그리고 교육 효과성에 부정적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 교육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8) 차별 경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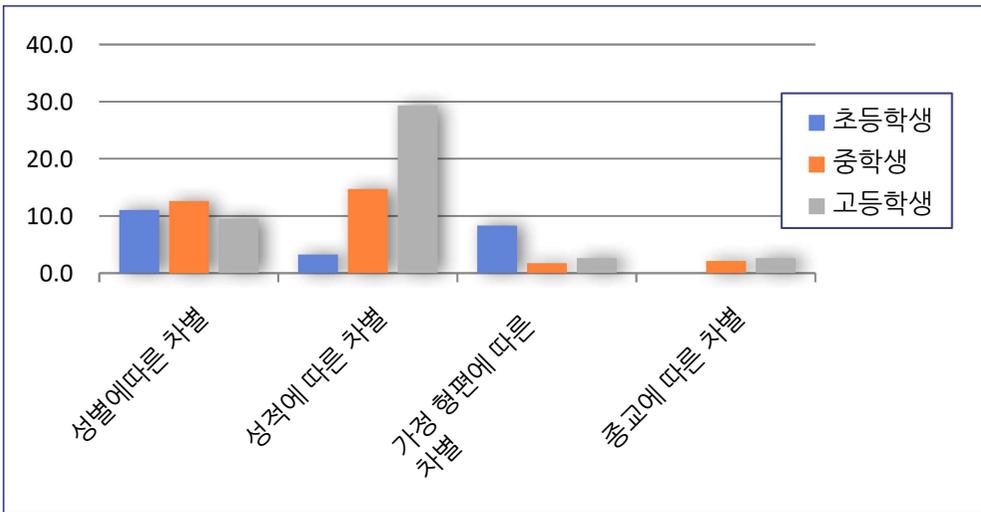
2019년 학교에서 겪은 차별 경험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성별, 성적, 경제적 수준, 종교라는 4개 문항으로 차별경험을 질문하였다. 학교에서의 종교 관련 차별은 주로 종교기반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므로, 사립이 거의 없는 초등학생용 질문에는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각 차별사유에 대한 경험에 대한 답변 비율을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표 5-9> 차별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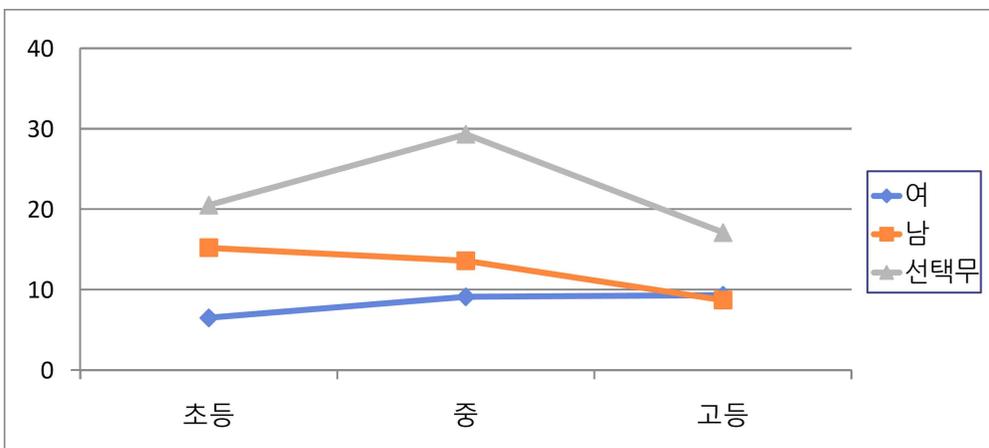
| 차별 경험 비율(%)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1) 학교나 선생님은 성별(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역코딩) | 11.0 | 12.6 | 9.5 |
| 2)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역코딩) | 3.2 | 14.7 | 29.3 |
| 3) 학교나 선생님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역코딩) | 8.3 | 1.7 | 2.6 |
| 4) 학교나 선생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역코딩) | - | 2.1 | 2.6 |

<그림 5-6>에 보듯이, 크게 두 개 항목에서 차별 경험을 하였다고 답하고 있는데, 하나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성별에 따른 학교급별 변화를 따로 정리하면 <그림 5-7>과 같다.

<그림 5-6> 차별경험 비교



<그림 5-7> 성별에 따른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비교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을 말하는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슷한 수치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별도로 성별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도 확인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겪는 차별 중 하나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다. 이 차별은 <그림 5-6>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급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와 우리 사회가 입시와 성적이라는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9) 폭력 경험 (2019) _ 학생, 보호자

2019년 학교에서 겪은 폭력 경험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질문하였으며, 보호자에게는 학생의 경험에 대한 간접질문을 하였다. 학생에 의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이라는 5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는데, 보호자의 경우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수치를 비교할 때, 가해자 구분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해당 설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폭력경험비율을 <표 5-10>으로 정리하였다.

<표 5-10> 폭력경험 비교 _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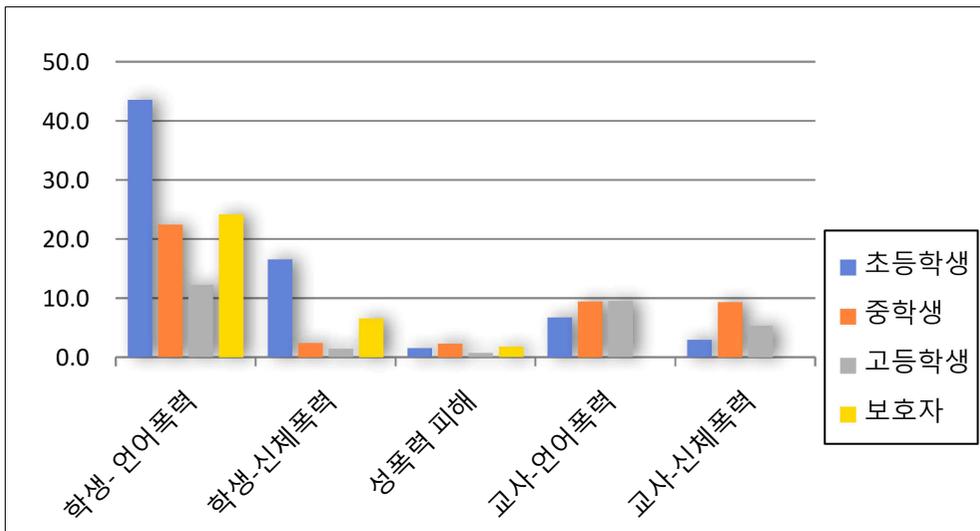
| 폭력 경험 비율(%)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보호자 |
|----------------------|------|------|------|------|
| 1) 학교 친구들로부터 언어폭력 경험 | 43.5 | 22.4 | 12.2 | 24.1 |
| 2) 학교 친구들로부터 신체폭력 경험 | 16.5 | 2.4 | 1.4 | 6.6 |
| 3) 성폭력피해 경험 | 1.5 | 2.3 | 0.7 | 1.8 |

| 폭력 경험 비율(%)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보호자 |
|-------------------|------|-----|------|-----|
| 4) 교사로부터 언어폭력 경험 | 6.7 | 9.4 | 9.5 | - |
| 5) 교사로부터의 신체폭력 경험 | 2.9 | 9.3 | 5.3 | - |

*보호자의 답변의 경우, [모르겠다]는 답변을 제외한 경험 답변 비율

** 보호자의 폭력경험은 가해행위자(친구/교사) 구분이 없는 수치이므로, 비교시 주의

<그림 5-8> 폭력경험 비교 _ 학생, 보호자



<그림 5-8>에서 보면 몇 가지 주의해서 볼 지점이 있는데 첫째, 무엇보다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학생 간,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 간의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앞서 다른 문항에서 초등학생의 학생 간 존중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과 연계하여 유의해야 할 지점이다. 세 번째, 중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학생들이 겪은 신체폭력의 유형은 체벌을 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보아야 할 수치이다.

10) 폭력 경험 (2019) _ 교사, 직원

2019년 학교에서 겪은 폭력 경험에 대해서 교사와 직원에게 질문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이라는 4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5-11>과 같다. 그리고 별도의 설문항으로 가해자 등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교사와 직원 간의 수치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언어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수치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언어폭력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와 교장/교감, 직원의 경우, 동료직원과 교장/교감,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유사한 가해자 집단이 지목되고 있다. 학교가 직장인 교사와 직원에게 있어서, 동료 및 교장의 폭력은 매우 반사회적이며 반교육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예방 및 강력한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표 5-11> 폭력경험 비교 _ 교사, 직원

| 폭력 경험 비율(%) | 교사 | 직원 |
|---------------------------------------|------|------|
| 1) 나는 학교/부서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3.5 | 3.0 |
| 2) 학교구성원들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 18.5 | 16.9 |
| 3) 학교구성원들로부터의 신체폭력 경험 | 1.0 | 2.3 |
| 4) 학교구성원들로부터의 성폭력 경험 | 6.0 | 6.8 |

2. 학생의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에 미치는 요소 분석

학생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문항 및 참여자 배경 간의 상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해석에서 시사점을 주는 요소를 정리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의 변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에 대한 총 6개 문항을 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으로 구성하여, 이 수치를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변화를 <표 5-12>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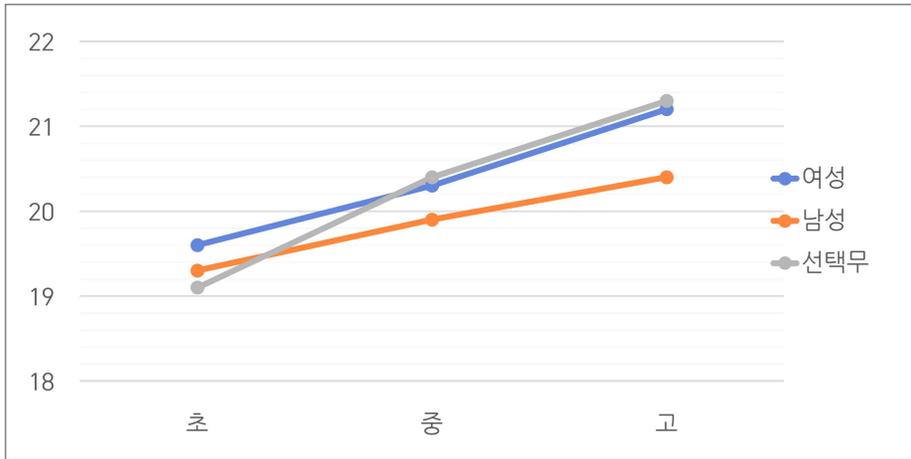
<표 5-12> 성별/학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변화

| 성별/학교급별 | | 표본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상관계수 |
|---------|---|-------|------|-------|--|
| 여성 | 초 | 302 | 19.6 | 2.195 | 유의확률 0.000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95%신뢰도에서 유의확률 0.001 이하로 상관관계가 성립됨 |
| | 중 | 280 | 20.3 | 1.994 | |
| | 고 | 671 | 21.2 | 2.150 | |
| 남성 | 초 | 261 | 19.3 | 2.174 | |
| | 중 | 410 | 19.9 | 2.161 | |
| | 고 | 498 | 20.4 | 2.359 | |
| 선택무 | 초 | 39 | 19.1 | 2.107 | |
| | 중 | 58 | 20.4 | 2.245 | |
| | 고 | 69 | 21.3 | 2.096 | |
| 계 | | 2,688 | 20.3 | 2.273 | |

즉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에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학교급별 변화를 하나의 그림으로 구성

하면 <그림 5-9>와 같다. 여기서 보면, 여성들의 인권 의식 성장이 남성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의식 변화



이를 좀 더 심화하여 단순히 성별이 아닌 학교의 남여공학 여부에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남여공학여부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는 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표 5-13>에 정리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남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낮았으며, 무엇보다, 남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표 5-13> 남여공학여부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의식 변화

| 학교급별 | | | 평균값 | 상관계수 |
|------|-----|-----|------|---|
| 중등 | 공학 | 여성 | 20.2 | 유의확률 0.000 남여공학여부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95%신뢰도에서 유의확률 0.001 이하로 상관관계가 |
| | | 남성 | 20.3 | |
| | 여학교 | 여성 | 20.4 | |
| | | 남학교 | 남성 | |

| 학교급별 | | 평균값 | 상관계수 |
|------|-----|-----|------|
| 고등 | 공학 | 여성 | 20.9 |
| | | 남성 | 20.3 |
| | 여학교 | 여성 | 20.6 |
| | | 남학교 | 남성 |
| | | | 성립됨 |

2) 학교생활만족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확인

학교분위기(학교생활만족도)의 문항을 합하여 ‘학교생활만족도’를 구성하였다. 이 수치는 앞서 정리한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학교분위기(학교생활만족도)가 좋다고 판단한 학생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상관계수 0.131/Spearman 상관계수 : 순서변수간 상관관계, 95% 신뢰구간의 유의확률 0.001 이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의사가 보다 적극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옳지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문항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 상관계수 0.263, 유의확률 0.001 이하, 95% 신뢰구간).

사회문제에 대해 집단적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는 문항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 상관계수 0.482, 유의확률 0.001 이하, 95% 신뢰구간).

학교에 알려질까봐 부담스러워 학교 밖 집회/시위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항목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 상관계수 -0.169, 유의확률

0.001 이하, 95% 신뢰구간).

또한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관 인지와 같은 인권체제에 대한 문항과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 상관계수 0.555, 유의확률 0.001 이하, 95% 신뢰구간). 인권보호관 인지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 상관계수 0.218, 유의확률 0.001 이하, 95% 신뢰구간).

3) 기타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려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어려웠다

이 중 교사의 가정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 경험을 하였다고 학생들이 답한 경우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약 70% 정도 더 많았다. 통계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Spearman 상관계수 0.102, 유의확률 0.005이하, 95% 신뢰구간).

3. 교사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 분석

교사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및 교사들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문항 및 참여자 배경간의 상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해석에서 시사점을 주는 요소를 정리하였다.

1) 교사 배경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의 변화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을 정리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5-14〉 교사의 연령대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의식 변화

| 연령대 | 표본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상관계수 |
|-----|-----|------|-------|---|
| 20대 | 55 | 20.7 | 2.092 | 유의확률 0.087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의식 95%신뢰도에서 유의수준 0.05 이하로 상관관계가 성립됨 |
| 30대 | 158 | 20.1 | 2.546 | |
| 40대 | 166 | 20.4 | 2.428 | |
| 50대 | 89 | 19.8 | 2.932 | |
| 60대 | 10 | 18.9 | 2.644 | |
| 계 | 478 | 20.2 | 2.549 | |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의 차이를 <표 5-14>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교사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2) 교사의 학교에서의 소진에 미치는 요소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MBI¹⁹⁾의 일부 설문을 사용하여, 교사들의 직무상 소진(직무만족도)에 대한 7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직무만족도²⁰⁾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도(학교 내 소진)에 대해 미치는 다양한 요소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대표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바를 아래에 정리한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를 <표 5-15>에 정리하였다. 여성 및 성별 선택을 하지 않은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며, 통계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성별 선택을 하지 않는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이 크며,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나 어려움이 가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²¹⁾

<표 5-15> 교사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

| 구분 | 표본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상관계수 |
|-----|-----|------|-------|---|
| 여성 | 293 | 17.6 | 3.515 | 유의확률 0.04 95%신뢰도에서 유의확률 0.05 이하로 상관관계가 성립됨 |
| 남성 | 155 | 18.4 | 3.890 | |
| 선택무 | 32 | 17.0 | 3.431 | |
| 계 | 478 | 17.8 | 3.652 | |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도 명확히 나타나는데, 기간제 교사들의 소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간제

19) Maslach Burnout Inventory의 약자로, 자신의 업무에서의 어려움, 효과성, 구성원간의 연결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Maslach & Jackson, 1981)

20) 직무상 소진에 대한 설문항을 합하여, 역코딩하여 직무만족도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소진(스트레스)에 대한 요소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2017, 동아시아)

교사의 여성 및 연령대가 낮은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보면, 동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에타 상관계수/명목 수치 0.025, 유의확률 0.05 이하, 95% 신뢰수준).

직무만족도가 앞서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에 이어 요소 분석하는 ‘노동권/자유권’에 대해 상호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Pearson 상관분석²²⁾을 정리하면 <표 5-16>과 같다. 상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와 학생인권 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5-16>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아동·청소년인권 인식 및 노동/자유권과의 상관관계 (표본수: 823)

| 구분 | 직무만족도 | 아동·청소년인권 인식 | 노동권 |
|-------------|-------|-------------|--------|
| 직무만족도 | 1 | .317** | .204** |
| 아동·청소년인권 인식 | | 1 | .148** |
| 노동권 | | | 1 |

** 순서척도의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 0.01 이하

3) 교사의 노동권에 미치는 요소

교사들에게 2019년 근무한 학교에서의 노동조합활동, 사회 참여 및 의견 개진에 대한 4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노동/자유권’으로 구성하여, 이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였다.

교사들의 ‘노동/자유권’에 상관관계를 미치는 여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양적/순차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절대값 0.3이상의 수치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말해준다.

여성이 노동/자유권에서 제약이 있으며, 특히 성별 선택을 하지 않은 집단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평균값: 남성 11.33, 여성 11.01, 선택무 10.13, 에타 상관계수 0.016, 유의확률 0.05 이하, 95% 신뢰수준).

노동/자유권에서 제약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유형별에서는 일반고 및 특성화고 교사들이 더 낮게 나타났다(에타 상관계수 0.037, 유의확률 0.05 이하, 95% 신뢰수준).

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노동/자유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평균값: 국공립 11.08점, 사립 10.38점). 또한 학교 경력이 높을수록, 노동/자유권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에타 상관계수 0.123, 유의확률 0.05 이하, 95% 신뢰수준).

기간제교사가 노동/자유권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답변하였다(평균값: 정규직 11.29점, 기간제 10.59점, 에타 상관계수 0.040, 유의확률 0.05 이하, 95% 신뢰수준).

4) 인권교육의 영향

교사들의 인권교육이수에 대한 차이와 인권교육이수여부에 따른 다른 요소의 영향을 정리하였다.

학교의 설립형태 및 교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인권교육이수 비율이 차이가 없었다.

5시간 이상이나 2가지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교사인 경우, 4시간 이하의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아동권리협약 인지율이 높아졌으며,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경우보다 15% 정도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Spearman 상관계수 0.102, 유의확률 0.05 이하, 95% 신뢰수준).

인권교육 이수와 사회 및 학교에서의 참여활동에 대해서도 아동권리협약 인지율과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4시간 이하 교육을 받은 교사와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5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이나 2가지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경우는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인 이들이 7% 높게 나타난다. 단, 통계적 유의미성은 약하다

5) 기타

교사에 대한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피해 경험 중에서 언어폭력 및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해서 수치가 작지 않아 따로 분석하였으며,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교사 대부분은 여성(95%이상)이었으며, 언어폭력 피해를 말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여성이 8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직원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 분석

직원들의 인권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문항 및 참여자 배경간의 상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해석에서 시사점을 주는 요소를 정리하였다.

1) 직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소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배경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교사와 같이 MBI의 일부 설문을 사용하여, 직무상 소진 (직무만족도)에 대한 7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직무만족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도 (학교 내 소진)에 대해 미치는 다양한 요소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대표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바를 아래에 정리한다.

연령대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표5-17>에 정리하였다. 연령대가 적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유사한 항목인 행정직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7> 직원의 연령대에 따른 직무만족도

| 연령대 | 표본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상관계수 |
|-----|-----|------|-------|--|
| 20대 | 16 | 18.8 | 3.215 | 유의확률 0.003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 95%신뢰도에서 유의수준 0.05 이하로 상관관계가 성립됨 |
| 30대 | 58 | 18.6 | 4.272 | |
| 40대 | 117 | 19.3 | 3.456 | |
| 50대 | 52 | 21.1 | 4.103 | |
| 60대 | 6 | 22.2 | 4.622 | |
| 계 | 249 | 19.5 | 3.907 | |

학교급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의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통계적 상관관계성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설립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사립 고등학교 직원들이 느끼는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 특목고 및 사립 특성화고의 직원 직무만족도가 크게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유의확률 0.042).

2) 직원의 노동권에 미치는 요소

직원들에게 교사와 동일하게 2019년 근무한 학교에서의 노동조합활동, 사회 참여 및 의견 개진에 대한 4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노동/자유권’으로 구성하여, 이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보이듯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이 있던 요소인 학교유형(학교급), 학교설립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직원들의 노동/자유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의미이다 (평균값: 직원 10.83점, 교사 11.05점).

특성화고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값: 특성화고 10.1점 전체 10.83점).

사립학교의 직원들이 공립학교의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자유권이 열악하다고 답했다(평균값: 사립 9.3점 국공립 11.0점, 에타 상관계수 0.054, 유의확률 0.01 이하, 95% 신뢰수준).

3) 인권교육의 영향

직원들의 인권교육이수에 대한 차이와 인권교육이수여부에 따른 다른 요소의 영향을 정리하였다.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교육 받은 비율이 높으며,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반면, 인권교육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육참여율이 20%로 낮았으며,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5% 이상 더 낮은 교육참여율을 보였다.

교사와 달리, 직원의 경우 인권교육의 시간과 관계없이 이수경험 자체가 구분점이 되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직원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아동권리협약 인지율이 10% 이상 높았다(Spearman 상관계수 0.181, 유의확률 0.01 이하, 95% 신뢰수준).

06

결론

1.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2. 주요 결론과 제언
 - 1) 학교구성원의 차별 경험과 인권교육 필요성
 - 2) 학교구성원의 학습 받을 권리의 보장
 - 3) 시민이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학교구성원
 - 4)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공간의 민주적 재구성
 - 5) 배움터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의 보장
 - 6) 일터로서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
3. 향후 계획

제6장 결론

1.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번 연구는 학교를 인권의 중요한 공간으로 두고,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구축하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시각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로 구성되는 학교구성원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여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중요한 의의는 첫째, 국내 최초로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학생인권 실태조사’로 시행되었으며, 교사와 보호자의 경우 학생과 관련된 체계로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교사, 직원, 보호자를 동등한 학교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학생과 보호자, 교사와 직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였고 각각 집단별 학교 안에서 이들의 인권 이슈와 현황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연구대상 범위를 확장했다는 측면과 아울러,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집단을 ‘학교구성원’이라는 평등하면서도 서로 연결된 구성원으로서 호명하며 ‘공동체로서의 학교’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에 토대로 한 정책과 대안 모색에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구성원들의 인권증진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사와 직원을 분리하여 집단별로 학교의 인권 현황과약을 위해 각각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조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두 집단 모두 기존 연구가 충분치 않은 조사였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소속된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설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사 대상 설문지의 경우, 교사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에 대한 문항을 설문지로 구성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와의 자문 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직원 대상 설문지의 경우, 교사 설문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의 근무 형태 및 환경, 학교 내에서 이들의 위치와 역할에 맞도록 설문을 구성한 후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자문 회의를 거쳐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더불어 여전히 학교구성원으로서 설문조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리사와 전문상담사에 대해 FGI를 추가로 시행하여 직접 의견을 경청하였다. 본 연구가 학교구성원의 그 누구도 인권실태조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틀을 잡은 만큼 추후 과제는 각 집단의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하는 설문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2019년 인천 학생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국내 학생·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비교하여 설문조사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 구성을 통해, 두 가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하나는 타 시도의 항목과 비교할 수 있는 점, 다른 하나는 인천지역 내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시차를 두고 반복 조사하게 되어 결과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점이다. 인천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2020년의 경험을 기준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대부분 학교생활 관련 경험에 대해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질문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학교를 둘러싼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동적이었고,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에 가서 생활하고 학습하고 일하는 방식과 수준, 그 안에서의 관계가 작년과 다른 점을 본 조사가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코로나 초기 학교생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학습권과 돌봄권 침해 및 온라인 접근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관련 실태조사와 문항이 상당 부분 겹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교환경의 변화는 교육부의 관련 실태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문헌연구를 기초하여 학교구성원별로 학생, 교사, 직원, 보호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인권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교사, 직원, 인권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실태조사와 FGI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약문은 본 연구 서두에 배치해두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내 학교의 인권문화 확산과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결론과 제언

1) 학교구성원의 차별 경험과 인권교육 필요성

2019년 학교에서 차별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성별, 성적, 경제적 수준, 종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약 11%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8.3%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을, 약 3.2%가 성적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약 14.5%가 성적에 따른 차별을, 12.6%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약

2.1%가 종교에 따른 차별을, 약 1.6%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29.3%가 성적에 따른 차별을, 약 9.5%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약 2.6%가 경제적 수준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FGI에서도 성별과 다문화적 배경, 선택한 진로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특히 성적에 따라 과제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상위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들이 차별화되거나 박탈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사회에서 공고히 되는 차별과 연속 선상에 있으므로 학생 자신도 이러한 차별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차별의 내면화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하나는 이렇게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별의 가해자로 행동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차별의 결과인 낙인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수용하여 ‘패배자’로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교사는 12.2%가 성별의 이유로, 8.7%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5.5%가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1.5%가 종교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은 약 27%가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13.3%가 성별의 이유로, 8.5%가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약 2.3%가 종교의 이유로 차별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직원(전문상담사, 조리사) FGI에서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행정직과 교원들 사이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상담교사’ 직군과 차별화되지 않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나 처우 면에서 뒤떨어지는 대우와 낮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위계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또한 서로를 구분하고 무시하며 혐오를 표현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언어적 폭력을 조사한 결

과 초등학생은 또래로부터 무려 43.5%가 중학생은 22.4%가 고등학생은 12.2%가 언어폭력을 받았다고 답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학교 급이 내려갈수록 또래 집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혐오표현 등 언어폭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수업과 일과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 발언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차이와 차별’, ‘포용과 혐오’, ‘다양성의 가치’, ‘평등과 정의’, ‘성평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특히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여기는 언어폭력과 혐오 발언을 중대한 폭력임을 인식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내 사례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시행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장과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학생 인권 모임용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예로 유럽연합에서 문화 다양성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All Different -All Equal’²³⁾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인권 행동의 실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혐오 표현을 삼가려는 노력에 비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접 행동에 옮기고자 노력하는 것 역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 인권의 실천범위가 자기 자신을 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인권교육을 시행할 때, 인권의 지식과 가치, 태도의 영역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의

23) Education Pack, All Different-All Equal, (2016, 유럽평의회), 청소년과 성인대상 비정규 다문화 교육용 교재로 이에 대한 개념, 교육 자료, 방법 및 활동을 다루고 있다.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접근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의 학교 내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 규정 방안 (2)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무 연수과정으로 포함하고 별도의 연수방안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안 (3) 교육청 차원에서의 직원 대상으로 소규모 집단 인권교육의 시행 방안 (4) 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시행과 교과목 안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5)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인 인권학습모임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구성원의 학습 받을 권리의 보장

학습 받을 권리의 침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이슈로 나타났고, 차별과도 연결되어 있다. 입시경쟁과 성적에 따른 차별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 점수가 강조되면서 이외의 다양한 교과목의 성과는 간과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박탈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학생의 FGI와 인권활동가 FGI에서 학습 받을 권리의 침해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이미 입시에 맞추어 계열별로 교과목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소수의 예체능 전공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크게 제약받고 있었다. 연극이나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과 관련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지도받기도 어려우며,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학내에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는 열악한 현장실습과 도제제도에 의해서 학습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만 우선시하여 시

행되고 있는 도제와 현장실습은 수업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모두 교육적 가치가 없는 잡일, 허드렛일을 하는 열악한 노동을 하는 현실이다. 도제나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 당하거나, 노동강도와 감정노동 수준이 매우 높은 위험한 업종에서 일하다가 손상이 심하게 남도록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는 심각한 산업재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이 부진한 것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학습이 부진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와 직원의 학습에 대한 권리는 모두 평생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교사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보장되어야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매체의 활용, 그리고 온라인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하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 특히 교사들은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욱 쉽지 않은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 활용 및 콘텐츠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소통 방안에 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시스템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결합한 교육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올 한 해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학습하는 ‘거꾸로 학습’ 등이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의 경우는 평생학습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학교를 기반으로 시민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지속해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콘텐츠가 마련되어있거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제도화되어있지 않다. 실태조사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17.5%에 불과하여 학교구성원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의식에서도 교사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직원에 대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 외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때로 학교를 넘어 교육청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필요도 있다. 상당수 학생이 제기한 다양한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영·수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더욱 다양한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교육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의 방향에 많은 교사가 동의하겠지만, 실제 자신의 교육에서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넘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학교구성원의 학습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의 학교구성원의 학습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 방안 (2) 기초학력 부족 학생 학습지원 체계 구축 방안 (3) 온라인/사이버 교육접근권 취약 계층 파악과 지원방안 (4) 온라인/사이버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 활용 방안 지원방안 (5) 이중언어사용 학생의 가정연계와 학습지원 방안 (6) 교과목 선택권 확장을 위한 교과과정개편 추진 팀(Task Force Team) 발족과 학생위원 위촉방안 (7) 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와 실사팀의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시민이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학교구성원

학교구성원은 시민이자 학교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현실은 ‘배우는 학생’으로서, 혹은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회적으로 여겨지며, 많은 인권이 소위 ‘교문 앞에서 멈춘다’.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구성원의 동의 수준은 90~98%까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학교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는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주체로서 대우해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학교가 학생 의견을 반영한다는 학생들의 응답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현실과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와 사회의 일에 집단적 의견 표명이 자유롭지 않다는 비율이 13~14%였고, 학생회 참여가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도 21.7%였으며, 학교가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9%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비율이 더 높다. 21.4%가 학교 문제에 대해, 17.7%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표명이 자유롭지 않고, 25.5%가 학생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23.3%가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호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에서는 교사와 직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서 77.6%로 가장 높게 동의하였고, 사회의 일에 학생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14.4%로 학생이나 교사, 직원 등 다른 학교구성원에 비해 높았다. 학교 문제에 자유롭게 건의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였으며, 21.5%가 학교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다고 답하여 보호자가 교사나 직원보다 학교에 더 건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과 교사의 경우, 학교 운영 전반에서의 참여가 제한되어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제한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보다 더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는 27.2%가 학교에 건의하는 것이 어렵고, 29.8%가 학교가 학교구성원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8.4%가 학교의 일에 대해서, 39.7%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의견 표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40% 정도가 자유롭지 않으며, 사회 이슈에 관한 활동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활동을 주저한다는 의견도 35.2%나 되었다. 노동조합 참여와 활동에서도 19.9%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원의 경우는 28.5%가 학교에 건의하는 것이 어렵고, 30.8%가 학교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42.1%가 학교 일에 대해서, 33.6%가 사회 일에 대해서 집단으로 의견표명이 부담스럽다고 답하여 교사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원은 학생과 교사와는 달리 사회에 대한 일보다 오히려 학교에 대한 일에 대해서 집단적 의견표명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회 이슈에 관한 활동이 학교에 알려질까 부담스러워 활동을 주저한다는 의견도 40.3%였고, 노동조합 참여와 활동에도 22.7%로 나타나 교사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구성원들이 아동·청소년이 가진 시민의 권리에 대해 조금씩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의견표명이나 학생회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이 가능한 현실과는 격차를 보여,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 직원 학교에서의 정계나 불이익이 염려되어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며 학교와 사회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충분히 실

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고등학생 FGI에서도 자치활동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은 많이 확대되었지만, 실제로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에는 계속 실패하는 경험이 주를 이루었고, 교사 역시 의견을 공론화하기 어렵고, 특히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 활동이 은근하게 배척되는 등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학교참여, 사회참여의 권리가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사, 직원 모두 학교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참여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일수도 있지만, 참여의 경험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의 참여에 학생과 보호자, 교사, 그리고 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과제와 절차를 자세하게 학교에서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학교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소수의 학생회와 다수결이라는 방법적 한계를 넘어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발휘해나가는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직원 역시 학교가 민주적인 일터가 되도록 시민으로서의 자유권, 참여권, 정치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실제적인 발언권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축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의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구성원의 시민으로서의 자유권과 주체로서의 참여할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 보장 조례(가칭)”에서의 학교구성원의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교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 방안 (2)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민주적인 학교 규정 제개정 절차 가이드 라인” 작성 및 배포 (3)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민주적인 학칙 제정의 사례 공모(가칭)” 사업의 추진 (4)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5) “우리학교 인권개선 프로젝트 사례 공모(가칭)” 사업의 추진 (6) ‘용모검사 없는 민주적인 등굣길 만들기(가칭)’ 사업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공간의 민주적 재구성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한 공간이다. 학교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으로 이어지려면, 학생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인 교사와 직원의 일터로서의 공간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의 학교 공간이 명령과 통제의 군대 공간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권위적이고 엄격한 규율이 지켜질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었고, 이러한 공간 디자인은 곧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을 제한한다. 이에 학교가 자유로운 학교구성원들의 생활공간으로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 내 휴식공간의 확보를 가장 필요로 했다. 또한, 이러한 휴식공간의 사용에 제한이 적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FGI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휴식공간을 사용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공간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이나 축구장, 농구장, 체육관, 강당 등이 잠겨져 있거나 출입이 제한된 때가 많고 이 공간 역시 부족하여 위계에 따라 고학년이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학생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에도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있으나 흡연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흡연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공간으로, 실제로 차를 마시거나 안정을 취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직원은 더욱 열악하여 별도의 휴식공간이 아예 없거나, 휴게실 자체가 ‘교사용’으로 인식되어 있어 학교구성원임에도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학교의 공간을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공간이라는 시각에서 필요한 요소의 보완 방안을 구성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질 학교 공간을 디자인할 때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에서부터 그 구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학교 공간에 대한 정책을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교육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이 직접 ‘공간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교육공간의 재구성과 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2019년 48개 학교, 2020년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여러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보다 확대되면서,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실태조사에서 학교구성원이 가장 많이 꼽는 학교 시설/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되어 학교가 교육을 넘어 생활(휴식과 놀이, 그리고 문화)의 공간으로 확장되며, 이러한 물리적 공간과 진행 과정에서의 참여 경험이, 학교를 보다 일반사회 즉, 민주사회의 사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공간의 민주적 재구성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 휴식할 권리와 문화를 누릴 권리의 보장과 학교 시설과 공간에 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 (2) “공간 주권을 되찾는 학교 공간 재설계(가칭)” 공모사업 추진 (3) 학교 체육시설 현황파악과 개보수 및 최신화 지원 사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배움터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의 보장

학교구성원이 폭력이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이러한 피해로부터 구제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또래 친구들과의 언어폭력 피해가 43.4%, 신체폭력 피해가 16.5%였으며,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는 6.7%, 신체폭력 피해는 2.9%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는 22.4%, 신체폭력 경험은 2.4%였으며,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는 9.4%, 신체폭력 피해는 9.3%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또래 친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는 12.1%, 신체폭력 피해는 1.4%였으며,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는 9.5%, 체벌을 포함한 신체폭력 경험은 5.3%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이 1.5%, 중학생이 2.3%, 고등학생이 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서 제도화된 ‘인권보호관 제도’를 알고 있는 초등학생은 65%, 중학생은 69.3%, 고등학생은 59.8%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미투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제대로 조사되거나, 가해 행위자가 사과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는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학교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피해회복의 권리는 요원하다”라는 것이었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의 이슈를 인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권보호관의 유무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쟁점과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선택 가능한 조력방안은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생활하게 되는 학교에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요한 원칙과 절차, 수행과정을 체계화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로서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권리, 피해로부터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는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할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조례(가칭)”에서 인권침해 구제 절차와 구제방안, 인권보호관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는 방안 (2)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피해 구제 및 절차 안내” 작성 및 배포 (3)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지침” 작성 및 배포 (4)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교실에서 만나는 인권옹호관(가칭)”의 홍보 사업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일터로서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

실태조사의 결과, 교사와 직원도 학교에서 폭력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교사의 경우, 언어폭력 피해는 18.5%, 신체폭력 피해는 1.0%였으며,

성폭력 피해는 6.0%로 나타났고, 주 가해자는 동료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 대부분은 95% 이상 여성이었으며,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 80%가 역시 여성이었다. 행정직원의 경우, 언어폭력 피해는 16.9%, 신체폭력 피해는 2.3%였으며, 성폭력 피해는 6.8%로 나타났고, 주 가해자는 역시 동료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와는 달리 학교장/교감/교사의 비율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직원 모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적절한 체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교권위원회나 고충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지만, 내부의 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피해회복에 집중해줄 지원체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도움받을 체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교사는 40.7%, 직원은 50.4%로 절반에 가까웠다. 직원은 다른 집단 구성원보다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이들의 인식도 낮고, 자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체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권교육이 인권 보호 장치를 인지할 수 있고, 자신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인권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이다. 또한 개정된 노동기본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및 피해 구제 기능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또한 교사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교사의 소진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58%가 교실 규율을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50.3%가 학생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고, 62.4%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학생생활지도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54.5%가 성적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45.9%가 교사직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교사가 학생과 교사, 보호자와의 3 주체 간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가 붕괴한 현상처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저항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고충, 무례하고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보호자로 인해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까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학생과 보호자 등 교육 3 주체와의 관계가 시대의 변동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 되는 교육은 사라진 채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자로서 특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위한 도구가 된 교육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교육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가득한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 교사의 과업은 매우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일터에서 교사는 “고립되어 통곡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느는 업무량과 함께 엄청난 강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오롯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현실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날 정도로 소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에 교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며, 힘든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력해주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확히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침해이다.

직원(전문상담사, 조리사) FGI 결과에 따르면, 교원 위주의 조직문화 속에서 학교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은근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를 포함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학교의 구조와 휴식 시간 및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환경을 고려한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직원들에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직원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성과를 축적하기 어려운 순환 근무의 상황에서 일하거나, 조리사는 위험한 조리기구가 가득한 조리실에서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 환경에서 안전을 위협받으며 일을 하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일터로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와 직원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와 상담 및 피해 구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학교 내부 체계로는 문제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학폭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의 축소나 무시, 책임회피 등으로 이어져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 단위에서의 전문적 기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쟁점이다. 상담/신고를 포함하여 사건 접수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요 구성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건 해결 과정, 인권피해 구제과정은 인권 및 법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조사와 상담에 대한 이해, 피해자 중심의 감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 등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에서 교사와 직원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의 경우 교실에서 학생들과 교실 밖 보호자와의 감정노동과 소진 수준이 매우 높고, 이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개별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경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로 인해 악화하고 있는 교사의 일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사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일터가 되기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로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립기구로서 “교직원 인권 센터(가칭)” 조례를 마련하고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2) 교사 감정노동 해소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3) 직원을 위한 노동 인권교육 시행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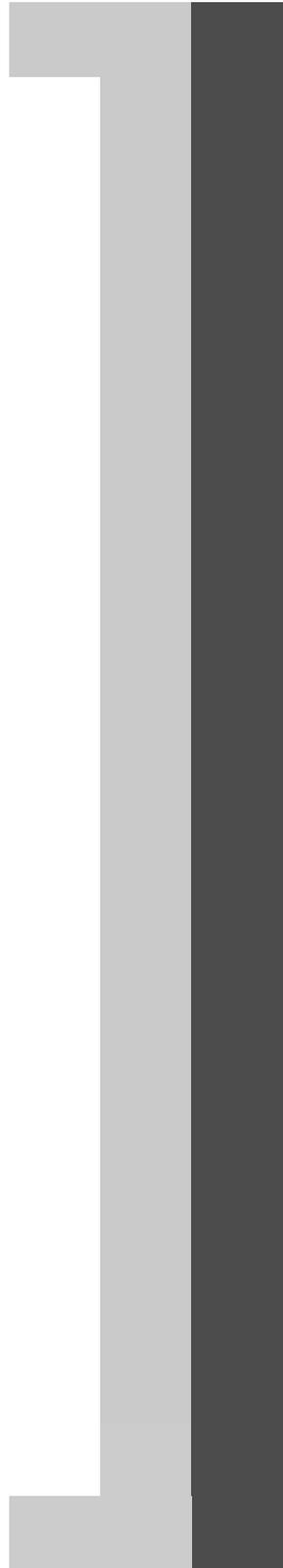
3. 향후 계획

본 연구는 학생, 보호자, 교사, 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행동 수준,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인권교육 경험 등을 파악하여 학교에서의 주요한 인권 이슈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다양한 집단의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민주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가 학교구성원 그 누구도 인권실태조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틀을 잡은 만큼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 수준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07

참고문헌



참고문헌

- 배을규, 박미숙, 김대영(2009), 『교육행정직의 목표지향성, 학습조직준비도, 직무만족도의 관계연구』 HRD연구, 11(3), 277-298.
- 차은성 (2011),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혁신논집, 2(3), 143-173.
- 안진, 조상균, 조백기, 이건진, 고병연, 허창영, 박상아 (201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 개발 연구』, 인권법평론, 7(8), 235-270
- 강재태, 김효진 (2014), 『학교조직 내 교육행정직의 갈등과 갈등대응방식』, 교육과학연구, 45(4), 211-243.
- 박지순, 김용진, 이주복, 남민우 (2014), 『학교업무종사자의 노무관리 실태 및 개방안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
- 박근덕, 홍의표, 김은희, 이경희, 강미선 (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인권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한신갑 (2015), 『사회조사 자료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근덕, 임소진, 김은희 (2016),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인권정책연구소, 강원도교육청.
- 배재천, 김경자, 한광희, 이영실, 김창익, 전효진, 양윤정, 최환영 (2016),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인권교육정책연구소.

- 정연홍, 유형근 (2016), 『교사의 심리적 소진 측정도구 개발』, 아시아교육연구, 17(3), 303-326.
- 김현수, 김성철, 김은경, 김형욱, 박선아, 안동형, 이정숙 (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인권위원회
- 김민석, 조영선 (2018), 『교사의 교육권 어떻게 볼 것인가?』, 윌레토론회 자료집, 참교육연구소
- 김진숙 (2018), 『교사와 행정직원 간의 갈등에 관한 학교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연구 : 대전광역시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찬희 (2018),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 요구도 분석 :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외6인 (2019), 『인천 중·고등학교구성원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인권교육정책연구소.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민경, 남화성, 최민아 (2019), 『인천광역시 학생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 이동엽, 허주, 박영숙, 김혜진, 이승호, 최원석, 함승환, 함은혜, 신연재 (2019), 『교원 및 교직원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연, 김명량, 안수현, 이용민, 이해선 (2019),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연구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2019 간추린 인천교육통계』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교육감 소속 근로 근로자 인사관리 계획』

08

부 록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초등학생용)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보호자용)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교사용)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직원용)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초등학생용)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에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알고 느끼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비밀로 지켜지며,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유수연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인천광역시교육청 유경환 인권보호관 032-420-8262 / kygh1004@korea.kr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1.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 | | |
| 2) 학생은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 | | |
| 3)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 | | |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5)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6)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는 모든 사람과 부모님을 말합니다. | | | | |

II. 인권보장제도 인식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가 아동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중요한 권리들을 담아서 전 세계가 지키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우리나라도 지켜야 합니다.

3.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있는 학생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4.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의 교육청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법과 “학생인권센터”를 만들어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을 포함하여 부모님, 선생님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과 기구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III. 인권 행동

5.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얹잡아보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 | |
| 2)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얹잡아보는 말을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 | | |
| 3)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 | | |
| 4)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 | | |
| 5)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 | | |

IV. 학교분위기

6.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은 어떠했나요? 작년에 자신이 알고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 | | | |
| 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 | | | |
| 3) 선생님은 우리를 존중했다. | | | | |
|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 | | | |
| 5) 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 | | | |
| 6)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었다. | | | | |

V.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7.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이나 서비스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항 목 | 우선 순위 |
|--|-------|
| 탈의실 (옷을 안전하고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곳) | |
| 샤워실 (운동 후 씻을 수 있는 곳) | |
| 휴식 공간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쉴 수 있는 곳) |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 농구대 등) | |
|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등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시설) | |

Ⅶ. 차별 경험

9.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에서 내가 평소 알거나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학교나 선생님은 성별(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 |
| 2)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 |
| 3) 학교나 선생님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 |

Ⅷ. 폭력피해 경험

10.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에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한번도 없음 | 일년에 1~2회 | 한 달에 1~2회 | 한주에 1회 이상 |
|---|--------|----------|-----------|-----------|
| 1) 학교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욕하기, 비꼬는 말,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비난하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 학교 친구들에게 신체폭력(손이나 도구로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3) 선생님께서 언어폭력(욕하기, 비꼬는 말,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비난하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4) 선생님께서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 체벌이란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주는 것을 말합니다. | | | | |

4-1)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체벌을 받았나요?(※ 해당 사항 모두 표시)

- 체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맞음
- 손, 발 등을 이용해서 맞음
-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을 받음
- 기타()

| | | | | |
|---|--|--|--|--|
| 5)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성폭력이란 성적인 말로 불쾌감과 창피함을 느끼게 하거나, 내 몸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도록 하는 행동, 성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 모두를 말합니다. | | | | |
|---|--|--|--|--|

5-1)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누구로부터였나요? (※ 해당 사항 모두 표시)

- 피해 경험 없음
- 같은 학교 학생
- 학교 선생님
- 선생님이 아닌 학교 내 어른(학교 직원)
- 학교 외부 사람
- 기타()

IX. 인권침해 구제

11.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알고 있는 대로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나의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을 느꼈을 때, 학생인권보호관 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
| 2) 학생인권보호관과의 상담에서 비밀이 보장되고 , 불이익이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다. | | |
| 3) 작년 한 해(2019년) , 학생인권보호관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 | |

12. 이 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참여자 정보]

여러분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선택하고 싶지 않다

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① 강화군 ② 계양구 ③ 남동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부평구 ⑦ 서구 ⑧ 연수구 ⑨ 옹진군 ⑩ 중구

3)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 칸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할아버지/할머니

⑤ 친척 ⑥ 공동생활(그룹홈 등) ⑦ 반려동물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알고 느끼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 됩니다. 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이 연구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유수연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인천광역시교육청 유경환 인권보호관 032-420-8262 / kygh1004@korea.kr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1.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 | | |
| 2)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 | | |
| 3)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 | | |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5)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6)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는 모든 사람과 보호자를 말합니다. | | | | |

II. 인권보장제도 인식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3.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있는 학생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4.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의 교육청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어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을 포함하여 보호자,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II. 인권 행동

5.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 | |
| 2)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 | | |
| 3)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 | | |
| 4)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 | | |
| 5)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 | | |

IV. 학교분위기

6.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은 어떠했나요? 작년에 자신이 알고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 | | |
| 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 | | | |
| 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했다. | | | | |
|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 | | | |
| 5)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 | | | |
| 6) 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었다. | | | | |

V.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7.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이나 서비스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항 목 | 우선 순위 |
|------------------------------------|-------|
| 탈의실 | |
| 샤워실 | |
| 휴식 공간 |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
|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확대경 등) | |
| 청결한 화장실 | |

| | |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
| 기타 () | |

VI. 자유권

8.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에서 내가 평소 알거나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공개한 적 없음 |
|--|-----------|------------|--------|--------|----------|
| 1) 우리 학교는 아침 등교시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지도했다. | | | | | |
| 2) 학생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 | | | |
| 3) 누구나 반 대표가 되어 활동할 수 있었다. | | | | | |
| 4) 학교는 학교 규칙과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했다. | | | | | |
| 5) 학생들은 정기적인 학급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 | | | |
| 6) 학교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족 관계, 가정형편, 성적 등)를 공개하지 않았다. | | | | | |
| 7)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 | | | |
| 8)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 | | | |
| 9)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밖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 | | | |
| 10) 학교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 |

VII. 차별 경험

9.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에서 내가 평소 알거나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학교나 선생님은 성별(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 |
| 2) 학교나 선생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 |
| 3)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 |
| 4) 학교나 선생님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다. | | |

VIII. 폭력피해 경험

10.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에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한번도 없음 | 일 년에 1~2회 | 한 달에 1~2회 | 한 주에 1회이상 |
|---|-----------|--------------|--------------|--------------|
| 1)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언어폭력(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2)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단체기합 포함) | | | | |
| 3)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4)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 체벌이란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주는 것을 말합니다. | | | | |

4-1)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체벌을 받았나요?(※ 해당 사항 모두 표시)

- 체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맞음
- 손, 발 등을 이용해서 맞음
-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등으로 벌을 받음
- 기타()

| | | | | |
|---|--|--|--|--|
| 5)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성폭력이란 성적인 말로 불쾌감과 창피함을 느끼게 하거나, 내 몸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도록 하는 행동, 성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 모두를 말합니다. | | | | |
|---|--|--|--|--|

5-1)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누구로부터였나요? (※ 해당 사항 모두 표시)

- 피해 경험 없음
- 학생(선후배 및 동급생)
- 선생님(교장, 교감, 교사)
- 학교 직원
- 외부 사람
- 기타()

IX. 인권침해 구제

11. 다음은 학생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알고 있는 대로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학생의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을 느꼈을 때, 학생인권보호관 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
| 2) 학생인권보호관과의 상담에서 비밀이 보장되고 , 불이익이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다. | | |
| 3) 작년 한 해(2019년) , 학생인권보호관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 | |

12. 이 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참여자 정보]

여러분께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선택하고 싶지 않다

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답해주세요.

| | | |
|---------------------------|--|-------------------------|
| 2-1) 학교 유형 (고등학생 추가질문) | ① 일반고등학교 ③ 특목고등학교 | ② 특성화고등학교 ④ 마이스터고등학교 |
| 2-2) 설립 형태 | ① 국공립 | ② 사립 |
| 2-3) 남여공학여부 | ① 남여공학 | ② 여학교 ③ 남학교 |
| 2-4) 소재지 | ① 강화군 ② 계양구 ③ 남동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부평구 ⑦ 서구 ⑧ 연수구 ⑨ 옹진군 ⑩ 중구 | |

3)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 칸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할아버지/할머니
- ⑤ 친척 ⑥ 공동생활(그룹홈 등) ⑦ 반려동물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보호자용)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하여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평소 알고 느끼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 됩니다. 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이 연구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우수연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인천광역시교육청 유경환 인권보호관 032-420-8262 / kygh1004@korea.kr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1.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 | | |
| 2)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 | | |
| 3)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 | | |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5)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6)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는 모든 사람과 보호자를 말합니다. | | | | |

II. 인권보장제도 인식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3.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있는 학생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4.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의 교육청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어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을 포함하여 보호자,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II. 인권 행동

5.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 | |
| 2)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 | | |
| 3) 나는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 | | |
| 4)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 | | |
| 5)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 | | |

IV. 학교분위기

6.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생활은 어떠했나요? 작년에 자신이 알고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학생이 여럿일 경우, 설문을 요청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 | | |
| 2) 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 | | | | |
| 3) 학교에서 보호자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 | | | | |
| 4)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 | | |

V.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7.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이나 서비스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항 목 | 우선 순위 |
|------------------------------------|-------|
| 탈의실 | |
| 샤워실 | |
| 휴식 공간 |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
|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확대경 등) | |
| 청결한 화장실 | |

| | |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
| 기타 () | |

VI. 폭력피해 경험

8.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다녔던 학교에서 귀하의 학생이 겪은 일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학생이 여럿일 경우, 설문을 요청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 1) 학생이 학교에서 언어폭력(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1-1)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그런 적이 없다 ② 학생 ③ 교사 ④ 직원 ⑤ 외부인 ⑥ 기타() | | | |
| 2) 학생이 학교에서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단체기합 포함) | | | |
| 2-1)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그런 적이 없다 ② 학생 ③ 교사 ④ 직원 ⑤ 외부인 ⑥ 기타() | | | |
| 3) 학생이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성폭력이란 성적인 말로 불쾌감과 창피함을 느끼게 하거나, 내 몸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도록 하는 행동, 성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 모두를 말합니다. | | | |
| 3-1)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그런 적이 없다 ② 학생 ③ 교사 ④ 직원 ⑤ 외부인 ⑥ 기타() | | | |
| 4) 학생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 | |

VII. 인권침해 구제

9. 다음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알고 있는 대로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학생의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을 느꼈을 때, 학생인권보호관 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
| 2) 학생인권보호관과의 상담에서 비밀이 보장되고 , 불이익이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다. | | |
| 3) 작년 한 해(2019년) , 학생인권보호관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 | |

10. 이 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참여자 정보]

여러분께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학생과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할아버지 ④ 친척 ⑤ 기타()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학생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여성 ② 남성

4) **현재**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답해주세요.

| | |
|-------------|--|
| 4-1) 학교 유형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특목고등학교 ⑤ 특성화고등학교 ⑥ 마이스터고등학교 |
| 4-2) 설립 형태 | ① 국공립 ② 사립 |
| 4-3) 남여공학여부 | ① 남여공학 ② 여학교 ③ 남학교 |
| 4-4) 소재지 | ① 강화군 ② 계양구 ③ 남동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부평구 ⑦ 서구 ⑧ 연수구 ⑨ 옹진군 ⑩ 중구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교사용)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교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평소 알고 느끼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 됩니다. 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이 연구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우수연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인천광역시교육청 유경환 인권보호관 032-420-8262 / kygh1004@korea.kr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1.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 | | |
| 2)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 | | |
| 3)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 | | |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5)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6)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는 모든 사람과 보호자를 말합니다. | | | | |

II. 인권보장제도 인식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3.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있는 학생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4.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의 교육청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어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을 포함하여 보호자,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II. 인권 행동

5.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 | |
| 2)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 | | |
| 3)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 | | |
| 4)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 | | |
| 5)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 | | |

IV. 학교분위기

6.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가 알고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 | | |
| 2) 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 | | | | |
| 3) 학교에서 교사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 | | | | |
| 4)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 | | |

V.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7.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이나 서비스 중 세 가지를 골라서 그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항 목 | 우선 순위 |
|------------------------------------|-------|
| 탈의실 | |
| 샤워실 | |
| 휴식 공간 |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
|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확대경 등) | |
| 청결한 화장실 |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
| 기타 () | |

VI. 노동권과 자유권

8.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나 주위 동료들이 평소 알거나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 | | |
| 2)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집회나 시위 참여를 망설였다. | | | | |
| 3)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 | | |
| 4)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 | | |

VII. 차별 경험

9.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나 주위 동료들이 평소 알거나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 2)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 3) 비정규직(임시직/기간제)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 3-1) 비정규직(임시직/기간제)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담임업무 부가, 휴가(연,월차) 사용에 대한 제한 등) | | |
| 4) 임신 혹은 출산, 아동양육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VIII. 폭력피해 경험

10.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가 경험한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언어폭력(욕설이나 모욕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 |
| 1-1)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피해 경험 없음 ② 학교장/교감 ③ 동료교사 ④ 직원 ⑤ 보호자 ⑥ 학생 | | |
| 2)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 |
| 2-1)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피해 경험 없음 ② 학교장/교감 ③ 동료교사 ④ 직원 ⑤ 보호자 ⑥ 학생 | | |
| 3)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i>※ 성폭력이란 성적인 말로 불쾌감과 창피함을 느끼게 하거나, 내 몸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도록 하는 행동, 성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 모두를 말합니다.</i> | | |
| 3-1)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피해 경험 없음 ② 학교장/교감 ③ 동료교사 ④ 직원 ⑤ 보호자 ⑥ 학생 | | |
| 4) 나는 학교/부서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 |
| 5) 나는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괴롭힘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 | | |

IX. 사회적 인식과 소진

11.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가 경험하였거나 느꼈던 대로 해당 칸을 골라주세요.

14. 교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인 인권”이 있습니다. 이 인권에서 가장 침해되고 있다고 느꼈던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사상양심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자유권)
- ②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협상할 권리(노동권)
- ③ 충분히 휴식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권리(건강권)
- ④ 폭언, 폭행, 괴롭힘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권)
- ⑤ 기타 (구체적으로)

15. 위 교사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 ① 교육 행정체계(교육청, 교육부 지침, 규정 등)
- ② 학교 경영진(재단, 학교장)
- ③ 학교 상급자(교감, 교과부장 등)
- ④ 보호자
- ⑤ 학생
- ⑥ 기타(구체적으로)

16. 이 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참여자 정보]

여러분께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선택하고 싶지 않다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2019년에 근무한 학교에 대해 답해주세요.

| | |
|-------------|--|
| 3-1) 학교 유형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특목고등학교 ⑤ 특성화고등학교 ⑥ 마이스터고등학교 |
| 3-2) 설립 형태 | ① 국공립 ② 사립 |
| 3-3) 남여공학여부 | ① 남여공학 ② 여학교 ③ 남학교 |
| 3-4) 소재지 | ① 강화군 ② 계양구 ③ 남동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부평구 ⑦ 서구 ⑧ 연수구 ⑨ 옹진군 ⑩ 중구 |

4) 귀하의 교직 경력은 어떠합니까? (년)

5) 2019년 당시 귀하의 고용 지위는 어떠했나요? ① 정규직 ② 기간제(계약직) (5-1로)

5-1) 기간제(계약직)교사일 경우, 2019년 당시 귀하가 학교와 계약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개월)

6) 귀하가 작년(2019년)에 이수하신 교육이 있다면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성폭력 관련 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 ② 인권교육(4시간 이내)
- ③ 인권/인권교육에 관한 연수(5시간 이상)
- ④ 학교폭력예방 연수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직원용)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직원을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평소 알고 느끼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 됩니다. 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이 연구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우수연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인천광역시교육청 유경환 인권보호관 032-420-8262 / kygh1004@korea.kr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1.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 | | |
| 2)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 | | |
| 3)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 | | |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5) 학교는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6) 학생은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는 모든 사람과 보호자를 말합니다. | | | | |

II. 인권보장제도 인식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3.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있는 학생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봤다 | ③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

4.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의 교육청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어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을 포함하여 보호자,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II. 인권 행동

5. 아래 질문을 읽고, 평소 알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 | |
| 2) 나는 친구나 주위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리려고 노력한다. | | | | |
| 3)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나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 | | | |
| 4)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 | | |
| 5) 나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 | | |

IV. 학교분위기

6.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가 알고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교는 학교구성원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 | | | |
| 2) 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했다. | | | | |
| 3) 학교에서 직원은 학교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다. | | | | |
| 4)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 | | |

V. 시급한 학교 시설이나 서비스

7.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이나 서비스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항 목 | 우선 순위 |
|------------------------------------|-------|
| 탈의실 | |
| 샤워실 | |
| 휴식 공간 | |
| 운동공간과 운동시설 | |
|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확대경 등) | |
| 청결한 화장실 | |
| 도서관 책 구입 및 공간 확장 | |
| 위생적인 식당과 다양한 식단 | |
| 기타 () | |

VI. 노동권과 자유권

8.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나 주위 동료들이 평소 알거나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 | | | |
| 2) 학교에 알려질 것이 부담스러워 집회나 시위 참여를 망설였다. | | | | |
| 3) 학교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 | | |
| 4)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자유로웠다. | | | | |

VII. 차별 경험

9.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나 주위 동료들이 평소 알거나 느꼈던 것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 2)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 3)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3-1)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휴가(연,월차) 사용에 대한 제한 등)

| | | |
|---|--|--|
| 4) 임신 혹은 출산, 아동양육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 |
|---|--|--|

Ⅷ. 폭력피해 경험

10.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가 경험한 것과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언어폭력(욕설이나 모욕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 |
| 1-1)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피해 경험 없음 ② 학교장/교감 ③ 교사 ④ 직원(동료포함) ⑤ 보호자 ⑥ 학생 | | |
| 2)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 |
| 2-1)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피해 경험 없음 ② 학교장/교감 ③ 교사 ④ 직원(동료포함) ⑤ 보호자 ⑥ 학생 | | |
| 3) 나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i>※ 성폭력이란 성적인 말로 불쾌감과 창피함을 느끼게 하거나, 내 몸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도록 하는 행동, 성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 모두를 말합니다.</i> | | |
| 3-1)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는 누구였나요?(※복수 답변 가능) ① 피해 경험 없음 ② 학교장/교감 ③ 교사 ④ 직원(동료포함) ⑤ 보호자 ⑥ 학생 | | |
| 4) 나는 학교/부서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 |
| 5) 나는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괴롭힘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 | | |

IX. 사회적 인식과 소진

11.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귀하가 경험하였거나 느꼈던 대로 해당 칸을 골라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 학교의 교사, 학생, 보호자들은 행정실 업무를 이해하고 직원들을 존중했다. | | | | |
| 2) 우리 학교는 직원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 | | |
| 3) 직원의 근무평정은 공정한 편이었다. | | | | |
| 4) 나는 나의 직업에 만족감을 느꼈다. | | | | |
| 5) 본 업무외에 지원업무가 많아 지치고 힘들었다. | | | | |
| 6) 나는 학교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다. | | | | |
| 7)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편이었다. | | | | |

12. 이 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참여자 정보]

여러분께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선택하고 싶지 않다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2019년에 근무한 학교에 대해 답해주세요.

| | |
|-------------|--|
| 3-1) 학교 유형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특목고등학교 ⑤ 특성화고등학교 ⑥ 마이스터고등학교 |
| 3-2) 설립 형태 | ① 국공립 ② 사립 |
| 3-3) 남여공학여부 | ① 남여공학 ② 여학교 ③ 남학교 |
| 3-4) 소재지 | ① 강화군 ② 계양구 ③ 남동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부평구 ⑦ 서구 ⑧ 연수구 ⑨ 옹진군 ⑩ 중구 |

- 4) 귀하의 행정직 경력은 어떠합니까?
 ① 5년미만 ② 5년이상~10년미만 ③ 10년이상~20년미만 ④ 20년이상
- 5) 2019년 당시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⑥ 기타 (5-1로)
- 5-1) 2019년 귀하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① 교육감 소속 근로자 ② 시설(관리직) ③ 대체 근무자 (5-2로)
- 5-2) 대체근무자일 경우, 2019년에 근무한 학교와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개월)
- 6) 귀하가 작년(2019년)에 이수하신 교육이 있다면 모두 골라주세요.
 ① 성폭력 관련 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② 인권교육(4시간 이내)
 ③ 인권/인권교육에 관한 연수(5시간 이상)
 ④ 학교폭력예방 연수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쇄일 | 2020년 12월

|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 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http://www.ice.go.kr>

| 문의전화 | 032-420-8262

| 제작 | 평화인권교육센터 02-2069-1210